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 · 가족 ·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정숙(원혜시교육연구소 · 연구위원)

고민정(스밀라인터내셔널 · 대표)

김성언(경남대학교 · 교수)

김진숙(부경대학교 · 강사)

남현주(경원대학교 · 교수)

성열관(경희대학교 · 교수)

안승문(울산라대학교 · 연구원)

양성관(건국대학교 · 교수)

윤홍식(인하대학교 · 교수)

이성한(고신대학교 · 교수)

이용교(광주대학교 · 교수)

천정웅(켄사스대학교 · 연구원)

연구보조원 : 임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이선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22-0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게이오대학교, 연세대학교, 비엘레펠트대학교, 남스톡홀름대학교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광주대학교, 부경대학교, 고신대학교, 건국대학교, 뮌헨시교육연구소(독일), 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울살라대학교(스웨덴), 스밀라인터내셔널(스웨덴)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경숙 연구위원 김현철 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위원	민경석 교수 (세종대학교)
협력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김혜영
	게이오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쓰다 시게키 오자와 마사유키 배지혜
	연세대학교	박순용 교수	노경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비엘레펠트대학교	Gudrun Quenzel 교수	Janina Herrmann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Liva Alonso Hedvid Jensmar

목 차

I. 서 론

II. 인구 및 가족

1. 인구 및 가족	7
------------------	---

III. 교육현황 및 학교 내 사회화 지원정책

1. 학제	19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8
3. GDP 대 공교육비	39
4. 고등교육 이수율	39
5. 교원 1인당 학생 수	42
6. 한 학급당 학생 수	43
7. 학교급별 진학·취학을	44
8. 교원 중 여성비율	46
9. 학업성취도 평가	47
10. 교육경쟁력	51
11. 평균 학습시간	52
12. 방과후활동(교육)/문화학교	53
13. 교원임용제도	64
14. 주요교육정책	75

IV. 가족 내 사회화 지원정책

1. 부모교육 프로그램	97
2. 가족지원정책	104
3. 사회보장 급여 및 수급 현황	111
4. 부모의 의식비교	120
5.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121
6.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	122

7. 가족과의 시간소비	123
V. 청소년의 사회환경 및 청소년정책	
1. 범죄율 및 비행 동향	127
2. 교정프로그램 및 정책	153
3. 아동청소년 사망 및 자살·사고율	165
4. 음주 및 흡연을 포함한 약물오남용 현황	178
5. 학교폭력	188
VI. 양성평등과 노동, 직업	
1. 여성권한척도(GEM)	227
2. 남녀평등지수(GDI)	227
3. 경제활동	228
참 고 문 헌	234
부 록	243

표 목차

<표 II-1> 남·녀 인구 - 2007년	7
<표 II-2> 성별·연령별 인구	7
<표 II-3> 청소년 인구(10~24세) - 2006	9
<표 II-4> 청소년 인구 추이(1950~2010)	10
<표 II-5> 동거가족수	11
<표 II-6> 가족구성	11
<표 II-7> 자녀수	12
<표 II-8> 조혼인율 / 조이혼율 추이	12
<표 II-9> 결혼 경험(15-19세)	13
<표 II-10> 출생률 추이	13
<표 II-11> 합계출산율	14
<표 II-12> 출생아수 및 성비	14
<표 II-13> 종교별 인구구성	15
<표 III-1> 일본의 학교제도	22
<표 III-2> 1970년~2003년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 유형 (학년범위별)	24
<표 III-3> 스웨덴 학제 표	25
<표 III-4> 직업학교 종류	36
<표 III-5>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4)	38
<표 III-6>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 (2004)	39
<표 III-7> GDP	40
<표 III-8>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4)	40
<표 III-9> 연령대별 후기중등교육단계(고등학교) 이수자 인구 비율 (2005)	41
<표 III-10> 학문분야별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2005)	41
<표 III-11>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2005)	42
<표 III-12> 3차교육기관 졸업(이수)율(2005)	42
<표 III-13>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5)	43
<표 III-14> 교육단계별, 기관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 (2005)	44
<표 III-15> 입학률 추이(1995~2005)	44

<표 III-16> 취학을 추이(1995~2005)	45
<표 III-17> 연령별 취학을	45
<표 III-18> 교원 중 여성비율 2006	46
<표 III-19> 읽기 성취 수준별 비율 - 5수준 비율 기준(2006)	48
<표 III-20> PISA 2006 읽기 영역 성취 수준의 의미	48
<표 III-21> 수학 성취 수준별 비율-5수준 비율 기준(2006)	49
<표 III-22> PISA 2006 수학 영역 성취 수준의 의미	49
<표 III-23> 과학 성취 수준별 비율-5수준 비율 기준(2006)	50
<표 III-24> PISA 2006 과학 영역 성취 수준의 의미	50
<표 III-25> 국제학력평가점수(2006)	51
<표 III-26> IMD 교육부문 국가별 순위(2007)	51
<표 III-27> 1년간 평균 학습시간	52
<표 III-28> 교육 시간수 (2005)	52
<표 III-29>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54
<표 III-30> 학생보호방식, 학생 및 가정배경에 따른 방과후 활동	60
<표 III-31> 방과후 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 비율	61
<표 III-32> 텍사스 주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업수행관련 자료	83
<표 IV-1> 가정교육수첩의 구성	97
<표 IV-2> 아동 수당	108
<표 IV-3> 지자체가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프로그램의 종류	110
<표 IV-4> 상담 및 치료서비스 대상자 수	111
<표 IV-5>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	112
<표 IV-6>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 한국	112
<표 IV-7> 관련시책 및 제도일람	113
<표 IV-8> 사회보장급부비의 전망	113
<표 IV-9> 육아휴직(유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변화	116
<표 IV-10> 육아휴직의 아버지 사용률 및 사용기간	116
<표 IV-11> 직접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조치	118
<표 IV-12> 무상 가족지원을 위한 국가의 추가지출	120
<표 IV-13> 성역할고정관념(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견해	121
<표 IV-14> 집안일과 양육에 대한 부담	121
<표 IV-15> 가사일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	122

<표 IV-16>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복수 응답)	122
<표 IV-17> 가족과의 활동 - 일주일에 몇 번	123
<표 V-1> 한국의 청소년·성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1)	127
<표 V-2> 한국의 청소년·성인 약물 범죄 발생 추이1)	128
<표 V-3> 일본 청소년·성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1)	130
<표 V-4> 일본의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비 추이	131
<표 V-5> 일본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	133
<표 V-6> 일본 청소년·성인 강간범죄 발생 추이	134
<표 V-7> 일본 청소년·성인 절도 범죄 발생 추이	136
<표 V-8> 미국의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	138
<표 V-9> 인구 10만 명당 미국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	139
<표 V-10> 미국의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추이	141
<표 V-11> 미국의 청소년·성인 약물범죄 발생 추이	142
<표 V-12> 스웨덴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	143
<표 V-13> 스웨덴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	145
<표 V-14> 스웨덴 청소년·성인 절도범죄 발생 추이	146
<표 V-15> 스웨덴 청소년·성인 약물범죄 발생 추이	147
<표 V-16> 독일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149
<표 V-17>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150
<표 V-18> 청소년·성인 절도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152
<표 V-19> 청소년·성인 약물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153
<표 V-20> 한국의 아동·청소년(10-19세) 연령집단별·유형별 사망자수 추이	166
<표 V-21> 일본 아동·청소년·성인 사망자수 추이	171
<표 V-22> 미국 아동·청소년(1-24세)의 질병 외 사망 실태 추이	174
<표 V-23>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및 자살 건수 추이	176
<표 V-24> 15-24세 인구 10,000명당 총 사망자수	177
<표 V-25> 2006년 연령과 성별에 청소년사망률	177
<표 V-26> 한국 중고등학생 2006년도 음주실태	179
<표 V-27> 한국 중고등학생 평생 음주율 추이	179
<표 V-28> 한국 중고등학생 연간 흡연을 추이	180
<표 V-29> 한국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	181
<표 V-30> 미국 공사립학교 9-12학년 학생들의 음주율 추이	182

<표 V-31> 음주경험(지난 1개월)	183
<표 V-32> 흡연을 추이	184
<표 V-33> 약물 사용을 추이	185
<표 V-34>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를 추이	188
<표 V-35>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추이	189
<표 V-36>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197
<표 V-37> 학교폭력 발생학교 및 발생건수 추이(일본)	201
<표 V-38> 일본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발생 추이	203
<표 V-39> 미국의 학교범죄 발생추이(2000-2004)	213
<표 V-40> 미국의 학교범죄 가해자 연령분포	213
<표 V-41> 괴롭힘 경험(지난 6개월)	215
<표 V-42>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의 주요 프로그램과 그 특징	216
<표 VI-1> 여성권한척도(GEM)	227
<표 VI-2> 남녀평등지수(GDI)	228
<표 VI-3> 청년실업률	228
<표 VI-4> 경제활동비율(여성)	229
<표 VI-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한국)	230
<표 VI-6> 청소년 직업 선호도	232
<표 1-1>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추계인구 추이	243
<표 1-2>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살인범죄 발생 추이	244
<표 1-3>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	244
<표 1-4>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강간범죄 발생 추이	245
<표 1-5>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폭행범죄 발생 추이	245
<표 1-6>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중폭행범죄 발생 추이	246
<표 1-7>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	246
<표 1-8>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사기범죄 발생 추이	247
<표 1-9>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장물범죄 발생 추이	247
<표 1-10>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손괴범죄 발생 추이	248
<표 1-11>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약물범죄 발생 추이	248
<표 1-12> 인구 10만 명당 약물/음주 운전 범죄 발생 추이	249
<표 1-13> 한국 14-19세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250
<표 1-14> 일본 14-19세 연령집단별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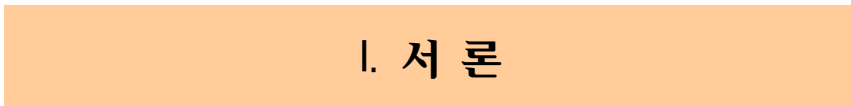
<표 1-1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성별·학교별 추이(일본)	253
<표 1-16> 한국 10-24세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	255
<표 1-17> 한국 10-24세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	261
<표 1-18> 교사 1인당 학생수 2006	263
<표 1-19> 성별, 종사자별, 근로시간별(독일)	263
<표 1-20> 스웨덴 청소년의 여가	263
<표 1-21> 스웨덴 18-24세 국회, 도의원, 시/코문 의원	264
<표 1-22> 스웨덴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자, 성별, 연령별 퍼센트	264
<표 1-23> 2004/2005년에 청소년 중 정치 단체에 가입자 수 퍼센트	265
<표 1-24> 2004/2005년에 청소년 중 정치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수 퍼센트 ...	265
<표 1-25> 스웨덴 도의원 선거 투표 참여자, 성별, 연령별 퍼센트	265
<표 1-26> 2004-2005년 스웨덴 16-25세 청소년 클럽 가입률	266

그림 목차

[그림 III-1] 미국의 학제	23
[그림 III-2] 독일학제의 기본구조 1	33
[그림 III-3] 독일학제의 기본구조 2	34
[그림 III-4] 1999-2000년 유치원-12학년 공사립교사의 고용현황	70
[그림 IV-1] 아버지 인덱스 지수(1999-2007)	109
[그림 IV-2] 생애주기에서 본 사회보장	114
[그림 IV-3] 사회보장급부의 부문별 국제비교(대국민소득비)	115
[그림 1-1] 여가생활 2007년	266



I. 서론



I. 서론

이 자료집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Ⅲ」 가운데 3차년인 2008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 국가의 일반적 환경을 수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2차 연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비교 대상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환경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각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사회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공통점 및 차이점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시적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I·II¹⁾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움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은 인구 및 가족, 교육정책 및 학교 내 사회화 지원정책, 가족정책, 사회 환경 및 청소년정책, 양성평등과 노동 및 직업 등 크게 다섯 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인구 및 가족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인구 비율을 비롯한 인구구성과 가족구성 및 관련 현황을 제시하여 5개국의 일반적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정책 및 학교 내 사회화 지원정책은 학제, 교원1인당 학생수, 사교육비, 진학률 등 교육관련 현황과 학교 환경을 다루었다. 셋째, 가족 내 사회화 지원정책에서는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 등 가족관련 정책과 현황을 다루었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 환경 및 청소년정책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과 노동, 직업에서는 여성권한척도, 남녀평등지수 등 OECD의 국제비교지표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 국제심포지움은 2008년 10월 24일(한국, 일본, 미국)과 10월 28일(독일, 스웨덴) 양일간 개최되었다. 각 국가별 청소년의 사회화 기관(agent)인 가족·친구·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사회화 환경을 주제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움 자료집(I,II)을 참고하기 바란다.

각국의 통계자료는 OECD 및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공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집에 의한 조사의 결과도 다수 활용하였으며 조사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비교 대상인 5개국 데이터를 모두 제시하지 못한 항목도 일부 존재하며, 교육·가족·청소년 관련 정책 및 현황은 국제심포지움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집필진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3년에 걸쳐 도출된 연구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시적 지표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출처가 분명하고 최대한 공신력 있는 1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의 기반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인구 및 가족

1. 인구 및 가족

II. 인구 및 가족

1. 인구 및 가족

1) 인구구성

(1) 남·녀 인구

2007년 현재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5개국의 인구를 살펴보면, 미국이 299,398.5천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127,771천명), 독일(82,257천명), 한국(48,456.37천명), 그리고 스웨덴(9,148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남·녀 인구 - 2007년

(단위: 천명)

국가 성별	한 국	일 본	미 국 ¹⁾	스웨덴	독 일
남	24,344.28	62,310	147,512.2	4,544	40,271
여	24,112.09	65,461	151,886.3	4,604	41,986
계	48,456.37	127,771	299,398.5	9,148	82,257

출처: OECD

주: 1) 2006년 통계임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전체 인구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표II-2>이다.

<표 II-2> 성별·연령별 인구

(단위: 천만명)

		합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한 국 (05)	남	23,465	1,237	1,654	1,816	1,626	1,915
	여	23,575	1,145	1,514	1,618	1,474	1,746
	계	47,041	2,382	3,168	3,434	3,100	3,662
일 본 (00)	남	62,111	3,022	3,083	3,353	3,834	4,307
	여	64,815	2,881	2,938	3,193	3,654	4,114
	계	126,926	5,903	6,021	6,546	7,488	8,421
미 국 (02)	남	141,661	10,026	10,188	10,825	10,471	10,350
	여	146,708	9,584	9,713	10,312	9,905	9,863
	계	288,369	19,610	19,901	21,137	20,376	20,213

스웨덴 (02)	남	4,418	236	277	316	270	263
	여	4,507	224	265	299	255	254
	계	8,925	460	542	615	525	517
독일 (02)	남	40,310	1,976	2,058	2,390	2,390	2,438
	여	42,179	1,873	1,953	2,267	2,267	2,359
	계	82,489	3,849	4,011	4,657	4,657	4,797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한국 (05)	남	1,858	2,059	2,065	2,082	1,961	1,426
	여	1,813	2,036	2,047	2,040	1,939	1,428
	계	3,671	4,096	4,112	4,123	3,900	2,855
일본 (00)	남	4,965	4,437	4,096	3,924	4,468	5,210
	여	4,825	4,340	4,019	3,876	4,448	5,232
	계	9,790	8,777	8,115	7,810	8,916	10,442
미국 (02)	남	9,640	10,563	10,954	11,413	10,492	9,185
	여	9,332	10,394	10,961	11,589	10,810	9,597
	계	18,972	20,957	21,915	23,002	21,302	18,782
스웨덴 (02)	남	293	313	337	298	297	311
	여	282	302	321	287	289	305
	계	575	615	658	585	586	616
독일 (02)	남	2,404	3,209	3,733	3,418	2,954	2,673
	여	2,310	3,039	3,515	3,267	2,888	2,654
	계	4,714	6,248	7,248	6,685	5,842	5,327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한국 (05)	남	1,126	897	755	514	270	136
	여	1,151	991	924	738	496	295
	계	2,278	1,888	1,680	1,252	766	432
일본 (00)	남	4,290	3,750	3,357	2,670	1,626	915
	여	4,444	3,986	3,749	3,230	2,525	1,699
	계	8,734	7,736	7,106	5,900	4,251	2,614
미국 (02)	남	7,260	5,524	4,439	3,862	3,071	2,010
	여	7,730	6,087	5,142	4,832	4,349	3,305
	계	14,990	11,611	9,581	8,694	7,420	5,315
스웨덴 (02)	남	320	233	184	163	141	101
	여	313	234	198	194	185	157
	계	633	467	382	357	326	258
독일 (02)	남	2,229	2,814	2,137	1,588	1,006	535
	여	2,239	2,920	2,370	2,005	1,842	1,273
	계	4,468	5,734	4,507	3,593	2,848	1,808
L		85세 이상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한국 (05)	남	58	4,707	17,021	1,736		
	여	174	4,278	16,668	2,628		
	계	233	8,986	33,690	4,365		
일본 (02)	남	8,001	9,459	43,281	9,222		
	여	1,559	9,013	42,938	12,783		
	계	2,360	18,472	86,219	22,005		
미국 (02)	남	3,400	31,038	95,851	14,772		
	여	6,508	29,609	96,269	20,830		
	계	9,908	60,647	192,120	35,602		

스웨덴 (02)	남	64	829	2,935	654		
	여	144	787	2,841	879		
	계	208	1,616	5,776	1,533		
독일 (02)	남	358	6,424	28,261	5,625		
	여	1,138	6,093	27,458	8,628		
	계	1,496	12,517	55,719	14,253		

출처: 통계청(한국-2005), 나머지 국가들의 출처는 세계의 통계, 2006.

(2) 청소년 인구

각 국가의 전체 인구 가운데 10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청소년 인구를 비교한 결과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독일·한국·스웨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일본이 15%로 가장 낮다. 스웨덴과 독일은 각각 19%, 17%로 나타났다.

<표 II-3> 청소년 인구(10~24세) - 2006

(단위: 명, %)		
구 분 국 가	청소년 인구 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 국	10,200,000	21
일 본	19,700,000	15
미 국	64,400,000	21
스웨덴	1,700,000	19
독 일	14,000,000	17

출처: 인구조회국(미국)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소년 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 청소년 인구 비율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 각각 13.4%로 가장 낮고 미국이 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청소년 인구의 감소규모를 살펴보면 한국(25.9%)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일본(22%), 독일(9.8%), 스웨덴(7.2%), 미국(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 청소년 인구 추이(1950~2010)

(단위: %)

연도 \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 덴	독 일
1950	41.7	35.4	27.0	23.4	23.2
1960	41.9	30.2	30.8	22.0	21.3
1970	42.1	24.0	28.3	20.8	23.2
1980	34.0	23.5	22.5	19.6	18.5
1990	25.8	18.2	21.8	17.9	16.1
2000	20.8	14.6	21.6	18.4	15.6
2010	15.8	13.4	20.0	16.2	13.4

출처: 세계의 통계, 2006.

주: 전체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가족의 구성

(1) 가족구조

동거하는 가족의 수는 5개국 모두 평균 4명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4명이라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5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1994년 이후 10년 동안 2인, 3인 가족은 증가하고 5인 이상 가족은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구성<표II-6>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국가 모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조부모·부모·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 비율(26%)이 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5> 동거가족수

(단위: %, 명)

국가	연도	구분								
		2	3	4	5	6	7	8명 이상	무응답	평균
한 국	94	0.5	22.0	47.5	16.9	7.9	3.5	1.7	—	4.3
	05	0.8	26.0	53.8	13.4	4.4	1.4	0.3	—	4.0
일 본	94	0.4	16.6	36.9	23.2	14.6	6.8	2.3	0.1	4.7
	05	0.8	20.2	36.4	22.7	12.5	5.4	1.9	—	4.5
미 국	94	8.0	23.9	36.9	21.4	6.1	2.3	1.3	0.1	4.1
	05	2.7	24.9	32.4	25.8	8.5	3.8	1.3	0.6	4.3
스웨덴	94	5.4	18.1	45.6	22.9	6.3	1.3	0.4	0.1	4.1
	05	6.1	28.0	42.4	18.2	3.6	0.9	0.7	0.1	3.9
독 일	94	—	—	—	—	—	—	—	—	—
	05	—	—	—	—	—	—	—	—	—

출처: NWECC,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표 II-6> 가족구성

(단위: %)

국가	연도	구분		
		2세대 (Two-generation)	3세대 (Lineal three-generation)	복합 확대가족 (Collateral extended family)
한 국	1994	77.1	14.9	8.0
	2005	87.2	9.5	3.3
일 본	1994	66.2	29.0	4.9
	2005	70.5	26.1	3.5
미 국	1994	85.9	5.9	8.2
	2005	89.3	3.9	6.8
스웨덴	1994	98.8	0.4	0.7
	2005	98.3	0.3	1.4
독 일	1994	—	—	—
	2005	—	—	—

출처: NWECC,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자녀수를 살펴보면(<표II-7>) 한국(1.82명)이 총 자녀수가 가장 적고 일본·미국·스웨덴은 2명 수준으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사는 자녀의 비율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응답자의 1% 정도인데 반해 미국(9.8%)과 스웨덴(10.6%)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표 II-7> 자녀수

(단위: 명, %)

국가	연도	구분		같이 사는 자녀수	따로 사는 자녀수	총 자녀수	따로 사는 자녀 비율
한 국	1994			1.9	0.03	1.93	1.7
	2005			1.8	0.02	1.82	1.7
일 본	1994			2.1	0.02	2.12	1.5
	2005			2.1	0.01	2.11	1.5
미 국	1994			2.1	0.19	2.29	11.4
	2005			2.1	0.17	2.27	9.8
스웨덴	1994			2.2	0.17	2.37	11.1
	2005			2.1	0.17	2.27	10.6
독 일	1994			—	—	—	—
	2005			—	—	—	—

출처: NWECC,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2) 혼인

인구 천명당 이혼율을 의미하는 조이혼율 비교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한국·일본·스웨덴·독일 모두 2%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율과 이혼율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한국(4.2%)이 일본(3.8%), 스웨덴(3%), 독일(2.1%)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8> 조혼인율 / 조이혼율 추이 *

(단위: %-천명당)

국가 연도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덴		독 일	
	혼인율	이혼율	혼인율	이혼율	혼인율	이혼율	혼인율	이혼율	혼인율	이혼율
98	8	2.5	6.2	1.9	8.3	—	3.6	2.4	—	—
99	7.7	2.5	6	2	8.6	—	4	2.4	5.2	2.3
00	7	2.5	6.3	2.1	8.3	—	4.5	2.4	5.1	2.4
01	6.7	2.8	6.3	2.3	8.2	—	4	2.4	4.7	2.4
02	6.4	3	6	2.3	7.8	—	4.3	2.3	4.8	2.5
03	6.3	3.5	5.9	2.2	7.7	—	4.4	2.4	4.6	2.6
04	6.4	2.9	5.7	2.1	7.8	—	4.8	2.2	4.5	2.6
05	6.5	2.6	5.7	2.1	7.6	—	4.9	2.2	4.5	2.4
06	6.8	2.6	5.8	2	7.2	—	5	2.2	4.4	2.3

출처: 통계청(한국)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19세 이하 인구의 결혼 경험을 비교하였다. 남성의 경우 한국·일본·독일이 각각 1% 수준임에 반해 미국은 3%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0%로 집계되고 있다.

<표 II-9> 결혼 경험(15-19세)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0	1	0	3	1	0	0	1	0

출처: 인구조화국(미국)

(3) 출생아 변동 추이

인구 천명당 출생율을 살펴보면(<표 II-10>) 한국은 70년대 29명에서 2005년 현재 10.3명으로 줄어들었고 2030년 중반에는 7명 선으로 낮아져 비교 국가들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역시 감소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출생률 추이

(단위: 천명당)

국가 연도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덴	독 일
70~75	29.0	19.9	15.7	13.6	11.4
75~80	23.6	15.4	15.1	11.7	10.3
80~85	21.1	12.9	15.6	11.3	10.8
85~90	16.9	10.5	15.9	12.9	11.1
90~95	15.9	9.7	15.6	13.6	10.0
95~00	13.5	9.6	14.4	10.3	9.5
00~05	10.3	9.2	14.0	10.6	8.5
10~15	9.0	8.5	13.4	11.0	8.4
20~25	8.6	7.9	12.4	11.3	9.1
30~35	7.6	8.3	11.9	10.3	9.0

출처: 세계의 통계, 2006

출산 가능한 여성(15세~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한국은 80년대 중반 2명에서 2010년에 1명 선으로 낮아졌다. 일본과 독일은 최근 20년 동안 1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스웨덴은 같은 기간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국가 연도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덴	독 일
1985	2.23	1.76	1.83	1.65	1.46
1990	1.6	1.66	1.92	1.91	1.43
1995	1.7	1.49	2.03	2.01	1.31
2000	1.51	1.39	1.99	1.56	1.34
2005	1.24	1.29	2.04	1.67	1.35
2010	1.21	1.27	2.05	1.8	1.36

출처: 통계청-한국

여아 백명당 남아의 비율을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표II-12>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네 개 국가가 105~107 정도로 남아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2> 출생아수 및 성비

(단위: 명 / 성비: 여아 백명당)

연도 국가	성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남	-	-	257,044	247,399	227,151	233,845
	여	-	-	236,427	228,653	210,911	217,669
	계	-	-	493,471	476,052	438,062	451,514
	성비	-	-	108.7	108.2	107.7	107.4
일 본	남	-	592,840	576,736	569,559	-	560,439
	여	-	561,015	546,874	541,162	-	532,235
	계	-	1,153,855	1,123,610	1,110,721	-	1,092,674
	성비	-	105.7	105.5	105.2	-	105.3
미 국	남	-	-	-	-	-	-
	여	-	-	-	-	-	-
	계	-	4,021,726	-	4,115,590	-	-
	성비	-	-	-	-	-	-

스웨덴	남	-	-	-	51,975	-	54,483
	여	-	-	-	48,953	-	51,430
	계	-	95,815	-	100,928	-	105,913
	성비	-	-	-	106.2	-	105.9
독일	남	377,586	-	362,709	362,017	-	345,816
	여	356,889	-	344,012	343,605	-	326,908
	계	734,475	-	706,721	705,622	-	672,724
	성비	105.8	-	105.4	105.4	-	105.8

출처: 통계청(한국)

(4) 종교별 인구구성

각국의 종교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표 II-13>) 한국은 무교(49.3%)를 제외하면 기독교(26.3%)가 가장 많고 다음은 불교(2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신토·불교(84%)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개신교(51.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루터교(87%)의 비율이 가장 많고 독일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각각 3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종교별 인구구성

국 가	종교별 인구구성비	
한 국 (1995)	1. 개신교 19.7% 3. 불교 23.2% ** 없음 49.3%	2. 카톨릭 6.6% 4. 기타 혹은 모름 1.3%
일 본	신토와 불교 84% 기타 16% (기독교 0.7% 포함)	
미 국 (2007)	1. 개신교 51.3% 3. 몰몬교, 유대교 1.7% 5. 불교 0.7%, 7. 기타 14.6% ** 없음 4%	2. 카톨릭 23.9% 4. 기타 기독교 1.6% 6. 회교 0.6%
스웨덴	루터교 87% 기타 (카톨릭, 회교, 유대교, 불교 등) 13%	
독 일	1. 개신교 34% 3. 기타 28.3%	2. 카톨릭 34% 4. 회교 3.7%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2008

Ⅲ. 교육현황 및 학교 내 사회화 지원정책

1. 학제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 GDP 대 공교육비
4. 고등교육 이수율
5. 교원 1인당 학생 수
6. 한 학급당 학생 수
7. 학교급별 진학·취학률
8. 교원 중 여성비율
9. 학업성취도 평가
10. 교육경쟁력
11. 평균 학습시간(초중등)
12. 방과후활동(교육)/문화학교
13. 교원임용제도
14. 주요교육정책

III. 교육현황 및 학교 내 사회화 지원정책

1. 학제

학제는 학교제도를 의미한다. 학교제도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구조이며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의 유형을 설정한 것이다. 학교제도는 어떤 연령에서 어떤 학교교육을 받는가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통성·단계성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계통성은 ‘어떤 교육을 하는가’ 또는 ‘어떤 계층의 취학자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나타내며, 단계성은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의 교육단계인가’를 나타낸다(박병량 외, 2005: 61~3). 학교 계통은 여러 유형의 학교를 의미하고 학교 단계는 학교급 별간의 수직적 구분을 의미한다. 학제가 계통성을 중시하면 복선형으로, 단계성만을 고려하면 단선형으로, 그리고 그 이 두 가지가 조화되면 분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2007).

- 복선형은 교육기회 개방정도를 사회적 신분, 계층성 혹은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 수준에 따라 차등시키는 교육제도이다. 유럽에서 발달한 것으로 지배계급과 서민 계급 간의 학교 계통을 구별함으로써 학교 계통 간에 이동이 불가능하다. 동급 학년 간에도 교육과정이 다르게 편성된다. 복선형 학제는 계층적 사회를 고정시키는 등 사회 분열의 요인도 있으나 교육을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단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민주주의의 기회균등 이념에 입각하여 지배 계급과 서민계급 사이에 차별을 없애고 전 국민이 단일 체제의 학교 교육을 제공받도록 한다. 특히 학습자의 천부적인 능력 자체보다는 후천적 능력을, 학습자의 사회적 신분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일차적으로 존중하는 성격이 강하다. 단선형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취학할 수 있으나 통

제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분기형은 복선형과 단선형의 중간형으로 절충형이라고도 하며 복선형에서 단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분기형은 복선형의 기초부분이 통일되고 그 위의 부분에서 복수의 학교 계통이 병존하는 학교제도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균등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중등교육은 사회계층에 따라 제도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학제이다.

1) 한국

한국의 현행 학제는 기본학제와 특별학제로 구분할 수 있다. 윤정일 외(1995)에 따르면 기본학제는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의 정규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를 의미하여 기간학제라고도 한다. 특별학제는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를 말하며 방계학제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방송고, 방송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단선형인 6-3-3-4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4개의 단계가 있다.

2) 일본

일본의 학교제도는 1945년 이전에는 유럽식의 복선형 학제였으나 패전 이후 미국 학교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선형으로 전환하였고 6-3-3-4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법에 정해진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다. 그러나 문부성의 「학교기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97.8%이고 취직률은 0.7%이며 전수학교 진학률은 0.2%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학교기관인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이외의 학교기관들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나와 있는 학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을 갖춘 교육시설을 지칭한다. 직업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거나 교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수학교, 전문학교, 고등전수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직업과 연관된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대부분 중학교 졸업정도를 입학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와 단기대학을 병행하는 수업 연한에 해당하는 5년(상선학과는 5년 6개월)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주로 공학과 기술계통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월 기준으로 64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립이 55개, 공립이 6개, 사립이 3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전문학교의 종류로는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수가 가장 많고, 商船고등전문학교, 전파공업 고등전문학교, 항공공업 고등전문학교 등이 있다. 취직률은 2005년을 기준으로 53%이고 상급학교에의 편입학자가 증가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42.9%에 달하고 있다(대학 편입학율 65.2%, 고등전문학교 전공과 진학률 34.8%).

단기대학은 2-3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이다. 단기대학제도가 발족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는 주요한 학과는 영문학, 일본문학, 보육학과이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야간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는 경제학과, 공학과 등의 학과를 들 수 있다. 1990년대부터는 간호학과와 복지학과가 신설되고 있고 주간에도 공학을 설치하는 단기대학이 늘었다. 단기대학은 주로 여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현재도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단기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단기대학에 진학하던 여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난에 봉착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학과를 늘리거나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같은 재단이 소유한 4년제 대학으로 흡수통합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일본의 학교제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Ⅲ-1>과 같다.

<표 III-1> 일본의 학교제도

교육단계	학교종류	교육내용	수업연한	학령. 연령
취학전교육	유치원	심신발달		3세이상 6세까지
초등교육	초등학교	초등보통교육	6年	6세이상 12세까지
전기중등교육	중학교	중등보통교육	3年	12세이상 15세까지
후기중등교육	고등학교	고등보통교육 전문교육	3年	15세이상
	전수학교 (專修學校)	보통교육 전문교육	1년이상	15세이상
고등교육	고등 전문학교	일반교육 전문교육	5년- 5년6개월	15세이상
	대학(학부)	일반교육 전문교육	4-6년 조기졸업 은 3년	18세이상
	대학원	주로 전문교육	2-5년	22세이상
	단기대학	일반교육 전문교육	2-3년	18세이상
	전수학교 (전문과정)	일반교육 전문교육	1년이상	18세이상

3) 미국

학년구성상 변화의 측면에서, 미국의 학제는 크게 두 차례 변화되었다(Lounsbury, 1996). 전통적인 8-4제에서 저학년 고등학교(junior high school)의 도입으로 6-3-3제로 전환된 것이 첫 번째 학제개편이라 한다면, 중학교 개념(middle school concept)의 도입으로 5-3-4제로의 전환이 두 번째 학제개편이다.

현행 미국의 학제는 크게 취학전 교육(Pre-K)과 유치원(K)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을 나눌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취학전 교육은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녀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학년부터 5/6학년까지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8학년의 중학교, 7-9학년

의 저학년 고등학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일반종합 고등학교,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의 형태로 학계단계가 조직되어 있다. 미국의 학제는 <그림 III-1>과 같다.

연령			박사후 과정		
			박사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22			대학교		
21					고등교육
20	초급대학			기술대학	
19					
18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XII
17	4년제 고등학교	종합중등학교			XI
16					X
15			중학교		IX
14					VIII
13					VII
12					VI
11					V
10			초등학교		IV
9					III
8					II
7					I
6			유치원		취학 전 교육
5					
4			유아원		

[그림 III-1] 미국의 학제

2005년 미국교육통계센터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현재 93,977개의 공립학교 가운데 4, 5, 6학년부터 6, 7, 8학년의 중학교가 12,341개교가 있으며, 7-8학년 또는 7학년부터 9학년으로 구성된 저학년 고등학교가 3,251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저학년 고등학교의 수는 감소한 반면, 중학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초, 중, 고등학교를 결합한 학교의 수도 증가하여 2003년에는 5,43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05).

<표 III-2> 1970년-2003년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 유형 (학년범위별)

연도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결합
	총계	소계	중학교 4,5,6- 6,7,8	1인 교사 학교	기타 초등/ 중학교	소계	저학년 고등학교 7-8/ 7-9	3,4년 고등 학교	5,6년 고등 학교	기타 고등 학교	6학년 이하 -9학년 이상
70	89,372	64,020	2,080	1,815	60,125	23,572	7,750	11,265	3,887	670	1,780
80	83,688	59,326	6,003	921	52,402	22,619	5,890	10,758	4,193	1,778	1,743
90	82,475	59,015	8,545	617	49,853	21,135	4,561	11,537	3,723	1,314	2,325
00	91,691	64,601	11,696	411	52,494	21,994	3,318	13,793	3,974	909	5,096
01	92,696	65,228	11,983	408	52,837	22,180	3,285	14,070	3,917	908	5,288
02	93,869	65,718	12,174	366	53,178	22,599	3,263	14,330	4,017	989	5,552
03	93,977	65,758	12,341	376	53,041	22,782	3,251	14,595	3,840	1,096	5,437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Statistics of State School Systems, 1975-76; Statistics of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Day Schools, 1970-71, and 1976-77 through 1980-81; and The NCES Common Core of Data (CCD), "Public Elementary/Secondary School Universe Survey," 1982-83 through 2003-04.

4)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6세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제공된다. 스웨덴의 공립학교 제도는 의무교육 학교와 비의무교육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²⁾ 의무교육 학교에는 정규 의무교육 학교와 사미(sami)학교, 특수학교,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 포함된다. 비 의무교육 학교에는 취학 전 학급(preschool class),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와 공립 성인 교육,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 교

2) 여기서는 스웨덴의 교육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Preschool은 정식 학교교육 제도에 포함되므로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라고 번역하였으며, 만6세 어린이들이 의무 교육에 입학하기 직전 1년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인 Preschool class를 '취학 전 학급'으로, 만 7세-16세까지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우리나라의 초등과 중학교에 해당하는 종합학교를 '기초학교'로,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16세 이후에 3년간 다니는 학교를 '고등학교'로 번역하였다. '기초학교' 단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는다. 기초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육이 포함된다. 학년도는 매년 8월 말에 시작되어 다음해 6월 초까지 약 40주로 이루어진다. 정규 학교 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12월 20일부터 1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표 III-3> 스웨덴 학제 표1)

교육의 유형	학교(참고 사항)			학년
대학원 수준 (석사 박사)	종합 대학교	단과 대학 ※특정분야 연구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고등교육 수준 (기초 및 심화)	종합 대학교 (Universitet) 2~5년	단과대학 2~5년 (Högskolor) ※특정분야 교육	고급 직업교육 2~5년 ※직업 현장 연계 1/3 현장실습	5년
				4년
				3년
				2년
				1년
상급 교육 (upper secondary)	고등학교 16~19세 (고등학교 / 학습부진 학생) ※17개 국가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전공 선택			3년
				2년
				1년
기초 교육 (basic)	기초학교(의무교육 학교) 7~16세 (기초학교, 사미학교, 특수학교 / 학습부진 학생) ※종합학교 :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취학 직전 교육	취학 전 학급(Pre-school class) - 6세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의무적이진 않음) (방과후에는 - 여가센터, 가정탁아, 열린 여가센터에서 케어)			1년
유아 학교 활동	유아학교(Pre-school) - 1~5세 (종류 - 유아학교, 가정탁아, 열린 유아학교)			1~5년

유아학교(Pre-school activities)³⁾ 활동은 1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하는 부모의 자녀, 또는 그런 활동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부모의 어린이들을 위해 유아학교 활동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실직자나 부모가 휴직중인 가정의 자녀에게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유아학교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입학신청을 하게 되면 3~4개월 내에는 반드시 유아학교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아학교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비가 부과된다.

취학전학급(Pre-school class)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 6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취학전학급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취학전학급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학부모들이 자녀를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5%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를 취학전학급에 입학시키고 있다. 취학전학급의 프로그램은 1년에 최소한 525시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어린이들의 학습과 발달을 자극해야 할 뿐 만아니라, 계속되는 학교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취학전학급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대개의 경우 의무교육 학교나 여가센터⁴⁾ 또는 유아학교(preschool)와 연계하여 조직된다.

기초학교(의무교육)에는 정규기초학교와 사미학교, 특수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7세에서 16세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9년의 의무교육이 운영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6세에 시작이 가능하며 사미(Sami)족 아동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미 학교에서 6년의 기초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특수학교는 맹인이나 난청 학생을 위해서 10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3) 스웨덴에서 유치원 단계의 교육은 교육부 소관 아래 있으며 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학교와 달리 지식 습득이나 학습에 중점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전면적인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중점이 두어진다. 따라서 교육 관련 문서에서는 ‘유아학교’라고 하지 않고 ‘유아학교 활동(Pre-school Activities)’이라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의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의 ‘방과후활동’이나 ‘방과후학교’와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영어 원문에 있는 ‘leisure-time center’를 ‘여가센터’라고 번역하였다. 주로 두 부모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가정의 자녀에게 등록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증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기초학교와 실습학교(training school),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기초학교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고 법인이 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진학하며 대부분 3년 안에 졸업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17개의 3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으로는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 유사하게 국가차원에서 특별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나 개인적인 학습프로그램 형태의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그러나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수가 적고 직업 훈련 쪽에 치중된 편이다.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은 4년이다.

모든 국민은 20세까지는 정규 고등학교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세 이후의 성인들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은 지자체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데, 공립의 정규성인교육과 학습장애 성인교육 등이 있다. 정규성인교육은 특별한 직업영역에서 전문화된 기술을 가르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며, 도서 및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원격 교육으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스웨덴에 이민 온 성인들에게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SFI)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자유 성인교육 기관으로 148개의 민중대학(folk high school)⁵⁾이 있다.

스웨덴의 고등교육은 학부와 대학원 교육으로 나뉘며, 95% 이상의 대학 교육이 14개의 국립종합대학(Universitet)과 22개의 국립단과대학(Högskolor)에서 이루어진다. 2005년의 경우 2세가 된 고교 졸업생 가운데 63%가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였고⁶⁾, 19~24세까지의 남자 인구의 37.1%가, 여자

5)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성인교육인 민중대학은 그룬트비로부터 시작된 덴마크 민중대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중대학의 과정을 마치면 특별한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들에게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기 성찰 및 성장의 기회를 주는 대안 성인교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6) Skolverket,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2006. p. 95.

인구의 48.5%가 대학 학사학위 과정에 등록되어 있었다.⁷⁾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 기관들은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나 개인적인 학습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5%정도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사립 교육 기관으로 부분적으로 수업료를 받기도 한다. 단과대학에서의 학사 학위 과정은 종합대학이나 동등하게 인정되지만, 종합대학은 폭넓은 과정을 제공하면서 석박사 과정과 진학과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고등교육 기관들은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과 약학, 간호, 엔지니어링 교육 등이 대학원 또는 대학 안에서 통합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특별한 분야의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특수한 교육을 하는 기관도 일부 설치되어 있다.

특별하게 설계된 고등학교 교육⁸⁾ 을 살펴보면, 스웨덴의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일종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전공분야들로 이루어진 17개의 국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7~16세까지의 의무교육 단계를 종합학교 체제로 개편했던 것과 같은 통합교육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는 고등학교단계에서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뚜렷이 나누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진로 선택의 융통성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한 학교에 2~4개의 전공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도 하고, 지방의 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7~8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도 한다.

2000년 현재, 17개의 국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모두 3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폭넓은 보통 교육과 함께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후의 단계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제공한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2,500 고등학교 크레딧(credit, 단위)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장된 수업 시간 수는 프

7) European Commission, The education system in Sweden, 2006/2007. p.104.

8) Skolverket, <http://www.skolverket.se/sb/d/354/a/1239>

9) credit은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강해야 하는 수업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credit은 1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credit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이수 '단위'와 유사하나 단지 교과목별로 배정된 단위 시간 수의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포함하므로 여기서는 그냥 '크레딧'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로그램마다 다양하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프로그램은 총 2,180시간, 다른 프로그램들은 2,430시간이다. 모든 국가 프로그램들은 영어, 예술, 체육과 건강, 수학, 일반과학, 사회탐구, 스웨덴어(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종교 과목 등 8개의 필수 과목을 포함하며, 필수 과목들을 합하면 750크레딧이 된다.

각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개설된 특별한 교과목들로 인해서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별 특성화 과목들을 총 1,450크레딧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100크레딧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특정 프로그램들의 특성화 과목을 결정한다. 17개 프로그램 중 13개의 프로그램에는 학교외부의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장훈련이 최소 15주 동안 현장실습으로 포함된다. 주로 대학입시를 전제로 진행되는 예술, 과학, 사회 탐구, 기술 등 4개의 프로그램에서는 작업장훈련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부 수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전문 과정들로 나뉘어 2학년과 3학년에 제공된다. 국가 교육청은 국가전문과정(national specializations)으로서 어떤 과정들을 필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17개의)국가 프로그램이나 전문 과정들 모두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 전문 과정(local specializations)을 승인할 수 있다.

17개의 국가 프로그램

- 아동과 오락 / 오락(리크리에이션),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활동
- 건축(construction) / 건설, 건축, 도장, 판금
- 전기 엔지니어링 / 자동화, 전자, 전기 및 컴퓨터 기술
- 에너지 / 운전과 유지 관리, 해양 기술, 난방, 물, 하수도 설비, 냉동
- 예술 / 미술과 디자인, 무용, 음악, 연극
- 자동차 엔지니어링 / 항공기, 자동차 정비, 기계와 트럭, 승용차, 운송
- 비즈니스와 경영 / 비즈니스와 서비스, 여행, 관광
- 수공예 / 다양한 수공기술, 공예
- 호텔, 레스토랑, 요식 / 호텔, 레스토랑, 음식 서비스
- 산업 / 지역 특화 전문 과정, 지역별 모집
- 식품 / 지역 특화 전문 과정, 지역별 모집
- 미디어 / 미디어 생산, 인쇄 기술
- 자연 자원의 활용 / 지역 특화 전문 과정,
- 자연과학 / 수학, 컴퓨터 과학, 환경 과학, 자연 과학
- 건강 보호 / 국가 전문 과정은 아님
- 사회 과학 / 경제, 교양 과정, 사회 과학, 언어
- 기술 / 지역 특화 전문 과정

지방자치단체는 주(county)나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들로부터 선정한 특정 과목을 조합하여 특별히 설계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들은 학생 개인의 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개인별 프로그램(Individual Program)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나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기초학교 단계에서 스웨덴어, 영어, 수학 과목 등에서 패스 등급을 얻지 못하여 국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되는 프로그램이다.¹⁰⁾ 개인별 프로그램은 그 기간이나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고,

10) 개인별 프로그램은, 이민자인 학생이나 학습 부진 학생 등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로 17개의 정규 국가 프로그램이나 특별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보조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서 개인별 프로그램을 1년 마치고 정규 프로그램에 진학할 수도 있고, 개인별 프로그램만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PRIV(Programme Oriented Individual Programme)는 의무교육 9학년을 마칠 때 스웨덴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통과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이다.

개별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부족함을 보충하여 국가 프로그램이나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못하는 학생은 개인별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프로그램 교수요목을 이수한 뒤에 최종적인 등급(학습 이수증)¹¹⁾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과목들은 여러 과정으로 나뉘는데, 과정들은 50, 100, 150, 200 크레딧으로 이루어지며 더 장기간으로 이루어진 독립 과정들도 있다.¹²⁾ 이수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등급이 주어지며 통과(Pass) 등급을 받으면 과정의 목표를 짧은 시간에 달성했는지 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는지에 관계없이, 과정에 인가된 고등학교 크레딧이 부여된다.¹³⁾ 모든 과정들은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지정된 교수요목을 갖는다. 모든 과정에는, 통과(Pass), 우수하게 통과(Pass with Distinction), 매우 우수하게 통과(Pass with special Distinction), 실패(Fail) 등 4등급으로 성취수준을 제시하는 평점 기준이 있다.¹⁴⁾ 과정 중에는 국가적으로 인가된 교수요목과 등급 기준을 갖는 국가 과정들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교수요목과 등급기준을 갖는 지역 과정들이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마치면, 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과정들의 등급이 집계된 최종 등급표(이수 증명서)¹⁵⁾를 받는다. 학생들은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그 과정에서 실패(Fail) 등급을 받은 경우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에 대한 시험을 볼 수 있다.¹⁶⁾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도 국가 프로그램의

11) learning certificate로 일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다.

12) 과목이 여러 과정으로 나뉜다는 말은, 같은 영어 과목이라도 난이도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예컨대, 기초영어, 영문학 또는 영어워크숍 등으로 나뉘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어떤 학생은 짧은 시간 공부하고 ‘통과’를 받을 수 있고, 일부 학생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통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학생간의 학습 속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크레딧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14) 현재 이 4단계 평점 기준을 A·B·C·D·E와 F(실패) 및 -(관정 불가) 등 6단계 평가로 세분화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6단계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다.

15) leaving certificate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수한 전체 과목들에 대해 받는 일종의 종합 성적표이다.

일부로서 제공되는, 모든 과정들에 관한 시험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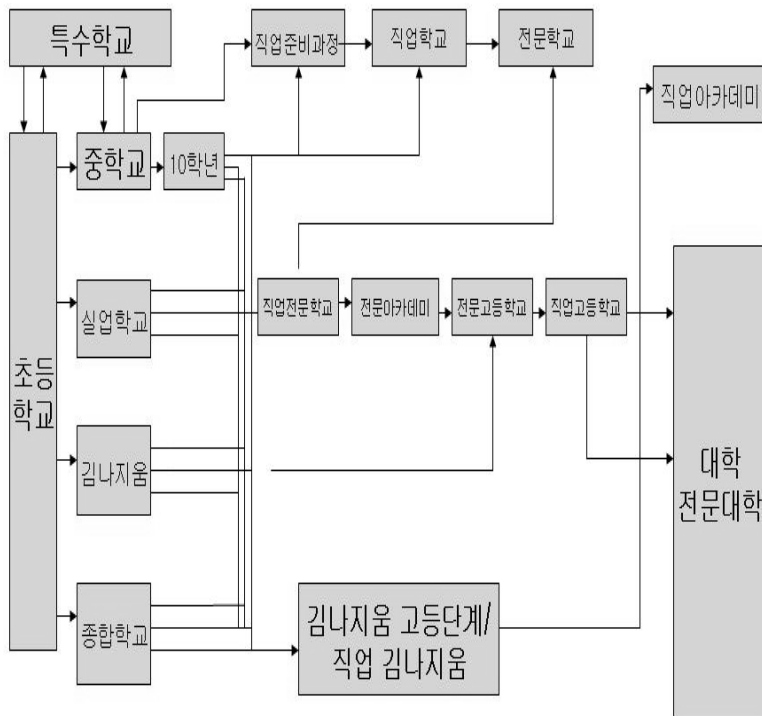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이나 교육계획의 수립은 물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의 요구나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웨덴의 학생들은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과정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가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의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프로그램들은 또한 총 300크레딧의 범위 안에서 개인적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학생들은 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과정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5) 독일

독일학제의 중요한 특징은 연방제도이다. 이것은 독일의 오랜 역사발전과정에서 생성된 국가 연방제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문화교육 분야는 16개의 주정부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여러 주 정부들 사이의 교육정책에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2004년 교육기준의 제정이다. 연방정부는 공직자의 권리 급료에 대한 규범규칙과 학교 밖의 기술교육과 연구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독일 학제의 기본 구조는 <그림 III-5>와 같다.

전 학제에 관한 연방정부차원의 총체적인 법 규정은 없으며 각 주정부가 여러 교육 분야에 대한 법(예로, 학교구조·조직·수업목표와 내용·교사양성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학제에 차이가 있으며, 연방차원에서는 교육학문연구기술부(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Technologie), 각 주정부의 교육부서의 명칭은 상이하다.

-
- 16) 실패(Fail)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받을 등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또는 통과(Pass) 등급을 얻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재평가를 받고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III-2] 독일학제의 기본구조 1

취학 전 분야는 유치원 연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회법 규정에 따른다. 주 정부는 이연방법에 맞게 구체적인 법을 규정하여 실행할 의무가 있다. 유치원은 공공학제에 속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부담을 떠맡고 있고 부모들은 수입에 따라 요금을 내고 있다.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준하는 경제지원을 주정부에서 받는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규칙에 관해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자치행정을 할 권리가 있다. 의무교육기간은 바이에른 주의 경우 일반적인 의무교육은 9년, 직업학교교육은 12년이다(<그림 III-3>).

나이	과정 제3분야	학년	지속교육				
24			일반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음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직업 아카데미	일반대학에 가는 졸업장	직업계속 교육
23							
22							
21							
20							
						일반대학에 가는 졸업장	직업계속 교육
						야간학교	전문학교

			일반대학에 가는 졸업장	대학의 특정 전문학과에 가는 졸업장	전문대학에 가는 졸업장		직업
19	제2분야	13	김나지움	직업고등학교	전문고 등학교	직업 전문 학교	직업학교와 사업장(이 중제도)
18		12					
17		11					
16		10					

16	제2분야 (1)	10	김나지움	종합학교	실업학교	중학교	특수 학교
15		9					
14		8					
13		7					
12		6					
11		5	초등학교				
10	제1분야	4					
9		3					
8		2					
7		1					
6	기본분 야		유치원			특수 유치원	
5							
4							
3							

[그림 III-3] 독일학제의 기본구조 2

제1분야로 초등학교(Grundschule)는 대부분 4년 과정이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6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중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의 3갈래의 진학길이 있는데 교사와 부모

들이 함께 결정하지만 성적에 따른 교사들의 제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독일의 경우 매우 이른 시기에 진학이 결정된다 하겠다.

제2분야로 중학교(Hauptschul)는 5년 과정이며 그 후 직업학교나 직업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1년을 더 공부하여 중간자격증(Mittlere Reife)라는 졸업장을 갖고 전문고등학교나 김나지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¹⁷⁾

실업학교(Realschul)는 6년 과정이며 10학년에 중간자격증이라는 졸업장을 얻는데 직업학교나 다른 전문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성적이 좋으면 김나지움으로 전학할 수 있다. 종합학교(Gesamtschule)는 1980년대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장려하고 상급진학에 기회균등을 주자는 이념 하에 세 가지 타입의 학교를 통합하였다. 노르트-베스트팔렌 주에는 이 타입의 학교가 많으나 바이에른주에는 아주 적다. 김나지움(Gymnasium)은 12학년이나 13학년에 졸업하는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Abitur라는 졸업장을 받는다. 몇 년 전부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12학년에 졸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나지움은 다양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 고전 언어, 현대 언어, 음악, 스포츠, 수학과 자연과학, 경제 등 그 중심 분야에 더 많은 수업시간을 할애한다. 직업학교에는 7종류가 있다. 직업학교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III-4>와 같다.

17) 1960년대는 이 학교타입이 양적으로 제일 많았으나 1970년대 교육팽창시대를 거치면서 폐자에 속하는 학교타입이 되었고 특히 대도시에선 문제 학생, 이민자자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여러 주정부는, 가령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라인란트-팔츠, 튀링엔 주에는 이 학교타입을 폐지하였고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부르크, 쉘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도 없애자는 토론이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실업학교와 합병된 경우도 있으며 현재 베를린에서도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표 III-4> 직업학교 종류

종류	목표	공부 방향, 직업
직업학교	학교와 사업장의 이중제도에서 공부	의사보조원
직업전문학교	직업의 자격증을 위해 학교에서만 공부	아동양육
요식업		
경제학교	졸업하면 전문고등학교에 진학	경제, 행정분야
전문학교	직업 계속 교육, 전직, 재교육	마이스터, 기술자
전문아카데미	직업교육을 더 심도있게 한다.	안경, 맥주기술자
전문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문대학에 갈 수 있다.	전문이론과 실습 (행정법원요원, 기술, 경제, 사회, 장식)
직업고등학교 (직업, 경제)	졸업하면 대학에 전문학과에 갈 수 있다.	전문이론, 사회, 농업

기술학교는 이중제도(duale System)로 학교와 사업장 두 배움 장소에서 학습을 하며 공부기간은 3년이다. 사업장에 국가규정의 실행여부는 산업회의소나 상공회의소에서 감독하며 수업의 내용은 경영주단체와 노조가 공동으로 협상으로 규정한다. 전문학교는 1~4년간 수업을 하는데 입학조건으로 장시간의 직업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해 더 깊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직업평생교육의 성격을 갖는데 승진할 때 도움이 되는 증명서이다. 바이에른 주에는 2년~4년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아카데미가 있는데 성적이 좋으면 대학에 갈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주마다 학교형태도 다르고 그에 따라는 졸업장도 다양하여 학생들, 부모, 교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힘들고 졸업장을 인정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일원화하기 위해 2004년 독일전체에 적용되는 수업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응용은 주정부가 담당한다.¹⁸⁾

18) 유럽의 다른 국가 및 미국과 달리 독일은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적다. 종교단체나 다른 교육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사립학교(가령 몬테소리, 발도르프 학교), 통역-, 언어학교, 배우학교 등인데 주정부의 인정을 받아 졸업장을 줄 수 있다. 노르트라인 비스트팔렌주

제3분야인 대학제도를 살펴보면, 1968년부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병존하며 일반대학은 연구와 이론적인 수업에 중점을 두고 전문대학은 실질적인 응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대체로 짧은 편이다. 종합대학(Gesamthochschule)은 여러 형태의 대학과 학업과정을 통합한다는 목적으로 1970년부터 창립되었다. Hagen의 장거리 종합대학은 직접 강의를 듣지 않고 먼 곳 다른 장소에서도 통신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는 독일에 유일한 대학이다. 교육대학은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만 있으며 초등, 중고등, 특수학교, 실업학교 교사들을 양성한다. 다른 주의 교육대학은 일반대학에 통합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직업아카데미는 고용주와 3년간 계약을 맺어 반반씩 학교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한다. 졸업장은 BA이나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장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대학입시에 학생지원이 많은 과 가령 의학, 생물고학, 법학, 경영학 등은 연방차원에서 졸업성적에 따라 Numerus clausus라는 선발과정을 거쳐 자리를 분배한다. 졸업장은 디플롬(diplom), 석사, 박사, BA, MA 등이 있는데 주정부에서 각 졸업장에 따라 정규학업기간, 수업시간, 선택과목, 성적증명서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대학에는 미국, 영국 불란서처럼 엘리트대학이 없고 서열관계가 없었는데 2005년 연방정부가 ‘우수한 이니셔티브(exzellenzinitiative)’라는 정책을 만들어 성과가 좋은 대학에 4년간 특별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에서 최고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수업료는 2006년부터 대부분 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뮌헨대학에선 한 학기에 수업료 500유로와 학생회비 85유로를 지불해야하고 박사과정 6학기동안은 무료다. 베를린과 쉘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선 수업료가 없다. 공립대학은 주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건물은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1999년부터 유럽의 대학제도를 일원화하려는 Bologna협약에 의해 modul

에선 사립학교 자체가 졸업시험을 볼 수 없고 학교 밖에서 졸업시험을 보아야한다. 사립학교는 주정부에서 경제지원을 받고 있으며 종교단체학교는 예산의 90%이상을 주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2006년에 12,3 Mio 학생들 중 약 7%가 4,637개의 사립학교를 다닌다.

과 creditpoint제도에 따라 수업을 하고 있으며 BA 또는 MA로 졸업한다. 뮌헨대학경우는 4년간 수업할 교재를 3년으로 압축하고 BA로 졸업하는데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4분야는 성인교육 및 학교 밖의 직업교육을 포함한다. 1970년부터 성인교육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국민대학(Volkshochschule)이 주요 평생교육단체이며 그 외에 교회, 노조, 당, 상공의회, 기업인연합회, 사립단체등도 그들의 이념과 필요에 따라 각각 성인교육단체를 가지고 있다.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등 교육 모두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의 경우 스웨덴(24%), 중등은 한국(33%), 고등교육은 미국(5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4)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단계 국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국	4,490	22	6,761	33	7,068	34
일본	6,551	23	7,615	26	12,193	42
미국	8,805	22	9,938	25	22,476	57
스웨덴	7,469	24	8,039	25	16,218	51
독일	4,948	17	7,576	25	12,255	41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구매력지수(PPP)는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환율대응 지표로 UN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율 하에 시행되고 있음. PPP는 흔히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기준국 화폐 1단위(US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로 정의됨

초등·중등·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를 나타낸 것이 <표 III-6>이다. 미국은 전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 (2004)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4,490	6,761	7,068
일본	6,551	7,615	12,193
미국	8,805	9,938	22,476
스웨덴	7,469	8,039	16,218
독일	4,948	7,576	12,25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5 - 2007

주: 전일제 학생기준 교육단계별 교육비(GDP에 대한 미국 달러의 PPP환산액). 국·공립학교만 포함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종합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초급대학이상의 교육을 의미함

3. GDP 대 공교육비

교육단계별로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GDP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전체교육단계의 경우 미국(7.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한국(7.2%)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부담 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정부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표 III-8>).

4. 고등교육 이수율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인구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표 III-8>) 25세~6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미국(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25세~3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는 한국(9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세~44세의 경우 스웨덴(90%)이, 55세~64세는 미국(8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7> GDP 비교

(단위: %)

구 분	GDP	1인당 GDP				연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		
		05 (10억달러)	2005 (US달러)	연간 성장율		최고치 (75-05) 05(US 달러)	90-05	04-05
				75-05	90-05			
한국	787.6	16,309	6.0	4.5	22,029	4.3	2.7	
일본	4,534.0	35,484	2.2	0.8	31,267	2.5	1.7	
미국	12,416.5	41,890	2.0	2.1	41,890	2.6	3.4	
스웨덴	357.7	39,637	1.6	2.1	32,525	1.6	0.5	
독일	2,794.9	33,890	2.0	1.4	29,461	1.0	3.0	

출처: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표 III-8>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4)

(단위: %)

단계 국가	전체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한국	4.4	2.8	7.2	3.5	0.9	4.4	0.5	1.8	2.3
일본	3.5	1.2	4.8	2.7	0.3	2.9	0.5	0.8	1.3
미국	5.1	2.3	7.4	3.7	0.4	4.1	1.0	1.9	2.9
스웨덴	6.5	0.2	6.7	4.5	m	4.5	1.6	0.2	1.8
독일	4.3	0.9	5.2	2.8	0.6	3.4	1.0	0.1	1.1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1)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 금액은 학교교육(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해 민간(학부모, 재단)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사용료(졸업앨범비, 급식비, 대학기숙사비 등) 등을 포함함.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 금액은 학교교육(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 금액을 의미하며, 중앙교육부 자체 지출금액, 중앙정부의 시도 교육을 위한 교부금, 기타 이전금, 지자체로부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립 초·중·고·대학교들에 대한 지원금(대학의 경우 정부의 대학에 대한 R&D 투자금액 포함) 등을 포함함

2)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표 III-9> 연령대별 후기중등교육단계(고등학교) 이수자 인구 비율 (2005)

(단위: %)

구 분	연령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국	76	97	88	60	35
일본	m	m	m	m	m
미국	88	87	88	89	86
스웨덴	84	91	90	82	72
독일	83	84	85	84	79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이를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표 III-9>) A유형의 경우 한국은 공학·건축학(27.1%) 비율이 가장 높고 일본·미국·독일은 사회과학·경영·법학이 각각 38.0%, 33.5%, 31.3%로 가장 높으며 스웨덴은 건강·복지가 25.7%로 가장 높다. B유형은 사회과학·경영·법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웨덴과 건강·복지 분야의 비율이 높은 독일을 제외한 국가에서 A유형과 동일하다.

<표 III-10> 학문분야별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2005)

(단위: %)

구분	고등 교육 유형	건강 복지	생명과학 물리과학 농업	수학 컴퓨터 과학	인문학 교육학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	공학 건축학	미상 구분 불가
한국	A ¹⁾	8.4	7.6	5.0	25.9	26.1	27.1	n
	B ²⁾	12.4	1.1	3.7	26.4	24.6	31.9	n
일본	A	6.5	7.9	x(3)	23.5	38.0	20.1	4.0
	B	22.0	0.6	x(3)	20.7	33.5	15.8	7.4
미국	A	9.3	6.1	4.3	28.6	45.3	6.3	n
	B	31.3	2.2	9.0	3.4	40.8	13.2	n
스웨덴	A	25.7	4.7	3.8	23.5	24.4	17.9	n
	B	11.5	4.4	9.2	15.3	42.1	17.4	n
독일	A	13.1	9.8	7.6	22.3	31.3	15.9	n
	B	49.5	2.9	0.5	7.8	20.7	17.2	1.3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1) A유형 고등교육기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이 포함함.

2) B유형 고등교육기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

3)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4) x(3)의 의미는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또한, 2005년 현재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과 제3차 교육기관 졸업율은 <표 III-10>,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2005)

(단위: %)

구 분	B유형 고등교육기관(연령별)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연령별)				
	25~64	25~34	35~44	45~54	55~64	25~64	25~34	35~44	45~54	55~64
한국	9	19	8	3	1	23	32	27	15	9
일본	18	25	21	15	8	22	28	25	23	13
미국	9	9	10	10	8	30	30	30	30	28
스웨덴	9	9	8	11	8	21	28	20	18	17
독일	10	7	11	10	10	15	15	16	15	13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표 III-12> 3차교육기관 졸업(이수)율(2005)

(단위: %)

단계 국가	B 유형	A 유형				상위 연구 프로그램 박사학위 이상
		모든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길이에 따른 졸업률 (in %)			
			3 ~ 5년 이하	5 ~ 6년	6년 이상	
한국	m	m	m	m	m	1.1
일본	27.0	36.1	86	14	a	0.9
미국	9.9	34.2	54	40	6	1.3
스웨덴	4.5	37.7	97	3	n	2.0
독일	10.7	19.9	39	61	n	2.4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5.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단계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취학전(유치원) 단계부터 초·중·고등학교 단계 모두에서 1인당 학생 수가 비교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유치원은 독일(13.9명), 초등은 미국(14.9명), 중학교는 일본과 미국(15.1명), 고등학교는 일본(1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II-13>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5)

(단위: 명)

구 분	유치원	초등교육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한국	20.2	28.0	20.8	16.0
일본	17.4	19.4	15.1	13.0
미국	14.5	14.9	15.1	16.0
스웨덴	m	m	m	m
독일	13.9	18.8	15.5	14.0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1) 고등학교 단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 포함됨.

2) 대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공립학교만 해당됨. 교원은 교과 담당 교원만을 대상으로 함(교장, 교감 등 관리직 교원 제외)

6. 한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32.6)이 가장 많고 독일(22.0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역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35.7명),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24.3명)임을 알 수 있다. 국공립 및 사립과 같이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는 각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초·중학교 모두 학급 당 학생 수가 많고,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의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초등학교는 국공립이, 중학교는 사립의 경우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독일은 미국과 반대로 초등의 경우 사립이, 중학교는 국공립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4> 교육단계별, 기관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 (2005)

(단위: %)

단계 국가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한국	32.6	32.3	32.6	36.0	34.8	35.7
일본	28.3	33.7	28.4	33.4	35.7	33.5
미국	23.6	19.4	23.1	24.9	19.3	24.3
스웨덴	m	m	m	m	m	m
독일	22.0	23.1	22.0	24.7	25.8	24.7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7. 학교급별 진학 · 취학을 추이

A유형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한국 · 일본 · 스웨덴 · 독일 모두 지난 10년 동안 진학률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유형은 한국 (21%)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일본과 독일은 각각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5> 입학률 추이(1995~2005)

(단위: %)

구 분	A유형 고등교육기관 ¹⁾							B유형 고등교육기관 ²⁾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41	45	46	46	47	49	51	27	51	52	51	47	47	48
일본	30	35	37	39	40	40	41	31	29	29	29	29	30	30
미국	m	43	42	64	63	63	64	m	14	13	x(4)	x(5)	x(6)	x(7)
스웨덴	57	67	69	75	80	79	76	m	7	6	6	7	8	7
독일	26	30	32	35	36	37	36	15	15	15	16	16	15	14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1) A유형 고등교육기관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이 포함함.

2) B유형 고등교육기관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함. OECD 교육지표에서 사용하는 취학률은 순 취학률(net enrollment rate)로서 전체교육단계에 재학 중인 특정 연령계층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계층의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준 비율임

취학률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15~19세 인구대비 취학률의 경우 독일(1%), 스웨덴(5%), 미국(6%)과 비교하면 한국(11%)은 가장 큰 폭으로 취학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29세의 경우에는 스웨덴(14%)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한국(12%)으로 나타났고, 독일과 미국은 각각 8%, 3% 정도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취학률 추이(1995~2005)

(단위: %)

구 분	15~19세 인구대비 15~19세 학생의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29세 학생의 취학률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75	79	79	80	81	84	86	15	24	25	27	27	28	27
일본	m	m	m	m	m	m	m	m	m	m	m	m	m	m
미국	73	74	76	75	75	76	79	20	21	22	23	22	23	23
스웨덴	82	86	86	86	87	87	87	22	33	33	34	34	36	36
독일	88	86	90	89	89	89	89	20	24	24	26	27	28	28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주: OECD 교육지표에서 사용하는 취학률은 순 취학률(net enrollment rate)로서 전체교육단계에 재학 중인 특정 연령계층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계층의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준 비율임

전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연령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세 이하 인구 대비 취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7> 연령별 취학률

(단위: %)

구 분	연 령					
	3~4세 인구대비	5~14세 인구대비	15~19세 인구대비	20~29세 인구대비	30~39세 인구대비	40세 이상 인구대비
	4세 이하 학생취학률	5~14세 학생취학률	15~19세 학생취학률	20~29세 학생취학률	30~39세 학생취학률	40세 이상 학생취학률
한국	22.5	94.1	85.6	27.3	2.0	0.5
일본	82.0	100.7	m	m	m	m
미국	50.0	97.7	78.6	23.1	5.2	1.4
스웨덴	86.5	99.5	87.3	36.4	13.3	3.0
독일	78.8	98.3	88.8	28.2	2.5	0.1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 - OECD Indicators

주: 전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연령별 취학률을 의미하며 2005년에 한함

8. 교원 중 여성비율

전체 교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독일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미국이 교원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교원 중 여성비율 2006

(단위 : %)

	학교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한국	99	75	51
일본	98	65	—
미국	91	89	62
스웨덴	96	81	59
독일	98	84	57

출처: UNESCO 「<http://www.unesco.org>」 2008. 8

9. 학업성취도 평가

※ PISA 개관

1.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목적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2. PISA의 특징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
3. PISA 평가 대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학생의 대부분(약 98%)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함.
4. PISA 평가 방법
평가 대상 학생들을 무선 표집하며, 2시간의 지필 검사로 평가가 시행됨.
5. PISA 2006 참가국
총 57개국(OECD 국가 30개국 포함)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4개교의 만 15세 학생 약 5,000명이 참여함.

【 PISA 2006 참가국 】

평가주기	참 가 국	계
3주기 (2006시행)	OECD 국가	30개 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비OECD 국가	27개 국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대만,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홍콩-중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카오-중국, 몬테네그로,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이탤릭체로 표시된 국가는 PISA 2006에 새로 참가

6. 주기별 PISA 연구

3년 주기로 연구가 시행되며, PISA 2000은 2000년에, PISA 2003은 2003년에, PISA 2006은 2006년에 본 검사가 실시됨. 주기별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주영역이 달라짐.

【 PISA 주기 및 영역 】

영역	1주기(1998-2000)	2주기(2001-2003)	3주기(2004-2006)
주 영역	읽기	수학	과학
보조 영역	수학, 과학	읽기, 과학, 문제 해결력	읽기, 수학

2006년 조사에서 읽기는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은 1위, 스웨덴 9위, 독일 11위, 일본 13위, 미국 57위로 나타났다.

<표 III-19> 읽기 성취 수준별 비율 - 5수준 비율 기준(2006)

(단위: %)

구분	순위	수준											
		1수준 미만 (334.75점 미만)		1수준 (334.75~407.47점)		2수준 (407.47~480.18점)		3수준 (480.18~552.89점)		4수준 (552.89~625.61점)		5수준 (625.61점 초과)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한국	1	1.4	(0.3)	4.3	(0.7)	12.5	(0.8)	27.2	(1.1)	32.7	(1.3)	21.7	(1.4)
일본	13	6.7	(0.7)	11.7	(1.0)	22.0	(0.9)	28.7	(1.0)	21.5	(0.9)	9.4	(0.7)
미국	57	m	m	m	m	m	m	m	m	m	m	m	m
스웨덴	9	5.0	(0.7)	10.3	(0.9)	21.9	(0.9)	28.9	(1.1)	23.3	(1.3)	10.6	(0.8)
독일	11	8.3	(0.9)	11.8	(0.8)	20.3	(1.0)	27.3	(0.9)	22.5	(1.1)	9.9	(0.7)
OECD 국가별 평균		7.4	(0.1)	12.7	(0.1)	22.7	(0.2)	27.8	(0.2)	20.7	(0.2)	8.6	(0.1)

출처: OECD PISA 2006

■ 읽기 소양 성취 수준

– PISA에서는 읽기 수준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표 III-20> PISA 2006 읽기 영역 성취 수준의 의미

수준	의미
수준 5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어려운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고, 읽기 자료의 정보 중 어느 것이 과제에 적절한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통상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개념을 다룰 수 있다.
수준 4	정보를 끼워 맞추어 낼 수 있으며(embedded), 언어의 미묘한 차이(nuance)로부터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준 3	여러 조각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며,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 사이를 연결지을 수 있고, 친숙하고 일상적인 지식을 연결하면서 읽기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수준 2	직접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의 추론을 할 수 있고 읽기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외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수준 1	최소의 복합적인 읽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편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며, 텍스트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읽기 자료와 일상적인 지식을 단순하게 결부시킬 수 있다.

수학은 한국이 2위, 일본 11위, 독일 12위, 스웨덴 18위, 미국은 33위이다.

<표 III-21> 수학 성취 수준별 비율-5수준 비율 기준(2006)

(단위: %)

구분	순 위	수준													
		1수준 미만 (357.77점 미만)		1수준 (357.77~420.07점)		2수준 (420.07~482.38점)		3수준 (482.38~544.68점)		4수준 (544.68~606.99점)		5수준 (606.99~669.30점)		6수준 (669.30점 초과)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백분율 (표준오차)	
한국	2	2.3	0.5	6.5	0.7	15.2	0.7	23.5	1.1	25.5	1.0	18.0	0.8	9.1	1.3
일본	11	3.9	0.6	9.1	0.7	18.9	0.9	26.1	1.0	23.7	1.0	13.5	0.8	4.8	0.5
미국	33	9.9	1.2	18.2	0.9	26.1	1.2	23.1	1.1	15.1	1.0	6.4	0.7	1.3	0.2
스웨덴	18	5.4	0.6	12.9	0.8	23.0	0.8	26.0	1.0	20.1	0.9	9.7	0.6	2.9	0.4
독일	12	7.3	1.0	12.5	0.8	21.2	1.1	24.0	1.1	19.4	0.9	11.0	0.8	4.5	0.5
OECD 국가평균		7.7	0.1	13.6	0.2	21.9	0.2	24.3	0.2	19.1	0.2	10.0	0.1	3.3	0.1

출처: OECD(PISA 2006)

■ 수학적 소양 성취 수준

- PISA에서는 수학 수준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표 III-22> PISA 2006 수학 영역 성취 수준의 의미

수 준	의 미
수준 6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조사와 모형에 근거해서 정보를 개념화하고 일반화하고 이용할 수 있다.
수준 5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제한 조건을 확인하고 가정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모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적절한 문제해결전략을 선택하고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수준 4	제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가설을 설정해야 하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한 모형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수준 3	분명하게 기술된 절차와 연속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수준 2	직접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
수준 1	관련된 정보가 모두 제시되고 질문이 분명하게 정의된 익숙한 맥락에 관한 문제들에 답할 수 있다.

과학은 일본 5위, 독일 10위, 미국 14위, 한국 18위, 스웨덴 20위순이다.

<표 III-23> 과학 성취 수준별 비율-5수준 비율 기준(2006)

(단위: %)

구분	순 위	수 준													
		1수준 미만 (334.94점 미만)		1수준 (334.94~409.54점)		2수준 (409.54~484.14점)		3수준 (484.14~558.73점)		4수준 (558.73~633.33점)		5수준 (633.33~707.93점)		6수준 (707.93점 초과)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한국	18	2.5	0.5	8.7	0.8	21.2	1.0	31.8	1.2	25.9	0.9	9.2	0.8	1.1	0.3
일본	5	3.2	0.4	8.9	0.7	18.5	0.9	27.5	0.9	27.0	1.1	12.4	0.6	2.6	0.3
미국	14	7.6	0.9	16.8	0.9	24.2	0.9	24.0	0.8	18.3	1.0	7.5	0.6	1.5	0.2
스웨덴	20	3.8	0.4	12.6	0.6	25.2	0.9	29.5	0.9	21.1	0.9	6.8	0.5	1.1	0.2
독일	10	4.1	0.7	11.3	1.0	21.4	1.1	27.9	1.1	23.6	0.9	10.0	0.6	1.8	0.2
OECD 국가평균		5.2	0.1	14.1	0.1	24.0	0.2	27.4	0.2	20.3	0.2	7.7	0.1	1.3	0.0

출처: OECD(PISA 2006)

■ 과학적 소양 성취 수준

- PISA에서는 과학 수준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표 III-24> PISA 2006 과학 영역 성취 수준의 의미

수 준	의 미
수준 6	여러 가지 복잡한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과학적 지식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과학적 사고와 추론을 하고 있음을 보이며, 친숙하지 않은 과학적, 기술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기꺼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사용한다.
수준 5	복잡한 일상생활 상황에서 과학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고, 과학적 지식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이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증거에 기초한 설명과 비판적 분석에 근거한 논쟁을 할 수 있다.
수준 4	주어진 상황에서 분명하게 기술된 과학적 이슈를 찾아낼 수 있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사실과 지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간단한 모델이나 탐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을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수준 3	주어진 상황에서 분명하게 기술된 과학적 이슈를 찾아낼 수 있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사실과 지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간단한 모델이나 탐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을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수준 2	친숙한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거나 간단한 조사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수준 1	적은 수의 친숙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수학·과학·읽기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데, 2006년 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평가점수는 아래 <표 III-24>와 같다.

<표 III-25> 국제학력평가점수(2006)

	수학점수	과학점수	읽기점수
한국	547	522	556
일본	523	531	498
미국	474	489	-
스웨덴	504	516	495
독일	502	503	507

출처: OECD(OECD Factbook 2007)

주: OECD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결과로서 각국의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 및 통합교과적인 문제해결능력 등을 측정한 것임. 2000년에 첫번째 라운드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10. 교육경쟁력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이 5위로 가장 높고, 미국(13위), 일본(19위), 독일(24위), 한국(29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6> IMD 교육부문 국가별 순위(2007)

구분	순위
한국	29
일본	19
미국	13
스웨덴	5
독일	24

출처: 2007년 IMD 교육부문 국가경쟁력 결과 보고

11. 평균 학습시간(초중등)

1년 동안의 평균 학습시간을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7~8세의 경우 스웨덴이 741시간으로 가장 많고, 9~11세와 12~14세는 독일이 각각 777시간, 872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5세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학습시간을 보인 반면 한국은 1,020시간으로 학습시간이 큰 폭으로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7> 1년간 평균 학습시간

(단위:시간/학년)

구 분	인구의 90%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연령	7~8세	9~11세	12~14세	15세
한국	6~17	612	703	867	1,020
일본	4~17	707	774	869	m
미국	6~16	m	m	m	m
스웨덴	5~18	741	741	741	741
독일	6~17	627	777	872	897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07(OECD Indicators)

교육기관에서 계획된 교육 시간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5세 이전에는 일본·독일·스웨덴 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5세에 접어들면서 독일·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200시간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8> 교육 시간수 (2005)

	7~8세	9~11세	12~14세	15세
한국	612	703	867	1,020
일본	707	774	869	m
미국	m	m	m	m
스웨덴	741	741	741	741
독일	627	777	872	897

출처 : OECD

12. 방과후활동(교육)/문화학교

1) 한국

방과후학교의 운영 방침은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 주체,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지도 강사, 교육 장소 등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개방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도록 편성하여야 한다(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04). 그리고 실제적인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능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방과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초·중·고 각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는 운영 유형이나 운영 체제 면에서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I-28>과 같다.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는 크게 학교가 주도가 되고 학교 교사가 연계되어 실시되는 학교주도형 모형과, 학교 밖의 기관이 학교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학교 외 주도형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되 교사들의 업무를 증감시키지 않음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사교육 기관이 비영리 또는 영리 법인의 형태로 위탁경영을 맡을 경우 방과후학교를 학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방과후학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강사의 경우 현직교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자격증 소지자), 학원 강사, 예비교사(교·사대생, 발령대기자), 지역사회 인사,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국내체류 외국유학생(외국어프로그램), 공인된 특기자, 원어민 강사 등으로 개방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며, 교육청별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

교에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 가용 인적 자원이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가 될 수 있다.

<표 III-29>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구 분		운영 내용
운영 체제	운영 유형	· 학교장 중심 운영 · 학부모회 위탁 운영 · 비영리기관 운영
	지도 강사	· 현직교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유자격자) · 학원 강사, 예비교사(교·사대생, 발령대기자) · 지역사회 인사,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 국내체류 외국유학생, 공인 특기자, 원어민 강사 등
	교육 대상	· 자교학생 · 타교학생 · 학업중단청소년 · 성인 등
	교육비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생 교육비 지원 ·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등
	운영 시간	· 수요자와 학부모에 따른 다양한 시간 운영 · 방학 및 토요 휴업일에도 방과후학교 운영 가능 등
	교육 장소	· 학교(1교 1특성화된 시설 권장) · 지역 사회의 공공시설 · 지역사회 민간시설 등
	프로그램 운영	· 초등 보육 프로그램 ·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 교과 프로그램(초등 제외) · 평생교육 프로그램(주민 대상)

둘째, 방과후학교의 교육대상은 해당학교의 희망 학생 뿐 아니라 타학교의 학생도 가능하고, 점차 학업중단 청소년, 나아가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성인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적정 강사료를 책정하고 최소 필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10% 이내에서 지출 가능하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과후학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넷째, 방과후학교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방학, 토요휴업일과 연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 시설로는 학교, 지역 사회의 공공시설, 지역사회의 민간시설

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1교 1특성화된 시설을 권장한다.

여섯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의 경우, 교과보다는 인성·창의성 함양을 위한 특기·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육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중등의 경우 진로, 특기·적성, 예·체능, 문화 활동, 교과(수준별 보충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맞는 강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2) 일본

(1) 일본 학교에서의 部활동

일본에서는 한국의 특별활동을 부(部)활동이나 클럽활동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특별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데 비하여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특별부서 활동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많은 시간을 부활동이나 클럽활동을 하면서 보내며 휴일에도 부활동이나 클럽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들이 많다. 부활동과 클럽활동은 공통의 취미와 흥미를 가진 학생들의 모임이나 단체라는 의미에서 보면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부활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 대한 공적인 활동이며 학교나 학생회 등의 조직의 일부에 속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부활동을 다시 부, 동호회, 애호회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분류를 하는 학교에서는 새로 조직하는 부는 애호회나 동호회로 분류되며 일정한 활동실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비로소 부로 승격된다. 부로 승격되고 나면 운영비용을 학생회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활동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운동부와 문화부

로 분류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중학교와 고교에서 부에 소속된 학생의 비율은 90.8%인데 그 중에서 운동부가 73.6%이고 문화부가 17.2%로 압도적으로 운동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화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클럽활동은 기본적으로 같은 취미나 흥미를 가진 학생들의 동호회로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배워가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는 부활동과 유사하다. 그러나 부활동이 공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비해 클럽활동은 그러한 공익성이 요구되지 않고 클럽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학습이나 상호협조에 중점을 둔다.

(2) 부(部)활동의 종류

부활동에는 매우 다양한 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운동계열과 문화계열이 있다. 운동계열 부활동은 특정 스포츠의 기량을 높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조직은 아니지만 시합이나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중요시한다.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간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신적인 수련과 예의범절에 커다란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부 및 고학년 선배에 대한 상하관계를 중시하는데 상급생 부원에게는 선배로서 예우를 한다. 간부에 대해서는 절대복종을 강요거나 거부와 저항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문화계열 부활동은 시합을 중시하는 운동계열 부활동에 비해 다양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대회나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술이나 예술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도와가며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상하관계는 운동부와 같이 엄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계열 부활동의 종류는 문예부, 과학부, 사회부, 외국어부, 신문부, 웅변부, 여행부, 영화부, 연극부, 꽃꽂이부, 장기부 등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문화계열 부활동중에 학교전체의 행사에 관한 활동을 하는 방송부나 취주악부는 총무부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운동계열의 부활동으

로 분류되기도 하는 응원단의 경우에도 학교행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므로 총무부로 분류하기도 한다.

(3) 부(部)활동의 문제와 새로운 변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부활동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삼입되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중학교는 2002년에 고등학교는 2003년에 필수사항이 아닌 과외활동의 일부분으로 전환되었다. 필수였던 부활동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부활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활동 이탈현상을 학생들의 특성으로 분석한 한 논문¹⁹⁾에 의하면 집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장래에 대한 포부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부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학교 외부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본인의 장래에 대한 포부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학교 외부의 다른 클럽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았다. 그러므로 부활동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꿈에 따라서 강제적인 부활동은 사라졌지만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활동에 참여하지 않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외부의 어떠한 클럽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3) 미국²⁰⁾

방과후활동의 학생보호 방식에는 세범주가 있는데 친척의 보호와

19) 二島央 (2007) 「福岡県の高校部活動の制度的変化と「活動加入状況」に関する教育社会学的考察」『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紀要』46 pp99-120

20) 미국의 방과후 활동에 관한 자료는 2005년 미국통계청(NCES)에서 실시한 미국가정교육조사프로그램(2005)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정리하였다. 이 조사는 유치원에서 8학년 학생 3천6백만명을 대표하는 11,684명을 표집해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유치원에서 8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방과후 활동을 학생보호 방식(care arrangement), 교육활동의 종류 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친척의 보호 없이 학생의 가정·다른 가정·학교·센터 중심 프로그램·성인의 보호, 아동혼자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2005년 유치원에서 8학년 학생들의 40%는 일주일에 최소한 1회에 걸쳐 부모외의 보호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과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40%의 학생들 가운데 학교나 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방식이 6-15%를 이루고 있었다.
- 학생의 어머니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친척의 보호 외 범주에 해당하는 방과후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57%인 반면,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2%, 직장을 구하는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는 32%,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 20%로 나타났다.
- 유치원생에서 8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친척이 보호하는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아동을 보호하는 친척은 조부모가 가장 높았으며(58%), 삼촌과 숙모가 18%, 형제나 자매의 보호가 23%, 그리고 기타 친척이 7%의 비율을 보였다.
- 흑인 유치원생에서 8학년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의 백인학생보다 방과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학생은 일주일에 9.8시간 참여한 반면, 백인은 6.3시간 참여하였다. 그리고 히스패닉 학생들이 주당 8시간, 아시아 학생들이 주당 7.6시간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 저소득층에 학생들이 일주일에 10.7시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반면,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주당 8.5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 방과후 활동의 특징에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성인이나 학생들의 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 그리고 학교 및 센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방과후 활동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성인 1인당 학생의 비율이 친척이 보호하는 경우에는 1.8명인 반면, 친척이 아닌 사람에 의해 보호받는 학생비는 2.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친척이 아닌 사람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안에 속하는 학교 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활동의 경우에는 교사 1인당 학생이 8.6명으로 나타났다.
- 친척의 보호를 통한 방과후 활동에는 친척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과후 활동보다 더 교육관련 활동(숙제, 읽기, 쓰기 등)에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친척의 보호가 81%,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방과후 활동은 70%, 자율적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76%가 교육관련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및 센터의 방과후 활동은 주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61%), 교회나 기타 종교기관이 9%, 사립학교 10%, 지역사회센터 8%, 자체 건물에서 15%, 기타 장소에서 5%가 이루어졌다.
- 학부모들에게 방과후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방과후 활동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방과후 활동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하였다.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키면서 보호하는 학생들을 잘 보호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8%, 비용(44%), 학습활동(61%), 다른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55%), 보호자의 활용가능성(81%), 집단의 학생수(37%)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괄호안과 같다.

<표 III-30> 학생보호방식, 학생 및 가정배경에 따른 방과후 활동

(천명, %)

		학생수 (천명)	참여 없음	부모와의 보호자의 보호	부모와의 보호자의 보호 (복수응답)				아동 혼자 있는 경우
					친척과 함께 참여	친척이 아닌 사람과 참여	학교·센터의 활동에 참여	관리하에 방과후 활동	
학년	유치원-2학년	11,437	57	43	16	8	21	5	2
	3학년-5학년	11,690	55	45	17	6	25	8	7
	6학년-8학년	12,183	67	33	12	3	14	9	27
성별	남	18,418	60	40	15	6	21	7	13
	여	16,894	60	40	15	5	19	8	11
인종	백인	20,229	65	35	13	6	15	7	11
	흑인	5,457	45	55	22	5	32	9	16
	히스패닉	6,580	59	41	14	6	23	6	11
	아시아 · 태평양연안섬주민	958	60	40	14	5	20	9	11
	기타인종	2,087	54	46	17	6	23	11	14
가족형태	두부모 가정	25,229	65	35	11	5	18	7	11
	한부모 가정	8,854	47	53	24	8	26	8	15
	부모 없음	1,228	51	49	25	3	26	8	15
부모가 가정에서 구사하는 언어	두부모 모두 영어구사	31,216	59	41	15	6	20	8	12
	한부모만 영어구사	851	60	40	17	2	20	8	16
	영어를 사용하지 않음	3,244	67	33	11	3	20	4	12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3,482	68	32	11	3	19	3	14
	고졸	10,062	60	40	17	4	19	6	13
	직업/기술학교	10,146	58	42	18	6	20	8	11
	학사	6,459	63	37	10	6	19	9	10
	대학원이상	3,740	55	45	12	8	24	11	12
어머니의 학교 등록상태	등록	3,918	50	50	20	7	24	9	13
	미등록	29,972	62	38	14	5	19	7	12
어머니의 고용상태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14,744	43	57	24	9	27	10	16
	주당 35시간 이하 근무	7,853	68	32	11	5	15	6	11
	구직중	1,798	68	32	12	3	23	4	13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9,495	80	20	4	1	12	5	7
어머니의 근무형태	정규 근무	20,251	51	49	20	8	23	9	14
	교대 근무	2,346	59	41	18	6	19	8	12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함	5,421	54	46	18	6	25	8	12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	29,890	61	39	14	5	19	7	12
가계의 수입정도	\$25,000 이하	8,827	58	42	16	5	23	6	13
	\$25,000-\$50,000	8,895	59	41	18	5	19	6	12
	\$50,000-\$75,000	7,258	60	40	16	5	18	9	11
	\$75,000-\$100,000	4,405	60	40	13	7	20	7	12
	\$100,000 이상	5,928	64	36	8	6	19	9	11
	빈곤선이상	28,142	60	40	15	6	20	8	12
빈곤의 정도	빈곤선미만	7,169	60	40	15	5	22	6	13
	총계	35,311	60	40	15	6	20	7	12

출처: http://nces.ed.gov/pubs2006/afterschool/tables/table_1.asp?referrer=report

- 학생들은 방과후활동 이외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운동경기를 들었다(73%). 그 밖에 종교관련 활동에 46%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예술활동에 42%,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2%, 자원봉사에 19%, 학업관련 활동에 16%, 클럽활동(독서클럽, 교지 제작클럽 등)에 13%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런 활동 가운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활동은 클럽활동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예술활동이 27%, 스포츠 32%, 학업관련 활동 68%, 자원봉사 33%, 종교활동이 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31> 방과후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 비율

(단위 : 천명, %)

활동	방과후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의 지원을 받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예술 (음악, 무용, 미술)	14,282	42	1,651	27
운동	14,282	73	3,306	32
클럽활동 (토론, 북클럽)	14,282	13	1,629	87
학업관련활동 (교습, 수학)	14,282	16	1,565	68
자원봉사	14,282	19	909	33
종교활동	14,282	46	352	5

출처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cs. After-school Programs and Activities Suvey of the 2005 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s Program(ASPA-NHES: 2005).

주: 유치원부터 15살을 이하의 8학년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홈스쿨을 하는 학생은 제외되었다. 학생들은 복수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합이 100%보다 많다.

4) 스웨덴

스웨덴 학교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안에 또는 학교 인근 방과후 센터에서 방과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부모들의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2002년의 경우 6세~9세까지 73%의 학생들이 방과후 활

동에 참여하고 10~12세는 9%에 불과하였다.²¹⁾

13세 이후의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귀가하거나 다양한 방과후 클럽활동에 참여한다. 스웨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은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다루는 학원 형태의 사교육 기관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 대신 다양한 클럽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매 학년 초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클럽이나 단체의 전화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 스스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학생들이 가입하는 클럽들은 주로 스포츠 클럽, 음악이나 예능 클럽, 봉사 클럽이나 사회단체 등 다양하다.

2007년에 스웨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 조사에서, 스웨덴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여가 시간이 많지도 적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2007년 현재로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주로 운동 클럽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클럽이나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60% 정도였던 2002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16세부터 19세까지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 이상 연령대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여가 시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스웨덴 태생의 청소년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보다 여가에 만족하고 있었다.²²⁾ 이처럼 스웨덴의 청소년들 특히 기초학교 학생들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다양한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독일

방과후 활동은 단순한 여가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의 연장된 비공식 배움이라는 교육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UNESCO에서는

21) 이와 같은 방과후 활동은 대부분 학과 공부와는 관계없는 스포츠 활동이나 음악 미술 등 특기 관련 활동들이다. 학교에서 부과하는 과제는 그리 많지 않으나 방과후 활동 지도교사가 학습이 되지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22)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 Attitude and Value Survey 2007. p.16.

이미 1972년에 교육과정의 70%이상이 비공식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비공식교육의 필요성은 지금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생활조건에 기인한다. 미디어의 지나친 소비, 가정제도의 변화, 세계화, 여행, 이민 등으로 종족간의 계속되는 융합, 새로운 문화의 끊임없는 형성, 다양한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모순과 갈등을 견디어 내고 자신에게 맞는 정체성을 찾고 선택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 등이 시대가 요청하는 능력은 습관적이 아닌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성찰적인 능력이다.

방과후 활동은 주로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여러 다양한 단체들과 협동하여 조직되고 있다. 청소년센터, 청소년복지단체, 그 외에 예술단체, 극장, 스포츠단체, 도서관, 미술 박물관, 회사 등 그 대상은 다양하다. 바로 이러한 단체들과 협동은 비공식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방과후 활동 참여여부는 전일제학교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다. 열려있는 전일제학교에서는 자유선택을 할 수 있고, 묶인 전일학교에서는 의무적인데 실제로 제공된 활동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참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방과후활동 중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학교전문과목과 관련된 숙제 도움, 전문 과목 지원, 특수한 지원수업이다. 전문분야에 따른 수업제공은 스포츠, 음악 예술, 외국어, 자연과학, 독일어, 수학이라는 순서에 따른다. 전문과목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활동분야는 기술과 새 미디어, 수공업, 가사 관리, 사회성 습득훈련, 여러 문화 상호교류 습득 훈련, 학생들의 공동작업 프로젝트이며, 그 외 장기, 바둑 등 여러 여가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활동 등이다.

초등학교학생들은 자유 시간 활동과 공동 활동, 숙제도움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제2단계학교학생은 전문과목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나 과정(연극, 컴퓨터, 스포츠)를 이용하며 이민자가족의 자녀들은 숙제도움, 학교 과목과 연결된 활동을 선호한다. 방과후 활동과 오전의 수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많은 경우 서로 연관 없이 분리되어 있다. 유기적인 협동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교사들과 외부에서 온 교사들의 사이에 그들의 봉급과 노동시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관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팀 활동이 수월하지 않다. 방과후 활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가하는데 그들이 중요한 직업 가치관은 도움, 보호, 지원, 약한 자들 편에서, 연대 등이고 학생들과 활동을 할 때도 교사들과는 달리 참여라는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시 한다. 학생들 문제에 대해선 서로 협조를 하나 교육내용이나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경우가 적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오전의 전문수업과 방과후활동의 체계적인 평가의 도입이다. 학생들을 참여시켜 정말 무엇이 잘 수용이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학생들 관점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뮌헨대학의 2000~2004년 동안 ‘학교와 수업의 질 보장(Qualitätssicherung in Schule und Unterricht)’이라는 조사에서는 8~10학년 학생들의 수업평가가 수업의 내용과 방법응용에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학생참여가 많은 학교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 평가제도가 제도화되어야 체계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13. 교원임용제도

1) 한국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필요한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은 고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형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동시에 개방형 고등교육기관이 있다(강영삼 외, 2007).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원양성체제는 초등학교와 달리 다원적인 양상을 띤다. 초등학교 교사의 양성은 일반대학으로부터 분리·독립된 특정 목적 대학인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목적형 체제이다. 이와 달리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절충한 체제이다.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은 사범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목적형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일반대학에도 교직 과정을 설치해 줌으로써 개방형 체제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리 하여 현재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 그리고 교육대학 원 등 다원화된 양성기관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소경희, 2000).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형 고등교육기관:

- 사범계열 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교육학과에서 교육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입학하여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됨

■ 개방형 고등교육기관:

-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및 특정학과에서 교육
- 일반대학에 입학하여 전공학과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교사가 되겠다는 뜻을 정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학교급별로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다.

- 보육교사: 1년제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
- 유치원 교사: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양성
- 초등교사는 4년제 교육대학이나 사범계 대학에서 양성
- 중등교사는 4년제 사범계 대학이나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양성

2)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 및 양호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 종류별로 교원면허증이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목별로 면허증이 부여되고, 교원면허증은 도도부현의 교육교육위원회가 수여한다.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교원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보통면허증(다시 세분화하면 전수면허증, 1종 면허증, 2종 면허증)이라고 한다. 보통면허증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교원 면허증이 있다. 양호교사 면허증, 영양교사 면허증이 별도로 있고, 특별면허증, 임시면허증도 있다. 단 유치원, 양호교사, 영양교사의 면허증에는 특별면허증이 없고 영양교사 면허증에는 임시면허증이 없다. 보통면허증은 일본 내 모든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다. 대개 교육학부가 있는 대학의 교직과정, 문부대신이 지정한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수여하는 면허증이다. 또한 문부성이나 문부성의 위탁을 받은 대학이 실시하는 교원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하거나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직원검정에 합격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수면허증은 석사학위를 요건으로 한다. 일종면허증의 요건을 충족시킨 자가 대학원에서 교과나 교직에 대한 과목단위를 일정정도 취득할 경우에 수여한다. 단 이 면허증으로는 교원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사가 일정기간 근무한 이후에 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교사의 지위는 보장되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휴직을 허가한다. 휴직을 하지 않고 현직교사로 있으면서 전수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을 경우에는 방송대학대학원에서 통신교육을 받거나 대학원에서 과목이수생으로 장기휴업중, 야간, 주말에 개최되는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가 관리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수면허증이 필요하다.

一種교사면허증은 학사자격을 기초자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과나 교직에 관련된 과목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하면 일종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면허라고 하면 일종면허증을 지칭한다. 二種면허증은 단기대학사의 학위를 기초자격으로 한다. 고등전문학교에서 수여하는 준학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과관련과목의 이수가 요구되지만, 이 면허증을 가지고 고등학교교사로는 취업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 교원자격인

정시험²³⁾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여하는데, 이중면허증으로 교사가 된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일종면허증의 취득을 요구받기도 한다. 교육면허법 9조2항에도 이중면허증으로 교사가 된 자에게는 일종면허증 취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면허증은 각 도도부현내에서만 유효한 면허증이다. 학교 측에서 교원에 채용하고 싶은 사회인을 추천하여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원검정에 합격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임시면허증은 각 도도부현내에서만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잠정적인 조치로 6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면허증을 가진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교원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3) 미국

미국의 교사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교사양성 과정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그와 같은 과정이 과연 교사의 전문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Cochran-Smith & Zeichner, 2005). 미국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크게 대학의 학부와 석사과정을 통한 교사양성과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양성이 있다.

미국의 교사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중등학교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교직에 입문하였으며 당시에도 여성 교원이 주를 이루었다.²⁴⁾ 도시화, 산

23) 교원자격인정시험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에게 교원면허를 수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자격인정시험이 있다.

24) 교사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1870년대 여교사의 비율은 59%에서 1900년도에 70%, 1920년도에 8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여교사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고 한다. Carroll Wright의 조사에 의하면 1905년 미국의 467개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남교사의 비율은 고작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Tyack, 1974: 61).

업화, 그리고 이민의 증가와 함께 시작한 공교육체제의 확립에서 중요한 요소인 교사의 자질과 관련된 관심은 1906년 카네기재단이 주장한 교사의 전문적 지위향상과 교사교육에 대한 높은 기준 설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Cremin, 1988: 499).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교사양성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²⁵⁾

1980년대는 경제적 위기에서 출발한 공교육 위기 담론이 교사양성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1983년 국가적 위기라는 보고서의 출간 이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카네기 포럼(1986)과 Holmes Group(1986, 1990, 1995)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카네기 포럼(1986)은 “준비된 국가: 21세기의 교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초기까지 교사부족을 피하기 위해 각 대학 졸업생의 23%는 교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사양성 이외에도 임시적 또는 대안적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교사양성기관(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되는 초·중등학교, 협력적이고 실용적인 환경에서 교육받는 교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임상학교(clinical school) 모형을 주장하였다.

Holmes Group은 교사양성과정이 있는 연구중심대학 96개교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1980년대 미국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교육 개혁에 치중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그 이름을 Holmes Partnership으로 변경하였다. 이 기구가 발표한 세 보고서(미래의 교사, 1986; 미래의 학교, 1990; 미래의 사범대학, 1995)의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미국 교사양성기관에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전문능력개발학교(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는 초임교사에서 경력교사의 전문성 증진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선

25) 미국에서 교육의 위기라면 1957년 당시 소련의 Sputnik호 발사와 관련된 교육의 위기와 1980년대 경제침체의 원인을 교육부문에서 찾은 ‘국가의 위기’라는 보고서에 의해 촉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의 위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회의와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로 연결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연구에서 Conant(1963)는 교원양성과정에 필수과목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인문교양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Koerner(1963) 역시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전공교과목과 인문교육을 바탕으로 교사의 지적, 윤리적 자질 향상을 주장하였다(Cochran-Smith & Fries, 2005: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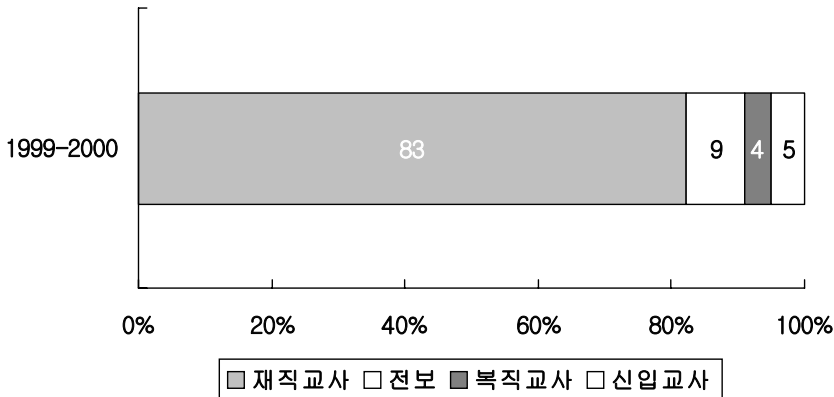
학교의 공동연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교사양성과 관련된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Elmore, 2002). 이 책무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권고안으로 대학의 교사양성 프로그램과 일선학교의 연계강화, 명확한 입학기준, 경계가 분명한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와 그 효과성의 평가, 그리고 교사 유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2005년 4월 미 교육부 교육통계센터에서 교원 수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²⁶⁾ 2004년 가을 현재 미국 초중등학교에서 약 350만 명의 교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가 310만 명, 사립학교 교사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참고로 학생 수는 5,460만 명의 학생 가운데 4,830만 명이 공립학교에 630만 명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가운데 미 교육부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²⁷⁾, 1999-2000년도에 전체 교사 330만 명 가운데 58만 명(18%)을 충원하였는데 그 가운데 전보가 9%, 교직으로 복직한 경우가 4%였으며, 새로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6) SOUR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14; and unpublished projections and estimates. (This table was prepared April 2005.) SOUR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Statistics of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1980; The NCES Common Core of Data (CCD), "State Nonfiscal Survey of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1985-86 through 2002-03; Private School Universe Survey (PSS), 1995-96 through 2001-02;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14; Higher Education General Information Survey (HEGIS), "Fall Enrollment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surveys, 1980 and 1985; and 1990 through 2002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IPEDS), "Fall Enrollment Survey," (IPEDS-EF90-99), and Spring 2001 through Spring 2003. (This table was prepared April 2005.)

27) SOUR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The NCES Common Core of Data (CCD), "State Nonfiscal Survey of Public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1997-98 through 2002-03. (This table was prepared November 2004.)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Schools and Staffing Survey (SASS), "Public Teacher Questionnaire," "Charter Teacher Questionnaire," and "Private Teacher Questionnaire," 1999-2000.

[그림 III-4] 1999-2000년 유치원-12학년 공사립교사의 고용현황

Newman(1994)에 따르면 신규교사의 70%가 전통적인 대학교육을 통해 교사로 임용되었다. 석사수준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가 약 20%를 차지하며, 기타 임시교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에 입문한 교사가 약 10%를 차지하였다. 미국교육학회에서 2005년에 발간한 교사교육연구는²⁸⁾ 미국의 50개 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사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수학하는 예비교사들의 인구학적 배경변인 분석을 보면, 최근 임시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숫자가 늘긴 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학의 학부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그들이 전공하는 과목도 교육학보다는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원양성 과정의 대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SAT, ACT) 성적도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8) 1990년대 말에 미국교육학회 분과 K(교사교육분과 Teaching and Teaching Education) 부회장을 맡은 Kenneth Zeichner와 Marilyn Cochran-Smith를 중심으로 2000년에 교사교육연구를 위한 AERA 패널 10명이 승인을 받아 교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문제, 연구방법, 정책, 교육과정, 교육개혁 등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패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4) 스웨덴

스웨덴의 교육법은 학교 제도 안에서 교사로 종신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자는 교육 관련 대학 졸업장, 스웨덴어 지식, 학교 제도에 적용되는 규정들 특히 교육의 목표에 관련된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자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스웨덴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나 유럽 자유무역 연합 및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동등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대학에서 그 외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 고등교육청이 그 과정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판정한다.

교사 임용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로 분권화 되어 있으며 유아학교와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사 임용 절차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과 신문 등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후보자들을 선발한다. 학교별 교사의 임용은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이나 음란물 관련 범죄 또는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유아학교, 학교 또는 학령 아동 보호 시설의 교사 임용 지원서에는 경찰이 발부한 지원자에 대한 전과 기록 한 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의 협약에 따라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은 종신 교사 자격을 얻기 전에 12개월 동안 수습 교사로 임용된다. 그 목적은 신규 교사들로 하여금 경험 있는 교사들의 지도 아래 1년 동안의 입문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교사 자격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 12개월간 계속되는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제 교사로 임용된다. 스웨덴에서 유아학교 교사, 방과후활동 지도사, 교사, 학교장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연합회는 교원노조와 교사들의 최저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해 협상한다.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의 교사들은 해당 기관에서 임명되지만 정

부에 의해 고용된다.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서 임금은 교사와 고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교원노조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전국에 있는 교사들의 최저 임금이나 인상률 등의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면, 각 학교의 교사들은 매년 학교장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5) 독일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와 관계된 문제들처럼 교사양성과 교사임용제도도 중앙연방정부차원의 일률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연방제도 원칙에 따라 각 주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교사양성제도는 각 주의 학교제도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가령 바이에른 주에서는 각 학교형태에 따라(Grundschule,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Berufsschule)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니더작센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여러 학교형태를 결합하여 동시에 양성하고, 다른 주에서는 제1분야, 2분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양성을 하기도 한다.

교사양성은 1차와 2차단계로 나누어지며 교사양성의 1차 단계는 일반대학에서 수업을 한다.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는데 바덴 뷔르템부르크, 쉘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는 사범대학이 따로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사양성기간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작은 교직(초등학교, 중학교교사) 지원자는 6~7학기, 또는 큰 교직지원자(실업학교, 김나지움)는 8~9학기 공부를 하고 국가시험을 치루고 졸업한다. 이 양성기간의 종류에 따라 봉급호봉이 정해진다.

초등학교교사는 전문 과목에 따라 분리되는 수업을 하지 않고 한교사가 모든 과목을 다 수업하므로 따로 전문분야를 공부하지 않는다. 실업학교와 김나지움 교직지원자(Referendar)는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할 2~3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과목들은 다시 여러 학문분야를 포함한다. 가령 사회생활과(Sozialkunde)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 경영학을 포함한다. 교육학과목도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을 포함한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깊게 배우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학에 관한 수업은 지엽적인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체 교사양성과정 중 전문과목과 그 방법론이 과목에 따라 수업의 약 75~95%를 차지하고 교육학에 관해서는 약 5~25%를 차지하며 이것도 주마다 다르다. 전문지식전달에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간적인 개발에도 많은 힘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며 일부 주 정부는 교육학과 심리학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1차 국가시험 후 제 2단계의 교사양성과정이 연결되는데 양성기간은 대부분 1.5년 내지 2년이고 학교에서 실습이 그 중점을 이룬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교직원지원자는 주정부로부터 실습할 학교와 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자리를 받으며 교생들은 책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하게 된다. 이 2차 양성과정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 공무원(Beamte auf Widerruf) 자격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다.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제1차와 2차 교사지원자 양성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가령 교생들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다문화교육, 갈등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global learning, 평화교육 등의 절실한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지만 대학에는 이런 방면의 수업이 아주 약하게 개발되었다. 대학에서의 수업은 주로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사지원자들이 장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부족할 경우가 많다.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 한다부르크 주에서는 2000년부터 다양하게 분산된 교과목을 정리하여 새로운 핵심 커리큘럼개발을 하고 있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울 핵심 커리큘럼을 정하고 여러 교과과목을 modul화하고 교사양성 2차 단계를 위해 스

탠다드를 개발하고 있다.

-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BA와 MA의 모델에 따라 연속된 수업과목을 개발하여 1차와 2차단계의 학업과정을 맞물리게 하는 시도를 한다. BA까지는 여러 교사지원자들이 같이 수업을 하고 MA에는 특수과목을 전문적으로 깊게 배울 수 있다. 이 특수과목에 해당하는 2차 단계 양성과정은 반년을 줄여 1년6개월로 줄였다.
-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교육학 과목 시간을 늘리고 김나지움 학업과정에 한 학기 실습세미나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2차 양성단계를 1년 반으로 줄였다.
- 바이에른 주 역시 교육학에 관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초등학교 교사지원자를 선발할 때 적선여부에 관한 구두대담을 한다.
- 여러 주정부는 교사양성을 위한 센터를 따로 창립하여 교육에 대한 일반이론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응용방법을 연결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에서 교사들이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전수하는데 더 심려를 기울이도록 여러 수업을 조정한다.

교사들의 졸업성적은 1차와 2차 교육과정을 종합 심사한 결과이며 실습하는 학교의 책임교사 또는 교장과 대학의 세미나책임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1차 때 시험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각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 특정한 주제에 대해 질문 대답하는 식의 표준화된 시험이고 담당기관의 관료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교배치에 졸업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과연 나중에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적절하게 개발시키느냐 등의 교육자로서 자질을 판단하는데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정부 문교부에다 익명의 명단절차나 또는 어느 특정한 학교를 겨냥한 공모에 응하면 주정부는 시험성과와 여러 개의 능력평가와 인적사항에 따라 배치한다. 이러한 관료적이고 습관화된 교사채용이 각 학교의 내부 사정이나 필요성에 꼭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몇 주정부는 교사채용 시 그 담당학교에 발원 참여권을 주고 있다. 학교에 배치된 후 몇 년이 지나면 (일생동안 해고할 수 없는) 공무원이 되고, 일반직원으로 채용이 될 경우도 대부분 10~12년 후에는 임의 해고가 어려운 위치에 이를 수 있다.

독일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해 10.3 학기, 직업학교는 14.4 학기, 일반적으로 평균 12.9학기를 공부하고 또 1.5년 내지 2년간 실습과정을 거치는 비교적 장시간의 양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사들은 5일간 연장추가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이것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드물고 일반적인 교사능력평가도 커리어가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독일은 다시 교사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은퇴한 교사들 또는 교사 자격이 없는 다른 전문인들을 채용하는 임시방책을 쓰고 있으나 수업의 질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14. 주요교육정책

1) 한국

(1)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

①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인식되어온 학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학생의 필요능력·적성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을 골자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

29) 그러나 정책 의도가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수준별 교육과정사실상 우열반을 초래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형 교육과정은 우열반화의 우려도 있지만 학생들의 선택자체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획일화되어 예술 교과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 단계형 : 학습결손이 크고 학생 간의 학업성취의 격차가 심각한 수학과 영어교과
- 심화·보충형 : 능력의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국어·사회·과학 과목에 능력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을 다르게 함
- 과목선택형 : 고등2·3학년은 학생의 장래진로나 적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의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였다.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학생이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② 학교 유형의 다양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교육의 다양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한다. 1970년대 중반에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에 대구·인천·광주를 거쳐 1981년에는 21개 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평준화 정책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 공히 교육의 획일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입시 경쟁 문화가 그대로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일환으로 특성화 학교와 대안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③ 특성화 및 대안학교

크게 직업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디자인고, 자동차고, 애니메이션고, 조

리고, 도예고등학교)와 간디학교 등의 대안교육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다. 전국단위 선발이 가능하며 부분적인 교육과정편성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이며 산학겸임교사 임명(교원자격증 없는 산학겸임교사를 교원정원의 1/3이내에서 임용)이 가능하다.

대안학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자유학교형 : 학교교육의 지나친 통제와 억압, 그리고 교사 중심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한다. 영국의 섬머힐 학교, 일본의 기노쿠니 아이들의 마을, 한국의 자유학교 물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생태학교형 : 1982년 영국의 하트랜드 지방에 건립된 ‘작은 학교’가 전형으로, 생태교육과 노작교육,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
- 재적응학교형 :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일본의 생활학교와 한국의 성지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 교육이념 추구형 : 독특한 교육이념과 교육방식을 추구한다. 슈타이너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 한국의 풀무 농업고 등기술학교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

(1) 여유교육정책

여유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에 편중된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도록 학습내용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여유교육으로 교육방향이 전환되는 흐름의 최초의 기점은 1977년에서 1978년에 걸쳐 학습지도요령의 전면개정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육의 방침을 정하고 1980년부터 학교교육에 적용하였다. 학습내용과 수업시간을 축소시키고, 여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교육을 지향하고, 지식교과이외에 여유시간을 개시하는 새로운 방침이 결정되었다. 1989년의 학습지도요령의 전면 개정

작업에서도 여유 있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정하고 1992년부터 실시하였다. 학습내용과 수업시수를 더 줄이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가르치던 이과과목과 사회과목을 폐지하고 교과생활을 신설하였다. 1992년 9월부터 두 번째 토요일을 수업 없는 날로 변경하고 1995년 4월부터는 4번째 토요일도 수업이 없는 날로 전환하였다.

학습내용과 수업시수의 삭감과 완전 주5일제 수업 실시, 종합적 학습시간 신설과 절대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방침이 정해져 추진되어 왔던 여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지식에 편중된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였던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경제동우회 등의 재계와 학자, 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참가한 21세기 일본구상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여유교육에 대한 지지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OECD의 학업성취도조사 결과 일본의 점수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유교육이 학력저하를 불러왔다는 논란이 가열되었다³⁰⁾. 이에 따라 2005년에 나카야마 문부대신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여유교육을 중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요청하게 되고 2006년부터 학습지도요령에 나온 것보다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발전적 내용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게재되게 된다. 2007년 10월에는 기존에 여유교육을 주창하였던 중앙교육심의회가 여유교육이후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업일수를 늘리고 이과계통의 과목과 영어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을 하기에 이른다.

2007년 아베수상의 내각에서 교육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여유교육의 수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재생회의에서는 수업시수를 10%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 수업을 부활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2008년 2월에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답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유교육 수정방침을 공표하였다. 발표된 학습요령개정안은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수업시수를 전체적으로는 3-6% 늘리고 특히 이과계통의 과목에 한해서는 15%정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 岩木秀夫(2004) 『ゆとり教育から個性浪費社会へ』 筑摩書房

(2) 고등학교의 개성화와 다양화 정책

고교교육의 다양화 흐름 속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특색 있는 학과와 과정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고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의 전반적인 목적은 두 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사회시스템의 분화에 고교교육의 시스템을 대응시키기 위한 ‘기능적 다양화’를 시도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선택의 여지를 다원화하기 위한 ‘시장적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교 개혁의 시도이다. 또한 획일화된 학교분위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기도 한다. ‘특색 있는 학과와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고등학교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사회로부터의 요구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를 하려는 학교와 진학이나 취직에서의 실적을 향상시켜 신입생 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학교를 찾아볼 수 있다. 특색 있는 학과와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특성화방침의 기본방침과 설치학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다. 첫째, 학생들의 장래 직업에 도움이 되는 특성화를 시도하는 경우로 항공, 정보, 레저 등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직업에 관련된 학과와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대응되는 특성화를 목적으로 스포츠, 음악, 연극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와 과정들을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다. 셋째, 진학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성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문화, 인문관계학과, 국제관련 상업계 학과, 어학에 중점을 둔 학과가 설치된다. 넷째,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응을 목표로 하여 복지, 연극, 레저 등 다른 학과와의 차별성을 시도하기 하는 경우이다³¹⁾.

학교와 학과에 과목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된 제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이다(飯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학과당 자율적으로 설치한 과목 수는 평균 13.2과목이다. 단 한

31) 飯田浩之(2000) 「高等学校の「特色ある学科・コース」における教育の特色化と生徒」
筑波大学教育学系論集 24(2) `pp33-48

과목만 설치한 학과에서 100과목 가까운 과목을 설치한 학과에 이르기까지 학과마다 차이가 나고, 55%이하의 학과가 10과목 미만의 과목을 설치했다. 학과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학과에서 설치한 과목이 가장 많아서 평균 36.9개이고, 그 다음이 보통과로 평균 13.1과목이다. 전문학과의 설치과목이 가장 적는데 평균 7.7과목이다. 해당 학과의 기존 커리큘럼과의 관계를 보면 발전시키는 과목이 35%, 보충하는 과목이 29%이고 핵심교과목이 25%이다.

각 학교나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설치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학습 영역의 확대, 취직이나 자격취득 준비, 대학진학 준비와 기초학력 육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종합학과에서는 학습영역의 확대와 기초학력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전문학과에서는 취직과 자격취득 준비라는 목적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각 학교와 학과들이 자율적인 과목을 운영하는 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교과나 과목의 틀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둘째,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폭넓은 과목을 설치한다. 셋째, 학습지도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 가운데 교육을 충실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설치한다. 넷째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설치하므로 그 과목의 필요성과 목적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여 동의와 이해를 구한다. 다섯째, 교사자격증의 유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을 강사로 초빙 한다³²⁾.

3) 미국

미국의 교육정책은 크게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낙오자방지법(NCLB)으로 대표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은 역사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법이었던 1965년 초중등교육법(ESEA)을 발전시킨 것으로, 미국의 전역에 걸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보상과

32) 飯田浩之・遠藤宏美(2004)「学校設定教科・科目」の設置とその運営 `日本教育社会学会大会発表

처벌을 강조하는 책무성 체제의 강화가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낙오자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부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연도별 학업성취목표를 수립하고 2013-14년까지 학생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 국어 읽기, 문해 교육, 수학 등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이 향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학교조직은 이와 같은 책무성 체제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질 개선, 교장의 리더십 개선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교가 정한 목표에 2년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같은 교육청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3년 연속하여 목표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송경오(2007)는 이와 같은 미국 연방교육 정책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낙오자방지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책무성 체제이다. 둘째, 이 법 하에 주정부의 지방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학교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다. 셋째, 주정부와 지방교육청은 책무성 체제하에서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용에 있어서는 자유재량을 갖는다. 넷째,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의 자격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연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정책은 주정부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텍사스 주정부를 예로 들면, 공교육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깊은 관심 하에 지난 20년간을 보다 명확한 교육과정 수립, 학력평가 시험과 연계, 학교와 교육청 평가를 통한 등급체계 구축을 특징으로 하는 광범위한 학업수행 감시체제를 시행해 왔다. 텍사스 교육부(1996:8)는 “학업수행 감시체계(monitoring)는 공공부문이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공표하고 있다. 시장과 유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정부의 학업수행

감시체제인 학력수월성지표체제(Academic Excellence Indicator System, AEIS)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수월성지표의 확립을 통해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학교 개선안이나 여러 의사결정에 각종 교육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교육정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여하도록 한다(텍사스교육부, 1996:8-9).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한 AEIS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수행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수행력을 보이는가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다양성의 인정을 들 수 있다. 학생과 교육청, 그리고 주정부 전체 차원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확립을 말한다. 셋째, 시스템의 안정성이다. 측정과 자료 수집, 계획, 직원연수, 및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합당한 결과와 연계성은 교육성과에 대한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시스템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법적정당성의 확보, 지역교육 프로그램의 유연성, 지역별 책임부과, 일반인의 알권리 충족이 중요한 원리로 제시되었다.³³⁾

33) 위의 목적과 원리에 따라 2005년 현재 텍사스 교육부가 AEIS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주 교육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20개 지역별, 그리고 전체 주정부 차원의 각종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pdf 파일 또는 HTML 형태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표 III-32> 텍사스 주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업수행관련 자료

지표의 종류	예
다양한 표준화된 시험결과	주학력평가시험(TAKS)의 학년별, 과목별 결과 특수아동을 위한 시험결과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언어능력 평가 시험결과 등
성, 인종, 영어숙련도, 특수한 기금을 받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생집단간의 시험결과	주정부, 교육청, 학교, 인종, 성, 특수아동, 영어능력 부진 아동별 각종 성적의 비교
수업활동 자료	우수반 또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록률
배경변인 (학생,교원수,학교변인)	학생 수(인종별, 성별, 학년별, 사회경제적 변인별, 유동학생비율, 교사일인당 학생 수 등) 교실크기, 교원변인(경력, 인종, 학력 등) 학교만의 특수한 교육프로그램 현황(학생별, 교사별) 중도탈락률
재정관련 정보 (학생일인당 교육비, 지역교육청의 부의 정도, 교사의 평균보수, 수입원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 (전체와 학생일인당 교수학습, 교육행정, 수업행정, 기타 비용)
대학진학관련 자료 (졸업률, 대학준비도 등)	SAT/ACT 결과 대학준비도 시험결과

출처: Texas Education Agency. 2003-2004 Academic Excellence Indicator System. from <http://www.tea.state.tx.us/perfreport/aeis/2004/index.html>.

Lunenberg와 Ornstein(2008)은 이와 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모든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졸업과 대학의 입학요건, 졸업시험, 학업시간, 출석, 과제수행, 학급규모의 감축, 조기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것으로 엄격한 자질에 근거한 교사양성 및 훈련, 자격관리 및 시험, 책무성, 봉급인상, 성과급, 경력개발, 역할에 따른 차등급여, 평가와 직원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기본교육, 컴퓨터 설치 및 기술교육 강조, 과학, 수학, 외국어 수업시수 증가를 포함한 공통 교육과정의 설치, 그리고 산업체-대학-학교간의 연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넷째, 표준중심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책무성 체제로 이 결과에 따라 학교마다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박세훈, 2008: 53에서 재인용).

미국의 중등교육 관련된 정책 가운데 한국교육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선택제, 학력격차, 표준중심 교육개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³⁴⁾.

(1) 학교선택제

학교선택제는 학교효과성 연구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그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촉발되어 현재에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증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한의 증가, 학생의 성취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경쟁에 따른 효율성 증가 등을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의 대안으로 헌장학교(charter school)나 특성화 학교(magnet school), 사립학교 및 바우처(voucher)를 통한 사립학교 교육수혜 지원 등의 방식이 학교선택제와 연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2) 학력격차

기초학력의 저하나 빈부 또는 인종간 교육불평등 심화 등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교통합, 헤드스타트(Head Start), 타이틀 I(Title I), 적극적 차별방지 정책 등을 3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낙오자방지법과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보다 강화된 책무성 체제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평가기준을 만들어 성과급을 확대하는 사례(콜로라도 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4) 이 내용은 박세훈(2008)의 “미국 중등교육의 개혁과 쟁점”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3) 표준중심 교육개혁

표준중심 교육개혁은 초, 중등 교육분야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학교 현장에 강력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를 말한다. 표준중심의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표준 설정, 교육과정 표준에 적합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발 및 시행, 평가결과와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요 교육정책으로는 교육과정상의 표준 개발, 성취도 평가 자료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개선 노력의 강조, 학업성취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스웨덴

(1) 국가가 평등하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스웨덴 교육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국가형 교육제도라는 것이다. 즉, 교육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 만 6세부터 기초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체의 학비를 내지 않으며 모든 학습 자료는 물론 학교 급식, 건강 관련 서비스, 5Km 이상 떨어진 학교로의 통학을 위한 교통비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고등학교 이후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는 학습 자료나 교재비는 개인 부담이나 이외 일체의 학비를 내지 않는다. 석사 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의 경우 직장에 고용되는 개념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급여 형태의 학업 보조비를 받으면서 학위 과정을 마치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서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통 학생보다 훨씬 많은 교육예산이 책정된다. 성인들에게까지도 누구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장시키고 있는 바, 다양한 학업 지원금과 융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학습을 위한 휴직 제도는 물론 방과후 보육 등을 통해 평생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지원한다.

(2) 휴식과 공부가 어우러진 학사 일정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학교들은 8월 중하순에 새 학년을 시작하여 이듬해 6월 초중순에 학년을 마친다. 스웨덴 학교의 학사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긴 여름방학과 짧은 겨울방학이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휴가를 겸한 겨울방학은 18일 정도로 짧지만, 학년말 방학인 여름방학은 약 70일(10주) 정도로 매우 길다. 밤이 길고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낮이 길고 쾌적한 여름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마음껏 휴식을 취해 온 북구의 전통을 살린 학사 일정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매 주 5일만 학교에 가지만, 학생들에게는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 꼴로 짧은 학기 중 휴가가 주어진다.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간의 길지 않은 휴가이지만, 토·일요일과 이어져 4일에서 7일 정도의 휴식이 보장된다. 부모들에게도 직장에서 다양한 휴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기 중 휴가는 가족의 휴식이나 여행으로 활용한다.³⁵⁾

(3) 자율학교 - 무상교육의 선택

스웨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들이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에 배정되어 다닌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사립학교의 일종인 자율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자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자율학교 제도는 1990년대 초에, 특별한 교육학적 지향을 가진 새로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기업 등이 유치원과 의무교육 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자율학교들은 등록된 학생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립학교와 같은 비율로 재정적인 배당을 받는다. 대신,

35) 옉살라에 있는 크반예르테 학교의 08~09년 학년도 학사일정을 보면, 9월 25~26일 교직원 연수일 휴가(목-금, 2일), 10월 27~31일까지 중간방학(5일), 2월 16~20일까지 스포츠 휴가(5일), 3월 20일(금)의 교직원 연수일 휴가(1일), 4월 6~9일까지의 부활절 휴가(4일), 4월 30~5월 1의 봄맞이 축제 및 노동절 휴가(목-금 2일), 5월 21~22일(목-금 2일) 학교 공휴일 등의 휴가가 있다. 이런 학기 중 휴가일수를 모두 합치면 총 21일에 이른다.

자율학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일체의 학비를 거두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율 학교를 설립하려면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국가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따라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거나 설립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가교육청은 자립학교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자율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당 일정액의 교육비를 1년 단위로 지불한다. 지원하는 교육비 총액은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³⁶⁾

자율학교는 1991/2학년에 제도가 도입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1991~1992년에는 6~15세 학생 중 1% 미만, 고등학생 중 1.5%만이 90개 정도의 자율학교에 다녔다. 10년 후인 2002~2003년에는 약 450개의 자율 기초학교와 200여개의 자율 고등학교가 생겼다. 2005년에는 기초학교 585개교로 74,091명(7.4%)의 학생(7.4%)이 다녔으며(일반 학교 234, 특수한 교수 방법 177, 종교 65, 언어/민족 31, 과목 특성화 33, 기타 45), 고등학교 단계의 자율학교는 268개 학교로 47,410명(13.1%)의 학생이 다녔다. 2006~2007년에는 8%의 학생들이 기초학교에, 15%의 학생들이 고등 자율학교에 다녔으며, 2007년에는 총 900개 학교로 늘어났다.

스웨덴 교육법은 모든 학교는 평등과 민주주의적 가치, 개인의 고결함과 공동의 환경에 대한 존중, 괴롭힘과 인종주의의 배격 등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원칙은 자율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율학교에서도 공립학교와 같이 팀워크와 자기주도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학교들은 획일적인 지식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육과정 목표 이상으로 폭넓은 교육을 하기 위해 일반 공립학교와 다른 창의적인 시도들을 하기 위해 노력

36) 자율학교(Friskola, Independent school)는 국가가 정한 법령과 교육 목표를 따르는 학교에 한해서 국립교육청에 의해 인가되며, 인가된 학교에는 공립학교와 같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율학교를 선택한 학생들도 공립학교 학생들과 같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각에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유형의 학교 제도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한다.

한다. 이를 위해서, 프레벨이나 몬테소리, 발도르프 교육학 같이 특별한 교육적 접근을 중시하거나, 종교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언어 또는 민족적 특성을 내세운 학교도 가능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17개의 국가 프로그램은 물론 예술 또는 수공 등 특성화된 보충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

(4) 종합적, 체계적인 학생 복지 지원

스웨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복지에 관한 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에 대해서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학생 복지 팀’이 있다. 대개 학교장과 학교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상담교사, 급식 책임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논의하고 조율하는 팀이다. 이 복지팀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은 물론 전체 학생들의 학교 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스웨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학내외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액 보험(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는다. 교육활동 중의 사고는 물론 집과 학교를 오가는 도중의 사고도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해 무상으로 치료하며, 큰 사고의 경우 보험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학년 초에 학부모들은 등하교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보내온다. 교사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만 18세까지의 아이들에게 1차 진료 기관의 외래 진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성인의 치과 진료비용은 매우 높는데, 외국인으로 잠시라도 스웨덴 거주 허가를 받은 만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역 건강센터에서는 치과 검진을 받으라는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온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핀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정책 기조이다.

5) 독일

교육정책은 연방제구조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중앙연방에서는 1949년에 창립된 주정부 문교장관들 모이다(Kultusminister Konferenz)와 연방정부 교육연구부가 책임을 맡고 있고 이들은 주정부 사이의 여러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봉급, 학교 밖의 직업교육, 연구지원, 장학금, 대학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틀 제정은 연방정부 소관이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서로 맞추는 기관은 주정부대표 모임인 참의원(Bundesrat), 학술원(Wissenschaftsrat), 교육계획과 연구지원을 하는 연방과 주 위원회(Bund und 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대학건축 기획위원회(Planungsausschuss für Hochschulbau)이다. 현재 독일에서 격렬하게 토론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회 불평등 감소

① 교육을 통해 평등을 증가시킨다

2000년 피사국제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처럼 학생들의 출신이나 사회신분이 학교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국제평균보다 훨씬 저조하다. 즉,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들 격차는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뜻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정치가와 교육자들의 희망은 PISA결과로 부정되었다. 독일교육제도는 사회적불평등이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을 조정하는데 실패했고 불평등을 오히려 굳히고 있다. 교육의 빈곤이 사회빈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이란 모든 아동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출발점의 차이에서 큰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어 학교제도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학

생들을 심하게 걸러내지 않는 것이다. 사회신분, 출신 때문에 문화적 사회적 자산을 갖지 못한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할 제 2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민가족자녀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은 독일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독일의 25세 청소년들의 27%가, 5세 이하 아동들의 33%이상이 이민 가족자녀들이다. 학교체제에서 이들의 열악한 위치는 수치에 나타난다. 이들은 특수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실업학교와 김나지움에는(11%) 아주 적는데 이들은 김나지움에 들어가도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낙제율도 독일학생보다 4배 많다. 직업학교에 들어갈 때 중학교를 졸업한 후 18개월 이내에 단지 37%만 사업장에서 실습자리를 찾는다. 독일학생보다 두 배나 더 많이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난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G8 도입(김나지움을 12학년에 졸업), 분산된 교육제도 규범의 일원화, 중앙에서 조정하는 졸업장, 전문 과목의 강화 등에 관한 토론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런 정책들이 그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다른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Rauschenbach은 ‘매일생활의 교육(Alltagsbildung)’을 중요한 교육원칙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아동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 방법, 장소들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사회적 인정과 통합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공식교육제도가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학교 밖의 아동 청소년분야 단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단체는 생활에의 근접성, 열린 구조, 비공식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줄 수 있다. 학교와 달리 이런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성장발전에 교육을 단지 직업준비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자기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을 매일생활에서 열어주고자 한다.

②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자

불평등을 감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정책

은 ‘처음부터의 교육’이라는 모토인데, 즉,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교육을 시키자는 주장이다. 6세 이하 아동들의 90% 이상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민 가족, 홀어머니 자녀,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의 아동들은 유치원에 가는 비율이 낮다. 서독의 전 유치원의 7%에는 독일어를 하지 않는 아동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유치원의 80%에서는 아동들의 약 1/4이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이 모순에 대응할 조치가 아직도 충분하게 취해지고 있지 않다. 3세 이하의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교육에 대해 지식이 없는 보모들이 돌보고 있으며 유치원교사들의 교육수준도 학교교사에 비해 불충분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이나 봉급도 아주 열악하다. 교육정책에 큰 모순이 있는 것이다.

③ 교육의 불평등의 감소는 학교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다

학교 제도 개혁의 첫 번째 예는 특수지원학교(Forderschule)에 다니는 사회에서 배제된 학생들을 정규학교에 통합시킨다, 둘째, 문제 학생들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집합장소인 중학교를 폐지하고 이들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한다. 셋째, 4년간 초등학교를 마친 후 10세에 그 다음 단계로 진학하게 되는데 부모들의 학력과 사회신분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이미 대학진학 가능성이 대부분 정해지는데 너무 일찍 학생들의 장래 교육 경로가 결정된다. 나중에 이 선택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7학년에서 9학년 학생들 중 단지 3%만 중간에 다른 학교타입으로 전학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성적이 낮은 학교로 전학을 하고 있다. 대학생의 약 1%만 직업학교 출신이다.

현재 한다브르크 주에서는 학생들이 6년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후 두 학교 종류인 김나지움이나 도시지역학교로 나뉘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개혁이 과연 사회출신에 인한 불평등을 감소할 수 있느냐에 회의도 갖는다. 도시지역은 이미 부모들의 사회지위, 교육수준에 따라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 갈래로 나뉜 학교제도에선 독일 학생의 약 40%만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하자는 제안이 있다.

(2) 전일제 학교

PISA 조사결과 쇼크 이후 독일의 교육제도에도 개혁이 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일제학교 도입이다.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 급격히 변화, 직장여성의 증가, 여성들의 달라진 생활양식, 이혼율의 증가, 재혼 등으로 생긴 조각보가족 등장(patchwork family), 형제 없이 자라는 아동들의 증가 등으로 가정은 아동들을 보살필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없다. 이런 가정의 문제가 학교로 이전되어 이제는 학교는 단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장소로 바뀌어져 있고 전문지식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감성과 전인격을 형성하는 장이다. 이 과업을 일부 해결할 길을 전일제학교에서 찾고 있는데 반일제 학교에서 시간부족으로 충분히 하지 못하던 사회성, 젠더교육, global교육, 폭력예방교육, 직업 오리엔테이션 등에 예전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있다. 비공식 배움과 공식 배움을 연결하여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교육방향에 Thomas Coelen은 전일제학교라는 표현대신에 ‘전일제교육’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년 ‘교육 보살핌의 미래(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일제학교 도입을 위해 주정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에는 561개 초등학교, 136 실업학교, 176개의 김나지움 등 700개가 넘는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다(2008년 3월). 이 프로그램은 8학년 김나지움(G8)이 1주일에 4일간 총 12수업시간을 늘리면 경제지원을 한다. 바이에른 주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60%이상을 G8 에 투자하였다. 이 12시간은 핵심과목과 선택과목의 집중수업, 공동활동그룹, 재능장려, 특별지원수업에 쓸 수 있다.³⁷⁾ 전일제 학교제도 도입과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토론되고 있다.

- 언어지원
- 수업시간 주기의 변경

37) 전일제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1분야와(초등학교)와 제2분야 1단계(10학년) 학교에 일주일에 적어도 3일간 방과후활동을 제공한다. 둘째, 점심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방과후활동은 교장책임아래 조직되며 오전수업과 내용이 맞게 연결시킨다.

-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
- 학교주위에 있는 사회공간을 향한 오리엔테이션
- 학교 밖의 단체와 협동
- 학생들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발전

전일제학교는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 방과후 활동에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맞는 다양한분야가 제공되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이민자가족 자녀들이 방과후 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부족한 언어실력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과목의 성적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일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동하여 다양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오후까지 근무할 교사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그들이 받은 교육내용이나 방법으로는 지금 요청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교 밖 단체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능력, 강점을 보충 보완하여 협력 상승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새로운 전일제학교구조에서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의 비공식 배움을 통해 사회와 직업에서 요청되는 여러 핵심능력을 배울 수 있다. 현재 전일제 학교의 2/3 가 학교밖의 단체와 협동하고 있다.

IV. 가족 내 사회화 지원정책

1. 부모교육 프로그램
2. 가족지원정책
3. 사회보장 급여 및 수급 현황
4. 부모의 의식비교
5.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6.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
7. 가족과의 시간 소비

IV. 가족 내 사회화 지원정책

1. 부모교육 프로그램

1) 일본

일본의 가족복지와 사회보장정책은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며, 청소년정책과 부모교육은 문부과학성에서 주관한다. 또한 내각부 정책통괄관(공생사회정책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처와 연계하여 공생사회실현을 향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정부기관,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민간유치원, 민간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업무 중 가정교육수첩프로그램을 발행이 있다. 문부과학성 가정교육 지원실(유아교육의 진흥, 자녀양육을 지원한다)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교육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수첩을 만들었다. 가정교육수첩은 자녀양육이나 훈육이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상담창구등도 소개하고 있다. 가정교육지원 기반형성사업으로서 모든 부모를 위한 자세한 가정교육 지원수법의 개발하며, 2008년 예산액은 1,153백만엔이다(문부과학성 2008). 가정교육수첩의 구성은 <표 IV-1>와 같다.

<표 IV-1> 가정교육수첩의 구성

명칭	색상	대상
가정교육수첩: 유아편 두근두근 자녀양육	빨강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보호자
가정교육수첩: 초등학생편 실례는 자녀양육	녹색	초등1학년~4학년의 아동을 가진 보호자
가정교육수첩: 초등학생~중학생편 생기 있는 자녀양육	청색	초등5년생~중학생자녀를 가진 보호자

출처: 문부과학성

부모교육프로그램에는 PET, STEP, Nobody perfect 양성강좌프로그램

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Nobody perfect 프로그램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관심을 그룹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에 따라 교재를 참조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같은 연령의 어린이를 가지고 공통의 필요나 관심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일이 가능하도록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10명전후의 그룹으로서 하루 2시간 주 1회에서 6~10회 연속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수를 받은 촉진자(facilitator)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시하고 참가멤버의 이야기와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해가는 역할을 맡는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신의 장점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위한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한가지의 방법을 가르치고 위기적인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 훈육, 자녀양육기능을 높이거나 새로운 기능 습득, 부모로서의 자신감 회복, 학습 과정에서 다른 부모들과 알고 지내기, 다른 부모들과 유대를 깊이하고 지지하는 관계 만들기 등이다.

다음으로 21세기를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녀양육을 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자녀양육학습센터를 들 수 있다. 즉, 자녀양육학습센터 “마마 프라자”를 중심으로 어머니, 아버지나 조부모, 지역의 사람들의 자녀양육에의 참가를 촉진하는 등, 가정이나 지역에서의 자녀양육의 공동화의 추진을 도모하고, 자녀양육에 불안을 가진 부모들을 지원을 함으로서 자녀양육친구의 범위를 넓히며 각 사업의 전개충실을 도모한다. 호야시 자녀양육센터 설비요강을 보면, 목적은 핵가족화, 외동자녀가 많아지는 등에 의한 자녀양육의 불안이나 고민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그룹의 육성과 그 외의 자녀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녀양육 상담, 자녀양육 그룹육성, 자녀양육 정보지등에 의한 정보제공, 강

습회, 강연회 등의 기획 및 개최, 지역사회에서 자녀양육리더지원, 부모자녀 활동의 실시, 그 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실시한다.³⁸⁾

2) 스웨덴

(1) 발전 배경

스웨덴에서는 국가나 지역 사회가 직접적으로 부모를 보조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미 중세 시대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역사회가 돌보는 것이 사회정치적으로 토론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스웨덴의 사회보장시스템이 확립되기 시작한 1945년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서 현재에 스웨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각종 부모 조직, 즉 BVC(출산 보건소)에서의 부모 그룹, 초등학교에서의 부모그룹 조직, 열린 유치원 등등이 조직화되었으며, 어린이 권리, 양성 동등 및 가정법의 확립, 부모에 대한 사회보장금이라든지 아동수당 제도 등 직접 지원금 시스템이 확립되었다.³⁹⁾

스웨덴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 사회가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직접 개입하는 일종의 직접적인 지원 방법이다. 즉, 스웨덴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싸움을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가 장래에 사회에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회가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부모를 위한 행동 적응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며, 교사가 또한 부모와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받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그리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종의 의료적인 방법으로 스웨덴의 Socialstyrelsen(스웨덴

38) 후생노동성 자녀양육지원홈페이지(www.mhlw.go.jp), 전국자녀양육 지원네트워크(www.i-kosodate.net), 아이치 자녀양육포털(www.pref.aichi.jp/kosodate).

39) 자세한 내용은 Statens Folkhälsoinstitut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스웨덴 국민 건강 인스티튜트)의 연구자인 스벤 브렘베리(Sven Bremberg)씨의 개인 블로그를 참고바람. 주소: http://web.mac.com/sven.bremberg/Svens_Notiser/Startsida/Startsida.html 이 블로그에는 청소년 및 어린이 건강에 대한 강연, 출판물, 뉴스 등 스웨덴 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음.

국립 사회보장위원회)에 의해 발전되었다. Samspelsprogram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폭력 행동에 대한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이들 부모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2) 시행주체와 프로그램의 예(Komet 프로그램)

지역 단위인 코문이나 시의 사회보장부서가 이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으며, 문제가 있을시 각 사회보장부서의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담당자와 면담하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타진한다. Komet 프로그램은 부모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 예이다. 부모들은 11번에 걸쳐서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한 후 가정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한다. 교사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훈련하지만 6번에 걸쳐서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진다. Komet 프로그램은 북미에서 시작된 다수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 스웨덴에서 발전되어 그룹 연구나 평가, 연구 등이 스웨덴의 지역사회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에서 발전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부모, 교사, 청소년층의 부모,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모, 유치원 교사 등 여러 그룹에 따라 특화된 버전이 있다. Komet은 스웨덴 전역에 걸쳐서 교육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다. 최근에 조사된 Komet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가정 문제 치유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부모 대상의 Komet 평가는 가정 문제가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표본 그룹에 비해서 약 40% 줄어들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⁴⁰⁾

예를 들어 스톡홀름 시에서 참여한 모든 부모는 프로그램 이전에 ADHD(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trotssyndrom(OD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적대적-반항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었다. 프로그램 이후에 이들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

40) <http://www.kometprogrammet.se/>

한편 교사를 위한 Komet의 평가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표본 그룹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학생들에게 격려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게 되었다. 학생들과의 문제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교사를 위한 Komet은 ADHD와 DAMP(Deficits in attention, motor control and perception, 주의력, 운동조절, 감각 결핍) 증상을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했다. Komet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표본 그룹의 학생들보다 집중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2003년 이래 스톡홀름에서만 약 1,000 가족과 450명의 교사가 Komet 교육 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들 부모 중 75%는 스웨덴 출생이며, 41%는 이혼, 45%는 고등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평균 연령 6.5세이며 3분의 1이 여학생이다. 일단 Komet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90% 이상의 출석 참여율을 보이며, 단지 13%만 중도에 자진 탈락하였다. 또한 이들 중 99%의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Komet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3) Komet 프로그램의 효과

이처럼 Komet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지원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한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전제되어 있다. 즉, Komet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 예방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 사회는 약물중독자 1인에 대해서 평균 1천 8백만 크로나를 지출한다. 스톡홀름에서 Komet에 참여한 1,000명의 어린이 중에서 향후 약물 중독자로 발전할 경우의 수는 16명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범죄 감소, 직업 내 부적응 감소, 정신 질환 감소 등의 효과도 볼 수가 있어, 조기 문제 예방 조치로 천문학적 액수의 사회적인 비용지출이 경감되는 것이다.

(4)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한편 현재 스웨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추세는 스웨덴의 지방 정부들이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인 문제를 지닌 보통 부모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Statens folkhälsoinstitut(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스웨덴 국민 건강 인스티튜트) 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4년에 2%에서 2007년에 7%로 증가하였다.⁴¹⁾

3) 독일

(1) 제공자

2004년 현재 6,183개의 가족교육기관(Familienbildungsstätten), 상담기관(Beratungseinrichtungen), 자조모임 등이 있다. 또한 일반성인교육기관(Einrichtungen der allgemeinen Erwachsenenbildung), 교회의 사목(목회)기관(Seelsorge), 사회복지기관(Wohlfahrtspflege) 등이 부모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전문적인 가족교육기관이 부모교육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그 밖의 기관들이 교육기관의 공급자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교육프로그램

독일 전체에서 약 197,000개의 가족관련 교육 프로그램이(Veranstaltungen) 제공되고 있다. 이 중 가족문제예방교육은 27,796개에 이른다. 추가로 이 교육과 연관된 심화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2,293개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반 이상의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그룹이었으며, 이 모임은 주로 상담기관보다는 가족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 교육과정 및 그룹(Kurs- und Gruppenangebote)

- 부모-자녀-그룹(Eltern-Kind-Gruppen)

41) http://www.fhi.se/templates/fhischoolpage____8481.aspx

- 협력적 부모-자녀-그룹(Sensumotorische Eltern-Kind-Gruppen)
- 자녀교육과정(Erziehungskurse)
- 출산관련교육(Angebote rund um die Geburt)
- 부모모임(Elterngruppen)
- 열린 모임(Offene Treffs)
- 일상생활대처교육(Förderung von Alltagskompetenzen)
- 여가생활교육(Freizeitpädagogische Unternehmungen)
- 가정방문프로그램(Hausbesuchsprogramme)
- 부부를 위한 교육(Paarangebote)

주요 강좌로는 출산 및 자녀교육(Geburt/Erziehung), 일상생활적응능력(Alltagskompetenzen), 부부관계(Paarbeziehungen), 여가활용에 관한 프로그램(allgemeine Angebote zur Freizeitgestaltung)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심화교육(Fortbildungsangebote)에는 슈퍼비전을 포함한다. 부모교육프로그램 참가자는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1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남성참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젊은 가족(junge Familie)이 주 대상자이다. 하위 층의 참여율이 15%로 상대적으로 중상층보다 낮은 편이며, 전체 프로그램의 1/4정도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주요 문제는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이다. 자녀관련 문제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주로 학교문제, 학교성적문제, 사회화문제(Sozialverhalten)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관련 문제(예컨대 가족 내 폭행경험)로 부모교육기관을 찾는 경우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자녀교육향상프로그램이었으며, 특히 젊은 부부가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한다.

2. 가족지원정책

1) 일본

일본내 가족관련정책 담당부서는 후생노동성이며 주요시책은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육아휴업, 가족수당 및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이 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12세 도달 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초등학교 수료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전년(1월부터 5월분의 수당에 관해서는 전전년도)의 소득이 일정액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계의 주된 생계유지자가 신청하고 주소지의 시구청장 장(공무원인 경우는 근무지)의 인정을 받음으로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지급월액은 3세미만은 일률적으로 1만엔의 금액이 지급되며, 3세 이상은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는 오천엔, 셋째자녀이후는 1만엔이 지급되며 원칙으로서 매년 2월, 6월, 10월에 각각의 전월분 까지가 지급된다. 소득제한한도액은 전년(1월에서 5월까지의 월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의 소득액으로 판정한다. 또한 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있다.

(2) 아동부양수당

부(父)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아동을 감독,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 부의 사망, 부의 장애 부의 생사불명, 부가 1년 이상 유기, 부가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어느 한 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다. 지급금액은 아동 2명

의 경우 5천엔이 가산되며 아동이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번째 이후의 아동 한명 당 3천엔이 가산되며 연 3회 지급되며, 소득액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육아휴업

휴업급부금이란 출산휴가부터 어린이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남녀가 모두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가를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된다. 급부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휴업 전 2년간 1개월에 11일 이상 일을 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는 사람, 월급의 30%가 지급되는 육아휴업기본금액과 직장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업한 달수분의 월급 10%가 지급되는 육아휴업자 직장복귀급부금이 있다. 휴업 중에도 급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급부율이 변경된다.

(4) 가족수당

급료는 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수당에는 복직수당, 주택수당, 식사수당, 자격수당 등 소속된 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모두 받게 되는 수당이 가족수당이다. 즉, 피부양 배우자 수당 매월 이만엔+첫째 자녀수당 매월 오천엔+둘째아이 수당 매월 1만엔+셋째아이이상의 수당은 한 명당 매월 3만엔+계속 태어나면 매월 3만엔 등 자녀가 늘어나면 가족수당은 증가한다. 셋째자녀 이상은 한명 당 3만엔이 아동이 만 22세가 되든지 부양가족에서 독립할 때까지 계속 가산된다. 일반적으로는 아동은 일률적으로 한명 당 몇엔 등이라든지 첫째아이는 5천엔, 둘째아이이후는 한명 당 3천엔 등,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 한명분의 수당이 줄어가는 기업이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4명을 부양하려면, 2만엔(배우자 분)+5천엔(첫째 자녀)+1만엔(둘째자녀)+3만엔(셋째자녀)+3만엔(넷째자녀)=9만5천엔(130만원 정도)이 되는 것이다.

이 수당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된다. 단 28세에 결혼하여 배우자분의 수당을 60세까지 32년간, 4명의 자녀가 22년간, 이 수당을 계

속 받는다고 하면 누계금액은 27,480,000엔이 된다. 졸업 후에도 둘째자녀 이후의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제도에는 한번 둘째, 셋째라고 인정되면 그 금액은 그 아이가 부양대상에서 멀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어린이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첫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부양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첫째아이가 부양상 없어지므로 둘째아이가 첫째아이로, 셋째아이가 둘째로, 넷째아이가 셋째로 되어서 가족수당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단지 첫째아이가 이 제도에서 졸업했다고 보는 것만으로 가족수당 금액은 (배우자 분(2만 엔)+둘째자녀분(1만 엔)+셋째자녀분(3만 엔)+넷째자녀분(3만 엔)=9만 엔이 된다.

(5) 특별아동부양수당

중도의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진 20세 미만의 아동을 감독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 대상아동이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혹은 대상아동이 각종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스웨덴

스웨덴 정부의 사회부(Socialdepartementet)가 주요 정책을 제시, 감독하며, 스웨덴 전역의 21개의 지방 정부 및 코문의 가족 담당 부서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Försäkringskassan(Social Insurance Agency, 국립 사회보장청)은 각종 사회보장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범위 조사 및 지급 기관이다. 현재 담당 장관은 Göran Hägglund(요란 해글룬드) 씨이며, 최근의 주요정책으로는 첫째, 2010년 1월 1일자로 싱글 부모에 대한 특별 육아 지원금 추가, 둘째, 2008년 7월부터 육아 휴직제도에서 남녀평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측이 어머니 측과 동등하게 육아 휴직을 쓸 때 보너스를 주는 제도를 들 수 있다.⁴²⁾

42) 스웨덴 정부 사회부 <http://www.regeringen.se/sb/d/1474>

(1) 육아휴직

스웨덴에서 육아휴직(föräldraledighet)은 1 자녀당 부모에게 총 480일이 법적으로 제공된다. 아버지, 어머니 양쪽이 나누어 쓰도록 권장되고 있다. 자녀가 7살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에 따라 부모가 동등하게 480일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권장되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 전체 휴직의 420일까지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60일은 반드시 다른 한 쪽이 써야 한다. 어머니의 240일 어머니 휴직(mammaledighet)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240일을 아버지 휴직(pappaledighet)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본은 이 휴직 일수를 절반으로 나누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부를 양보하는 식으로 계산된다. 이 원칙에서 유일한 예외 경우는 싱글 부모이며, 이혼,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파트너가 자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이 경우에 부모는 전체 480일을 휴직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스웨덴에서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법적인 권리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일을 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시간을 줄 의무가 있다. 1자녀, 1부모당 480일의 유급 휴가에 더해서 직원은 25%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국가가 경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⁴³⁾ 원칙적으로 육아 유급 휴직을 받는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육아 휴직을 쓰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전일, 1/2일, 1/8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양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출산 직후 아버지가 추가로 10일의 휴직을 할 수 있다.

43) 지원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나, 대부분은 월급의 80%까지 국가가 지급한다. 이는 240일 이상 법적으로 스웨덴에서 일한 자에게 대해서 1자녀당 첫 390일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월급이 연간 410,000 크로나, 월 34,000 크로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보다 월급이 많은 자들도 월 27,300 크로나를 받는다. 자녀 출산 전에 돈을 번 적이 없는 경우나 거주 비자로 스웨덴 시민이 된 경우에도 기본 육아 수당을 받는다. 1일에 180 크로나. 다른 나라에서 육아 수당을 받는 경우는 스웨덴 수당을 받지 못한다.

(2) 일시적 유급 휴가

부모에게 아픈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터를 떠나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해당된다. 1970년 초에는 부모가 아픈 아이를 위해 집에 있을 기회를 주는 것보다 지역 사회의 육아 전담 도우미에게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강했다. 육아 전담 도우미들은 가정으로 파견되어 부모를 대신해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러나 그 후 이 제도는 결국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최대한 돌볼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었다. 현재 아픈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는 1년에 최대 120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병가로 인한 휴직자에게 주는 월급의 80% 정도 지급된다. 자녀가 12세까지의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이 보통이나 정도에 따라서 18세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며,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월 20일에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 중에 한 쪽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어 부모 중에 누가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만약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어머니 쪽으로 지급된다. 동성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쪽으로 지급된다.

<표 IV-2> 아동 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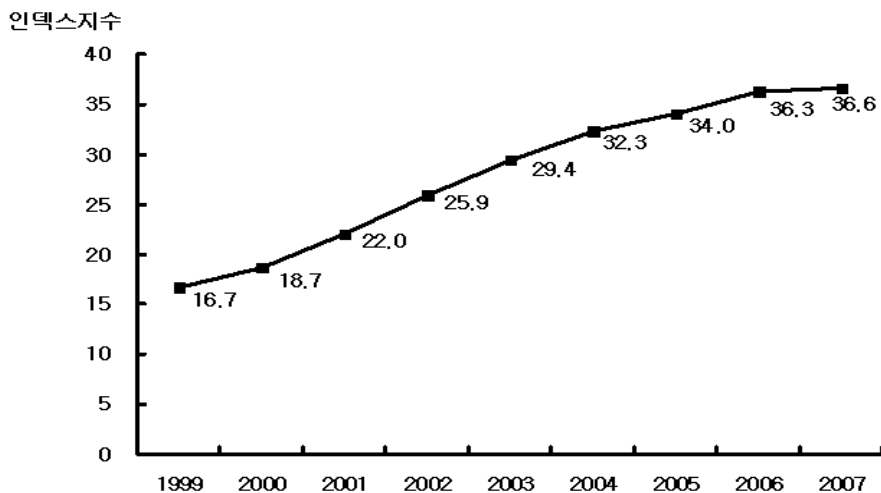
아동의 수	아동 수당 (월, SEK)	다 자녀 지원금	총 지급액 (월, SEK)
1	1,050	-	1,050
2	2,100	100	2,200
3	3,150	454	3,604
4	4,200	1,314	5,514

출처: 스웨덴 Försäkringskassan(2008년 9월 현재)

(4) 양성 평등

TCO(The Swedish Confederation for Professional Employees, 스웨

덴 총 노동조합)의 아버지 인덱스(Pappaindex)는 스웨덴에서 육아 휴직을 얼마나 많은 수의 아버지가 쓰는가와 얼마나 많은 날수를 이들이 쓰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이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과 동등하게 휴가를 쓰는 경우 지표가 100에 이르게 된다.⁴⁴⁾ 아래의 그림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인덱스 지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금씩 상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스웨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 휴직을 쓰게 되기까지는 2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아버지 인덱스 지수(1999-2007)

3) 독일

독일 가족복지 및 청소년복지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한국
의 읍면동)로 아래와 같다. 연방(Bund)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청소년
복지업무를 총괄하며, 16개 주(州)는 각 주마다 지방청소년청국(Landesjugendamt)

44) Pappaindex 2007: TCO granskar nr 6 2008.pdf

http://www.tco.se/Templates/Page2____417.aspx?DataID=7599에서 다운로드 가능.

을 둔다. 각 주에서는 청소년복지관련 지방법을 추가로 제정하고 각 지자체의 청소년복지지원체도를 지지한다. 이 외 복지사업협회(Wohlfahrtsverband), 자조그룹 등 비영리단체가 주체로 참여한다. 서비스 유형과 프로그램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 <표 IV-3>이다.

<표 IV-3> 지자체가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프로그램의 종류

서비스 유형	서비스 종류	주 대상자
가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순히 후원하는 서비스	자녀교육상담 사회 교육적 가족원조 집단공동작업 교육지지(Beistand)	자녀를 둔 부모 어린 아동을 둔 가족 아동과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조하는 서비스	부/모와 자녀를 위한 공동주택 주간보호그룹(Tagesgruppe) 사회 교육적 주간보호서비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14세 미만의 아동 예비교육연령과 기초교육연령의 아동
정상적 가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가족을 대체하는 기능의 서비스	전체적양육(Vollpflege) 생활시설, 기타 주거유형 집중적 사회교육적 개별 돌봄	특히 어린 아동 아동, 청소년, 청소년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

출처: BMFSFJ, 2007c: 35

- 집단공동작업(soziale Gruppenarbeit): 집중적 사회화교육프로그램
- 사회교육적 가족원조(sozialpädagogische Familienhilfe): 자녀교육과 일상생활문제를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전문가가 각 가정에 와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줌.
- 교육지지(Erziehungsbeistand):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Problem und Konfliktsituation
- 주간보호그룹(Tagesgruppe): 요보호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주중에 낮 시간 동안 보호받다. 기관근로자들은 부모와 함께 가족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가운데 상담 및 치료서비스 현황을 보면 <표 IV-4>와 같이 2006년 현재 27세 미만 청소년 총 310,561명에게 원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27세

미만 청소년 천 명당 13.5명이 상담이나 치료가 제공되었다. 본 자료에 포함된 18세 이상 청소년은 총 26,928명으로 이들을 제외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원조비율은 전체 청소년원조의 91%이상을 차지한다. 상담 및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청소년 본인(10.1%)보다 오히려 청소년의 부모(39.1%)가 더 많았으며, 청소년이 부모나 가족과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였다. 남자청소년(56%)이 여자청소년보다 상담/치료를 더 필요로 한다. 평균 상담기간은 7개월이었다.

<표 IV-4> 상담 및 치료서비스 대상자 수

(단위: 명)

	청소년 ¹⁾ 원조		상담/치료대상						주체		평균 상담 기간 (월)
	전체	전체 청소년 천명당	청소년	부모	가족	청소년과 부모의 사회환경이나 가족	청소년과 부모 혹은 가족	부모와 가족	공공 조직	비영리조 직	
2006	310,561	13.5	31,475	121,521	35,361	22,767	81,037	18,400	124,499	186,062	7
남자	173,780	14.7	13,681	69,218	20,225	13,124	46,635	10,897	71,512	102,268	7
여자	136,781	12.1	17,794	52,303	15,136	9,643	34,402	7,503	52,987	83,794	7
내국인	281,723		28,165	110,982	32,053	19,552	74,214	16,757	109,898	171,825	7
외국인	23,207		2,775	7,895	2,795	2,494	5,879	1,369	11,783	11,424	7
불명	5,631		535	2,644	513	721	944	274	2,818	2,813	5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2008: 220

주: 1) 27세 미만까지 포함

3. 사회보장 급여 및 수급 현황

1) 한국

모성보호휴가(산전후 휴가)의 실시 현황(03~06)과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실적은 각각 아래 <표 IV-5>, <표 IV-6>와 같다.

<표 IV-5>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

(단위: 명, 100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2,133	33,522	38,531	41,610	41,104	46,041	49,539	90,886
5인미만	2,503	2,444	4,402	4,571	4,447	4,736	6,417	15,533
5~9인	1,921	1,921	2,533	2,634	3,111	3,309	4,594	11,467
10~29	3,062	3,145	3,710	3,941	4,390	4,776	6,562	15,750
30~49	1,431	1,483	1,705	1,843	1,883	2,101	2,597	6,187
50~69	910	919	1,182	1,273	1,384	1,535	1,689	3,944
70~99	1,269	1,309	1,448	1,540	1,636	2,285	2,029	4,691
100~149	1,407	1,427	1,671	1,798	1,736	1,933	2,246	4,121
150~299	2,695	2,714	3,109	3,276	3,160	3,444	3,919	6,259
300~499	2,019	2,023	2,461	2,544	2,563	2,792	2,314	3,171
500~999	2,842	2,880	3,400	3,664	3,783	4,136	3,981	4,718
1000+	12,074	13,256	12,920	14,527	13,011	14,994	13,191	15,044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IV-6>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 한국

(단위: 년, 개소, 명, 100만원)

연 도	사업장수	인 원	지원액
2000	401	2,226	1,422
2001	542	3,136	2,804
2002	461	2,227	2,836
2003	802	3,877	5,255
2004	1,330	4,561	6,733
2005	994	4,594	7,216
2006	1,254	6,436	9,816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 일본

일본의 사회보장의 주요 현황을 미국, 스웨덴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표 IV-7>이다.

<표 IV-7> 관련시책 및 제도일람

		스웨덴	미국	일본
고용 관련 제도	전반	파트타임노동법		파트타임노동법
	출산		의료휴가	출산휴가
	육아	육아휴가	가정휴가	육아휴가
육아 에 대한 경제 적지 원	수당, 급부	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양친수당 임시양친수당		출산일시금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공제		부양공제 보육, 개호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추가아동세액 공제	부양공제 특정부양공제
지역 에 있어 서 자녀 양육 지원	시설서비스	자치체 보육 보육소 취학전 교육	데이케어센터	보육소일시보육
	가정보육	페밀리 데이케어	재택 데이케어 홈	
	그외		육아지원부 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취업광장 페밀리서포트센터 지역자녀양육센터
그외	세	개인단위과세방식	복수세율에 의한 선택제	
	법률, 이념, 운동, 그외	양친교육		

출전: 후생노동백서(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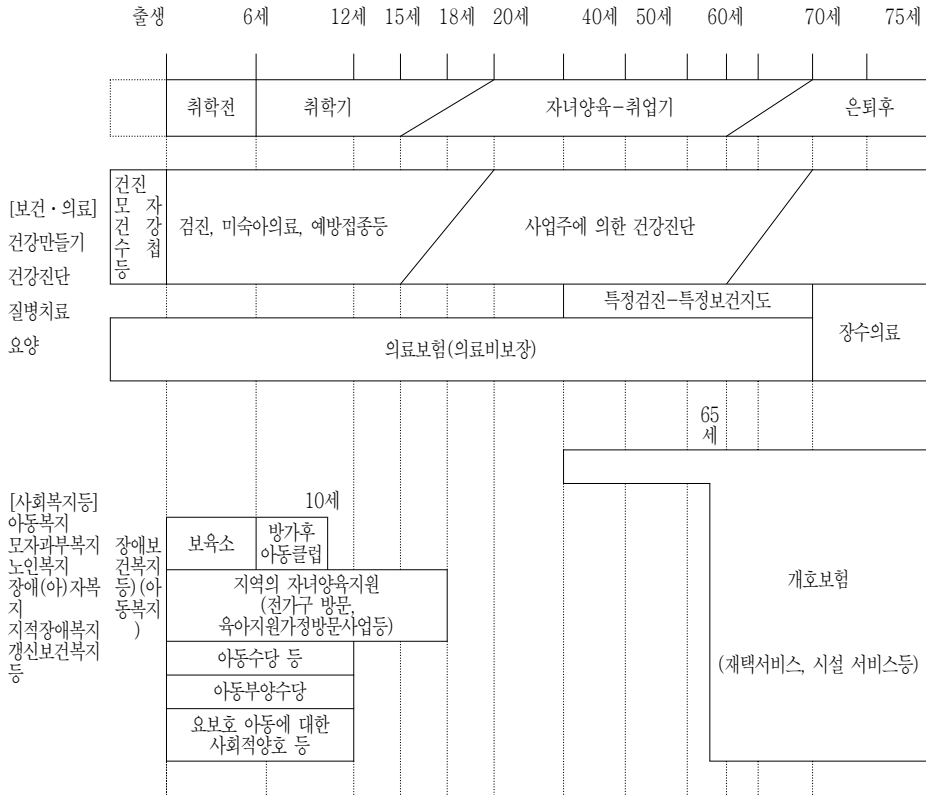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부비의 전망을 나타낸 것이 <표 IV-8>이다.

<표 IV-8> 사회보장급부비의 전망

	급부					부담		
	2006	2011	2015	2025		2006	2011	2015
연금	12.6%	12.5%	12.8%	12.0%	공비	7.7%	8.4%	8.9%
의료	7.3%	7.5%	8.0%	8.8%				
복지등	4.0%	4.2%	4.5%	5.3%	보험료	24.4%	14.9%	15.9%

출전: 후생노동백서(일본)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보장을 도식화하면 [그림 IV-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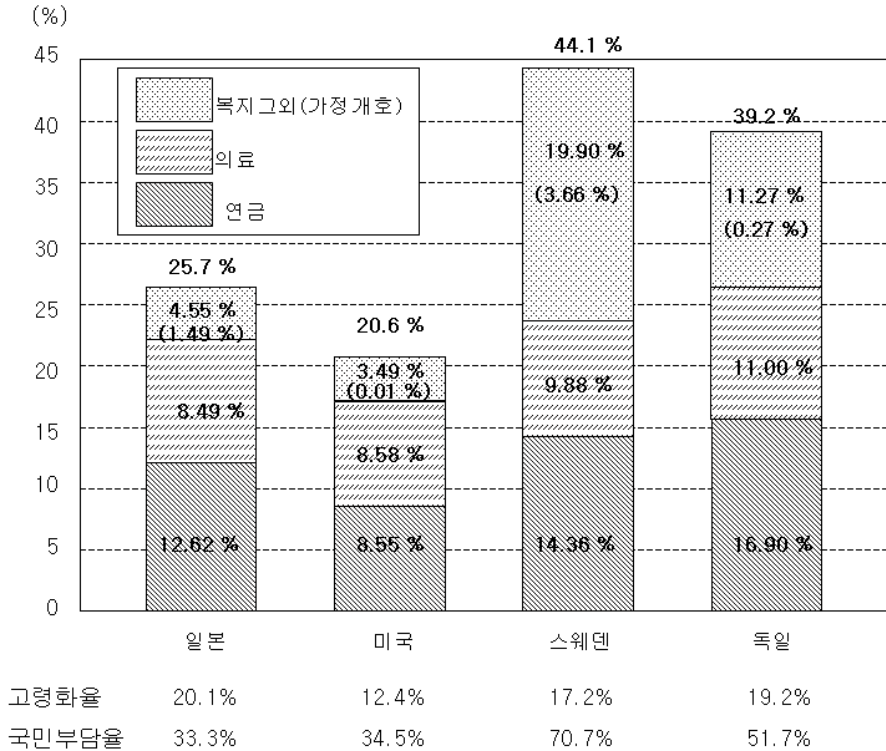


출처: 후생노동백서(일본)

주: 재택서비스(거택서비스, 낮 서비스, 단기업소, 보장구의 급부 등), 시설서비스(갱생시설, 수산시설, 의료보호시설), 사회참가촉진(지역생활 지원사업, 스포츠 진흥 등), 수당의 지급(특별장애자 수당 등) 등을 의미함

[그림 IV-2] 생애주기에서 본 사회보장

사회보장급부 현황을 보면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는 연금이 12.62%, 의료가 8.49%, 복지기타가 4.55%로서 총 25.7%로 영국과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출처: 후생노동백서(일본), 사회보장과 국민생활, 2007

주: 사회보장급부비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등에 의해, 후생노동성 정책통관관 사회보장담당참사관실작성(2003년). 고령화율은 OECD 「OECD in figures 2007」, 국민부담율은 재정성 조사에 의함(일본의 2008년도 국민부담율은 40.1%)(전망). OECD사회지출기준에 근거, 사회지출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부비보다도 넓은 범위의 비용(공적주택비용, 시설정비비등)도 계산함

[그림 IV-3] 사회보장급부의 부문별 국제비교(대국민소득비)

3) 스웨덴

유급의 육아휴직 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변화는 아래 <표 IV-9>와 같다.

<표 IV-9> 육아휴직(유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변화

(단위: 년, 개월, %)

연도	기간	소득대체율	비고
1974	6	90	
1975	7	90	파트타임 분할사용가능, 8세까지
1978	8	90	(+1달 정액급여)
1980	9	90	(+3달 정액급여)
1989	12	90	(+3달 정액급여)
1995	13	75	(+3달 정액급여), 12개월 중 1달 아버지의 달
1998	13	80	(+3달 정액급여)
2002	13	80	(+3달 정액급여), 12개월중 2달 아버지의 달

출처: 김수정(2006)

주: 기간은 소득연계 급여방식이 적용되는 기간, 비교의 기간은 정액급여가 제공되는 기간을 말함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 및 사용기간을 나타낸 것이 <표 IV-10>이다.

<표 IV-10> 육아휴직의 아버지 사용률 및 사용기간

(단위: 년, %, 일)

연도	전체사용자 중 아버지 비율	전체사용일 중 아버지 사용일수	아버지 사용일수 평균
1974	2.8	0.5	n.a
1977	7.0	2.2	n.a
1987	24.5	7.3	27.1
1990	26.1	7.7	32.9
1993	27.0	10.1	39.5
1994	28.1	11.4	39.5
1995	27.9	9.6	34.3
1996	31.1	10.6	30.5
1997	30.9	9.9	28.0
1998	32.4	10.4	27.4
1999	36.2	11.6	27.1

출처: M. Sunstrom and Duvander, A-Z. (2000), 김수정, 2006: 21 인용

4) 독일

청소년을 위한 독일의 사회보장 급여는 크게 국가에 의한 직접비용의 보상지원과 무상 가족지원을 위한 국가의 추가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조치로 2006년 총 4백8십억 유로에 이르는 액수를 지출하였는데,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자녀수당이었다(3천4백5십만 유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양육으로 인한 가족지출의 거의 53%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보상조치는 다음과 같다.

- 자녀수당(Kindergeld) : 자녀수당은 현금지원조치와 비과세조치로 지급효과를 갖는다. 현금지원조치는 연방정부가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비과세조치는 가족부담금조정(Familienleistungsausgleich)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치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환불을 통해 가족지원과 자녀의 최저생계비보장을 돕는 조치이다.
- 사회법(SGB)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타지원:
-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추가수요에 대한 특별지급
(Mehrbedarfszuschläge für Alleinerziehende)
: 사회부조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추가수요에 대한 특별지급
- 자가주택마련 후원사업에서 자녀지분에 책정된 지원금
(Kinderkomponente bei Eigenheimförderung)
-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가족수당
- 양육비입체법에 따른 지원금
(Leistungen nach dem Unterhaltvorschussgesetz)
- 법적연금보험(GRV)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아연금
(Waisenrenten)
- 학생을 위한 지원금(Bafög)
- 임금대체지원금에서 자녀지분에 책정된 지원금(Kinderkomponente bei Lohnersatzleistungen)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자녀로 인해 세대에 속하는 가족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집세가 증가한 경우의 지원금(Erhöhung der Zahl der zum HH rechnenden Familienmitglieder durch Kinder und damit erhöhtes Wohngeld nach dem WoGG)
- 사고보험의 테두리 안에서의 고아연금과 고아보조금
- 자녀추가금(Kinderzuschlag)
- 연방재단 “어머니와 아이”(Mutter und Kind)에 대한 보조금
- 수업료를 위한 특별지출금(Sonderausgabenabzug für Schulgeld)
- 자녀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대부금의 부분면제(Kinderbedingter Darlehensteilerlass)

<표 IV-11> 직접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조치

(단위: 백만유로)

조치	금액
자녀수당	34,500
SGB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타지원	4,000
자가주택마련 후원사업에서 자녀지분에 책정된 지원금	3,000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가족수당	1,900
양육비입체법에 따른 지원금	900
GRV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아연금	800
학생을 위한 지원금	700
임금대체지원금에서 자녀지분에 책정된 지원금	600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	600
자녀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집세가 증가한 경우의 지원금	400
사고보험의 테두리 안에서의 고아연금과 고아보조금	100
자녀추가금	100
연방재단 “어머니와 아이”(Mutter und Kind)에 대한 보조금	100
수업료를 위한 특별지출금	45
자녀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대부금의 부분면제	42
총액	47,787

출처: Laura, Plönnicke, Seyda, 2008: 22.

(2) 무상 가족지원을 위한 국가의 추가지출

가족을 위한 국가의 추가지출은 앞에서 본 직접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외의 추가지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가지출의 경우 앞의 지출과 달리 보상지원(Kompensation)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지원을 위한 지출은 처음부터 국가에 위임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비용은 연 7백 8십억 유로가 넘는다. 이 가운데 학교와 질병보험료 보조를 위한 지출이 가장 크다.

이러한 국가의 추가지출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일반보통학교 : allgemeinbildende Schule)
- 청소년 질병보험료보조 : 수입이 없는 가족구성원(어린이와 청소년)은 질병보험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함께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가 그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Beitragsfreie Mitversicherung nicht erwerbstätiger Familienmitglieder(Kinder und Jugend) im Rahmen der Krankenversicherung)
- 청소년원조(Jugendhilfe)
- 법적질병보험(GKV)의 테두리 안에서 기타 지원: 임신부와 산부들을 위한 지원(병원분만, 의사의 진료, 조산원의 도움, 가정간호, 집안살림 도움), 어린 자녀의 질병치료보조금, 어머니-자녀-요양, 집안살림도움 등.
- 법적 연금 보험료의 보조 : 어린 아이의 양육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법적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내줌.
- 보조수당에서 가족보조금(Familienkomponente bei der Beihilfe) : 보조수당을 지급할 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보조금을 지급.
- 법적장기요양보험(GPV)의 테두리에서 자녀의 보험료지원 : 소득이 없는 자녀의 법적 수발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줌.
- 사회법(SGB)의 테두리에서 특별지원 : 임신부의 잉여수요에 대한 추가 지원(Mehrbedarfzuschläge bei Schwangerschaft), 사회부조에서 가족보조금 등.
- 부양가족공제액(Unterhaltshöchstbetrag)

- 공무원 봉급자와 피부양자의 가족수당(Familienzuschläge für Besoldungs- und Versorgungsempfänger im Öffentlichen Dienst)
- 제한된 현물분할과세(Begrenztes Realsplitting)
- 임신여성의 낙태상당
- 부모가 직업상 심화교육에 참여할 동안 자녀교육비의 보조(사회법의 조건에 따라)
- 법적산재보험의 테두리에서 집안살림도움과 자녀 돌봄을 위한 비용 보조.

<표 IV-12> 무상 가족지원을 위한 국가의 추가지출

(단위: 백만유로)

조치	금액
학교(일반보통학교)	49,600
청소년 법적질병보험료보조	12,300
청소년원조	7,600
법적질병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기타 지원	3,300
법적 연금보험료의 보조	2,200
보조수당에서 가족보조금	1,600
법적연금보험의 테두리에서 자녀의 보험료지원	800
사회법의 테두리에서 특별지원	300
부양가족공제액	300
공무원 봉급자와 피부양자의 가족수당	300
제한된 현물분할과세	200
임신여성의 낙태상당	100
부모가 직업상 심화교육에 참여할 동안 자녀교육비의 보조 (SGB의 조건에 따라)	30
법적산재보험의 테두리에서 집안살림도움과 자녀 돌봄을 위한 비용 보조	7
총액	78,637

출처: Laura et al., 2008: 23.

4. 부모의 의식비교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문항을 비교해 본 것이 <표 IV-13>이다. 한국·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입각한 응답정도가 높으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성평등적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성역할고정관념(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덴		독 일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동의함	25.7	17.3	15.8	9.4	20.3	25.3	2.1	3.0	-	-
동의하는 편임	37.7	34.0	46.8	43.0	34.5	33.5	5.9	6.0	-	-
반대하는 편인	19.2	22.9	22.8	22.6	23.2	17.8	6.6	5.5	-	-
반대함	15.2	23.5	7.5	15.1	18.2	19.3	83.7	84.7	-	-
모르겠음	2.2	2.4	7.1	9.9	3.8	4.0	1.7	0.8	-	-

출처: NWEAC,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5.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비교하면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은 부모의 역할에 가장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가사와 양육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4> 집안일과 양육에 대한 부담

(Mother - Father, %)

구 분 \ 국 가	어머니	아버지	차이
한 국	66.6	31.8	34.8
일 본	35.5	14.8	20.7
미 국	62.1	32.6	29.5
스웨덴	56.3	47.1	9.2
독 일	-	-	-

출처: NWEAC,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가사일과 양육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여성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스웨덴 남성이 상대적으로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가사일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

(단위: %)

국가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덴		독 일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많음	4.5	18.5	4.1	9.4	7.3	21.1	12.1	14.3		
가끔	27.3	48.1	10.7	26.1	25.3	41.0	35.0	42.0		
거의 없음	39.1	23.5	19.2	28.0	25.1	19.5	27.7	25.4		
없음	27.7	9.3	65.5	36.2	41.0	16.1	23.6	16.9		
무응답	1.4	0.6	0.5	0.3	1.3	2.3	1.7	1.5		

출처: NWEA,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6.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표 IV-16>와 같이 질문한 결과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경우 한국의 남성과 스웨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이 어렵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의 경우 미국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6>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복수 응답)

(단위: %)

국가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스웨덴		독 일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49.0	26.4	41.3	15.5	37.2	32.6	44.7	39.0	-	-
자녀양육과 일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	13.8	21.5	9.4	16.3	20.5	36.6	24.6	27.0	-	-

출처: NWEA,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7. 가족과의 시간 소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저녁을 함께 먹는다’ 및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경우 모두 스웨덴이 각각 50.8%, 5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가족과의 활동 - 일주일에 몇 번

(단위, %)

구분 국가	저녁을 같이 먹음									여가 시간을 같이 보냄								
	0	1	2	3	4	5	6	7	No	0	1	2	3	4	5	6	7	No
한국	3.7	10.3	16.6	13.8	11.2	11.4	7.0	25.6	0.5	17.9	51.8	16.2	3.2	1.1	0.6	1.0	2.4	5.8
일본	2.2	9.9	20.7	9.8	7.9	6.5	3.4	39.6	0.1	8.1	32.2	34.7	5.3	2.3	1.2	0.7	15.4	0.1
미국	3.0	1.1	3.9	9.0	7.4	17.3	7.4	50.8	0.1	1.4	1.5	7.0	8.6	9.2	13.4	5.1	53.6	0.2
스웨덴	3.7	3.5	5.1	7.0	8.3	12.6	6.7	53.1	-	2.1	3.6	8.9	6.5	6.7	10.2	3.8	58.1	-
독일	-	-	-	-	-	-	-	-	-	-	-	-	-	-	-	-	-	-

출처: NWEA,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V.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청소년정책

1. 범죄율 및 비행 동향
2. 교정프로그램 및 정책
3. 아동청소년 사망 및 자살사고율
4. 음주 및 흡연을 포함한 약물오남용 현황
5. 학교폭력

V.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청소년정책

1. 범죄율 및 비행 동향

1) 한국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율의 추이를 보면(<표 V-1>), 청소년 형법범죄율은 성인의 절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형법범죄율 역시 형법범죄자 추이와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증가해왔으나 그 후로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07년의 청소년 형법범죄율은 910.6명으로 전년(768.5명)보다 조금 높아졌다.

<표 V-1> 한국의 청소년·성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¹⁾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⁴⁾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²⁾	성인 ³⁾	
1990	558,277	82,446	475,831	14.8	85.2	985.1	1752.5	0.56
1991	585,123	72,413	512,710	12.4	87.6	875.4	1842.8	0.48
1992	607,280	67,553	539,727	11.1	88.9	826.5	1894.7	0.44
1993	740,682	74,465	666,217	10.1	89.9	925.4	2288.2	0.40
1994	706,103	77,476	628,627	11.0	89.0	982.2	2115.6	0.46
1995	773,573	85,461	688,112	11.0	89.0	1106.8	2272.7	0.49
1996	817,105	87,892	729,213	10.8	89.2	1155.1	2371.7	0.49
1997	747,327	96,009	651,318	12.8	87.2	1285.1	2084.4	0.62
1998	850,100	99,607	750,493	11.7	88.3	1358.5	2369.1	0.57
1999	994,060	94,165	899,895	9.5	90.5	1314.5	2796.7	0.47
2000	956,277	95,335	860,942	10.0	90.0	1367.3	2589.0	0.53
2001	944,627	83,572	861,055	8.8	91.2	1232.2	2540.8	0.48
2002	878,627	75,982	802,645	8.6	91.4	1143.4	2328.4	0.49
2003	885,199	67,135	818,064	7.6	92.4	1020.8	2336.8	0.44
2004	847,146	51,298	795,848	6.1	93.9	781.1	2245.9	0.35
2005	794,292	50,652	743,640	6.4	93.6	767.5	2079.5	0.37
2006	786,995	50,846	736,149	6.5	93.5	768.5	2035.9	0.38
2007	779,620	60,426	719,194	7.8	92.2	910.6	1969.0	0.46
증감률 ⁵⁾	39.6	-26.7	51.1	-47.3	8.2	-7.6	12.4	-17.9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0-2007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1990-2007년도.

주: 1) 1964-2001년까지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지에 제시된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합. 2002-2007년에는 형법범죄 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포함되어 있음.

2) 청소년 인구(10세-19세) 10만 명당 재산범죄 검거인원.

3)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재산범죄 검거인원.

4)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5)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0년 범죄율) ÷ 1990년 범죄율) × 100

<표 V-2> 한국의 청소년·성인 약물 범죄 발생 추이¹⁾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⁴⁾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²⁾	성인 ³⁾	
1990	3,868	268	3,600	6.9	93.1	3.2	13.3	0.24
1991	5,488	1,922	3,566	35.0	65.0	23.2	12.8	1.81
1992	3,811	155	3,656	4.1	95.9	1.9	12.8	0.15
1993	6,355	232	6,123	3.7	96.3	2.9	21.0	0.14
1994	7,436	3,481	3,955	46.8	53.2	44.1	13.3	3.32
1995	9,954	4,941	5,013	49.6	50.4	64.0	16.6	3.86
1996	6,954	2,417	4,537	34.8	65.2	31.8	14.8	2.15
1997	4,010	-	4,010	-	100.0	-	12.8	0.00
1998	3,434	-	3,434	-	100.0	-	10.8	0.00
1999	4,831	170	4,661	3.5	96.5	2.4	14.5	0.16
2000	6,724	73	6,651	1.1	98.9	1.0	20.0	0.05
2001	6,096	74	6,022	1.2	98.8	1.1	17.8	0.06
2002	6,468	57	6,411	0.9	99.1	0.9	18.6	0.05
2003	4,441	25	4,416	0.6	99.4	0.4	12.6	0.03
2004	4,594	7	4,587	0.2	99.8	0.1	12.9	0.01
2005	3,888	17	3,871	0.4	99.6	0.3	10.8	0.02
2006	4,501	20	4,481	0.4	99.6	0.3	12.4	0.02
2007	6,080	7	6,073	0.1	99.9	0.1	16.6	0.01
증감률 ⁵⁾	57.2	-97.4	68.7	-98.6	7.3	-96.9	24.8	-95.8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0-2007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1990-2007년도.

주: 1) 1990-1996년도: 아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각물질흡입). 1997-1999년도: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2000-2007년도: 마약법(대마), 마약법(마약),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 청소년 인구(10세-19세) 10만 명당 약물범죄 검거인원.

3)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약물범죄 검거인원

4)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5)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0년 범죄율) ÷ 1990년 범죄율) × 100

이와 함께 검찰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범죄는 1994년

과 1996년 사이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나, 그 후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5년의 경우 전체 약물사범은 9,954명이었는데, 이중 청소년은 49.6%인 4,941명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청소년 약물사범은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전체의 0.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2>).⁴⁵⁾

2) 일본

(1) 형법범죄

일본 경찰청에서는 전체범죄에 대한 통계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범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그 추이와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V-3>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범죄발생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1991년 형법범죄로 검거된 자는 모두 296,158명이었는데,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389,027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이보다 조금 줄어든 384,2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성인 형법범죄자의 추이와 14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추이가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 형법범죄자는 1991년 145,810명에서 2006년 270,699명으로 동 기간 동안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청소년 형법범죄자는 1991년 150,348명에서 2006년 113,55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 형법범죄자는 1998년 157,981명으로 최고조에 이른 후, 1999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2006년 성인 형법범죄자는 1991년보다 85.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청소년 형법범죄자는 24.5%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형법범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되어 왔다.

1991년만 해도 청소년 형법범죄자(50.8%)가 성인 형법범죄자(49.2%)

45) 그러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제시되어 있는 약물범죄의 통계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약물범죄와 약물사범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약물범죄에 관한 대검찰청의 또 다른 자료는 <표 V-2>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많았으나 2006년에 와서는 청소년의 비율이 29.6%로 낮아졌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로써 비교해보면, 여전히 청소년의 범죄율이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1998년의 청소년 형법범죄율과 성인 형법범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었는데, 청소년의 범죄율은 성인의 10.18배나 되었다. 그렇지만 2006년에는 그 차이가 5.71배로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검거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 형법범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범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1991년 1290.3명에서 2003년 1760.3명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최근 3년은 청소년 형법범죄율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2004년에는 1697.1명, 2005년 1601.3명, 2006년 1486.8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청소년 형법범죄율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 V-3> 일본 청소년·성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¹⁾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ratio) 4)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²⁾	성인 ³⁾	
1991	296,158	150,348	145,810	50.8	49.2	1,290.3	158.1	8.16
1992	284,908	134,692	150,216	47.3	52.7	1,188.3	160.7	7.39
1993	297,725	133,979	163,746	45.0	55.0	1,228.5	173.0	7.10
1994	307,965	132,206	175,759	42.9	57.1	1,263.0	183.6	6.88
1995	293,252	127,047	166,205	43.3	56.7	1,258.1	171.4	7.34
1996	295,584	134,224	161,360	45.4	54.6	1,375.5	164.8	8.35
1997	313,573	153,389	160,184	48.9	51.1	1,612.1	162.1	9.94
1998	324,263	157,981	166,282	48.7	51.3	1,698.4	166.9	10.18
1999	315,355	142,326	173,029	45.1	54.9	1,564.5	172.5	9.07
2000	309,649	133,014	176,635	43.0	57.0	1,497.6	175.0	8.56
2001	325,292	139,348	185,944	42.8	57.2	1,601.1	182.9	8.75
2002	347,558	142,594	204,964	41.0	59.0	1,675.6	200.7	8.35
2003	379,602	145,418	234,184	38.3	61.7	1,760.3	228.0	7.72
2004	389,027	135,805	253,222	34.9	65.1	1,697.1	245.4	6.92
2005	386,955	124,522	262,433	32.2	67.8	1,601.3	254.3	6.30
2006	384,250	113,551	270,699	29.6	70.4	1,486.9	260.5	5.71
증감률 ⁵⁾	29.7	-24.5	85.7	-41.7	43.1	15.2	64.8	-

자료: 警察廳. 犯罪統計資料, 1991-2006(www.npa.go.jp/toukei/index.htm).

統計局. 人口推計, 1991-2006(www.stat.go.jp/jinsui..).

주: 1) 전체범죄 중 특별법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임

- 2) 청소년 인구(14세-19세) 10만 명당 형법범죄 검거인원.
- 3)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형법범죄 검거인원.
- 4)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 수
- 5) 증감률 = ((2006년도 범죄율-1991년 범죄율) ÷ 1991년 범죄율) × 100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의 비를 계산하였다(<표 V-4>). 청소년의 경우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의 비는 2000년 0.27에서 2006년 0.16으로 감소되어 왔다. 성인의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의 비 역시 2000년 0.38에서 2005년 0.31로 감소되어 왔으나 2006년에는 0.35로 조금 높아졌다. 그렇지만 폭력범죄의 비의 감소폭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도출된다. 첫째, 청소년 재산범죄의 감소추세보다 폭력범죄의 감소추세가 더 급격하다. 둘째,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만을 놓고 봤을 때, 전체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소년보다 성인범죄가 더 크다. 반면, 전체범죄에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인보다 청소년이 더 크다.

<표 V-4> 일본의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비 추이

(단위: 명, %)		
	청소년 ¹⁾	성인 ²⁾
2000	0.27	0.38
2001	0.24	0.38
2002	0.21	0.35
2003	0.19	0.33
2004	0.16	0.31
2005	0.16	0.31
2006	0.16	0.35

주: 1) 청소년 폭력범죄 ÷ 청소년 재산범죄.
2) 성인 폭력범죄 ÷ 성인 재산범죄.

(2) 폭력범죄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살인의 추이를 보면 2003년까지는 증가해왔으나 2004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표 V-5>). 그러나 2006년 전

체 살인범죄자 숫자는 1,241명으로 1991년의 1,159명보다 7.1%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 살인범죄자의 추이는 성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1991년과 1995년 사이는 대략 75-82명 선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1996년 100명, 1997년 80명, 1998년 116명 등으로 1996년에서 1998년까지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1999년인 110명이던 청소년 살인범죄자의 숫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며 2004년에는 60명으로 낮아졌다. 2005년 71명, 2006년 73명으로 최근에는 재차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1999년을 기점으로 보면 일본의 청소년 살인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살인범죄의 대부분은 성인에 의해 행해진다. 전체 살인범죄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9년으로 8.5%였으나 2006년에는 5.9%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최근 15년간 살인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한 비율은 대략 4-9%대이다.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은 낮은 편이다. 성인의 경우 1.1-1.3명 수준이고, 청소년은 0.7명-1.2명 수준이다.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조금 증가한 뒤 2001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그 후 2004년까지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살인범죄 검거인원 추이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죄율 역시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살인범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에 대한 청소년 살인범죄율의 비는 1991년 0.58에서 2006년 0.85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살인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5> 일본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ratio) ³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1	1,159	79	1,080	6.8	93.2	0.7	1.2	0.58
1992	1,175	82	1,093	7.0	93.0	0.7	1.2	0.62
1993	1,218	75	1,143	6.2	93.8	0.7	1.2	0.57
1994	1,275	77	1,198	6.0	94.0	0.7	1.3	0.59
1995	1,295	78	1,217	6.0	94.0	0.8	1.3	0.62
1996	1,242	100	1,142	8.1	91.9	1.0	1.2	0.88
1997	1,284	80	1,204	6.2	93.8	0.8	1.2	0.69
1998	1,365	116	1,249	8.5	91.5	1.2	1.3	0.99
1999	1,313	113	1,200	8.6	91.4	1.2	1.2	1.04
2000	1,416	110	1,306	7.8	92.2	1.2	1.3	0.96
2001	1,334	102	1,232	7.6	92.4	1.2	1.2	0.97
2002	1,405	85	1,320	6.0	94.0	1.0	1.3	0.77
2003	1,456	95	1,361	6.5	93.5	1.1	1.3	0.87
2004	1,391	60	1,331	4.3	95.7	0.7	1.3	0.58
2005	1,338	71	1,267	5.3	94.7	0.9	1.2	0.74
2006	1,241	73	1,168	5.9	94.1	1.0	1.1	0.85
증감률 ⁴⁾	7.1	-7.6	8.1	-13.2	1.0	42.9	-8.3	-

자료: 警察廳. 犯罪統計資料. 1991-2006(www.npa.go.jp/toukei/index.htm).

統計局. 人口推計, 1991-2006(www.stat.go.jp/jinsui..).

주: 1) 청소년 인구(14세-19세) 10만 명당 살인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살인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6년도 범죄율-2000년 범죄율) ÷ 2000년 범죄율) × 100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강도범죄율의 추이는 강도범죄자의 추이와 유사하다. 1991년 청소년 강도범죄율은 5.9명이었으나 그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22.0명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16.3명으로 다시 급감하여 2006년에는 12.0명으로 낮아졌다. 범죄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강도범죄는 성인보다 청소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7년 청소년 강도범죄율은 성인의 약 12배 규모였다. 그 후 그 간격은 많이 좁혀지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청소년 강도범죄율은 성인의 약 5.13배이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의 시기를 관찰해보면, 일본의 강간범죄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는 변화패턴이 발견된다. 1991년은 1,275명이고 1996년은 1,117명으로 강간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중

청소년 강간범죄자는 333명에서 238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부터 강간범죄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1,512명으로 늘어났고 청소년 강간사범의 숫자 또한 47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일본의 강간범죄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청소년 강간범죄자의 숫자는 120명이며, 이는 1991년보다 64% 감소한 규모이다. 반면 성인 강간범죄자는 1991년 942명에서 2006년 938명으로 0.4% 줄어든 데 불과하다

<표 V-6> 일본 청소년·성인 강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ratio) 3)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1	1,275	333	942	26.1	73.9	2.9	1.0	2.80
1992	1,188	324	864	27.3	72.7	2.9	0.9	3.09
1993	1,162	275	887	23.7	76.3	2.5	0.9	2.69
1994	1,161	311	850	26.8	73.2	3.0	0.9	3.35
1995	1,160	269	891	23.2	76.8	2.7	0.9	2.90
1996	1,117	238	879	21.3	78.7	2.4	0.9	2.72
1997	1,448	412	1,036	28.5	71.5	4.3	1.0	4.13
1998	1,512	470	1,042	31.1	68.9	5.1	1.0	4.83
1999	1,392	439	953	31.5	68.5	4.8	1.0	5.08
2000	1,486	317	1,169	21.3	78.7	3.6	1.2	3.08
2001	1,277	269	1,008	21.1	78.9	3.1	1.0	3.12
2002	1,355	258	1,097	19.0	81.0	3.0	1.1	2.82
2003	1,342	260	1,082	19.4	80.6	3.1	1.1	2.99
2004	1,107	159	948	14.4	85.6	2.0	0.9	2.16
2005	1,074	152	922	14.2	85.8	2.0	0.9	2.19
2006	1,058	120	938	11.3	88.7	1.6	0.9	1.74
증감률 ⁴⁾	-17.0	-64.0	-0.4	-56.7	20.0	-44.8	-10.0	-

자료: 警察廳. 犯罪統計資料. 1991-2006 (www.npa.go.jp/toukei/index.htm).

統計局. 人口推計, 1991-2006 (www.stat.go.jp/jinsui..).

주: 1) 청소년 인구(14세-19세) 10만 명당 강간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강간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6년도 범죄율-2000년 범죄율) ÷ 2000년 범죄율) × 100

강간범죄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 또한 크게 변화되어 왔다. 1991년의 경우 전체 강간범죄자 중 청소년의 비율은 26.1%였으며, 1999년에는 31.5%로 높아지기도 했으나 그 후로는 감소하여 2006년에는 11.3%로 낮

아졌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강간범죄가 성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 강간범죄율은 0.9-1.2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 강간범죄율은 1.6-5.1 선에서 변화되어 왔다. 1998년 청소년 강간범죄율은 5.1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1.6명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청소년 강간범죄율과 성인 강간범죄율의 격차가 최고 5.08배까지 벌어졌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2006년에는 1.74배로 감소하였다.

(3)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유형들이다. 하지만 횡령과 배임은 그 범죄의 성격상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로서는 구성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유형들이다. 전체 횡령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며, 배임의 경우에는 2004년에만 특별하게 3.7%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 연도에는 1% 이하의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절도범죄의 추이를 보자(<표 V-7>). 일본의 절도범죄는 시기별로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증가되어 왔다. 절도범죄자의 숫자를 보면 1991년 169,981명에서 2006년 187,654명으로 약 10.4%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성인 절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절도범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8년 이후로 청소년 절도사범의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그 결과 청소년 절도범죄자 숫자는 1991년 101,543명에서 2006년 62,951명으로 38% 줄어들었다.

청소년 절도범죄자의 감소추세로 인해 전체 절도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9년까지만 해도 절도 범죄의 절반은 청소년에 의한 것이었다. 심지어 1991년에는 절도사범 5명 중 3명은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청소년이 절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2006년에는 33.5%로 낮아졌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 절도범죄율은 대략 1998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감소 → 증가 → 감소의 패

턴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 반면 성인 절도범죄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절도범죄율은 성인의 약 7배 이상이다. 1998년에는 청소년 절도범죄율이 1075.1명, 성인 절도범죄율이 81.6명으로 그 차이는 약 13.2배에 달했었다. 하지만 2006년에는 6.9배 정도로 축소되었다.

<표 V-7> 일본 청소년·성인 절도 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ratio) 3)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1	169,981	101,543	68,438	59.7	40.3	871.5	74.2	11.75
1992	153,444	86,007	67,437	56.1	43.9	758.8	72.2	10.52
1993	162,111	86,035	76,076	53.1	46.9	788.9	80.4	9.82
1994	164,913	84,235	80,678	51.1	48.9	804.7	84.3	9.55
1995	159,453	81,408	78,045	51.1	48.9	806.2	80.5	10.02
1996	162,675	85,577	77,098	52.6	47.4	877.0	78.7	11.14
1997	175,632	98,049	77,583	55.8	44.2	1,030.5	78.5	13.12
1998	181,329	100,010	81,319	55.2	44.8	1,075.1	81.6	13.17
1999	172,147	86,794	85,353	50.4	49.6	954.1	85.1	11.21
2000	162,610	78,157	84,453	48.1	51.9	879.9	83.7	10.52
2001	168,919	81,509	87,410	48.3	51.7	936.6	86.0	10.89
2002	180,725	83,572	97,153	46.2	53.8	982.0	95.1	10.32
2003	191,403	81,892	109,511	42.8	57.2	991.3	106.6	9.30
2004	195,151	76,960	118,191	39.4	60.6	961.8	114.5	8.40
2005	194,119	71,450	122,669	36.8	63.2	918.8	118.9	7.73
2006	187,654	62,951	124,703	33.5	66.5	824.3	120.0	6.87
증감률 ⁴⁾	10.4	-38.0	82.2	-43.9	65.0	-5.4	61.7	-41.5

자료: 警察廳. 犯罪統計資料. 1991-2006(www.npa.go.jp/toukei/index.htm).

統計局. 人口推計, 1991-2006(www.stat.go.jp/jinsui).

주: 1) 청소년 인구(14세-19세) 10만 명당 절도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절도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6년도 범죄율-2000년 범죄율) ÷ 2000년 범죄율) × 100

3) 미국

(1) 전체범죄

미국의 FBI(미연방수사국)에서는 매년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를 발표한다.

FBI에서 발표하는 UCR(Uniform Crime Reporting) 프로그램은 범죄사건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발생양상을 집계한다. Part I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들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준과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적 살인(criminal homicide), 강간(forcible rape), 강도(robbery), 중폭행(aggravated assault), 주거침입 절도(Burglary), 절도(자동차절도 제외)(larceny-theft), 자동차 절도(motor vehicle theft), 방화 등 8개의 범죄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Part II의 범죄로는 단순절도(other/simple assault), 위조(forgery and counterfeiting),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장물(stolen property: buying, receiving, possessing), 손괴(vandalism), 무기소지 및 운반 관련 범죄(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성매매(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성범죄(강간, 성매매 제외), 약물남용(drug abuse violations), 도박(gambling), 가족과 아동에 대한 범죄(offense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음주 혹은 약물복용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음주법 위반(liquor laws), 만취(drunkenness), 공공질서 위반(disorderly conduct), 부랑(vagrancy), 기타 범죄(all other offenses) (교통이반을 제외하여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법률로서 Part I 혹은 Part II의 범죄로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은 모든 위반사건), 의심(suspicion) (범죄를 행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체포되었지만 특정한 위반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석방된 경우), 통행금지 위반(curfew and loitering laws) (18세 미만의 자에게만 해당) 도주(runaways) (18세 미만의 자에게만 해당) 등이다. 이렇게 총 29개의 범죄사건들을 통해 미국은 전체 범죄추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FBI, 2007).

<표 V-8>은 이렇게 작성된 미국의 전체 범죄의 발생실태를 검거자 정보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Part I과 Part II의 범죄유형들을 모두 합산한 전체 범죄의 추이를 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 범죄와 청소년 범죄⁴⁶⁾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체 범죄

46) 청소년 범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집계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보면, 1996년과 1997년 28.2%로 가장 높았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7년에는 25.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전체 범죄 4건 중 1건은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표 V-8>의 전체 범죄 중 ‘통행금지 위반’과 ‘도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전체 범죄 중 청소년의 비율은 좀 더 낮아져 2007년에는 23.7%로 나타나고 있다.

<표 V-8> 미국의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¹⁾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합계	청소년	청소년 ²⁾ (비행제외)	성인	청소년	청소년 ²⁾ (비행제외)	성인
1995	11,416,346	3,075,607	(2,770,965)	8,340,739	26.9	(24.9)	73.1
1996	11,093,211	3,129,709	(2,845,432)	7,963,502	28.2	(26.3)	71.8
1997	10,544,624	2,976,378	(2,711,708)	7,568,246	28.2	(26.4)	71.8
1998	10,295,129	2,876,896	(2,623,514)	7,418,233	27.9	(26.1)	72.1
1999	9,141,201	2,510,050	(2,299,502)	6,631,151	27.5	(25.7)	72.5
2000	9,116,967	2,491,259	(2,291,938)	6,625,708	27.3	(25.7)	72.7
2001	9,324,953	2,484,625	(2,292,756)	6,840,328	26.6	(25.1)	73.4
2002	9,819,501	2,605,279	(2,411,775)	7,214,222	26.5	(25.1)	73.5
2003	9,581,423	2,505,321	(2,322,873)	7,076,102	26.1	(24.7)	73.9
2004	9,966,877	2,532,719	(2,348,594)	7,434,158	25.4	(24.0)	74.6
2005	10,369,819	2,551,699	(2,366,423)	7,818,120	24.6	(23.2)	75.4
2006	10,472,432	2,616,631	(2,418,444)	7,855,801	25.0	(23.5)	75.0
2007	10,698,310	2,678,117	(2,485,843)	8,020,193	25.0	(23.7)	75.0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주 1) 피검거자를 기준으로 한 발생건수임. 전체범죄에 포함된 유형으로는 살인, 강간, 중폭행, 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방화, 기타 폭행, 위조, 사기, 횡령, 장물, 손괴, 무기운반소지 등, 성매매, 성범죄(강간과 성매매 제외), 약물남용위반, 도박,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범죄(다른 가족구성원의 신체, 정신, 경제적 복지 혹은 도덕을 위협하는 어떤 가족구성원(혹은 법적 후견인)의 불법적이지 않은 비폭력적 행위로서 폭행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유형), 음주/약물 운전, 음주법위반, 만취(정신적 능력이나 신체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음하는 행위로서 음주/약물운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이전에는 20세 미만을 청소년의 상한 연령으로 상정하였다.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하지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에 준하여 소년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에 대해 ‘연장소년’(young adul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청소년의 상한연령을 20세 미만으로 통일하였다.

제외), 공중질서위반(공중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공공도덕을 침해하는 행위), 부랑행위, 기타범죄(교통관련범죄 제외), 의심(특정한 범죄로 체포된 것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제재 없이 석방된 경우), 야간외출금지/배회위반(18세 미만), 도주(18세 미만)(www.fbi.gov/ucr). 2) 위의 29개 범죄유형 중 야간외출금지/배회위반, 도주 제외.

그러나 단순한 범죄발생 건수나 검거건수는 인구규모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되지 못한다. 인구수를 통제한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표이다. <표 V-9>는 3세 이상 전체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율(범죄검거인원)의 추이를 청소년(3세 이상 20세 미만)과 성인(2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범죄율의 양상 또한 범죄발생건수(검거건수)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전체 범죄율은 1996년 4724.9명에서 2001년 3596.4명으로 낮아지다가 2002년 3770.5명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36.2명으로 높아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청소년 범죄율이 성인 범죄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과 1997년의 성인 범죄율에 대한 청소년 범죄율의 비는 1.14였으며, 2007년에는 1.05로 조금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범죄율은 성인 범죄율보다 더 높다.

<표 V-9> 인구 10만 명당 미국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¹⁾

(단위: 명, %)							
	검거인원		인구수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⁴⁾		청소년 비 ⁵⁾
	청소년	성인	청소년 ²⁾	성인 ³⁾	청소년	성인	
1995	3,075,607	8,340,739	65,125,928	189,632,670	4722.6	4398.4	1.07
1996	3,129,709	7,963,502	66,238,096	191,770,213	4724.9	4152.6	1.14
1997	2,976,378	7,568,246	67,167,039	194,161,834	4431.3	3897.9	1.14
1998	2,876,896	7,418,233	68,015,846	196,533,940	4229.7	3774.5	1.12
1999	2,510,050	6,631,151	68,676,512	199,000,198	3654.9	3332.2	1.10
2000	2,491,259	6,625,708	69,087,361	201,648,623	3606.0	3285.8	1.10
2001	2,484,625	6,840,328	69,085,858	204,329,834	3596.4	3347.7	1.07
2002	2,605,279	7,214,222	69,097,096	206,905,058	3770.5	3486.7	1.08
2003	2,505,321	7,076,102	69,129,105	209,259,958	3624.1	3381.5	1.07
2004	2,532,719	7,434,158	69,358,584	211,712,375	3651.6	3511.4	1.04
2005	2,551,699	7,818,120	69,455,361	214,205,640	3673.9	3649.8	1.01
2006	2,616,631	7,855,801	69,603,825	216,767,685	3759.3	3624.1	1.04
2007	2,678,117	8,020,193	69,812,103	219,259,405	3836.2	3657.9	1.05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주: 1) <표 V-8>의 29개 범죄유형

2) 각 년도 7월 기준 3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 청소년 추계 인구

3) 각 년도 7월 기준 20세 이상 성인 추계인구.

4)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검거)건수.

5) 청소년비 = 청소년 범죄율 ÷ 성인 범죄율

(2) 폭력범죄

폭력범죄 가운데 살인범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살인범죄는 199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표 V-10>). 청소년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2007년의 살인범죄 발생량은 1995년에 비해 약 39.6%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살인범죄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995년 30.6%였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3-2004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24.1%로 다소 높아졌다. 1995년에서 2007년 사이의 12년 동안 살인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 감소하였으나 성인의 비중은 9.4% 증가하였다.

인구수를 통제한 살인범죄율의 추이를 보면,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살인범죄율이 더 높았으나 그 후 2006년까지는 성인 살인범죄율이 청소년보다 더 높게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에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이 3.5명으로 동일하다. 성인의 경우 2000년 이후로 살인범죄율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2003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간의 살인범죄율의 변동폭을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5년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7.8명이었으나 2007년의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이보다 55.1%로 감소한 규모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 살인범죄율의 감소폭은 42.6%였다.

<표 V-10> 미국의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5	16,701	5,105	11,596	30.6	69.4	7.8	6.1	1.28
1996	14,447	4,351	10,096	30.1	69.9	6.6	5.3	1.25
1997	12,764	3,705	9,059	29.0	71.0	5.5	4.7	1.17
1998	12,335	3,338	8,997	27.1	72.9	4.9	4.6	1.07
1999	9,727	2,344	7,383	24.1	75.9	3.4	3.7	0.92
2000	8,709	2,051	6,658	23.6	76.4	3.0	3.3	0.91
2001	9,426	2,182	7,244	23.1	76.9	3.2	3.5	0.91
2002	10,107	2,217	7,890	21.9	78.1	3.2	3.8	0.84
2003	9,119	1,905	7,214	20.9	79.1	2.8	3.4	0.82
2004	9,554	1,997	7,557	20.9	79.1	2.9	3.6	0.81
2005	10,335	2,240	8,095	21.7	78.3	3.2	3.8	0.84
2006	9,815	2,272	7,543	23.1	76.9	3.3	3.5	0.94
2007	10,082	2,434	7,648	24.1	75.9	3.5	3.5	1.00
증감률 ³⁾	-39.6	-52.3	-34.0	-21.2	9.4	-55.1	-42.6	-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주: 1) 청소년 인구(3세-19세) 10만 명당 살인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1세 이상) 10만 명당 살인범죄 검거인원

3)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5년 범죄율)÷1995년 범죄율)×100

(3) 약물범죄

미국의 약물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다. 약물사범의 추이를 보면 1995년 1,144,228명에서 1999년 1,007,002명으로 감소한 뒤, 그 이듬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1,386,394명에 이르렀다. 지난 12년 사이에 약물사범은 21.2%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 약물사범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청소년 약물사범은 1995년 273,395이었으나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에는 259,918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0년 274,066명으로 늘어난 뒤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316,081명의 청소년이 약물범죄로 검거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약물범죄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중도 변화가 있었다. 1995년에서 2001년까지를 보면 23.9%-26.3%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후로는 대략 22%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약물 사범 5명

중 1명은 청소년임을 의미한다.

<표 V-11> 미국의 청소년·성인 약물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5	1,144,228	273,395	870,833	23.9	76.1	419.8	459.2	0.91
1996	1,128,647	291,600	837,047	25.8	74.2	440.2	436.5	1.01
1997	1,102,335	289,590	812,745	26.3	73.7	431.1	418.6	1.03
1998	1,108,788	287,687	821,101	25.9	74.1	423.0	417.8	1.01
1999	1,007,002	259,918	747,084	25.8	74.2	378.5	375.4	1.01
2000	1,042,334	274,066	768,268	26.3	73.7	396.7	381.0	1.04
2001	1,091,240	281,625	809,615	25.8	74.2	407.6	396.2	1.03
2002	1,103,017	276,572	826,445	25.1	74.9	400.3	399.4	1.00
2003	1,172,222	285,136	887,086	24.3	75.7	412.5	423.9	0.97
2004	1,246,105	291,790	954,315	23.4	76.6	420.7	450.8	0.93
2005	1,357,841	301,224	1,056,617	22.2	77.8	433.7	493.3	0.88
2006	1,379,887	307,105	1,072,782	22.3	77.7	441.2	494.9	0.89
2007	1,386,394	316,081	1,070,313	22.8	77.2	452.8	488.1	0.93
증감율 ³⁾	21.2	15.6	22.9	-4.6	1.4	7.9	6.3	-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주: 1) 청소년 인구(3세-19세) 10만 명당 약물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1세 이상) 10만 명당 약물범죄 검거인원

3)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5년 범죄율)÷1995년 범죄율)×100

4) 스웨덴

(1) 전체 범죄

스웨덴의 범죄예방위원회(Brä)에서는 매년 공식적으로 범죄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검거자(15세 이상) 통계를 중심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스웨덴의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표 V-12>). 15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 범죄발생 양상도 이와 동일하다. 스웨덴의 청소년 범죄자 추이를 보면, 1995년 56,152명에서 1999년 30,62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38,083명으로 증가한 다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 2007년에는 50,633명

으로 늘어났다.

<표 V-12> 스웨덴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 비 (ratio) ³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5	267,504	56,152	211,352	21.0	79.0	11080.8	3170.9	3.49
1996	237,208	45,865	191,343	19.3	80.7	9109.7	2864.6	3.18
1997	250,210	43,685	206,525	17.5	82.5	8691.4	3086.8	2.82
1998	236,547	41,904	194,643	17.7	82.3	8314.0	2904.3	2.86
1999	203,414	30,624	172,790	15.1	84.9	6067.9	2572.4	2.36
2000	222,061	38,083	183,978	17.1	82.9	7488.1	2728.3	2.74
2001	235,496	40,293	195,203	17.1	82.9	7762.7	2883.4	2.69
2002	245,700	41,494	204,206	16.9	83.1	7796.3	3004.5	2.59
2003	253,475	40,275	213,200	15.9	84.1	7279.1	3124.6	2.33
2004	265,957	43,238	222,719	16.3	83.7	7523.6	3249.9	2.32
2005	271,911	45,734	226,177	16.8	83.2	7643.0	3283.4	2.33
2006	290,008	48,173	241,835	16.6	83.4	7773.3	3482.7	2.23
2007	293,723	50,633	243,090	17.2	82.8	7948.3	3470.6	2.29
증감률 ⁴⁾	9.8	-9.8	15.0	-17.9	4.7	-28.3	9.5	-2.99

자료: Brottsförebyggande rådet(Brå). Kriminalstatistik. 1995-2007 (<http://www.bra.se>).
SCB STATISTICS SWEDEN; Population Statistics, 1995-2007.

주: 1) 청소년 인구(15세-19세) 10만 명당 전체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전체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5년 범죄율) ÷ 1995년 범죄율) × 100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1.0%에서 1999년 15.1%로 감소되었으나, 2000년 17.1%로 높아진 다음, 그 수준이 2007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2007년 전체범죄자 중 청소년의 비율은 17.2%이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피검거인원)의 추이 또한 범죄자 추이와 유사하다. 청소년의 범죄율과 성인의 범죄율은 모두 200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율을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보다 훨씬 심각하다. 2007년 청소년 범죄율(7948.3명)은 성인 범죄율(3470.6명)의 약 2.29배의 규모이다. 한편 성인의 범죄율에 대한 청소년 범죄율의 비는 1995년 3.49에서 2007년 2.29로 감소했다. 이것은 청소년의 범죄율과 성인의 범죄율 간의 차이는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폭력범죄

폭력범죄 가운데 살인범죄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살인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살인범죄자의 추이를 보면, 1995년 444명에서 1999년 33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44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3년까지 계속 상승하여 살인범죄자가 500명에 이르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428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2년간의 추이를 보면 2006년 538명, 2007년 553명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살인범죄 역시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 살인범죄자는 1995년 54명에서 1999년 3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후로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늘어가고 있다. 2007년 청소년 범죄자는 70명으로 1995년보다 29.6% 증가했다. 전체 살인범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17%이다. 2004년에는 17.1%까지 높아졌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년 청소년 살인범죄자의 구성 비율은 12.7%이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의 추이도 살인범죄자 추이와 유사하게 변화되어 왔다.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1995년 10.7명에서 1999년 6.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후 급격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2004년 16.4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11.0명으로 낮아졌다.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성인보다 약 1.6-2.6배의 크기를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그 차이가 많이 줄고 있다.

<표 V-13> 스웨덴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비 (ratio) ³⁾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5	444	54	390	12.2	87.8	10.7	5.9	1.82
1996	351	44	307	12.5	87.5	8.7	4.6	1.90
1997	336	46	290	13.7	86.3	9.2	4.3	2.11
1998	344	40	304	11.6	88.4	7.9	4.5	1.75
1999	333	33	300	9.9	90.1	6.5	4.5	1.46
2000	447	55	392	12.3	87.7	10.8	5.8	1.86
2001	476	80	396	16.8	83.2	15.4	5.8	2.63
2002	507	64	443	12.6	87.4	12.0	6.5	1.84
2003	567	67	500	11.8	88.2	12.1	7.3	1.65
2004	549	94	455	17.1	82.9	16.4	6.6	2.46
2005	428	62	366	14.5	85.5	10.4	5.3	1.95
2006	538	67	471	12.5	87.5	10.8	6.8	1.59
2007	553	70	483	12.7	87.3	11.0	6.9	1.59
증감률 ⁴⁾	24.5	29.6	23.8	4.1	-0.6	3.1	17.9	0.17

자료: Brottsförebyggande rådet(Brå). Kriminalstatistik. 1995-2007 (<http://www.bra.se>).
SCB STATISTICS SWEDEN; Population Statistics, 1995-2007. 살인
(Fullbordat och dråp samt misshandel med dödlig utgång (1, 2, 5, 6 §))

주: 1) 청소년 인구(15세-19세) 10만 명당 살인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살인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5년 범죄율) ÷ 1995년 범죄율) × 100

(3) 재산범죄

재산범죄 가운데 절도범죄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절도사범의 추이를 보면 1995년 75,249명에서 1999년 49,503명으로 줄어든 뒤, 2004년 59,715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후 다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995년보다 31.1% 감소한 51,866명으로 그 규모가 작아졌다. 청소년 절도사범의 추이도 유사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1995년 청소년 절도사범의 숫자는 25,280명으로 전체의 33.6%였으나 1999년에는 11,565명으로 줄어들었고 구성비율 또한 23.4%로 낮아졌다. 2000년 청소년 절도범죄자는 13,102명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3,915명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로는 13,000여 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청소년 절도범죄자는 전체의 2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절도범죄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 절도범죄율은 1995년 4988.7명에서 2007년 2042.0명으로 59.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인 절도범죄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고 2004년 이후로는 그 규모 차이가 3.5배 정도이다.

<표 V-14> 스웨덴 청소년·성인 절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비 (ratio) ³⁾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1995	75,249	25,280	49,969	33.6	66.4	4988.7	749.7	6.65
1996	66,046	19,824	46,222	30.0	70.0	3937.5	692.0	5.69
1997	69,585	18,768	50,817	27.0	73.0	3734.0	759.5	4.92
1998	64,669	17,613	47,056	27.2	72.8	3494.5	702.1	4.98
1999	49,503	11,565	37,938	23.4	76.6	2291.5	564.8	4.06
2000	55,244	13,102	42,142	23.7	76.3	2576.2	624.9	4.12
2001	55,198	13,321	41,877	24.1	75.9	2566.4	618.6	4.15
2002	56,489	13,226	43,263	23.4	76.6	2485.0	636.5	3.90
2003	58,234	12,586	45,648	21.6	78.4	2274.7	669.0	3.40
2004	59,715	13,915	45,800	23.3	76.7	2421.3	668.3	3.62
2005	55,497	12,965	42,532	23.4	76.6	2166.7	617.4	3.51
2006	54,656	13,008	41,648	23.8	76.2	2099.0	599.8	3.50
2007	51,866	13,008	38,858	25.1	74.9	2042.0	554.8	3.68
증감률 ⁴⁾	-31.1	-48.5	-22.2	-25.3	12.8	-59.1	-26.0	2.27

자료: Brottsförebyggande rådet(Brå). Kriminalstatistik. 1995-2007 (<http://www.bra.se>).

SCB STATISTICS SWEDEN; Population Statistics, 1995-2007.

* 절도= 차량절도(Tillgrepp av motordrivet forskaffningsmedel (7 §)), 엔진 없는 운송수단 절취(Tillgrepp av icke motordrivet forskaffnings medel (1, 2, 4 §)), 침입 절도(Inbrottsstöld, inte av skjutvapen (1, 2, 4 §)), 총기절도(Stöld (även inbrottsstöld) av skjutvapen ammunition och sprängämnen) (1, 2, 4 §)), 기타절도/상점절도(Övrig stöld och snatteri(1, 2, 4 §))의 합.

주: 1) 청소년 인구(15세-19세) 10만 명당 절도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절도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5년 범죄율) ÷ 1995년 범죄율) × 100

(4) 약물범죄

스웨덴의 약물범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1995년 전체 약물사범은 23,633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50,497명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청소년 약물범죄는 양적인 측면에서 성인보다 더욱 크게 팽창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7년까지 성인 약물사범은 22,061명에서 44,829명으로 1.0배 증가

했지만, 같은 기간 청소년 약물사범은 1,572명에서 5,668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구성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 약물범죄자 중 청소년의 비율은 대략 11-13% 내외이다. 2007년의 경우 청소년 약물사범은 전체의 11.2%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약물범죄율은 1995년 310.2명에서 2007년 889.8명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 약물범죄율은 성인의 약 1.4-1.9배를 유지하고 있다.

<표 V-15> 스웨덴 청소년·성인 약물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검거인원			구성비		인구(10만명) 당 검거인원		청소년비 (ratio) ³⁾
	합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¹⁾	성인 ²⁾	
95	23,633	1,572	22,061	6.7	93.3	310.2	331.0	0.94
96	19,960	2,023	17,937	10.1	89.9	401.8	268.5	1.50
97	23,295	2,816	20,479	12.1	87.9	560.3	306.1	1.83
98	22,884	2,614	20,270	11.4	88.6	518.6	302.5	1.71
99	21,719	2,289	19,430	10.5	89.5	453.5	289.3	1.57
00	22,973	2,640	20,333	11.5	88.5	519.1	301.5	1.72
01	24,119	3,022	21,097	12.5	87.5	582.2	311.6	1.87
02	27,805	3,583	24,222	12.9	87.1	673.2	356.4	1.89
03	31,533	3,812	27,721	12.1	87.9	689.0	406.3	1.70
04	33,457	3,963	29,494	11.8	88.2	689.6	430.4	1.60
05	38,850	5,067	33,783	13.0	87.0	846.8	490.4	1.73
06	52,989	6,480	46,509	12.2	87.8	1045.6	669.8	1.56
07	50,497	5,668	44,829	11.2	88.8	889.8	640.0	1.39
증감률 ⁴⁾	113.7	260.6	103.2	68.7	-4.9	186.8	93.4	2.00

자료: Brottsförebyggande rådet(Brå). Kriminalstatistik. 1995-2007 (<http://www.bra.se>). SCB STATISTICS SWEDEN; Population Statistics, 1995-2007.

약물범죄(Brott mot narkotikastrafflagen) = 마약운반 등(Överlåtelse (1-3a §)), 마약소지(Innehav(1-3 §)), 마약사용(Eget bruk (1-3 §)), 소유 및 개인적 사용(Innehav och eget bruk (1-3 §)), 청원(Framställnin (1-3 §))

주: 1) 청소년 인구(15세-19세) 10만 명당 약물범죄 검거인원.

2) 성인 인구(20세 이상) 10만 명당 약물범죄 검거인원.

3) 청소년비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범죄건수 ÷ 인구 10만 명당 성인 범죄건수

4) 증감률 = ((2007년도 범죄율-1995년 범죄율) ÷ 1995년 범죄율) × 100

5) 독일

(1) 전체범죄

독일의 연방경찰국(Bundeskriminalamt: BKA)에서는 매년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는 독일 연방 전체의 범죄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독일인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체코인 등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상당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아래 제시된 연방경찰국의 범죄통계들은 외국인 범죄가 포함된 것이다. 그 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전체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V-16>). 독일의 전체 범죄자 수 추이를 보면, 1993년 2,051,775명에서 2007년 2,294,88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1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는 1998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 범죄자(21세 미만)는 1993년 88,276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년 152,774명으로 증가했으나 1999년 150,626명으로 감소한 뒤, 2007년 102,012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 범죄자는 연령에 따라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17세의 청소년, 18-20세의 연장소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세 미만 청소년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30% 수준이다. 1993년 21세 미만 청소년에 의한 범죄는 전체의 24.6%를 나타냈으나 그 후 점차 증가하여 2001년에는 전체의 30.2%로 높아졌다. 하지만 그 후로는 감소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27.1%로 낮아졌다. 14-17세의 구성 비율과 18-20세의 구성 비율은 비슷하지만 14-17세가 조금 더 높다. 2007년의 경우 14-17세 청소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12.1%, 18-20세 연장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10.6%이며,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율은 4.4%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6> 독일 청소년·성인 전체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단위: 명, %)

	전체	14세 미만	비율	14-17세	비율	18-20세	비율	청소년 21세미만	비율	성인 21세이상	비율
1993	2,051,775	88,276	4.3	207,944	10.1	208,040	10.1	504,260	24.6	1,547,515	75.4
1994	2,037,729	100,077	4.9	223,551	11.0	196,437	9.6	520,065	25.5	1,517,664	74.5
1995	2,118,104	116,619	5.5	254,329	12.0	207,136	9.8	578,084	27.3	1,540,020	72.7
1996	2,213,293	131,010	5.9	277,479	12.5	219,928	9.9	628,417	28.4	1,584,876	71.6
1997	2,273,560	144,260	6.3	292,518	12.9	226,279	10.0	663,057	29.2	1,610,503	70.8
1998	2,319,895	152,774	6.6	302,413	13.0	237,073	10.2	692,260	29.8	1,627,635	70.2
1999	2,263,140	150,626	6.7	296,781	13.1	240,109	10.6	687,516	30.4	1,575,624	69.6
2000	2,286,372	145,834	6.4	294,467	12.9	247,586	10.8	687,887	30.1	1,598,485	69.9
2001	2,280,611	143,045	6.3	298,983	13.1	246,713	10.8	688,741	30.2	1,591,870	69.8
2002	2,326,149	134,545	5.8	297,881	12.8	245,761	10.6	678,187	29.2	1,647,962	70.8
2003	2,355,161	126,358	5.4	293,907	12.5	247,456	10.5	667,721	28.4	1,687,440	71.6
2004	2,384,268	115,770	4.9	297,087	12.5	250,534	10.5	663,391	27.8	1,720,877	72.2
2005	2,313,136	103,124	4.5	284,450	12.3	247,450	10.7	635,024	27.5	1,678,112	72.5
2006	2,283,127	100,487	4.4	278,447	12.2	241,824	10.6	620,758	27.2	1,662,369	72.8
2007	2,294,883	102,012	4.4	277,447	12.1	242,878	10.6	622,337	27.1	1,672,546	72.9

자료: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PKS-Zeitreihen für den Zeitraum, 1993-2007) (<http://www.bka.de>).

주: 외국인 범죄가 포함된 수치임

(2) 폭력범죄

독일의 살인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살인범죄자의 양적 추이를 보면, 1993년 4,038명에서 2007년 2,603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21세 미만) 범죄자 역시 1993년 786명에서 2005년 234명으로 감소해왔다. 하지만 2006년 481명, 2007년 552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살인범죄율도 유사한 변화를 보여 왔다.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1993년 4.1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1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그 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3.0명으로 높아졌다. 전체 살인범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7-21% 정도이다. 2007년에는 그 구성 비율이 21.2%로 조금 상승했다. 청소년 연령별 구성 비율의 분포를 보면, 18-20세 연장소년 살인범죄자가 10-13%이고, 14-17세 청소년이 5-8% 정도이며, 14세 미만 아동들의 비율은 0.5% 이내이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분석기간 내내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성인보다 더 높게 유지되어 왔다. 2007년의 경우 청소년 살인범죄율은 성인의 1.6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V-17> 청소년·성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단위: 명, %)

	전체	14세 미만	비율	14-17세	비율	18-20세	비율	21세 미만	비율	21세 이상	비율
1993	4,038	10	0.2	234	5.8	542	13.4	786	19.5	3,252	80.5
1994	3,888	12	0.3	203	5.2	496	12.8	711	18.3	3,177	81.7
1995	4,019	13	0.3	247	6.1	442	11.0	702	17.5	3,317	82.5
1996	3,767	9	0.2	202	5.4	451	12.0	662	17.6	3,105	82.4
1997	3,544	11	0.3	223	6.3	370	10.4	604	17.0	2,940	83.0
1998	3,054	11	0.4	218	7.1	323	10.6	552	18.1	2,502	81.9
1999	2,949	11	0.4	205	7.0	302	10.2	518	17.6	2,431	82.4
2000	2,929	10	0.3	190	6.5	357	12.2	557	19.0	2,372	81.0
2001	2,632	10	0.4	164	6.2	341	13.0	515	19.6	2,117	80.4
2002	2,781	15	0.5	171	6.1	311	11.2	497	17.9	2,284	82.1
2003	2,681	10	0.4	169	6.3	292	10.9	471	17.6	2,210	82.4
2004	2,616	6	0.2	167	6.4	268	10.2	441	16.9	2,175	83.1
2005	2,576	12	0.5	164	6.4	258	10.0	434	16.8	2,142	83.2
2006	2,599	4	0.2	156	6.0	321	12.4	481	18.5	2,118	81.5
2007	2,603	11	0.4	202	7.8	339	13.0	552	21.2	2,051	78.8

자료: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PKS-Zeitreihen für den Zeitraum, 1993-2007) (<http://www.bka.de>). 살인범죄: 고의에 의한 살인(Mord § 211 StGB darunter)과 교살(Alle übrigen (vorsätzlichen) Tötungen §§ 212, 213, 216)의 합

(3) 재산범죄

독일의 절도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절도사범의 추이를 보면, 1993년 829,597명에서 2007년 580,018명으로 30% 가량 감소하였다. 청소년 절도사범의 경우 1993년 286,718명에서 1997년 351,306명으로 증가했으나 1998년 350,779명으로 감소한 뒤, 계속 줄어들어 2007년에는 229,149명으로 낮아졌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절도범죄율은 1993년 2860.2명에서 1997년 2235.6명으로 높아졌으나 2007년에는 2216.8명으로 낮아졌다. 반면 성인 절도범죄율은 1993년 935.3명에서 2007년 591.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왔다.

전체 절도사범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4.0%까지 증가했으나 그 후로는 감소하여 2007년에는 39.5%를 나타냈다. 청소년 절도범죄자 중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낮지 않다. 14세 미만 아동 절도범의 비율은 1999년 13.6%까지 상승했으나 2007년에는 9.5%로 낮아졌다. 14-17세의 구성 비율은 1993년 15.3%에서 2007년 19.7%로 높아졌다.

다. 특히 1995년 이후로는 19-20%를 유지하고 있다. 18-20세의 구성 비율은 1993년 이후 내내 10-11%에서 안정화 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독일 전체 범죄 중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4%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1993년 40.4%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1993년 14세 미만의 전체 범죄 중 72.6%가 절도였으나 2007년에는 54.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14-17세 청소년의 절도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2%에서 41.3%로 감소했고, 18-20세 연장소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5.9%에서 24.4%로 낮아졌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 중 절도범죄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전체 성인범죄 중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93년 35.1%에서 21.0%로 감소하였다. 때문에 청소년 절도범죄율은 여전히 성인의 3.6배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⁴⁷⁾

47) 이와 대조적으로 사기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사기사범의 추이를 보면, 1993년 294,013명에서 2007년 459,970명으로 1배나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청소년 사기범죄자 역시 44,884명에서 82,694명으로 84.2%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사기범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1993년 451.5명에서 2007년 806.0명으로 높아졌다. 성인 사기범죄율과 비교해보면 청소년 사기범죄율은 약 1.2-1.3배의 규모이다. 전체 사기범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0% 정도이다. 2000년 이후로는 19-20%대이다. 사기범죄는 독일의 전체 범죄 중 15-20% 정도를 차지한다. 청소년 범죄 중에선 8-14%이다. 1995년 이후로 전체 청소년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8%에서 13%로 증가해왔다.

<표 V-18> 청소년·성인 절도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단위: 명, %)

	전체	14세 미만	비율	14-17세	비율	18-20세	비율	21세 미만	비율	21세 이상	비율
1993	829,597	64,058	7.7	127,233	15.3	95,427	11.5	286,718	34.6	542,879	65.4
1994	772,757	71,875	9.3	135,688	17.6	82,715	10.7	290,278	37.6	482,479	62.4
1995	795,629	83,839	10.5	151,749	19.1	84,653	10.6	320,241	40.3	475,388	59.7
1996	828,515	94,421	11.4	162,240	19.6	87,389	10.5	344,050	41.5	484,465	58.5
1997	828,945	102,137	12.3	163,525	19.7	85,644	10.3	351,306	42.4	477,639	57.6
1998	809,771	108,178	13.4	160,461	19.8	82,140	10.1	350,779	43.3	458,992	56.7
1999	747,344	101,864	13.6	149,359	20.0	77,822	10.4	329,045	44.0	418,299	56.0
2000	714,985	95,115	13.3	139,155	19.5	74,956	10.5	309,226	43.2	405,759	56.8
2001	699,404	90,106	12.9	135,686	19.4	71,742	10.3	297,534	42.5	401,870	57.5
2002	713,910	84,293	11.8	136,138	19.1	72,331	10.1	292,762	41.0	421,148	59.0
2003	693,931	77,660	11.2	130,369	18.8	69,215	10.0	277,244	40.0	416,687	60.0
2004	677,944	68,013	10.0	128,481	19.0	67,187	9.9	263,681	38.9	414,263	61.1
2005	621,410	59,457	9.6	120,409	19.4	62,690	10.1	242,556	39.0	378,854	61.0
2006	594,192	57,994	9.8	118,200	19.9	59,788	10.1	235,982	39.7	358,210	60.3
2007	580,018	55,342	9.5	114,534	19.7	59,273	10.2	229,149	39.5	350,869	60.5

자료: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PKS-Zeitreihen für den Zeitraum, 1993-2007) (<http://www.bka.de>). 절도: 비공격적 상황에서의 절도(Diebstahl ohne erschwerende Umstände § § 242, 247, 248a-c)와 공격적 상황에서의 절도(Diebstahl unter erschwerenden Umständen § § 243-244a)의 합

(4) 약물범죄

약물범죄는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약물사범의 추이를 보면, 1993년 67,777명에서 2007년 163,924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청소년 약물사범 역시 1993년 16,135명에서 2004년 79,100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후 2005년 69,420명, 2006년 58,414명, 2007년 50,80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7년 청소년 약물사범의 숫자는 1993년보다 2.1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약물범죄율도 약물사범의 추이와 유사하게 변화되어 왔다. 1993년 청소년 약물범죄율은 243.4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869.3명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07년에는 다시 576.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인 약물범죄율은 1993년 122.4명에서 2007년 24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청소년 약물범죄율은 성인의 4배 규모였으나 2007년에는 2.34배 수준으로 간격이 줄어들었다.

2007년 전체 약물사범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1.0%이다. 2001년 청소년 약물사범은 전체 약물사범의 46.4%를 차지했었는데, 그 후로 약물범죄에서의 청소년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 연령집단 중 약물범죄가 심각한 연령층은 18-20세 연장소년 집단이다. 2007년 전체 약물사범 중 18-20세가 차지한 비율은 20.8%였으며, 14-17세는 9.8%, 14세 미만은 0.3%였다.

<표 V-19> 청소년·성인 약물범죄 발생 추이(독일 내)

(단위: 명, %)

	전체	14세 미만	비율	14-17세	비율	18-20세	비율	21세 미만	비율	21세 이상	비율
1993	67,777	90	0.1	4,718	7.0	11,327	16.7	16,135	23.8	51,642	76.2
1994	75,164	143	0.2	6,643	8.8	14,522	19.3	21,308	28.3	53,856	71.7
1995	89,666	305	0.3	10,621	11.8	19,627	21.9	30,553	34.1	59,113	65.9
1996	108,318	470	0.4	15,042	13.9	26,059	24.1	41,571	38.4	66,747	61.6
1997	120,688	671	0.6	18,488	15.3	29,845	24.7	49,004	40.6	71,684	59.4
1998	135,608	959	0.7	24,260	17.9	34,242	25.3	59,461	43.8	76,147	56.2
1999	143,565	1,096	0.8	26,169	18.2	37,437	26.1	64,702	45.1	78,863	54.9
2000	159,700	1,250	0.8	28,878	18.1	43,537	27.3	73,665	46.1	86,035	53.9
2001	160,573	1,642	1.0	29,553	18.4	43,235	26.9	74,430	46.4	86,143	53.6
2002	163,608	1,621	1.0	30,101	18.4	41,983	25.7	73,705	45.0	89,903	55.0
2003	170,074	1,575	0.9	30,334	17.8	42,751	25.1	74,660	43.9	95,414	56.1
2004	185,508	1,597	0.9	32,564	17.6	44,939	24.2	79,100	42.6	106,408	57.4
2005	178,646	1,068	0.6	26,766	15.0	41,586	23.3	69,420	38.9	109,226	61.1
2006	167,553	678	0.4	20,456	12.2	37,280	22.2	58,414	34.9	109,139	65.1
2007	163,924	528	0.3	16,101	9.8	34,178	20.8	50,807	31.0	113,117	69.0

자료: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PKS-Zeitreihen für den Zeitraum, 1993-2007) (<http://www.bka.de>). 약물범죄: Rauschgiftdelikte (다른 범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2. 교정프로그램 및 정책

1) 한국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은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는 소년법에 규정하고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의하

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나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한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할 결과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나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검사는 송치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년에게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한다. 또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할 수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며, 벌금, 구류,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이외의 사건 가운데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년법원(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요컨대 한국은 소년범의 처리에 있어 검사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년에 대해서는 ① 보호자 또는 자원보호자에게 감호위탁, ②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③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④ 단기보호관찰(1년 이내), ⑤ 장기보호관찰, ⑥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⑦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등 위탁, ⑧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⑨ 단기소년원 송치, ⑩ 장기소년원 송치(2년 미만)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각 호의 처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가할 수 있고 수강명령 및 장기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가할 수 있다. 이밖에 장·단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의처우

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안교육 또는 청소년 관련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명령 등의 부가처분을 내릴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으로서 야간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을 부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도 부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2007년 11월에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가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다음으로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검사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법원 소년부는 검사에 의해 송치된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법원 또한 소년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관할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통고에 의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a: 92-93). 첫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절차를 분리해야 한다. 둘째,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의 형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셋째,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해야 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었거나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징역 또

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나 일반교도소 내의 분계된 장소에서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호처분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을 집행한다. 일곱째,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소년에 대해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형의 1/3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의 청소년 행정체계를 보면, 교육은 문부과학성, 보건, 복지 및 고용은 후생노동성, 소년비행 대책 및 보호, 교정은 경찰청과 법무성, 청소년 행정의 전체적인 조정은 내각부와 다수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 분담은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역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청소년 육성 시책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들 간의 밀접한 연락과 종합적·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전체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의 국장급 회의인 ‘청소년육성추진회의’ 및 과장급의 각종 연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 12월 9일 청소년육성추진본부는 청소년 육성 기본이념과 시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시책대강’은 현재 일본정부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기본이념 및 중장기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본이념은 현재 생활의 충실과 청소년의 사회자립 지원, 성인사회의 재고와 청소년의 사회이해 및 적응이라는 쌍방 노력의 필요, 청소년 육성은 학교, 가정, 사회전체의 책임 등이다. 중점과제로는 사회자립의 지원, 특히 곤란에 처한 청소년의 지원, 능동성을 중시한

청소년관으로의 전환,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회풍토 양성 등 네 가지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으로서 ‘연령기별 시책의 기본방향’과 ‘특정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상황에 처한 청소년 관련 시책으로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 지원, 결손가정 혹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의 청소년 지원, 소년비행 등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대응, 청소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시책, 취직 및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 지원 등이다.

일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보호육성조례와 ‘소년보호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는 (청)소년보호조례, 청소년애호조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등 명칭은 각기 상이하나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 일정한 공권력적인 규제를 강구할 목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공통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하한연령에 대해서는 6세 이상, 취학 개시 또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다른 법령(민법)에서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각 조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직장 등 관계자, 지역주민, 지방공공단체, 영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도서와 유해물건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유키기(遊技機)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유키기의 구조 및 유키의 방법으로부터 현저하게 청소년의 사행심을 유발 또는 조장하며 그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유해한 기기로 지정하여 판매와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체에 최면, 명정, 흥분, 환각, 마비 등의 상태를 일으키는 작용을 가지는 약품류 등으로 이를 남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건강을 해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특정 약품류 등으로 규칙을 정해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년보도센터는 소년비행의 증가라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52년 교토와 오사카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1964년에 내각총리부에서 ‘소년보도센터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보도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되었다. 소년보도센터는 소년보도 관계기관, 관련 단체 및 민간 등이 합동으로 활동하여 문제소년과 비행소년의 조기발견, 보도 및 정보의 정비 등 소년의 비행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당시 각 지역에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범협회’와 ‘소년보도협회’등을 대신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각 지역에 소년보도센터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소년보도센터 설립의 주관부서도 도도부현(都道府縣)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 및 민생부가 각 도도부현 청소년대책(추진)본부와 연계하여 소년의 비행방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소년보도센터의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가두보도활동, 소년상담활동, 환경정화활동 등이 있다. 가두보도활동은 2인 1조로 역, 대형점포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가두보도가 실시되며, 청소년의 약물남용, 흡연, 가출, 등교거부 등에 대한 보도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소년상담활동은 출장상담, 보도 후의 계속상담, 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사로부터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정화활동으로는 유해도서 자동판매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감시와 철거 등이 있다.

3) 미국

미국의 소년사법 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유기적 연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판결전 구금(pre-adjudication detention)은 주정부의 하위 행정단위인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비행소년에 대한 보안시설(security facility) 내 구금이나 사후보호(aftercare)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정부 수준의 관리기관에서 보호관찰국 산하의 구금센터,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 사후보호기관 등 비행

소년 보호서비스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중앙집중적 제도이다. 둘째, 보호관찰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한이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에 있고, 지방정부가 구금시설을 운영하기도 하며, 때로 사후보호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 산하 기관과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지방분권적 제도이다. 셋째,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중앙·지방 협력적 제도가 있다.

이 법률 이외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가출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들이 있으나 최근에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만으로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제기되었다(법무부 보호국, 2006: 7). 소년사법·비행예방국(OJJDP)의 설립은 지역사회, 주정부, 국가 수준에 맞춘 전략적 대응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소년사법·비행예방국(OJJDP)은 연방차원에서 소년사법의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1974년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JDPA)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기관은 주로 비행소년의 지도방법 제공·협력 및 예방을 위한 자원 제공, 소년비행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응, 주 혹은 지역사회의 비행예방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 지원, 범죄자 치료와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소년사법·비행예방국(OJJDP)은 주 정부나 지역사회 단체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의 제정과 집행을 직접 요구하거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단지 소년사법 정책의 포괄적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각 주 정부나 지역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나 개입 방안을 개발·시행하고 소년사법체계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비행소년의 개별적인 특징에 적합한 재사회화 방안을 실시한다(이순래, 2006: 170).

이 기관의 범죄청소년에 대한 종합전략은 가족의 강화, 핵심 사회기관의 지원, 비행예방 강화, 비행행동에 대한 즉각적·효과적인 개입, 심각하고 폭력적이며 만성적인 소년범죄의 인지 및 통제 등 크게 다섯 가지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이 전략은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따라,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단계적·누진적 제재를 한다. 즉,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위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즉각적인 개입, 중간처우, 지역사회 격리, 소년원, 사후관리의 순서로 7단계의 예방 및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년사법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소년복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관장하는 식의 이원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법무부 하의 소년사법·비행예방국을 중심으로 소년범죄 및 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 있다.

청소년 멘터링 프로그램(Juvenile Mentoring Program: JUMP)은 대표적인 비행예방 프로그램이다. 효과적인 예방정책은 위험요인의 감소와 보호요인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요청에 따라 소년사법제도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게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예방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소년기의 비행과 비행조직에의 참여를 줄이고 학업성적으로 개선시키며 학교 중단율을 낮추는 일이다.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idwest Prevention Project), 기회제공 프로그램(Quantum Opportunities Program),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Bullying Prevention Program)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각적인 개입 프로그램(Immediate Intervention)은 초범소년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재범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의 계획·운영·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집중적인 조기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이며 집중적 비행 다이버전 서비스(Intensive Delinquency Diversion Service)가 이에 해당한다.

중간처우 프로그램(Intermediate Sanction)은 즉각적인 개입으로 접근하기에는 범죄가 중대하고 교정시설에 수용하기에는 덜 심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병영캠프(Boots

Camp),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 등이 있다.

수용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은 소년의 범죄가 심각하고 중간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소년 교정시설이나 지역사회 시설에 수용하여 처우를 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시설구금(Community Confinement)은 소규모로 집중적인 처우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년원(training school) 수용은 지역사회 안정에 위협적이거나 사회내 처우가 실패한 소년들에게 적용한다.

재진입 프로그램(Reentry Program)은 소년 구금처우 시설에 수용되었던 소년이 지역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후보호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처분결정이 있을 때 시작하여 수용기간 동안 진행되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원을 계속한다.

4) 스웨덴

스웨덴에 구속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나이는 15세이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특별령인 LUL법 1964:167는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자가 21세 이하일 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⁴⁸⁾ 청소년 범죄자 역시 성인처럼 벌금형,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 시스템은 청소년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 사면은 청소년 교정/재활(ungdomsvård), 사회봉사와 병행하는 청소년 교정/재활(ungdomsvård i kombination med ungdomstjänst), 닫힌 시설(ungdomstjänst samt sluten ungdomsvård)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에 닫힌 시설형을 받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평균 기간은 10개월이었다.

청소년 교정/재활(ungdomsvård)은 코문의 사회복지 부서의 관할 하에 일종의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인데, 경범죄를 지어 구속된 지은 청소년

48) Lag (1964:167) med särskilda bestämmelser om unga lagöverträdare

년들은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Br[는 2004년에 교정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다. 가장 흔한 프로그램 내용은 감옥, 구치장 및 응급실 등 시설 방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교정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는 해당 청소년 중 대다수가 프로그램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2007년에 15-21세의 청소년 위법자에 대한 법이 변경되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새로운 교정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었다. 변경법은 법원이 이들 청소년 범죄자들을 청소년 사회봉사원(ungdomstjänst)으로 판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사회봉사원(ungdomstjänst)이란 이들 범법 청소년들이 형벌 대신에 코문 내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 조건에 일부가 되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증진시키자는 취지이다. 행정기관은 코문으로 코문 내의 사회복지담당직원(socialtjänsten)이 이들 청소년 사회봉사원(ungdomstjänsten)들을 관리한다. 청소년 사회봉사원은 무급으로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자신의 생활환경과 타인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은 범죄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총 사회봉사 시간은 최소 2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범죄판결의 형량에 따라서 봉사 시간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담당직원은 이들 범법 청소년에 대해서 개인적인 업무계획을 관리한다. 일터에서는 별도로 감독관이 있어 사회복지담당직원과 이 감독관이 업무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게 된다.

또한 2008년부터는 지역사회인 코문이 21세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지역 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⁴⁹⁾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 법에서는 스웨덴의 모든 코문이 범죄 당사자가 21세 이하인 경우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중재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제 3자인 중재자와 범죄 사건에 대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목표는 범죄의 인과관계와 그 피해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해함으로써 범죄 후 피해자와 가해자 측 양쪽에 가해질 수 있는

49) Lagen om medling vid brott (2002:445)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자율적인 만남으로 강제력이 없으나, 코문의 중재 서비스는 코문의 사회복지부서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서 특기할 점은 중재 만남 참여 의사는 자율적이며,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 되어 범죄를 자백한 상태, 중재자는 이해관계없는 제3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서 중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 행해진다는 것이다.

중재는 전문교육을 받은 중재위원이 담당하며 경찰·사회복지사·검사의 협력작업이 이루어진다. 중재위원은 범죄예방자문기관(Brottsförebyggande Rådet)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스웨덴 국립 Socialstyrelsen förtillsynen av medlingsverksamheten이 책임을 맡고 있다.

2007년에는 이전 해보다 15-17세의 범죄 구속 사례가 10% 증가하였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수의 이들 범법 청소년들이 사회봉사원(ungdomstjänst)형에 처해졌고, 벌금형은 반면에 줄어들었다. 2007년에 15-20세 중에 27,200명의 청소년이 범죄로 구속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 1800명이 늘어났다. 이들 중 15-17세의 경우가 증가분의 75%를 차지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도난으로 구속된 청소년의 3분의 1이 이 경우에 해당되며, 이어 폭력과 불법운전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 2007년에 형벌을 받을 15-17세의 범죄자 중 39%가 자율적인 교정 프로그램인 사회봉사원 형(ungdomstjänst)을 받게 되었다. 대신에 벌금형이나 교정/재활치료형(사회복지부서 내에 치료, ungdomsvård라고 불림)은 줄어들었다. 이 사회봉사원(Ungdomstjänst)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자율권을 부여할 수 교정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빚을 남겨 이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들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ungdomstjänst보다 벌금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ngdomstjänst형에 처해지면 10년간 범죄기록에 남게 되어 취직 등 향후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벌

금형은 5년 동안 범죄기록에 남게 된다.

5) 독일

독일 소년정책을 관장하는 법제도는 크게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중심의 소년사법제도와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사항을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중심의 소년복지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소년법원법은 범죄를 행한 소년의 처리절차와 처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일반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한 형태인 소년형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 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 부모의 책임,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의 업무,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청소년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년법원법은 소년과 청년에 대해 적용된다. 소년이란 행위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청년이란 행위시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아동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혹은 후견법원이나 소년국(Jugendamt)이 다양한 처우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원법 표준 2(Richtlinie 2 zum JGG)에서는 검사가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소추할 수는 없지만 가정법원 혹은 후견법원 판사, 기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소년사법기관으로는 소년국(Jugendamt)과 소년법원보조(Jugendgerichtshilfe)가 있다. 소년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 요보호소년과 범죄소년 등 모든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한다. 소년국의 업무로는 아동·청소년 지원법에 따라 응급상황에 처한 소년에 대한 지원, 주간보호, 사회집단봉사(soziale Gruppenarbeit), 교육부조(Erziehungsbeistandschaft), 사회교육, 가족지원, 주간그룹교육, 전일보호(Vollzeitpflege), 가정교육(Heimerziehung), 정신적 침해를 받은 청소년

년에 대한 치료지원, 가사사건 사전조정, 교육적 청소년 보호 등이 있다.

소년법원보조는 “소년법원법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소년사건 담당자들에게 소년에 대한 교육적·사회적·보호적 관점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역할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인격, 성장과 환경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법원과 그밖에 조사기관의 업무를 보조한다. 둘째, 해당 청소년에게 부과된 의무(Auflage)와 지시(Weisung)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한다(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제5-6문). 셋째, 교육적인 보조 및 보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역할은 보호관찰관(Bewährungshilfe)과 연계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임무와 별개로 소년법원보조는 소년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이는 권리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때문에 소년법원보조가 재판참여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스스로의 결정사항이다.

3. 아동청소년 사망 및 자살·사고율

1) 한국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의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표 V-20>. 연령별 사망자 수의 추이를 보면, 신생아(0세) 사망자 수는 1983년 3,334명에서 2007년 1,703명으로 감소했고, 1-4세는 같은 기간 6,690명에서 502명으로, 5-9세는 4,709명에서 438명으로, 10-14세는 3,565명에서 470명으로 감소했으며, 15-19세는 5,979명에서 1,058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사망비)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망비의 감소경향은 신생아를 제외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신생아 사망비의 경우 1983년에서 1995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후 2003년까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04년부터는 신생아의 사망비 또한 감소하고 있다.

<표 V-20> 한국의 아동청소년(10-19세) 연령집단별 · 유형별 사망자수
추이

(단위: 명)

	연령	1983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0	3,334	2,563	1,982	1,998	2,882	3,006	2,542	2,514	2,228	1,820	1,707	1,703
	1-4	6,630	4,972	2,700	1,866	1,221	1,040	1,078	814	728	601	547	502
	5-9	4,709	3,647	2,392	1,275	930	813	802	669	647	581	496	438
	10-14	3,565	2,711	1,876	1,276	615	612	565	512	517	509	512	470
	15-19	5,979	5,339	3,947	3,157	1,777	1,495	1,226	1,240	1,009	975	950	1,058
운수사고	0	15	17	42	73	23	23	14	14	15	6	6	9
	1-4	461	582	652	538	301	226	245	194	146	128	95	72
	5-9	255	355	585	434	283	252	240	203	143	138	136	108
	10-14	126	154	290	272	119	113	95	85	73	67	79	70
	15-19	269	346	628	1,308	676	525	400	397	274	249	270	235
추락사고	0	14	12	5	13	10	15	4	12	13	5	7	3
	1-4	241	188	67	95	102	76	90	66	41	32	27	34
	5-9	86	89	32	34	22	32	27	21	18	23	15	13
	10-14	48	36	10	26	21	15	12	9	16	7	9	8
	15-19	101	97	45	62	50	44	13	19	6	7	18	13
익사사고	0	10	6	4	7	2	4	2	3	5	0	2	1
	1-4	399	344	136	127	67	74	51	40	30	23	13	20
	5-9	475	399	221	184	145	110	91	74	100	82	34	36
	10-14	318	278	150	150	90	48	53	39	49	51	29	21
	15-19	382	355	190	170	143	103	47	61	65	47	47	43
화재사고	0	31	14	3	2	3	2	4	1	1	0	1	0
	1-4	124	61	31	38	16	29	21	21	18	6	8	2
	5-9	38	19	26	29	14	27	23	21	14	10	23	1
	10-14	16	9	15	31	7	15	6	20	9	3	10	4
	15-19	43	29	30	78	19	14	7	33	10	8	4	7
중독사고	0	22	18	10	2	2	0	1	0	0	0	1	0
	1-4	78	90	47	8	8	2	2	2	2	1	0	1
	5-9	103	81	50	11	2	0	2	1	4	2	1	2
	10-14	145	127	75	28	1	5	1	1	1	1	3	1
	15-19	335	388	189	86	11	5	5	4	6	3	2	1
자살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0	0	0	0
	5-9	0	0	0	0	0	0	0	0	0	0	0	1
	10-14	49	33	42	57	23	30	31	32	42	40	34	52
	15-19	289	348	278	298	241	193	203	265	206	239	198	257
타살	0	5	2	5	9	7	10	9	7	8	12	3	8
	1-4	21	29	18	23	28	16	35	23	17	20	9	9
	5-9	22	20	23	16	33	32	28	30	43	29	24	20
	10-14	8	12	17	14	13	14	17	19	19	20	26	20
	15-19	41	53	90	60	34	29	31	26	18	24	17	9
기타	0	66	79	148	220	67	97	95	87	84	73	62	66
	1-4	236	211	182	97	61	43	70	41	48	37	30	22
	5-9	157	119	119	55	25	29	35	33	31	29	28	21
	10-14	107	107	188	105	22	28	23	27	32	31	23	23
	15-19	274	247	460	200	59	66	47	64	41	65	53	5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83-2007년도.

주: 1) 불의의 물에 빠짐

2)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4)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한편, 질병 이외의 사망원인별 구성비율은 연령집단별로 다소 상이하다. 1-4세의 경우에는 운수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1-4세의 운수사고 사망 비율은 1983년 6.9%에서 1995년 28.8%로 증가했고, 그 후로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14.3%로 낮아졌다. 1-4세의 운수사고 사망비는 1983년 13.9명, 1985년 18.3명, 1990년 25.6명, 1995년 19.1명, 2000년 11.3명, 2005년 6.5명, 2007년 3.9명으로 199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5-9세의 질병 외 사망원인별 추이를 보면, 1983년에서 1985년까지는 익사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10-11%)이 가장 높았으나, 1990년 이후로는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이 가장 높고, 익사사고 사망 비율은 그 다음으로 높다. 5-9세의 운수사고 사망 비율은 1995년에 34.0%까지 높았으나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24.7%로 낮아졌다. 5-9세의 익사사고 사망 비율은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대략 9-15%대를 유지해왔으나, 2006-2007년에는 7-8%대로 낮아졌다. 한편, 5-9세의 운수사고 사망비 추이를 보면, 1983년 6.3명, 1990년 15.2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후로는 감소하여 2007년에는 3.5명으로 낮아졌다. 5-9세의 익사사고 사망비는 1983년 11.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들었다.

10-14세의 질병 외 사망원인별 구성 비율의 추이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익사에 의한 사망 비율이 가장 높고(9-10%), 그 이후로는 운수사고 사망 비율이 가장 높다(13-21%). 주목할 만한 사실은 10-14세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이 점차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1983년만 해도 10-14세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1.1%로 증가했고, 2006년 이후로는 질병 이외의 사망 원인 중 운수사고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타살에 의한 사망 비율도 1983년 0.2%에서 2007년 4.3%로 증가해 왔다. 한편, 10-14세의 질병 이외 사망 원인별 사망비 추이를 보면, 운수사고는 1983년 2.7명에서 1990년 7.4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7년에는

2.0명으로 낮아졌다. 익사사고 사망비는 1983년 6.9명에서 2007년 0.6명으로 감소하였고, 자살에 의한 사망비는 같은 기간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으며, 타살에 의한 사망비는 0.2명에서 0.6명으로 늘어났다.

15-19세의 질병 외 사망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운수사고이다. 1983년에서 1985년까지만 해도 15-19세의 질병 외 사망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중독사고사였고 그 다음이 익사사고였다. 하지만 1990년 운수사고사의 비율이 15.9%로 가장 높았고, 1995년 그 비율은 41.4%까지 상승했다. 2000년 38.0%, 2005년 25.5%, 2007년 27.9%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질병 외 사망의 다른 유형보다는 그 구성 비율이 여전히 높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운수사고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 비율보다 더 높았다.

15-19세의 질병 외 사망 원인 중 주목할 부분은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이다. 1983년까지만 해도 15-19세 연령집단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은 4.8%에 불과했지만, 1985년 6.5%, 1990년 7.0%, 1995년 9.4%, 2000년 13.6%, 2005년 24.5%, 2007년 24.3%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1995년부터는 질병에 의한 사고와 운수사고 다음으로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비는 1990년 33.1명으로 높았지만 2007년에는 9.0명으로 낮아졌다. 반면 자살에 의한 사망비는 1983년 6.7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높아졌다.

한편, 운수사고 사망비와 추락사고 사망비는 1-4세 연령집단이 가장 높고, 익사사고 사망비의 경우 1985년까지는 1-4세가 가장 높았으나 그 후로는 5-9세가 가장 높다. 화재사고 사망비의 경우 1985년까지는 신생아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1-4세가 가장 높다. 중독사고 사망비의 경우 2000년 이후로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10세 이상에서만 발견되는데 10-14세 연령집단보다는 15-19세 연령집단의 사망비가 더 높다. 그리고 1995년까지만 해도 타살에 의한 사망비는 15-19세가 가장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신생아 사망비가 가장 높다.

2) 일본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조사에 의하면 연간 사망자의 90% 이상은 20세 이상의 성인이다(<표 V-21>).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자 중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구성 비율은 1980년 96.6%에서 99.4%로 증가해왔다. 반면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사망자는 1980년 24,741명(3.4%)에서 2007년 6,494명(0.6%)으로 감소하였다.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0-4세는 1980년 2.3%(16,298명)에서 2007년 0.3%(3,809명)로 감소하였고, 5-9세는 같은 기간 0.4%(2,773명)에서 0%(552명)에 근접하였으며, 10-14세는 0.2%(1,627명)에서 0%(534명)에 근접하였고, 15-19세는 0.6%(4,043명)에서 0.1%(1,599명)로 감소하였다.

연령별 사망원인의 구성비율을 보면, 0-4세의 85% 이상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더욱이 질병에 의한 사망은 1980년 85.6%에서 2007년 92.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0-4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1980년 14.4%에서 2007년 8.0%로 감소하였다. 불의의 사고 중 교통사고 사망의 비율 또한 1980년 3.5%에서 2007년 1.8%로 감소하고 있다.

5-9세 아동들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질병사이다. 이 연령층의 질병사는 1980년 59.8%에서 2007년 72.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불의의 사고사 비율은 1980년 41.0%에서 2007년 27.2%로 감소하였다. 불의의 사고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비율 역시 감소해왔는데, 1980년 20.1%에서 2007년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자살에 의한 사망사례도 가끔 발견되고 있다. 1980년에 2건, 1985년 4건, 2005년 1건, 2006년 1건 등이 있었다.

10-14세 아이들의 사망원인 중 질병사의 비율은 1980년 74.0%, 2007년 68.0% 등으로 대단히 높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대략 66-68%선을 유지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사의 비율은 1980년 22.7%에서 1990년 25.8%, 1995년 31.3%로 점차 증가해왔으나, 2000년에는 22.3%로 감소하였고 2005년 25.4%로 조금 증가했지만 2007년에는 23.2%로 다시 낮아

졌다. 불의의 사고사 중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2006년에만 7.2%로 낮았을 뿐, 1980년에서 2007년까지 대체적으로 10-15%선을 유지하고 있다. 10-14세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을 보면 1980년 3.3%에서 2000년 9.9%로 점차 증가해왔다. 하지만 그 후로는 8-9%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예외적으로 10-14세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이 13.3%로 급증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불의의 사고사는 15-19세의 사망 원인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후로는 질병사의 비율이 더 높다. 15-19세의 불의의 사고사 비율은 1980년 46.6%에서 2007년 33.6%로 감소하였고, 대신 질병에 의한 사망 비율은 1980년 34.0%에서 2007년 37.9%로 증가하였다. 불의의 사고사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사망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 역시 1980년 39.2%에서 2007년 25.4%로 감소하였다. 반면 15-19세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은 1980년 14.8%에서 2007년 28.5%로 증가하였다. 2007년의 경우 15-19세의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보다 더 높다.

<표 V-21> 일본 아동·청소년·성인 사망자수 추이

(단위: 명, %)

	전체	0-4세	5-9세	10-14세	15-19세	19세이하	20세이상	합계
전체	1980	16,298 (2.3)	2,773 (0.4)	1,627 (0.2)	4,043 (0.6)	24,741 (3.4)	697,732 (96.6)	722,473
	1985	10,834 (1.4)	1,791 (0.2)	1,649 (0.2)	4,212 (0.6)	18,486 (2.5)	733,376 (97.5)	751,862
	1990	7,983 (1.0)	1,377 (0.2)	1,242 (0.2)	4,353 (0.5)	14,955 (1.8)	804,901 (98.2)	819,856
	1995	7,040 (0.8)	1,235 (0.1)	1,184 (0.1)	3,362 (0.4)	12,821 (1.4)	908,681 (98.6)	921,502
	2000	5,269 (0.5)	738 (0.1)	744 (0.1)	2,397 (0.2)	9,148 (1.0)	951,782 (99.0)	960,930
	2004	4,281 (0.4)	607 (0.1)	589 (0.1)	1,928 (0.2)	7,405 (0.7)	1,020,538 (99.3)	1,027,943
	2005	4,102 (0.4)	655 (0.1)	590 (0.1)	1,802 (0.2)	7,149 (0.7)	1,075,994 (99.3)	1,083,143
	2006	3,940 (0.4)	612 (0.1)	573 (0.1)	1,778 (0.2)	6,903 (0.6)	1,077,026 (99.4)	1,083,929
	2007	3,809 (0.3)	552 (0.0)	534 (0.0)	1,599 (0.1)	6,494 (0.6)	1,101,319 (99.4)	1,107,813
질병	1980	13,953 (2.1)	1,633 (0.2)	1,204 (0.2)	1,560 (0.2)	18,350 (2.7)	654,516 (97.3)	672,866
	1985	9,381 (1.3)	1,059 (0.2)	1,161 (0.2)	1,510 (0.2)	13,111 (1.9)	685,924 (98.1)	699,035
	1990	6,912 (0.9)	854 (0.1)	875 (0.1)	1,479 (0.2)	10,120 (1.3)	757,657 (98.7)	767,777
	1995	6,081 (0.7)	710 (0.1)	748 (0.1)	1,170 (0.1)	8,709 (1.0)	846,343 (99.0)	855,052
	2000	4,744 (0.5)	496 (0.1)	504 (0.1)	872 (0.1)	6,616 (0.7)	884,940 (99.3)	891,556
	2004	3,854 (0.4)	400 (0.0)	391 (0.0)	721 (0.1)	5,366 (0.6)	954,423 (99.4)	959,789
	2005	3,692 (0.4)	424 (0.0)	396 (0.0)	676 (0.1)	5,188 (0.5)	1,007,797 (99.5)	1,012,985
	2006	3,584 (0.4)	442 (0.0)	391 (0.0)	671 (0.1)	5,088 (0.5)	1,010,856 (99.5)	1,015,944
	2007	3,505 (0.3)	402 (0.0)	363 (0.0)	606 (0.1)	4,876 (0.5)	1,034,351 (99.5)	1,039,227
불의 사고 1	1980	2,345 (8.0)	1,138 (3.9)	370 (1.3)	1,884 (6.5)	5,737 (19.7)	23,454 (80.3)	29,191
	1985	1,453 (4.9)	728 (2.5)	407 (1.4)	2,249 (7.6)	4,837 (16.4)	24,733 (83.6)	29,570
	1990	1,071 (3.3)	523 (1.6)	320 (1.0)	2,493 (7.8)	4,407 (13.7)	27,670 (86.3)	32,077
	1995	959 (2.1)	525 (1.2)	370 (0.8)	1,769 (3.9)	3,623 (8.0)	41,584 (92.0)	45,207
	2000	525 (1.3)	242 (0.6)	166 (0.4)	1,052 (2.7)	1,985 (5.0)	37,405 (95.0)	39,390
	2004	427 (1.1)	207 (0.5)	149 (0.4)	707 (1.9)	1,490 (3.9)	36,638 (96.1)	38,128
	2005	410 (1.0)	230 (0.6)	150 (0.4)	615 (1.5)	1,405 (3.5)	38,388 (96.5)	39,793
	2006	356 (0.9)	169 (0.4)	106 (0.3)	607 (1.6)	1,238 (3.2)	36,980 (96.8)	38,218
	2007	304 (0.8)	150 (0.4)	124 (0.3)	538 (1.4)	1,116 (2.9)	36,807 (97.1)	37,923

	전체	0-4세	5-9세	10-14세	15-19세	19세이하	20세이상	합계
교통 사고	1980	565 (4.2)	556 (4.2)	185 (1.4)	1,585 (11.9)	2,891 (21.7)	10,405 (78.3)	13,296
	1985	332 (2.3)	362 (2.5)	231 (1.6)	1,978 (13.7)	2,903 (20.2)	11,488 (79.8)	14,391
	1990	293 (1.9)	274 (1.7)	183 (1.2)	2,248 (14.2)	2,998 (19.0)	12,814 (81.0)	15,812
	1995	194 (1.3)	216 (1.4)	117 (0.8)	1,406 (9.3)	1,933 (12.8)	13,194 (87.2)	15,127
	2000	120 (0.9)	119 (0.9)	86 (0.7)	869 (6.8)	1,194 (9.3)	11,652 (90.7)	12,846
	2004	120 (1.1)	110 (1.0)	73 (0.7)	568 (5.4)	871 (8.3)	9,670 (91.7)	10,541
	2005	82 (0.8)	109 (1.1)	71 (0.7)	461 (4.6)	723 (7.2)	9,295 (92.8)	10,018
	2006	80 (0.9)	85 (0.9)	41 (0.5)	468 (5.2)	674 (7.5)	8,365 (92.5)	9,039
	2007	69 (0.8)	61 (0.7)	54 (0.7)	406 (4.9)	590 (7.1)	7,669 (92.9)	8,259
자살	1980		2 (0.0)	53 (0.3)	599 (2.9)	654 (3.2)	19,762 (96.8)	20,416
	1985		4 (0.0)	81 (0.3)	453 (1.9)	538 (2.3)	22,719 (97.7)	23,257
	1990			47 (0.2)	381 (1.9)	428 (2.1)	19,574 (97.9)	20,002
	1995			66 (0.3)	423 (2.0)	489 (2.3)	20,754 (97.7)	21,243
	2000			74 (0.2)	473 (1.6)	547 (1.8)	29,437 (98.2)	29,984
	2004			49 (0.2)	500 (1.7)	549 (1.8)	29,477 (98.2)	30,026
	2005		1 (0.0)	44 (0.1)	511 (1.7)	556 (1.8)	29,809 (98.2)	30,365
	2006		1 (0.0)	76 (0.3)	500 (1.7)	577 (1.9)	29,190 (98.1)	29,767
	2007			47 (0.2)	455 (1.5)	502 (1.6)	30,161 (98.4)	30,663

출처: 厚生労働省, 人口動態・保健統計課, 人口動態調査 各년도(www.mhlw.go.jp/toukei).

주 1) 교통사고 사망자 포함

2) 연령미상자 제외

3) 미국

<표 V-22>은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사고, 자살, 범죄피해 등)에 따른 연령별 사망자수와 인구비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인구 전체로 봤을 때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은 4%대이고, 자살에 의한 비율은 1%대, 폭행이나 살인 등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 비율은 6-7%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1-4세의 영·유아, 5-9세의 아동, 10-19세의 청소년, 20-24세의 청년층은 질병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사망원인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사망인구비)의 추이를 살펴보자. 1-4세의 영·유아의 사망원인 중 사고사는 34-37%이며 1-4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인구비는 대략 10.3명에서 12.6명의 분포를 보인다. 폭행이나 살인 등 범죄로 인한 영·유아가 사망하는 비율은 7-9%이며, 사망인구비는 2.3명에서 2.7명 수준이다.

5-9세 아동의 사고사의 비율은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 34-43%이며 사망인구비는 5.5명에서 7.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성 비율 및 사망인구비 모두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5년의 경우 5-9세의 사고사 비율은 전체 사망원인 중 37.8%를 차지했으며, 사망인구비는 5.5명이었다. 폭행, 살인 등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비율은 1999년 5.4%에서 2005년 4.3%로 조금 낮아졌고, 사망인구비 또한 같은 기간 2.3명에서 0.6명으로 줄어들었다.

10-14세 연령층의 사고사 비율은 1999년 39.6%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05년에는 35.7%로 낮아졌으며, 사망인구비도 8.3명에서 6.4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해·자살에 의해 사망 비율은 1999년 5.9%에서 2005년 7.2%로 조금 늘었고, 사망인구비 또한 1.2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 비율은 5-6%대이며 사망인구비는 1999년 1.3명에서 2005년 1.1명으로 조금 낮아졌다.

15-19세의 사고사 비율은 1999년 48.5%, 2002년 51.7%였으나 2005년에는 48.3%로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사고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사고사로 인한 사망인구비는 2002년 35.0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31.4명으로 줄어들었다. 2002년부터는 사고사에 의한 사망인구비가 감소하고 있다. 자살 혹은 자해에 의한 사망은 전체의 14-15%이다. 1999년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비율은 15.2%였으나 2002년에는 13.7%로 낮아졌고 2005년에는 15.1%로 올라갔다. 자해·자살에 의한 15-19세 사망인구비는 1999년 10.6명에서 2005년 9.9명으로 조금 낮아졌다. 폭행 혹은 살인 등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1-12%선이다. 2005년의 그 비율은 11.8%이며 사망인구비는 7.7명이다.

<표 V-22> 미국 아동·청소년(1-24세)의 질병 외 사망 실태 추이

	사고			자해/자살			폭행/살인			합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1 - 4세												
1999	1,898	36.2	12.6	-	-	-	376	7.2	2.5	5,249	100.0	34.7
2000	1,826	36.7	12.1	-	-	-	356	7.2	2.3	4,979	100.0	32.9
2001	1,714	33.6	11.2	-	-	-	415	8.1	2.7	5,107	100.0	33.3
2002	1,641	33.8	10.5	-	-	-	423	8.7	2.7	4,858	100.0	31.2
2003	1,717	34.6	10.9	-	-	-	376	7.6	2.4	4,965	100.0	31.5
2004	1,641	34.3	10.3	-	-	-	377	7.9	2.4	4,785	100.0	29.9
2005	1664	35.0	10.3	-	-	-	375	7.9	2.3	4756	100.0	29.4
5 - 9세												
1999	1,459	42.0	7.3	-	-	-	186	5.4	0.9	3,474	100.0	17.4
2000	1,391	42.8	7.0	-	-	-	140	4.3	0.7	3,253	100.0	16.4
2001	1,283	41.5	6.4	-	-	-	137	4.4	0.7	3,093	100.0	15.3
2002	1,176	39.0	5.9	-	-	-	140	4.6	0.7	3,018	100.0	15.2
2003	1,096	37.8	5.5	-	-	-	122	4.2	0.6	2,898	100.0	14.7
2004	1,126	39.0	5.7	-	-	-	122	4.2	0.6	2,888	100.0	14.7
2005	1072	37.8	5.5	-	-	-	121	4.3	0.6	2837	100.0	14.5
10 - 14세												
1999	1,632	39.6	8.3	242	5.9	1.2	246	6.0	1.3	4,121	100.0	21.1
2000	1,588	38.2	8.0	300	7.2	1.5	231	5.6	1.2	4,160	100.0	20.9
2001	1,553	38.8	7.4	272	6.8	1.3	189	4.7	0.9	4,002	100.0	19.2
2002	1,542	37.3	7.3	260	6.3	1.2	216	5.2	1.0	4,132	100.0	19.5
2003	1,522	37.5	7.2	244	6.0	1.2	202	5.0	1.0	4,056	100.0	19.1
2004	1,540	39.0	7.3	283	7.2	1.3	207	5.2	1.0	3946	100.0	18.7
2005	1343	35.7	6.4	270	7.2	1.3	220	5.8	1.1	3765	100.0	18.1
15 - 19세												
1999	6,688	48.5	33.9	2,093	15.2	10.6	1,615	11.7	8.2	13,778	100.0	69.8
2000	6,755	49.8	34.0	1,914	14.1	9.6	1,621	12.0	8.2	13,563	100.0	68.2
2001	6,646	49.0	32.8	1,899	14.0	9.4	1,611	11.9	7.9	13,555	100.0	66.9
2002	7,137	51.7	35.0	1,892	13.7	9.3	1,513	11.0	7.4	13,812	100.0	67.8
2003	6,755	49.7	33.0	1,938	14.3	9.5	1,487	10.9	7.3	13,595	100.0	66.4
2004	6,825	49.8	32.9	1,932	14.1	9.3	1700	12.4	8.2	13,706	100.0	66.1
2005	6616	48.3	31.4	2076	15.1	9.9	1613	11.8	7.7	13703	100.0	65.1

	사고			자해/자살			폭행/살인			합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 비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사망 건수 (명)	백분율	인구비
20 - 24세												
1999	6,968	41.3	38.7	2,905	17.2	16.1	2,286	13.5	12.7	16,878	100.0	93.6
2000	7,358	41.5	39.8	3,025	17.0	16.4	2,373	13.4	12.8	17,744	100.0	96.0
2001	7,765	41.5	39.5	3,398	18.2	17.3	2,360	12.6	12.0	18,697	100.0	95.0
2002	8,275	43.0	40.9	3,327	17.3	16.5	2,497	13.0	12.4	19,234	100.0	95.2
2003	8,517	42.6	41.1	3,430	17.2	16.5	2,501	12.5	12.1	19,973	100.0	96.4
2004	8,624	43.7	41.1	3,153	16.0	15.0	2,616	13.3	12.5	19,715	100.0	94.0
2005	9,137	44.5	43.4	3,390	16.5	16.1	2,599	12.7	12.4	20,531	100.0	97.6
전체 인구												
1999	97,860	4.1	35.9	29,199	1.2	10.7	16,889	0.7	6.2	2,391,399	100.0	877.0
2000	97,900	4.1	35.6	29,350	1.2	10.7	16,765	0.7	6.1	2,403,351	100.0	873.1
2001	101,537	4.2	35.7	30,622	1.3	10.8	20,308	0.8	7.1	2,416,425	100.0	848.5
2002	106,742	4.4	37.0	31,655	1.3	11.0	17,638	0.7	6.1	2,443,387	100.0	847.3
2003	109,277	4.5	37.6	31,484	1.3	10.8	17,732	0.7	6.1	2,448,288	100.0	841.9
2004	112,012	4.7	38.1	32,439	1.4	11.0	17,357	0.7	5.9	2,397,615	100.0	816.5
2005	117,809	4.8	39.7	32,637	1.3	11.0	18,124	0.7	6.1	2,448,017	100.0	825.9

출처: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DataWarehouse, LCWK1: Deaths, Percent of Total Deaths, and Death Rates for the 15 Leading Causes of Death in 5-year Age Groups, by Race and Sex: United States, 1999-2005.⁵⁰⁾

미국 교육부의 ‘학교의 범죄 및 안전 지표(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에 의하면, 5-18세 청소년의 살인이나 자살은 점차 감소해왔다(<표 V-23>).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살인의 빈도 역시 감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992-1993년 조사에 의하면, 5-18세 청소년에 의한 살인사건은 총 2,689건이었는데, 이중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34건으로 그 구성 비율은 1.3%이다. 5-18세 청소년 자살건수의 추이를 보면, 1992-1995년 사이에는 1,680명에서 1,767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4-2005년에는 1,47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중에서 학교에서 자살한 청소년의 숫자는 10명 미만이다. 2004-2005년에는 7명, 2005-2006년에는 3명으로 나타났다.

50) http://www.cdc.gov/nchs/datawh/statab/unpubd/mortabs/lcwk1_10.htm

<표 V-23>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및 자살 건수 추이

(단위: 명)

연도 ¹⁾	학교와 관련된 학생, 직원, 비학생의 폭력적 사망					5-18세 청소년의 살인		5-18세 청소년의 자살	
	합	살 인	자 살	법적 개입	비의도적 사망	학교 에서 ²⁾	전체 ³⁾	학교 에서 ²⁾	전체 ⁴⁾
1992-1993	57	47	10	0	0	34	2,689	6	1,680
1993-1994	48	38	10	0	0	29	2,879	7	1,723
1994-1995	48	39	8	0	1	28	2,654	7	1,767
1995-1996	53	46	6	1	0	32	2,512	6	1,725
1996-1997	48	45	2	1	0	28	2,189	1	1,633
1997-1998	57	47	9	1	0	34	2,056	6	1,626
1998-1999	47	38	6	2	1	33	1,762	4	1,597
1999-2000	36	24	11	0	1	13	1,537	8	1,415
2000-2001	30	24	5	1	0	11	1,466	4	1,493
2001-2002	37	26	9	1	1	14	1,468	6	1,400
2002-2003	35	25	10	0	0	18	1,515	8	1,331
2003-2004	36	31	5	0	0	21	1,437	3	1,285
2004-2005	50	39	9	2	0	21	1,534	7	1,471
2005-2006	35	26	2	2	0	14	-	3	-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7. pp.68-69.

주: 1) 학교관련 폭력은 미국의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한 살인, 자살, 법적 개입(법집행공무원 포함), 의도하지 않은 총기관련 사망 등이 포함됨. 피해자는 정규 교과과정이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참석하기 위해 혹은 참석한 후 이동 중에 사망한 경우.

2) 199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사이의 5-18세 청소년

4) 1992-2004년 1월 1일 -12월 31일

5) 일차적 형태의 자료로서 변경될 수 있음.

4) 스웨덴

스웨덴 복지부(Socialstyrelsen)의 국민건강현황보고서(2006)에 의하면, 스웨덴의 전체 인구의 자살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15-24세 인구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시도율은 같은 연령대의 인구 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특히 이민자 출신의 청소년층에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자살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과거 전쟁, 분쟁 지역 출신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난민으로 스웨덴으로 들어온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03-2004년 청소년의 사망률을 보면 전체 사망률이 2003년보다 2004년에 15-19세, 20-24세 연령집단에서 증가하였다. 이들 연령집단에서는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2003-2004년간 별 차이가 없었다.

<표 V-24> 15-24세 인구 10,000명당 총 사망자수

사망원인	연령집단	(단위: 명)					
		남		여		합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합	15-19세	3.8	4.6	3.0	2.7	3.4	3.7
	20-29세	7.0	8.8	2.4	2.9	4.8	5.9
자살	15-19세	0.8	1.0	0.6	0.6	0.7	0.8
	20-29세	2.1	3.0	1.0	0.7	1.6	1.9
약물남용	15-19세	0.2	0.2	0.2	0.1	0.2	0.2
	20-29세	0.9	1.3	0.2	0.1	0.6	0.7
교통사고	15-19세	1.4	1.3	0.8	0.4	1.1	0.9
	20-29세	1.7	1.8	0.5	0.4	1.1	1.1

자료 : Socialstyrelsen. 사망통계

5) 독일

2006년 독일 전체 청소년 사망률은 <표 V-25> 와 같다.

<표 V-25> 2006년 연령과 성별에 청소년사망률

(단위: 같은 연령대 인구 천 명당 사망률)							
연령	전체	0-1	1-5	5-10	10-15	15-20	20-25
남자	9.6	4.1	0.2	0.1	0.1	0.4	0.6
여자	10.4	3.5	0.2	0.1	0.1	0.2	0.2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2008: 54.

아동청소년의 주된 사망이유는 사고이며 남아의 사고사망률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세 미만 남아의 사고사망률은 10만 명 당 13명, 1-5세는 5.4명, 5-15세는 3.1명, 15-25세는 24.6명으로 나타났다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자청소년의 사고사망률은 10만 명 당 각각

10.1명, 2.8명, 2.1명, 7.5명으로 나타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8: 44, 247, 248).

아동청소년의 두 번째 사망원인은 자살이다. 특이한 것은 자살시도는 여자 청소년이 더 자주하는 반면, 자살시도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남자 청소년이 더 많았으며, 특히 이 경우 남성 동성연애자의 자살률이 높았다. 2006년 5~15세 남자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1명, 15~25세는 10만 명 당 6명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자청소년의 자살률은 각각 0.2명과 2.4명으로 나타났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8: 44, 247, 248).

4. 음주 및 흡연을 포함한 약물오남용 현황

1) 한국

(1) 음주

보건복지부의 2006년‘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한국 중고등학생 음주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잔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28.1%였고, 지난 1개월간 1일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16.9%로 나타났다(<표 V-26>). 이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음주율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조금 더 높다는 사실이다. 월간 음주율의 경우 여학생은 17.6%, 남학생은 1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차이는 뚜렷했는데, 12-14세의 연간음주율은 6.1%, 월간음주율은 1.8%였으나, 15-18세의 연간음주율은 46.7%, 월간음주율은 29.8%로 훨씬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중고등학생의 평생음주율은 61.7%였고 2007년은 71.6%로 나타나 최근 2년 사이에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생음주율의 차이를 보면, 2005년 조사에서는 남학생이 61.6%, 여학생이

61.9%였으나 2007년에는 남학생 73.4%, 여학생이 69.5%로 남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학교유형별 평생음주율을 비교해보면, 중학생은 2005년 46.8%에서 2007년 62.2%로 증가했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74.7%에서 76.5%로 조금 높아졌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은 84.8%, 84.4%로 크게 변함이 없다.

<표 V-26> 한국 중고등학생 2006년도 음주실태

		(단위: %)	
		연간음주율 ¹	월간 음주율 ²
성	전체	28.1	16.9
	남자	28.2	16.3
	여자	28.0	17.6
연령	12~14세	6.1	1.8
	15~18세	46.7	29.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주: 1) 전체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음주(1잔 이상)한 사람

2) 전체 청소년 중 지난 1달간 음주(1일 이상)한 사람

<표 V-27> 한국 중고등학생 평생 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7
전체	남자	61.7	71.6
	여자	61.6	73.4
	여자	61.9	69.5
중학교		46.8	62.2
인문고		74.7	76.5
실업고		84.8	84.6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5, 2007.

(2) 흡연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매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표 V-28>). 그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 연간 흡연율은 1993년 2.2%에서 2000년 7.4%로 증가했다가 2004년 2.4%로 감소했으나 2007년에는 4.8%로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연간 흡연율은

1993년 25.5%에서 1997년 35.3%로 증가했으나 2000년 27.6%, 2005년 15.7%, 2007년 16.2%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중학생의 연간 흡연율은 1993년 1.4%에서 1997년 3.9%로 상승하였으나, 2002년에는 0.9%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여자중학생 연간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2.6%로 조금 높아졌다.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흡연율은 1993년 2.2%에서 2000년 10.7%로 증가했으나 그 후로는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07년에는 5.4%로 낮아졌다.

<표 V-28> 한국 중고등학생 연간 흡연율 추이

(단위: %)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	1993	2.2	1.6	2.5	2.7	25.5	13.6	24.9	40.2
	1995	3.8	1.0	4.2	1.9	26.1	15.2	30.3	33.2
	1997	3.9	1.5	3.8	6.3	35.3	21.6	41.0	41.6
	1999	5.6	1.1	8.7	7.0	32.3	24.7	31.1	41.0
	2000	7.4	2.7	6.3	10.6	27.6	19.9	29.8	37.9
	2001	6.0	2.2	5.5	8.5	24.8	10.1	32.6	29.6
	2002	3.5	2.0	1.4	7.8	23.6	15.8	24.2	30.2
	2003	2.8	1.6	0.7	5.6	22.1	21.4	20.0	25.2
	2004	2.4	0.5	2.9	4.4	15.9	10.8	17.3	21.5
	2005	4.2	3.8	3.5	5.7	15.7	12.6	22.1	13.2
	2006	5.3	3.1	4.9	8.2	20.7	18.1	21.9	22.4
	2007	4.8	2.1	3.4	9.4	16.2	19.1	15.3	13.3
여자	1993	1.4	1.4	1.5	1.1	2.2	1.2	2.7	2.6
	1995	2.6	1.2	2.8	3.6	4.7	3.8	5.1	5.6
	1997	3.9	3.2	4.4	3.7	8.1	9.9	7.2	7.3
	1999	3.1	2.2	3.2	3.5	7.5	10.5	7.4	5.3
	2000	3.2	0.9	1.0	6.6	10.7	12.2	10.0	10.5
	2001	2.0	0.6	1.8	3.3	7.5	9.6	6.1	7.3
	2002	0.9	0.0	1.6	0.8	7.3	8.5	9.6	3.5
	2003	2.3	0.0	2.0	4.2	6.8	6.8	7.6	5.3
	2004	1.7	2.1	1.3	1.7	7.5	9.2	8.5	4.9
	2005	3.3	2.9	2.7	3.5	6.5	5.2	8.1	5.9
	2006	3.3	1.9	3.2	4.7	5.2	6.3	4.7	4.8
	2007	2.6	1.8	3.9	2.5	5.2	6.6	3.9	5.4

출처: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1993-2007년도.

(3) 약물

대검찰청에 분석에 따르면, 2001-2006년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2002년 79명을 제외하고는 4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나타났다(<표 V-29>). 2006년 전체 마약사범 숫자가 7,711명이었는데, 이 중 청소년은 32명에 불과했다.

<표 V-29> 한국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

단위: 명(%)

연 도	전체 마약류사범	청소년 마약류사범			
		15세 이하	16~17세	18~19세	합 계
2001	10,102	0 (0.0)	2 (8.3)	22 (91.7)	24 (100.0)
2002	10,673	0 (0.0)	11 (13.9)	68 (86.1)	79 (100.0)
2003	7,546	3 (8.1)	6 (16.2)	28 (75.7)	37 (100.0)
2004	7,747	0 (0.0)	0 (0.0)	18 (100.0)	18 (100.0)
2005	7,154	1 (3.3)	10 (33.3)	19 (63.4)	30 (100.0)
2006	7,711	3 (9.3)	6 (18.8)	23 (71.9)	32 (100.0)

출처: 대검찰청.

2) 미국

(1) 음주

전미 청소년 위기행동 조사(National Youth Risk Behavior Survey: YRBS)에 의하면, 미국 공·사립학교 학생(9-12학년)들의 음주실태는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0>). 학생들의 생애음주율(일생동안 1일 최소 한 잔 이상 음주한 경험)은 1991년 81.6%에서 2007년 75.0%로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 동안 최소 1일 이상 하루에 최소 한 잔 이상 음주한 경험으로 측정하는 '현재 음주율' 또한 1991년 50.8%에서 2007년 44.7%로 감소하였다. '만성적인 과음율'(지난 1개월 동안 최소 하루에 다섯 잔 이상 음주)은 1991년 31.3%에서 2007년 26.0%로 감소하였다. 학교시설에서의 음주경험(지난 1개월 동안 최소 1일 이상 하루에 한 잔 이상 학교시설에서 음주한 경험)을 보면 1993년에는 그 비율이 5.2%이고 1995년에는 6.3%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 2007년에는 4.1%로 낮아졌다.

<표 V-30> 미국 공·사립학교 9-12학년 학생들의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생애경험 ¹	현재 음주경험 ²	만성적인 과음 ³	학교시설에서의 음주경험 ⁴
1991	81.6 (79.4—83.7)	50.8 (47.9—53.7)	31.3 (28.7—34.1)	NA6
1993	80.9 (79.4—82.3)	48.0 (45.9—50.2)	30.0 (28.2—31.9)	5.2 (4.5—6.1)
1995	80.4 (78.3—82.2)	51.6 (49.2—54.1)	32.6 (29.5—35.7)	6.3 (5.5—7.2)
1997	79.1 (77.0—81.1)	50.8 (47.9—53.6)	33.4 (31.2—35.6)	5.6 (5.0—6.3)
1999	81.0 (78.8—83.0)	50.0 (47.4—52.7)	31.5 (29.6—33.5)	4.9 (4.1—5.7)
2001	78.2 (76.5—79.9)	47.1 (44.8—49.3)	29.9 (27.8—32.0)	4.9 (4.4—5.5)
2003	74.9 (72.0—77.7)	44.9 (42.5—47.4)	28.3 (26.3—30.4)	5.2 (4.3—6.2)
2005	74.3 (71.0—77.4)	43.3 (40.5—46.1)	25.5 (23.3—27.9)	4.3 (3.7—4.9)
2007	75.0 (72.4—77.4)	44.7 (42.4—47.0)	26.0 (24.0—28.0)	4.1 (3.5—4.8)

자료: National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1991—2007.

주: 1) 일생동안 최소 1일 이상 최소 한 잔 이상 음주.

2) 지난 1개월 동안 최소 1일 이상 최소 한잔 이상 음주.

3) 지난 1개월 동안 최소 하루에 수 시간 내 연속으로 5잔 이상 음주.

4) 지난 1개월 동안 최소 1일 이상 한잔 이상 학교시설에서 음주.

5) 95% 신뢰구간.

6) 자료획득 불가능(Not available)

미국 교육부의 학교의 범죄 및 안전 지표 조사(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는 9-12학년 학생들의 성별·학년별·장소별 음주실태를 보여준다(<표 V-31>). 그 결과 역시 앞의 <표 V-30>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청소년 학생들의 음주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이외의 ‘어디선가’ 지난 1개월 동안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남녀 추이를 보면, 남학생은 1993년 50.1%에서 1997년 53.3%로 조금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3.8%로 낮아졌다. 여학생의 그 비율은 1993년 45.9%, 1995년 49.9%로 높아졌으나 1997년 47.8%, 2005년 42.8%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개월간의 ‘학교에서’의 음주경험을 보면 남학생은 1993년 6.2%, 1995년과 1997년은 7.2%였으나 1999년 6.1%, 2005년 3.7%로 감소하였다. 여학생의 그 비율은 1993년 4.2%, 1995년 5.3%에서 2005년 3.3%로 낮아졌다.

지난 1개월 동안 학교 이외의 어디선가 음주한 경험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2학년이 가장 높고 9학년이 가장 높다. 2005년의 경우 12학년의 해당 음주율은 50.8%, 11학년은 46.0%, 10학년은 42.0%, 그리고 9학년은 36.2%이다. 지난 1개월 동안 학교에서의 학년별 음주율 추이를 보면 12학년은 4.3-6.2%, 11학년 4.0-6.0%, 10학년 4.5-5.9%, 9학년 4.4-7.5%의 수준이다.

<표 V-31> 음주경험(지난 1개월)

(단위: %)

구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어 디 선 가	남자	50.1	53.2	53.3	52.3	49.2	43.8	43.8
	여자	45.9	49.9	47.8	47.7	45.0	45.8	42.8
	9학년	40.5	45.6	44.2	40.6	41.1	36.2	36.2
	10학년	44.0	49.5	47.2	49.7	45.2	43.5	42.0
	11학년	49.7	53.7	53.2	50.9	49.3	47.0	46.0
	12학년	56.4	56.5	57.3	61.7	55.2	55.9	50.8
	합계	48.0	51.6	50.8	50.0	47.1	44.9	43.3
학 교 에 서	남자	6.2	7.2	7.2	6.1	6.1	6.0	5.3
	여자	4.2	5.3	3.6	3.6	3.8	4.2	3.3
	9학년	5.2	7.5	5.9	4.4	5.3	5.1	3.7
	10학년	4.7	5.9	4.6	5.0	5.1	5.6	4.5
	11학년	5.2	5.7	6.0	4.7	4.7	5.0	4.0
	12학년	5.5	6.2	5.9	5.0	4.3	4.5	4.8
	합계	5.2	6.3	5.6	4.9	4.9	5.2	4.3
학생수(천)		13,093	13,697	14,272	14,623	15,061	15,723	16,286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YRBSS), 1993-2005.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7. p.104.

(2) 흡연

미시간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8-12학년 학생들의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2>). 학년별로 생애흡연을 추이를 살펴보면, 8학년은 1992년 44.0%, 1995년 46.1%, 2000년 44.1%, 2005년 27.9%, 2007년 24.6%로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10학년의 생애흡연을 추이를 보면, 1992년 55.1%, 1995년 56.9%, 2000년 57.7%, 2005년 40.7%, 2007년 36.1%로 변화되어 왔는데, 1997년부터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2학년의 생애흡연을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1992년 63.1%, 1995년 62.0%, 2000년 64.6%, 2005년

52.8%, 2007년 47.1%이며 1998년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다.

1개월 흡연율은 8학년이 1992년 14.3%, 1997년 21.0%, 2007년 8.7%이고, 10학년은 1992년 20.8%, 1997년 30.4%, 2007년 14.5%이며, 12학년은 1992년 28.3%, 1998년 36.5%, 2007년 21.6%이다. 학년에 관계없이 1992년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1개월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1일 흡연율 추이를 보면, 8학년은 1992년 7.2%, 1997년 10.4%, 2007년 4.0%이고 10학년은 1992년 12.6%, 1997년 18.3%, 2007년 7.6%이며, 12학년은 1992년 18.5%, 1998년 24.6%, 2007년 12.2%로서, 학년에 관계없이 1997-9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1일 반갑 이상의 흡연율은 8학년이 1992년 3.1%에서 2007년 1.5% 낮아졌고, 같은 기간 10학년은 6.5%에서 3.3%, 12학년은 10.7%에서 5.9%로 그 비율이 감소했다. 대체적으로 고학년 학생의 흡연율이 높지만,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 청소년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2> 흡연율 추이

(단위: %)

연도	생애경험			1개월 경험			1일 경험			하루 반갑 이상			응답자(가중치) (백명)		
	8 학 년	10 학 년	12 학 년	8 학 년	10 학 년	12 학 년	8 학 년	10 학 년	12 학 년	8 학 년	10 학 년	12 학 년	8 학 년	10 학 년	12 학 년
1992	44.0	55.1	63.1	14.3	20.8	28.3	7.2	12.6	18.5	3.1	6.5	10.7	175	148	150
1993	45.2	53.5	61.8	15.5	21.5	27.8	7.0	12.3	17.2	2.9	6.0	10.0	186	148	158
1994	45.3	56.3	61.9	16.7	24.7	29.9	8.3	14.2	19.0	3.5	7.0	10.9	183	153	163
1995	46.1	56.9	62.0	18.6	25.4	31.2	8.8	14.6	19.4	3.6	7.6	11.2	173	158	154
1996	46.4	57.6	64.2	19.1	27.9	33.5	9.3	16.3	21.6	3.4	8.3	12.4	175	170	154
1997	49.2	61.2	63.5	21.0	30.4	34.0	10.4	18.3	22.2	4.3	9.4	13.0	178	156	143
1998	47.3	60.2	65.4	19.4	29.8	36.5	9.0	18.0	24.6	3.5	8.6	14.3	186	155	154
1999	45.7	57.7	65.3	19.1	27.6	35.1	8.8	15.8	22.4	3.6	7.9	12.6	181	150	152
2000	44.1	57.6	64.6	17.5	25.7	34.6	8.1	15.9	23.1	3.3	7.6	13.2	167	136	136
2001	40.5	55.1	62.5	14.6	23.9	31.4	7.4	14.0	20.6	2.8	6.2	11.3	167	143	128
2002	36.6	52.8	61.0	12.2	21.3	29.5	5.5	12.2	19.0	2.3	5.5	10.3	162	140	128
2003	31.4	47.4	57.2	10.7	17.7	26.7	5.1	10.1	16.9	2.1	4.4	9.1	151	143	129
2004	28.4	43.0	53.7	10.2	16.7	24.4	4.5	8.9	15.8	1.8	4.1	8.4	165	158	146
2005	27.9	40.7	52.8	9.2	16.0	25.0	4.4	8.3	15.6	1.7	3.3	8.0	170	164	146
2006	25.9	38.9	50.0	9.3	14.9	23.2	4.0	7.5	13.6	1.7	3.1	6.9	168	162	147
2007	24.6	36.1	47.1	8.7	14.5	21.6	4.0	7.6	12.2	1.5	3.3	5.9	165	162	142

자료: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1-2007.

(3) 약물남용

전미 청소년 위기행동 조사(YRBS) 결과에 의하면 미국 학생 청소년(9-12학년)의 약물남용은 199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점점 심화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3>). 그 결과에 따르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는 9-12학년 학생의 비율은 1991년 31.3%에서 1997년 47.2%로 증가한 뒤, 차츰 감소하여 2007년에는 38.1%로 낮아졌다. 그렇지만 1991년의 수준과 비교하면 증가한 것이다. 지난 1개월 동안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1991년 14.7%에서 1999년 26.7%로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9.7%로 낮아졌다.

<표 V-33> 약물 사용을 추이

(단위: %)						
연도	대마초 (생애) ¹	대마초 (현재) ²	코카인 (생애) ³	메스암페타민 (생애) ⁴	흡입제 약물(생애) ⁵	불법스테로이드 (생애) ⁶
1991	31.3 (28.4-34.4)	14.7 (12.6-17.0)	5.9 (5.1-6.9)	NA8	NA	2.7 (2.3-3.2)
1993	32.8 (29.6-36.2)	17.7 (15.3-20.3)	4.9 (4.1-5.8)	NA	NA	2.2 (1.7-2.8)
1995	42.4 (39.4-45.5)	25.3 (23.5-27.3)	7.0 (5.9-8.3)	NA	20.3 (18.3-22.5)	3.7 (3.1-4.3)
1997	47.1 (44.1-50.1)	26.2 (24.0-28.5)	8.2 (7.2-9.4)	NA	16.0 (14.7-17.3)	3.1 (2.7-3.6)
1999	47.2 (44.7-49.7)	26.7 (24.2-29.4)	9.5 (8.2-11.1)	9.1 (7.9-10.5)	14.6 (12.9-16.5)	3.7 (3.1-4.5)
2001	42.4 (40.5-44.3)	23.9 (22.3-25.5)	9.4 (8.2-10.7)	9.8 (8.3-11.5)	14.7 (13.1-16.6)	5.0 (4.4-5.5)
2003	40.2 (37.4-43.1)	22.4 (20.2-24.6)	8.7 (7.6-9.9)	7.6 (6.7-8.7)	12.1 (10.9-13.4)	6.1 (4.7-7.8)
2005	38.4 (35.9-41.0)	20.2 (18.6-22.0)	7.6 (6.7-8.7)	6.2 (5.3-7.2)	12.4 (11.1-13.8)	4.0 (3.5-4.6)
2007	38.1 (35.5-40.7)	19.7 (17.8-21.8)	7.2 (6.2-8.2)	4.4 (3.7-5.3)	13.3 (12.1-14.6)	3.9 (3.4-4.6)

자료: National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1991-2007

주: 1) 일생동안 한번 이상 대마초 흡연.

2) 지난 1개월 동안 한 번 이상 대마초 흡연.

3) 일생동안 분말, 크랙 혹은 순화된 형태의 코카인을 한 번 이상 투약.

4) 메스암페타민(혹은 스피드, 크리스탈, 크랙, 아이스라고도 부름)을 일생동안 한 번 이상 투약.

5) 접착제의 흡입, 에어로솔 스프레이 캔, 흡입, 페인트나 스프레이 흡입 등 일생 동안 한번 이상 경험 있음.

6) 일생동안 한번 이상 의사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 알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함.

7) 95% 신뢰구간.

8) 자료획득 불가능(Not available)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흡입제 약물은 대표적인 마약이다. 학생 청소년들의 코카인 생애경험 비율은 1991년 5.9%에서 1999년 9.5%로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7.2%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메스암페타민 생애경험율은 1999년 9.1%, 2001년 9.8%에서 2007년 4.4% 감소하였으며, 흡입제 약물의 생애경험율 1995년 20.3%에서 2003년 12.1%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12.4%, 2007년 13.3%로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생애동안 의사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1991년 2.7%에서 2003년 6.1%로 증가해왔으나, 2005년 4.0%, 2007년 3.9%로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3) 스웨덴

알코올·약물연합회(CAN: Centraförbundet för alkohol-och narkotikaupplysning)는 1971년부터 청소년의 음주, 마약, 흡연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9학년과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익명의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9학년 5,127명과 집나지움 2학년 4,38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⁵¹⁾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6-2007년의 스웨덴 청소년 9학년의 음주횟수는 감소하였으며, 이들의 전체 음주소비량도 줄어들었다. 남학생의 경우 2000년 이래로 한 달에 1번 이상 음주를 하는 학생의 숫자도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그 반대로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총 음주소비량은 2004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 약물남용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초 마약에 접해본 청소년의 숫자가 최근의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0년 이후 마약에 접한 청소년의 숫자는 감소하여 2007년 조사에서는 6%까지 떨어졌다. 마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학생 수나 마약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학생의 숫자도 2000년 이래로 감소하였다.

51) <http://www.can.se/documents/CAN/Rapporter/rapportserie/CAN-rapportserie-108-skolelevs-drogvanor-2007.pdf>

2004년 이래 마약을 해 본 학생의 비율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매년 17% 감소하고, 여학생은 매년 13% 감소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통 담배인 스누스(Snus) 소비 역시 2000년 이래로 남학생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김나지움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스누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감소했다.

9학년의 흡연은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초까지 감소했으나 그 후 변화가 없다가 최근의 조사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나 스누스 등의 기타 니코틴 소비를 합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독일

(1) 흡연(DJI, 2007 : 11)

- 2007년 독일청소년연구소 DJI의 연구에 따르면 전에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자주 흡연을 하였으나 최근 성별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12~17세 전체청소년의 약 20%가 가끔 흡연을 한다.
- 흡연습관은 성별 차이가 있는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깊이 들어 마시고, 더 강하고 직접 맡아 피는 담배나 타르함유량이 높은 담배를 즐겨 피운다.
- 학교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후기교육과정학교(Hauptschule)의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교학생들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2) 알코올(DJI, 2007 : 11)

- 독일 청소년의 첫 알코올 경험은 평균 14세다.
- 12-15세 청소년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알코올을 섭취하며, 16-19세 청소년 중 3/4이 만취한 상태를 경험한다.
-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며, 16-19세 남자청소년이 같은 연령대의 여자청소년보다 더 자주 5잔 이상의 술을 한꺼번에 마신다.

(3) 약물오남용(DJI, 2007 : 11)

-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더 자주 불법약물을 시도하고 복용한다.
-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약물은 대마초이며, 남자청소년의 17%가 복용한 경험이 있다.
- 최근에는 구동독청소년의 약물복용수준이 구서독청소년의 약물복용수준에 이르렀다.

5. 학교폭력

1) 한국

(1) 실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점차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4>). 초·중·고등학생 500-600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신체폭행 피해율은 2003년 3.0%, 2004년 2.5%, 2005년 2.6%, 2006년 2.9%로 나타나 2004년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박피해율은 2003년 1.1%에서 2006년 4.3%로 조금 증가했고, 금품갈취 피해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5.2%, 집단괴롭힘 피해율은 0.9%에서 3.2%로 각각 증가했다.

<표 V-34>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

(단위: %)				
연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2003	3.0	1.1	3.5	0.9
2004	2.5	3.1	4.2	0.6
2005	2.6	3.6	5.0	3.0
2006	2.9	4.3	5.2	3.2

주: 1) 2003년도: 전국 초중고생 6백만 명

2) 2004-2006년: 전국 초중고생 5백만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2003-2006년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는 2005년 6,604명에서 2006년 6,267명으로 약 5% 줄어들었다. 2006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성별·학년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62.6%, 여학생이 37.3%였으며, 중학생이 62.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34.3%, 초등학생이 2.8%였다.

<표 V-35>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성별·학년별 추이

		단위: 명(%)	
구분		2005	2006
초등학생	남학생	133 (2.0)	130 (2.1)
	여학생	51 (0.8)	48 (0.8)
중학생	남학생	2,652 (40.2)	2,430 (38.8)
	여학생	1,593 (24.1)	1,507 (24.0)
고등학생	남학생	1,553 (23.5)	1,365 (21.8)
	여학생	622 (9.4)	787 (12.6)
합계		6,604 (100.0)	6,267 (100.0)

자료: 시도교육청, 2005-2006.

세부적으로 보면, 중학교 남학생이 3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학교 여학생(24.0%), 고등학교 남학생(21.8%), 고등학교 여학생(12.6%), 초등학교 남학생(2.1%), 초등학교 여학생(0.8%)의 순이었다.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여학생 비율이 9.4%에서 12.6%로 증가한 점이 주목되며, 이와 대조적으로 중학교 남학생과 고등학교 남학생의 비율은 조금 감소했다.

(2) 대응체계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으로 표기함)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던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동법의 제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와 예산지원 등의 인적·물적 지원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제

점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특정한 폭력행위가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대책법은 형법 등 다른 법률과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법에서 다루고, 중대한 범죄는 소년법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혼란이 나타났다.⁵²⁾ 또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이 제한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8년 3월 14일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⁵³⁾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⁵⁴⁾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육성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동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할기구⁵⁵⁾에 대해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제14조), 일선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강제(제15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제2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제1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와 분쟁조정(제18조), 학교장의 의무(제19조),

52)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폭력’을 학교폭력 개념에 포함시켜 다뤄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53)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학생폭력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한 점이다. 이밖에도 학교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4) 동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의2).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55)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관할하는 기구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전담부서, 지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폭력사실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정부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도록 한다.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칭함)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으로서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평가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사·검사·변호사,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의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법에 의거하여 각 시·도의 지역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대한 지도, 평가 및 지원을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책임교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크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인적·물적·조직과 기반과 연결망,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은 학교폭력대책법의 독자적 규범영역으로서 실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소년법과 갈등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된다(이진국, 2007).⁵⁶⁾

학교폭력대책법은 자치위원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할 관할권만 부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진국, 2007: 97).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동법 제17조 1항). 이러한 점에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사후대책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학교폭력대책법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또는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또는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1개월 이내라도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56)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관할권을 일선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 명기)에 귀속시키고 있다(동법 제12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 분쟁조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비상설기구이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기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된다.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 역시 자치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치료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장과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동법에서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및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소년사법기관들 역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소년법은 소년사건의 사후절차만을 규율하고 있는 종래의 소년법 내용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아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두었다(제67조의2). 즉,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담당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폭력 근절 지시에 의거해 동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96. 6. 28. 대검 강령 61330-609)’에 의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 수 개의 중·고등학교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에 처한 학생을 상대로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해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⁵⁷⁾

‘우범소년 결연사업’ 역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검찰의 역점 사업이다. 이

57)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소개, 검찰활동 소개, 지원활동 중 소년선도보호 부분에서 발췌했음(<http://www.spo.go.kr>).

사업은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하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의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선도결연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⁵⁸⁾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는 1991년부터 자녀들을 아침에 등교하여 저녁에 하교할 때까지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소위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관내의 경찰, 구청, 교육청, 학교 등 모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역, 지역,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선진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1991년 9월에 처음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된 범죄예방 운동의 하나이다. 현재는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함으로써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운동의 성격과 주체가 바뀌었다.

경찰청은 재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이나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및 상담교실과 같은 ‘청소년 교실’을 운영하여 비행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재범방지 및 개별상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각급 경찰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교실’에서는 경

58)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소개, 검찰활동 소개, 지원활동 중 소년선도보호 부분에서 발췌했음(<http://www.spo.go.kr>).

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하려고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5,624개교 6,565,469명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범죄예방 교육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등 효과를 제고했다.

‘청소년 상담교실’은 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폭력 피해 보상방법, 피해신고 방법, 학교폭력 당사자 보호자간의 합의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상담하고 있으며, 비행학생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한 사후관리와 가해자 파악·검거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의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1997년 12,431회에서 2000년 18,827회, 2005년 31,226회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 2006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에는 경찰관 6,870명, 민간자원봉사자 1,721명을 모집·운영하여 26,734회의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였다(경찰청, 2007).

뿐만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학교폭력상담 신고센터’와 전국 경찰서 및 지방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BBS연맹,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문화인성교육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이나 불량소년, 중고등학교의 문제학생 등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예방 및 성인범죄화 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실적을 보면 1997년에는 실시횟수 125회, 참가인원 66,89명, 1998년 289회 9,024명, 1999년 197회 9,860명, 2000년 287회 9,598명, 2001년 231회 7,557명, 2002년 272회 7,249명, 2003년 137회 6,456명, 2004년 137회 5,300명, 2005년 5,787명, 그리고 2006년에는 153회 5,577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강력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매년 신학기 초 3개월 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관련 5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토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표 V-36>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단위: 건, 명)

구분/ 연도	총 계			자 진 신 고			피 해 신 고			서 클 해 체
	건수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건수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건수	가해 학생	피해 학생	
2005	1,961	11,205	4,295	1,175	8,610	2,247	786	2,595	2,048	752
2006	2,385	9,071	4,685	702	4,088	1,358	1,683	4,983	3,327	190

자료: 경찰청, 범죄백서(2006년도).

그 결과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통해 대부분 와해되었으며, 보복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려했던 피해학생의 신고도 2005년 786건에서 2006년 1,683건으로 114% 증가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⁵⁹⁾ 2005년 5월 부산지역 7개교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스쿨폴리스는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배움터지킴이로 명칭을 바꾸고 2005년 11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71개교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103개교(초등학교 2개

59)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경찰관이나 교사 등의 전문적인 경험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스쿨폴리스’로 선발하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상주하면서 순찰 및 상담을 통해 교내의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기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할 수 있는 교내 경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교내경찰’로 선정된 사람들은 퇴직경찰관 108명, 퇴직교원 78명, 기타 26명 등 모두 212명이다(경찰청, 2007: 범죄백서)(www.police.go.kr).

교, 중학교 79개교, 고등학교 25개교)로 확대·운영했다. 특히 2006년 배움터 지킴이의 학교폭력 억제효과가 인정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경기 2개교, 경북 4개교가 추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은 교육과학기술부나 경찰, 검찰 등의 소년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지 관련부서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outh Patrol: YP) 제도이다.⁶⁰⁾ 과거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 Y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2년 시범적용을 통해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21개교, 2003년 32개교, 2004년 44개교, 2005년 48개 학교가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Y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도교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YP 정보센터 전용홈페이지(<http://www.Y-patrol.go.k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 단일망으로 구성된 청소년 긴급전화(1388)를 이용한 신고 및 상담과 함께 홈페이지 내의 컴퓨터 온라인상의 왕따 및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서도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민단체로는 한국청소년폭력예방단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밝은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지역협의회 등이 있다.

2) 일본

일본의 교내폭력은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간 폭력(특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폭력행위에 국한한다), 대인폭력(교사와 학생에 대한 폭력은 제외), 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기물손괴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⁶¹⁾ 일본에서는 1997

60) YP는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ng), 청소년 과제활동(Youth Projecting), 청소년 순찰(Youth Patrolling), 청소년 권리(Youth Powering)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년부터 교내폭력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발생한 것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행위에는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연말연시 등 교육활동이 행해지지 않는 날짜·시간대에 일어난 경우는 제외), 교과과정에 의한 교외활동 중에 일어난 폭력행위(수학여행, 소풍, 사회체험활동 등), 통상의 시간대, 통학로의 등하교길에 일어난 폭력행위(학용품의 구입, 공사현장의 우회 등 합리적인 이유로 길을 가로지르거나 우회한 경우 포함) 등이다. 이러한 유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학교 외에서의 폭력행위가 된다.

일본에서는 교내폭력과는 별도로 소위 이지메(괴롭힘)의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지메는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일어난 장소는 학교의 내외를 불문함)”이라 정의된다. 구체적 형태로는 언어에 의한 협박과 놀림, 따돌림, 집단에 의한 무시, 소지품 숨기기, 금품갈취, 폭력행위, 친절의 강요 등 다양하다. 1994년부터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외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 실태

일본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숫자와 발생 건수의 추이는 <표 V-37>과 같다. 이에 따르면 교내 폭력이 발생한 학교 숫자는 1997년 5,212교에서 2000년 6,173교로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5,720교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2005년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수는 1997년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교외 폭력이 발생한 학교숫자는

61)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로는 교사의 목살을 잡는 행위, 교사를 향해 의자를 던지는 행위, 교사에게 고의로 부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다. 학생간 폭력에는 같은 학교 학생이 사소한 일로 싸워 한쪽이 부상을 입는 행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시절 동아리 후배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을 계획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대인폭력의 예로는 우연히 지나가던 다른 학교의 모르는 학생과 말다툼하여 구타 끝에 부상을 입히는 행위,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통행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졸업식에서 내빈을 발로 차는 행위 등이다. 기물손괴의 예는 화장실 문을 고의로 부수는 행위, 보수를 요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 학교에서 사육하는 동물에 고의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http://www.mext.go.jp/b_menu/houdou/14/12/02125b.htm).

1997년 2,801교에서 2000년 3,328교로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2,324교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던 학교숫자는 2000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교내폭력보다는 교외폭력을 경험한 학교의 감소추세가 보다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공립학교 중 교내폭력이 발생한 학교비율은 1997년 13.4%에서 2000년 16.1%로 증가했으나, 2001년 15.6%로 감소한 뒤, 2005년까지 대략 15%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교외폭력이 발생한 학교비율은 6-9%선이며 2000년 8.7%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6.3%로 감소하였다.

각급학교별 교내·외 폭력 발생률 추이를 보자. 교내폭력이 발생한 초등학교의 비율은 2-3%이며, 중학교 30-36%, 고등학교 37-47%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1997년을 제외하면 42-47%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교내폭력이 발생한 초등학교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외폭력이 발생한 초등학교 비율은 0.4-0.7%이고 중학교는 15-21%, 고등학교는 16-26%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비율은 200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2005년 교외폭력이 있었던 중학교의 비율은 14.9%, 고등학교는 16.4%이며 고등학교의 감소폭이 더 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의 추이를 보자. 교내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1997년 23,621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34,595건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01년 33,130건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며 2005년에는 30,283건으로 줄어들었다. 교외폭력 발생건수의 추이도 이와 비슷하다. 1997년(4,905건)에서 2000년(5,779건)까지는 증가했지만 그 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3,735건으로 감소했다. 199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 교내폭력 발생건수는 이보다 28.2% 증가했으나, 교외폭력은 23.9% 감소하였다.

<표 V-37> 학교폭력 발생학교 및 발생건수 추이(일본)

(단위:개,건,%)

구분	연도	공립 학교수	발생학교수				발생건수		
			학교내	발생율	학교외	발생률	학교내	학교외	합계
전체	1997	38,814	5,212	13.4	2,801	7.2	23,621	4,905	28,526
	1998	38,708	5,965	15.4	3,150	8.1	29,671	5,561	35,232
	1999	38,565	6,056	15.7	3,283	8.5	31,055	5,523	36,578
	2000	38,459	6,173	16.1	3,328	8.7	34,595	5,779	40,374
	2001	38,294	5,962	15.6	3,047	8.0	33,130	5,101	38,231
	2002	38,088	5,674	14.9	2,728	7.2	29,454	4,311	33,765
	2003	37,856	5,885	15.5	2,668	7.0	31,278	4,114	35,392
	2004	37,570	5,765	15.3	2,491	6.6	30,022	4,000	34,022
	2005	37,176	5,720	15.4	2,324	6.3	30,283	3,735	34,018
초·중·고등학교	1997	24,132	546	2.3	95	0.4	1,304	128	1,432
	1998	24,051	557	2.3	117	0.5	1,528	178	1,706
	1999	23,944	565	2.4	108	0.5	1,509	159	1,668
	2000	23,861	523	2.2	115	0.5	1,331	152	1,483
	2001	23,719	532	2.2	115	0.5	1,465	165	1,630
	2002	23,560	548	2.3	123	0.5	1,253	140	1,393
	2003	23,381	620	2.7	148	0.6	1,600	177	1,777
	2004	23,160	665	2.9	166	0.7	1,890	210	2,100
	2005	22,856	725	3.2	127	0.6	2,018	158	2,176
중학교	1997	10,518	3,147	29.9	1,774	16.9	18,209	3,376	21,585
	1998	10,497	3,599	34.3	2,001	19.1	22,991	3,792	26,783
	1999	10,473	3,761	35.9	2,104	20.1	24,246	3,831	28,077
	2000	10,453	3,715	35.5	2,145	20.5	27,293	3,992	31,285
	2001	10,429	3,516	33.7	1,978	19.0	25,769	3,619	29,388
	2002	10,392	3,317	31.9	1,808	17.4	23,199	3,096	26,295
	2003	10,358	3,446	33.3	1,755	16.9	24,463	2,951	27,414
	2004	10,317	3,366	32.6	1,643	15.9	23,110	2,874	25,984
	2005	10,238	3,294	32.2	1,527	14.9	23,115	2,681	25,796
고등학교	1997	4,164	1,519	36.5	932	22.4	4,108	1,401	5,509
	1998	4,160	1,809	43.5	1,032	24.8	5,152	1,591	6,743
	1999	4,148	1,730	41.7	1,071	25.8	5,300	1,533	6,833
	2000	4,145	1,935	46.7	1,068	25.8	5,971	1,635	7,606
	2001	4,146	1,914	46.2	954	23.0	5,896	1,317	7,213
	2002	4,136	1,809	43.7	797	19.3	5,002	1,075	6,077
	2003	4,117	1,819	44.2	765	18.6	5,215	986	6,201
	2004	4,093	1,734	42.4	682	16.7	5,022	916	5,938
	2005	4,082	1,701	41.7	670	16.4	5,150	896	6,046

자료: 文部科學省. 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現象について(概要). 1997-2005年度.

각급학교별로 학교폭력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교내폭력의 경우 1997년-2002년 사이에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1,304건에서 1,253건으

로 감소하였지만, 그 후로는 2003년 1,600건, 2004년 1,890건, 2005년 2,0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교외폭력을 보면, 1997년에서 2002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128건에서 140건으로 증가해왔고, 2003년 177건, 2004년 210건으로 급증했으나 2005년에는 다시 158건으로 낮아졌다.

중학생의 교내폭력의 추이 역시 초등학생의 그것과 유사하다. 1997년 18,209건에서 2000년 27,293건으로 증가한 다음, 2001년(25,769건)부터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23,115건으로 낮아졌다. 중학생의 교외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1997년(3,376건)에서 2000년(3,992건)까지는 증가했지만, 2001년(3,619건)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681건으로 줄어들었다. 2005년 중학생 교외폭력은 1997년보다 20.6% 감소한 수준이다.

고등학생의 교내폭력 발생추이를 보면, 1997년 4,108건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5,971건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5,150건으로 줄어들었다. 고등학생의 교내폭력은 2002년부터 5,000-5,200건 수준에서 안정적이 되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교외폭력은 1997년 1,401건에서 2000년 1,635건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896건으로 낮아졌다.

전체 학교폭력 발생건수에서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비율은 4-6%선이며, 중학생은 76-78%, 고등학생이 18-19%로서 대부분 중학생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별 교내폭력의 발생비율을 보면 중학생이 76-79%, 고등학생 17%, 초등학생 4-7%이다. 2002년 이후 중학생의 구성비는 조금 감소하고 초등학생 비율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외폭력의 경우 중학생 비율은 68-72%, 고등학생 24-29%, 초등학생은 3-5%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외폭력 구성비가 교내폭력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흥미롭다.

(2) 집단괴롭힘

소위 이지메라고 하는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집단괴롭힘 현상은 우리나라의 왕따에 해당하는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의 하나이다.

<표 V-38> 일본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발생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공립학교	발생학교수	발생학교비율	발생건수	학교당발생건수
초 등 학 교	1994	24,390	7,626	31.3	25,295	1.0
	1995	24,302	8,284	34.1	26,614	1.1
	1996	24,235	6,638	27.4	21,733	0.9
	1997	24,132	5,182	21.5	16,294	0.7
	1998	24,051	4,118	17.1	12,858	0.5
	1999	23,944	3,366	14.1	9,462	0.4
	2000	23,861	3,531	14.8	9,114	0.4
	2001	23,719	2,806	11.8	6,206	0.3
	2002	23,560	2,675	11.4	5,659	0.2
	2003	23,381	2,787	11.9	6,051	0.3
	2004	23,160	2,671	11.5	5,551	0.2
	2005	22,856	2,579	11.3	5,087	0.2
중 학 교	1994	10,568	5,810	55.0	26,828	2.5
	1995	10,551	6,160	58.4	29,069	2.8
	1996	10,537	5,463	51.8	25,862	2.5
	1997	10,518	5,023	47.8	23,234	2.2
	1998	10,497	4,684	44.6	20,801	2.0
	1999	10,473	4,497	42.9	19,383	1.9
	2000	10,453	4,606	44.1	19,371	1.9
	2001	10,429	4,179	40.1	16,635	1.6
	2002	10,392	3,852	37.1	14,562	1.4
	2003	10,358	3,934	38.0	15,159	1.5
	2004	10,317	3,774	36.6	13,915	1.3
	2005	10,238	3,538	34.6	12,794	1.2
고 등 학 교	1994	4,163	1,564	37.6	4,253	1.0
	1995	4,164	1,650	39.6	4,184	1.0
	1996	4,164	1,504	36.1	3,771	0.9
	1997	4,164	1,285	30.9	3,103	0.7
	1998	4,160	1,233	29.6	2,576	0.6
	1999	4,148	1,133	27.3	2,391	0.6
	2000	4,145	1,151	27.8	2,327	0.6
	2001	4,146	1,050	25.3	2,119	0.5
	2002	4,136	1,029	24.9	1,906	0.5
	2003	4,117	1,094	26.5	2,070	0.5
	2004	4,093	1,115	27.1	2,121	0.5
	2005	4,082	1,223	29.9	2,191	0.5

	구분	공립학교	발생학교수	발생학교비율	발생건수	학교당발생건수
특 수 학 교	1994	905	95	10.5	225	0.2
	1995	905	98	10.8	229	0.3
	1996	913	88	9.6	178	0.2
	1997	917	72	7.9	159	0.2
	1998	923	71	7.7	161	0.2
	1999	928	59	6.4	123	0.1
	2000	932	57	6.1	106	0.1
	2001	936	50	5.3	77	0.1
	2002	933	43	4.6	78	0.1
	2003	935	45	4.8	71	0.1
	2004	939	39	4.2	84	0.1
	2005	943	38	4.0	71	0.1
합	1994	40,026	15,095	37.7	56,601	1.4
	1995	39,922	16,192	40.6	60,096	1.5
	1996	39,849	13,693	34.4	51,544	1.3
	1997	39,731	11,562	29.1	42,790	1.1
	1998	39,631	10,106	25.5	36,396	0.9
	1999	39,493	9,055	22.9	31,359	0.8
	2000	39,391	9,345	23.7	30,918	0.8
	2001	39,230	8,085	20.6	25,037	0.6
	2002	39,021	7,599	19.5	22,205	0.6
	2003	38,791	7,860	20.3	23,351	0.6
	2004	38,509	7,599	19.7	21,671	0.6
	2005	38,119	7,378	19.4	20,143	0.5

그 실태를 보면 <표 V-39>와 같다, 1994년은 전체 공립학교(40,026개교) 중에서 37.7%인 15,095개교에서 집단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공립학교의 집단괴롭힘 발생률이 40.6%로 높아졌으나 그 후로는 감소하여 2005년에는 38,119개교 중 19.4%인 7,378개교에서 집단괴롭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괴롭힘 발생건수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4년에는 56,601건으로 학교당 평균 발생건수는 1.5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0.5건으로 줄어들었다.

각급학교별 집단괴롭힘의 추이를 보자. 초등학교의 집단괴롭힘 발생비율은 1994년 31.3%에서 2005년 11.3%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학교당 평균발생건수 역시 1.0건에서 0.2건으로 낮아졌다. 중학교의 집단괴롭힘 발생

비율은 1994년 55.0%이고 1995년에는 58.4%로 높아졌으나 그 후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6%를 나타냈다. 학교당 평균 발생건수 또한 1994년 2.5건, 1005년 2.8건에서 2005년 1.2건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발생비율은 1994년 37.6%, 1995년 39.6%에서 2005년 29.9%로 낮아졌고, 학교당 평균 발생건수 또한 1994년 1.0건에서 2005년 0.5건으로 줄어들었다. 특수학교의 집단괴롭힘 발생비율은 1994년 10.5%에서 2005년 4.0%로 감소했고, 학교당 평균 발생건수 역시 같은 기간 0.2건에서 0.1건으로 낮아졌다. 최소한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본의 집단괴롭힘 문제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현재 집단괴롭힘 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은 중학교이며 그 다음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순이다. 이러한 순서는 지난 1994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3) 대응체계

①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조치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출석정지제도이다(학교교육법 제26조 및 제49조에 근거). 출석정지제도는 공립 초·중학교에서 ‘성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시교육위원회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퇴학 및 정학 조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정지는 의무교육 제도권에서 의미 있게 운용되고 있다. 출석정지제도는 가해학생 본인에게 징계하는 관점이 아니라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반학생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새로운 출석정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행동이 반복될 때에는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게 되었고 이치메나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거나 수업을 방해받는 상태가 개선되었다.

출석정지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했었지만, 종래에는 법률상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출석정지기간 중

학생지도도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자 2000년 12월 교육개혁국민회의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에게 느슨하게 대응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에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01년 6월, 출석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절차규정을 정비하며 출석정지 기간 중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취지에서 학교교육법을 개정했다. 개정 학교교육법에 따른 출석정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출석정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행할 경우에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여 요건을 명확히 했다. 둘째,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유 및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출석정지를 위한 절차규정을 정비했다. 셋째, 출석정지 기간 중 교직원이 가해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와 교육상담을 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과 연계하여 지도에 임하는 등 출석정지 기간 중의 지도가 충실해지게 되었다(文部科學省, 2001).

② 학교의 대응

일본의 학교들은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호교사의 복수배치나 학교상담사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행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비행예방 활동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이루어진다. 사실 보육원이나 유치원들은 문부과학성의 기준이나 지침에 순응하는데, 그 지침은 주로 아동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의 촉진,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적절한 사회적 태도의 육성, 자연과 사회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사고능력의 향상, 개별지역의 특수한 필요에 일치하는 지침의 제공, 초등교육과는 다른 유치원교육의 특성에 일치하는 지침의 제공, 가정 및 학교와 긴밀하게 접촉함으로써 가정교육과 협력하여 유치원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윤종우, 2005: 108-109). 또한 중고등학교에서의 비행예방 활동을 위해 학교동아리(circle)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아리들은 일반

적으로 방과 후에 모임을 갖고 외국어, 문화, 컴퓨터 과학, 스포츠 등과 같은 것들을 주제로 활동한다. 이 동아리들은 집단의식과 협동정신을 발전시킴으로써 비행을 억제하는 사회적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제도가 스쿨카운슬러제도(학교상담사)이다⁶²⁾. 1994년 아이치현 니시오시(愛知縣西尾市)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급우의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유서는 학교폭력을 사회문제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부성은 1994년 12월 9일 ‘학교폭력대책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협의한 끝에 스쿨카운슬러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1995년 문부성은 스쿨카운슬러 활용 조사연구 위탁사업을 시작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스쿨카운슬러 활용제도를 조사·연구한다는 취지로 사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했다. 중앙정부는 조사연구 위탁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2001년부터 스쿨카운슬러 활용사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스쿨카운슬러를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

문부과학성은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스쿨카운슬러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사업이 개시된 1995년에는 전국 154개교(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93개교, 고등학교 32개교)에 스쿨카운슬러가 배치되었는데, 종료연도인 2000년에는 2,250개교(초등학교 776개교, 중학교 1,124개교, 고등학교 350개교)로 확대되었다. 2002년에는 약 6,600개교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전국 3개 학급 이상 모든 공립학교(약 1만개교)에 스쿨카운슬러가 배치되었다.

스쿨카운슬러의 활동과 업무는 다양하고 다면적인 요소를 갖는다(伊藤美奈子, 2005: 115-124; 박병식, 2005: 153에서 재인용). 구체적 활동으로는 학생면접, 보호자면접, 교사에 대한 상담조언, 외부기관과의 가교역할 수행, 교원대상 교내연수 및 강연, 학교외부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포함된다.

62) 이하 박병식(2005)에서 요약 정리함.

스쿨카운슬러는 일반적으로 1인 근무이다. 한 학교에 주 4시간 2회, 혹은 주 8시간 1회가 보통이다.

스쿨카운슬러는 학교에서 결석, 비행, 가출, 학대, 섭식장애, 자기망상, 학습장애, 자폐성 학생 등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교육영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영역, 복지영역 등 유관 영역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도 취급하게 된다. 이에 동경도에서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따라 스쿨링 네트워크 정비사업(SSN)이 실시되고 있다. 증가하는 학교결석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사회에는 교육상담실 등 중추기능(스쿨링 서포트센터)이 설치되어 있는데, 스쿨카운슬러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학교나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임상심리사회와 학교사회사업가들도 스쿨카운슬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경찰과 학교의 연계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소년서포트팀 사례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연계를 현실화시킨 좋은 사례이다(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2003: 75-79). 홋카이도 경찰본부는 1996년부터 범죄피해소년, 비행소년 등의 문제로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에 의한 ‘소년서포트팀’을 만들어 각 기관의 업무내용에 따라 상호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실무담당자를 파견하여 팀을 편성하고 그 팀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러한 연계팀은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문제청소년별로 학교나 관계기관으로 조직된 지원팀은 2003년 9월의 경우 도쿄에만 71개소가 설치되어 약 240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다. 지원팀의 사무국은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찰, 소년센터, 의사회, 학교, 아동상담소, 보호사, 아동위원 등이 참가하여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자를 모아 팀을 조직하게 된다.

이밖에 각급 학교는 ‘학교-경찰 연합위원회’에 대표를 보내 1년에 2-3회 학교에서의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경찰의 조언을 듣고 있다(윤종우, 2005: 109).

③ 경찰 및 공공기관의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경찰은 청소년 지도의 일환으로 소위 ‘창구’라고 불리우는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청소년과 부모, 후견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시복지부서의 청소년부(과)가 있다. 청소년부(과)는 청소년지도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센터에서는 운동경기, 수필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윤종우, 2005: 109).

청소년이 형법범이나 특별법범으로 검거된 경우, 전국적으로 약 70%가 심판불개시, 약 10%가 불처분, 10% 이상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나머지는 소년원 송치, 청소년 자립지원시설 등 송치, 검찰청에의 송치 대상이 된다. 상점절도와 같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경찰 등에 의해 검거된 경우 대부분 가정법원에 간이송치 된다. 하지만 그 숫자는 검거되는 청소년의 약 40%에 해당한다. 간이송치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한 번도 조사관에 의해 면접을 받지 않고 심판불개시가 된다. 이들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통상 송치된 청소년들 중 약 50%가 심판불개시, 약 20%는 불처분, 약 20%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더라도 월 2회 보호사를 방문하면 되며, 청소년들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보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청소년의 가정을 방문하는 정도이다.

한편, 청소년 범죄 중에는 아동정신과 의사가 아니고는 정확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의 결정이 청소년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동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에 가정법원에 아동정신과 의사를 상근시켜 가정법원과 아동정신과 의사가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불량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환경, 기타 환경 상의 이유로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직원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 학습지도, 작업지도 등을 포함한 교

육을 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비행을 저지른 아동도 입소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는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과 함께 실시되는 유형이 있다.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실시되는 것과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소년원을 가퇴원한 자에게 실시되는 것이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진 문제성과 특성을 범죄·비행의 형태, 환경 등에 의해 10가지로 분류한 다음,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처우지침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맞춰 처우하는 ‘유형별처우제도’가 실시된다는 사실이다. 각 유형에 따라 ‘처우지침’과 ‘대상자 이해를 위한 참고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④ 지역사회와의 개입

일본에서는 범죄청소년의 자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⁶³⁾ 이들 중 대표적인 민간갱생보호단체 활동이 BBS 운동이다.⁶⁴⁾ BBS회(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는 형, 오빠, 누나, 언니의 입장에서 소년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육성과 비행방지를 지원하고 범죄나 비행이 없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원봉사 조직이다. 주된 활동으로는 친구활동, 비행방지활동, 연구활동 등이 있으며, 1955년부터는 사례사업(case work) 요소의 도입으로 친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친구활동이란 문제나 고민을 가진 청소년의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문제해결을 돕는 것으로 보호관찰소나 아동상담소,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된다. 시읍면(市町村) 등의 지

63) 이하 서울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3: 86-89)에서 정리함.

64) 이 운동은 1904년 미국 뉴욕시 소년법원 서기인 어네스트 쿨터(Ernest K. Coulter)가 제창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1947년 도시샤(同志社),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교토소년보호학생연맹’에서 발단했다고 한다. 이 BBS 운동은 초기에는 전쟁고아나 비행소년의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그 후 급속히 확대되어 1950년 11월에 ‘전국 BBS 운동연락협의회’가 결성되고 1952년에는 ‘일본 BBS연맹’으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서울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3: 86).

역단위 이외에 최근에는 학교를 활동단위로 하는 BBS회도 결성되고 있다. 2002년 4월 BBS회의 숫자는 591개, 회원수는 6,053명이었다. 하지만 BBS 운동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 보호사, BBS 회원 삼자 간에 이해가 부족하고 상호불신하며, 운동의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갱생보호부인회는 여성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와 비행의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의 갱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다.⁶⁵⁾ 주된 활동으로는 연구협의 활동, 갱생보호 사상의 보급 활동, 범죄예방 활동, 교정보호 관계시설 및 단체에 대한 협력·원조 활동, 교정보호시설에의 위문과 물자원조 활동 등이다.

갱생보호부인회 활동의 특징으로는 ①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갱생보호를 직·간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여성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 활동을 행한다는 점, ③ 단체로서 조직력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④ 회원활동을 통해 범죄 및 비행의 방지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점, ⑤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서 회원은 시간과 노동력, 특기,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 등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미니집회’라는 소수인원의 주민집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자녀양육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4월의 경우 시읍면 단위의 지구회수는 1,317개이고 회원수는 200,310명에 달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긴급보호 대상자는 범죄와 비행 전력, 불우한 환경으로 안정된 직업을 얻기 어렵고 이것이 성행의 개선에 지장이 되는 예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들의 내력을 알고도 고용하여 비행청소년의 갱생에 협력하는 민간독지가를 ‘협력고용주’라고 한다. 본래 협력고용주 제도는 보호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가에게 대상자의 취직에 협력을 요청한 데에서 시작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협력고용주란 보호관찰 대상자와

65) 갱생보호부인회는 1949년에 범죄자예방갱생법이 시행된 후 시읍면 지역을 단위로 지구회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1964년에 전국조직으로서 전국갱생보호부인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69년 전국갱생보호부인연맹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갱생긴급보호 대상자의 취직원조 및 직업생활 보도라는 측면에서 갱생보호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민간독지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2년 4월의 경우 협력고용주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4,606에 달하며 피고용자의 숫자는 566명이었다.

3) 미국

(1) 실태

미국의 학교폭력 실태는 공식통계와 범죄실태(가해 및 피해경험) 조사의 두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NIBRS에 의해 보고된 미국의 학교폭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40>). 2000년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이하 학교범죄)는 92,242건이었으며 2004년에는 이보다 60% 증가한 147,584건이었다. 학교범죄가 경찰에 보고된 건수는 2000년 88,687건에서 2004년 139,32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고율은 대략 94-96%이다. 그렇지만 전체 학교에서 학교범죄가 발생한 학교의 비율은 3.2-3.3%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학교범죄의 가해자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보고된 학교범죄자의 숫자는 2000년 102,655명에서 2004년 164,598명으로 60.3% 증가했다. 경찰에 보고되지 않은 학교범죄자 역시 2000년 33,239명에서 2004년 47,91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범죄자 중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비율은 대략 23-24%이다. 학교범죄자 중 체포된 용의자 역시 2000년 24,662명에서 2004년 48,109명으로 95% 증가하였다. 전체 학교범죄자 중 체포된 자의 비율은 2000년 18.1%에서 2004년 22.6%로 증가했다. 경찰에 보고된 범죄자 중 체포된 자의 비율은 2000년 24.0%에서 2004년 29.2%로 높아졌다.

<표 V-39> 미국의 학교범죄 발생추이(2000-2004)*

단위: 건,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2,616,448	3,269,022	3,458,569	3,684,154	4,036,881
학교	84,627	109,239	110,467	121,765	132,121
학교발생비율	3.2	3.3	3.2	3.3	3.3
발생건수	92,242	120,938	123,200	135,489	147,584
보고건수	88,687	115,642	117,341	128,542	139,322
보고된 범죄자	102,655	134,088	136,358	150,913	164,598
미보고 범죄자	33,239	42,784	41,761	46,106	47,919
체포된 용의자	24,662	33,280	34,360	41,057	48,109

출처: FBI. 2007. Crime in Schools and Colleges: A Study of Offenders and Arrestees Reported via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Data, p.8
 체범죄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⁶⁶⁾에 의해 집계된 범죄

미국 학교범죄의 가해자 연령분포를 보면, 13-15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6-18세, 19세 이상의 순이다. 13-15세의 비율은 2000년 36.9%에서 2004년 38.8%로 조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19세 이상의 비율은 19.6%에서 17.6%로 조금 감소했다.

<표 V-40> 미국의 학교범죄 가해자 연령분포*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4세	35	0.1	49	0.1	74	0.1	53	0.1	76	0.1
5-9세	1,246	2.3	1,807	2.4	1,521	1.9	1,563	1.8	1,775	1.8
10-12세	5,845	10.7	8,541	11.4	8,859	11.4	9,557	10.9	10,640	10.8
13-15세	20,244	36.9	28,171	37.7	29,697	38.1	33,163	37.9	38,347	38.8
16-18세	16,732	30.5	22,506	30.1	23,564	30.2	27,533	31.5	30,624	31.0
19세이상	10,748	19.6	13,608	18.2	14,295	18.3	15,637	17.9	17,428	17.6
소계	54,850	100	74,682	100	78,010	100	87,506	100	98,890	100
연령미상	14,566		16,622		16,587		17,301		17,789	
합	69,416		91,304		94,597		104,807		116,679	

* 출처: FBI. 2007. Crime in Schools and Colleges: A Study of Offenders and Arrestees Reported via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Data, p.9
 성, 인종, 가해자숫자 등 최소 하나의 특성이 확인된 경우만 집계함

66) NIBRS는 범죄수준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요약보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에 고안되었다. FBI는 1991년부터 법집행기관으로부터 NIBRS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 학생간 집단괴롭힘

앞의 분석에서 학생간 집단괴롭힘은 미국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표 V-41>에는 성별, 학년별 피해율(지난 6개월간의 피해)의 추이가 괴롭힘의 형태별로 제시되어 있다. 2005년 이전과 이후 집단괴롭힘 피해 측정 방식이 달라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피해조사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높고, 저학년일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피해율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피해율이 낮은 것은 이전의 조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성별 피해율은 차이가 있다. 2005년에는 남학생의 괴롭힘 피해율(27.1%)보다 여학생의 괴롭힘 피해율(29.2%)이 좀 더 높다. 그렇지만 괴롭힘 유형에 따라서는 성별 피해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놀림이나 조롱, 부정적 루머, 의도적인 따돌림이나 활동에의 참여 배제 등은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위협, 밀치기·발 걸기·침 뱉기, 의도적으로 물건 부수기, 상해(타박상, 베임, 긁힘, 찰과상 등이 포함됨) 피해는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년별로 괴롭힘의 구체적 피해유형들의 피해율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6-7학년의 저학년 학생들의 괴롭힘 피해율이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형에 관계없이 괴롭힘 피해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괴롭힘의 유형 가운데 가장 피해율이 높은 행위는 '상해'이고, 그다음이 놀림 혹은 조롱, 루머대상의 순이다. 2005년 조사에서는 상해 피해율이 24.0%, 놀림과 조롱이 18.7%, 루머대상이 14.7%로 나타났다.

<표 V -41> 괴롭힘 경험(지난6개월, 12-18세 학생)

(단위: %)

구분	1999	2001	2003	2005								
				합	놀림 조롱	루머 대상	위협 당함	밀치기 발걸기 침뺨기	원치 않는일 시키기	의도적 활동 배제	의도적 물건 부수기	상처 입음 1
남자	5.4	8.6	7.8	27.1	18.5	11.0	5.2	10.9	3.9	4.1	3.5	30.6
여자	4.8	7.1	6.5	29.2	19.0	18.5	4.4	7.1	3.1	5.2	3.3	17.7
6학년	10.5	14.3	13.9	36.6	26.3	16.4	6.4	15.1	4.4	7.4	3.9	32.3
7학년	9.0	13.0	12.7	35.0	25.2	18.9	6.3	15.4	4.7	7.1	4.6	31.7
8학년	5.5	9.2	8.8	30.4	20.4	14.3	4.3	11.3	3.8	5.4	4.5	27.0
9학년	5.0	8.6	6.7	28.1	18.9	13.8	5.3	8.2	3.2	3.8	2.7	21.0
10학년	3.2	4.6	3.5	24.9	15.5	13.6	4.9	6.8	3.6	3.6	2.9	21.2
11학년	2.6	4.3	3.5	23.0	14.7	13.4	3.2	4.2	2.8	3.3	2.6	14.5
12학년	1.2	2.4	2.2	19.9	11.3	12.5	3.5	2.9	1.8	2.2	2.4	12.7
합계	5.1	7.9	7.2	28.1	18.7	14.7	4.8	9.0	3.5	4.6	3.4	24.0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chool Crime Supplement (SCS) to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1999-2005.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5-2007.

주: 1) 상처 입음: 타박상/부풀어 오름, 베임, 긁힘, 찰과상 등이 포함됨

(3) 대응체계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어 왔다.⁶⁷⁾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청사진 프로그램) 및 안교안전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방을 꾀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67) 이하 서울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3: 131-163)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표 V-42>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의 주요 프로그램과 그 특징

프로그램	주요 특징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PP, STAR)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BBS(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프로그램	성인이 편부 또는 편모 청소년(6-18세)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우정을 제공
기능적 가족치료	11-18세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 프로그램
기회제공 프로그램	중3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습, 서비스, 발달을 위한 활동을 제공. 학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례관리 실시
생활기술 훈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흡연, 음주, 약물남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큼
다중체계 치료	가정 밖의 시설에서 강제 수용될 정도로 행동이나 욕구가 악화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약물남용과 범죄행위, 자살, 살인충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 효과적
태아·유아 가정방문 간호 프로그램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학대예방, 가출예방, 사전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문제를 예방
다면적 양육 처우	반사회적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지닌 시설에 수용될 위험이 높은 청소년과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학급(학급규칙을 만들고 집행, 학급회의 운영), 학교(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괴롭힘 예방위원회 결성, 학생 감독 강화 등) 수준의 활동 프로그램운영
대안적 사고능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 3회, 매회 20-30분간 실시. 충동통제, 스트레스 감소, 타인의 관점 이해하기 등으로 구성됨

뉴욕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과 기관으로는 도시챌린지 프로그램(City Challenge Program), 지역사회 대안센터(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 CCA), 대안적 양형 및 고용서비스 센터(Center for Alternative Sentencing and Employment Services: CASES), 아동원조협회(Children's Aid Society: CAS), 베라사

법연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 등이 있다.

도시챌린지 프로그램(City Challenge Program)은 1992년 뉴욕주 맨해튼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이다. 집중사후관리(Intensive Aftercare Program) 원칙에 기초한 일종의 대안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한 주간 수용 프로그램(day placement program)으로서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Academy: YLA)(일종의 극기훈련 캠프)과 연계되어 있다. YLA에서 6개월 교육과정이 끝난 후 사회복귀를 위해 나머지 기간을 보내는 사회내 시설 처우이다. YLA에서 습득한 핵심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조화된 집단토의를 통한 자기규율(self-discipline), 친화성(affiliation), 자긍심(self-esteem), 자기존중(self-worth) 등 네 가지 가치체계 수립을 강조한다. 수용기간은 통상 12-18개월 정도이며 매일 8시 30분에 시작해서 4-5시 경에 종료된다. 프로그램의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담프로그램이나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 및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입소할 때 규범준수 서약을 하며 복장 및 흡연도 규제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내내 수업시간 이후에는 교사가 전화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통행금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수용인원은 34-55명이며 10명 정도씩 소집단으로 수업수준에 맞게 진행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시로 술, 마약, 대마초 등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며 다른 사후관리 프로그램보다 엄한 기준을 갖고 있다.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소년법원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소년원이나 교도소로 이첩된다.

지역사회 대안센터(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 CCA)의 목표는 16세 이하 문제청소년을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처우를 통해 책임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생산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센터는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과 가족 및 약물과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역량과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법원서비스, 건강 및 HIV 관련 교육과 서비스, 약물 검사, 취업, 사회복귀 및 지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청소년을 위한 중요

프로그램으로는 1988년에 시작된 청소년 변론 프로젝트(Youth Advocacy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체포되어 시설에 수용되기 전 12-16세 중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변론, 지역사회 지원 및 감독을 통해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6-12개월간의 집중보호관찰을 진행한다.

대안적 양형 및 고용서비스 센터(Center for Alternative Sentencing and Employment Services: CASES)는 시설수용의 대안적 처우를 위한 뉴욕시의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비영리단체이다. 청소년 교정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0% 이상의 재원은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받는다. 대상 소년의 대부분은 경범죄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13-21세의 아동 청소년들이다.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개발 프로그램(Youth Development Program)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가정법원(가해 당시 연령이 13-15세) 및 대법원(가해 당시 연령이 16-20세)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선별한다. 수용기간은 6개월(15세 이상)과 12개월(15세 미만)이며, 학교 관련 수업 이외에 모두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약점이나 단점이 아니라 장점과 목표 위주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긍정적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과 복지, 지적개발, 경력개발 등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이다.

아동원조협회(Children's Aid Society: CAS)는 1853년에 설립된 미국 보이스카웃·걸스카웃(Boys and Girls Club of America)의 뉴욕주협의체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지부가 Dunlevy Milbank Center이다. Dunlevy Milbank Community Center는 수용시설에서 출소하여 보호관찰에 처해진 청소년을 분류심사하여 적절한 센터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프로그램인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은 9월에 시작하여 6월에 종료하는 데 통상적인 참가기간은 6개월이다. 1주일에 3회, 1회 3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활동은 청소년이 선택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전념하여 문제를 일으킬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여자는 지속적이고 이해될 수 있는 목표를 공평하게 부여받고 이를 달성하면 보상받으며, 참여자는 성장을 위한 감성적·교육적·사회적·직업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발모형을 제공받는다.

베라사법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는 안전과 사법관련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다. 연구소의 주요 업무로는 ① 계획·설명 기획(Planning and Demonstrating Design)(사법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인간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효율적이 되도록 실무적이고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② 비영리조직의 설립(Building Nonprofit Organizations)(분사원칙에 기초하여 활동계획, 업무수행 능력, 목적 등에 부합되는 새로운 비영리단체의 지속적 설립과 지원), ③ 선진적 연구와 국가적 자문(Advancing Research and Consulting Nationally)(학술적인이론과 현상 규명을 위해 관련단체나 학교와 협력하며, 때로 정부의 요구에 의해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자문 프로젝트 수행), ④ 국제협력(Working Internationally)(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국가들과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제휴함) 등이다.

4) 스웨덴

(1) 실태

연간 60,000명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며 10명의 학생 중 1명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있다. 4명당 1명꼴로 성적인 희롱을 당하며, 20명 중 1명 꼴로 왕따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⁸⁾ 2007년 4월 1일자로 차별과 기타 폭력에 관한 법(Lagen mot diskriminering och annan kränkande behandling)이 발효되었다. 피해 학생들은 어린이와 학생 옴부즈맨(Barn-och elevombudet, BEO), 성적 이유로 인한 차별에 대한 옴부즈맨(Ombudsmannen mot diskriminering på grund av sexuell läggning, HomO), 남녀

68) Kartläggning av kränkande behandling (폭력 치료의 지도), Skolverket, 2002
일간지 Göteborgs Posten 2007.2.15일자에서 재인용

차별에 대한 옴부즈맨(Jämställdhetsombudsmannen, Jämo) 등의 옴부즈맨 기관들에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은 학교에서 학생의 따돌림과 폭력 건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한 학교의 대표가 상해건으로 옴부즈맨 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넘어가서 처리되게 된다. 현재까지 스웨덴 전국에서 5개의 학교가 BEO에 의해서 상해건으로 고발되었다.

2008년 2월에 스웨덴 정부는 학교 폭력 방지 사업에 4천만 크로나를 지원하였다. 4년 내에 학교 발전을 위한 기관이 학교 폭력 현황을 파악할 것이고, 연구에 기인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스웨덴에서 쓰이고 있는 방안들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학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따돌림, 폭력 방지 방안들이 질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독일

(1) 실태

1995년에 시행된 Schwind 외의 『학교폭력: 보쿰의 예』라는 조사연구에 의하면 독일교사의 약 80%가 1주일에 최소한 한번 이상 학생들이 서로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교사들에 따르면, 이 조사연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수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언어폭력이 놀랄만큼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신체폭력은 언어폭력 다음으로 빈번한 폭력유형이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약 1/4은 머리카락 쥐어뜯기나 주먹다짐으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독일의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치료받는 학생숫자는 전체 학생의 약 1.2%로써 한해 약 97,000명이라 한다. 이 가운데 1/3은 뇌진탕 또는 뇌출혈을 입고, 1/4은 타

69) 이하 김종기(2004a, 2004b)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박상, 근육 또는 인대 파열, 관절 탈구, 10%는 팔 또는 다리가 골절되고 2%는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 전체 1,100만 명의 학생들 중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한 번 이상 무기를 소지하고 등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기의 유형으로는 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루가스, 가스총, 손가락에 끼우는 타격고리, 총, 투척용 쇠구슬, 막대기 등이 포함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베를린 학생의 약 26%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의 전체 학교 중 절반에서 금품이나 의복을 강탈하거나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전체 45,000개 학교 중에서 4,000개 학교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빈트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보쿰에 소재한 학교의 12%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약 70%가 남학생이며 신체 상해를 입히는 학생 또한 90%가 남학생이다. 피해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으며 신체적으로 허약한 학생, 소심한 학생, 인기가 없는 학생들이다. 폭력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만 가장 빈번한 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며 그 다음이 하교 길목이다. 슈빈트의 연구에서는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학생들의 11.4%가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심각한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4%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이다. 그리고 전체 학교의 약 7.2%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응체계

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김종기, 2004b: 66-69). 첫째, 학교 및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이다. 15세 청소년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면 그 아이의 폭력성향은 훨씬 이전부터 잠재하거나 발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예방에는 조기경보체계가 중요하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폭력예방 교육에서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인 장소가 된다. 실제 독일의 각 일선학교는 지정된 담당병원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사와 모든 학부모가 참가하는 학부모 모임(Elternabend)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매달 학부모 정례회의(Elternstammtisch)가 구성되어 교사와 관계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둘째, 종일학교(Ganztagsschule) 프로그램이다. 종일학교는 정부가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의 확대, 학교가 학생들을 더 많이 돌보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일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주고 오후까지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후원을 한다. 학생들의 약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따른 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후원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셋째, 학생작업장(Schülerwerkstätten) 프로그램이다. 1993년 베를린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작업장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격성향과 폭력성의 증가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적 경향의 증가가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학교를 올바른 사회화 교육의 장소로 확립하는 것이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밑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작업장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스스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무엇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1995년의 경우 베를린에서는 전체 258개의 학생 작업장이 조직되었다. 각 작업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학생 이외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선교사 이외에도 작업장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학부모, 교육청 직원, 각 분야 전문가, 미술가, 음악가, 기술자들이 교육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주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공동작업의 계획에서부터 완성까지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 작품 속에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의향을 넣을 수 있고, 공동작업의 경우 다른 동

료들과 토론을 통해 작업계획과 작업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각기 특성화된 작업장에서 모형배 제작, 자전거 조립, 학교 가구 만들기, 공동 그림 그리기, 콘서트 기획과 연습, 음식만들기에서 영화 편집까지 다양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중일학교가 학교의 틀 내에서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 개별학생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학생작업장 프로그램은 공교육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공동체적 토론과 민주시민 교육을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연계 속에 일궈나가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폭력예방을 위한 행정적·법적 조치이다. 학교법에 의하면,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법원 판결은 어떤 학생이 동료학생을 실제 폭행하지 않았어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협박하고 그것이 실제의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간주될 수 있고, 해당 학생에게 벌 청소, 방과후학교에 남아 있기 등 다른 조치가 효과 없을 때 일정기간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협의회의 결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학교 전체를 금연공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함부르크 주와 니더작센 주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법이나 다른 관련 법규를 통해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정하고자 준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소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또한 무단결석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몇몇 주에서는 경찰이 순찰활동을 통해 무단결석 학생을 발견하면 바로 학교로 인도하여 교장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활동

2007년 3월 7일 독일 연방내무부장관(Dr. Wolfgang Schaeuble)과 Niedersachsen 주 범죄연구소장(Dr. Christian Pfeiffer)은 가해자와 피해

자인 독일 청소년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실행을 공표하였다(성홍재, 2007: 292-293). 이 프로젝트를 위해 61개 도시와 Landkreis 내에 있는 학교의 2,500학급으로부터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임의로 선정되었다. 조사항목으로는 가해자 및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본 폭력과 비행청소년의 행태, 학업성과, 대중매체 접촉 정도, 친한 친구 등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독일은 청소년 폭력의 암수범죄, 피해자의 고소행태와 피해,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거나 보호하는 요인들에 대해 비체계적인 정보만 갖추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지역간 비교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현장에서 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Nordrhein-Westfalen 주의 Münster, Duisburg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Duisburg시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7학년부터 11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5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성홍재, 2007: 291-292). 이 조사프로젝트의 목표는 청소년 시기에 급변하는 생활행태와 소비행태, 여가를 즐기는 행태와 더불어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청소년 비행과 사회적 일탈행위 양상들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피해경험, 비행경험, 교육문제, 갈등발생 양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 생활·소비·여가를 보내는 양식, 문화적·규범적 방향 설정 등이다.

또한 Sachsen-Anhalt주 Halle, Magdeburg 경찰서 청소년 상담부서에서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정보들의 기초를 수집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상태, 비행청소년 스스로의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와 그 범위, 경찰의 제재조치 등에 대한 잠정적인 연관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VI. 양성평등과 노동, 직업

1. 여성권한척도(GEM)
2. 남녀평등지수(GDI)
3. 경제활동

VI. 양성평등과 노동, 직업

1. 여성권한척도(GEM)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 기술직 여성비율, 그리고 남녀소득격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한국은 1995년 116개국 가운데 90위에 머물렀으나 점차 순위가 상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본·미국·독일·스웨덴과 비교할 때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VI-1> 여성권한척도(GEM)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순위	64위	54위	15위	9위	2위
값	0.51	0.557	0.762	0.831	0.906
법조인, 고위사무직, 매니저 (여성 %)	8	10	42	37	30
전문직 and technical workers (여성 %)	39	46	56	50	51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0.40	0.45	0.63	0.58	0.81
국회 의석수 (여성 %)	13.4	11.1	16.3	30.6	47.3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2. 남녀평등지수(GDI)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이며 가장 낮은 곳은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 남녀평등지수(GDI)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순위		26위	13위	16위	20위	5위
값		0.910	0.942	0.937	0.931	0.955
1,2,3차 교육기관 등록 비율(%)	여자	89	85	98	87	100
	남자	102	87	89	88	91
소득 추정치(PPP US\$)	여자	12,531	17,802	25,005	21,823	29,044
	남자	31,476	40,000	40,000	37,461	36,059
평균 예상 수명(년)	여자	81.5	85.7	80.4	81.8	82.7
	남자	74.3	78.7	75.2	76.2	78.3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3. 경제활동

1) 청년실업률

15세 이상 24세 이하 인구의 실업률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VI-3>과 같다. 조사시점 현재 스웨덴이 21.3%로 가장 높고 일본이 8.0%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 청년실업률

(단위: %)

	15-24세
한국	10.0
일본	8.0
미국	10.5
독일	13.5
스웨덴	21.3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주: 1) 2006년 조사결과이며, 일부 국가는 16-24세로 조사됨

2) 독일의 경우 연방 통계청의 조사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였음

2) 여성 경제활동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을 살펴보면(<표 VI-4>), 미국이 전체 여성의 59.6%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본이 48.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표 VI-4> 경제활동비율(여성)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경제활동비율(여성) (15세 이상, %)	50.2	48.3	59.6	50.8	58.7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주 : 독일연방통계청의 노동시장 관련 통계는 ILO의 Labour-Force-Concept기준에 의함. 이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직업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고 근로하고 있는 인구 총 인구는 38,163,000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20,890,000명(54.7%), 여성은 17,272,000(45.3%)명으로 나타남. 전체 근로자 중 15~20세의 청소년은 총 1,359,000(3.6%)명 정도임. 전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고용비율은 26.0%, 전일제 근무 비율은 74%로 집계됨(Statistisches Bundesamt. 2008: 6).

3) 니트(NEET) 비율

이미 학업을 마친 청년층 가운데 일하고 있지 않거나 일할 의지도 갖지 않는 경우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 나머지와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사 및 육아 종사자(주부)나, 군 입대 대기자를 포함하지 않으나 OECD에서는 이들도 NEET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⁷¹⁾

70) 스웨덴의 경우 2008년 1/4분기 기준, 15-74세의 총 인구는 4,520,000명으로 2007년 1/4분기 대비 2.0% 증가, 88,000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인구는 남녀간 균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정규직 인구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구는 3.7%, 24,000명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간 대비 정규직 증가분 가운데 남성이 68,000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40,000명이 증가하였다(스웨덴 통계청 참고).

OECD(2008)가 발표한 회원국들의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졸업 후 5년경과 시점의 NEET 비율을 보면 한국은 36.8%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NEET비율은 졸업 후 시간경과에 따라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OECD 국가들의 경우 졸업 후 1년과 비교하여 3년, 5년으로 경과됨에 따라 NEET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36.8%→28.5%→36.8%로 유지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4)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1) 한국

한국 청소년을 15~18세의 청소년 전기와 19~24세 청소년 후기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한국)

			계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 계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기업	자영업	기타
한국	15~18	남	100.0	35.5	9.0	20.0	5.7	2.2	14.0	2.8	19	8.2	0.7
		여	100.0	36.4	7.0	16.7	2.3	4.1	20.7	1.5	3.7	5.9	1.8
	19~24	남	100.0	29.3	12.9	19.1	4.3	3.4	10.0	3.0	1.7	15.3	1.0
		여	100.0	33.6	13.3	13.6	1.5	4.8	17.2	2.2	3.7	9.3	0.9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6)

(2) 스웨덴⁷²⁾

스웨덴 주요 일간지인 다겐스 니히터의 2008년 8월 21일자에는 급여가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

71) 스웨덴 통계청은 '게으른 구직자'(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어도 구직활동 및 학업을 하지 않고 있는자)라는 항목으로 집계한 결과 2008년 8월 현재 101,000명 가량이 NEET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000명이 15-24세의 청소년이라고 밝혔다.

72) 2008.8.21 Dagens Nyheter

다. 민간 기업인 Proffice와 조사회사인 Cint가 공동으로 2008년 5월 15-29세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에서 원만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업 선택의 가장 주요 요소는 고임금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8%가 고임금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2순위는 신나는 일(48%)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직장 동료(37%), 환경(34%), 자아발전 및 교육 가능성(32%), 상사와의 관계(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주에게 바라는 것은?’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가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고용주가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는 것(27%)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긍정적인 직업문화, 높은 임금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고 싶은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35%는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 두려움이 있으며 30%는 직장 동료들과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스웨덴 청소년들은 민간 부문 가운데 문화·미디어·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및 안전 부문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10%는 35세 정도가 되면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스웨덴 청소년 위원회(Ungdomsstyrelsen)의 청소년 성향 실태 조사 자료집 “Unga med attityd”⁷³⁾에 수록된 직업별 청소년의 선호를 제시한 것이 <표 VI-6>이다.

73) Zander, S (el.) (2007), Unga med attityd (2007), Ungdomsstyrelsen: Stockholm.

<표 VI-6> 청소년 직업 선호도

구분		절대로 희망하지 않음				매우 희망함
		1	2	3	4	5
의료 종사자 ¹⁾	16-19	37.8	25.2	17.9	8.7	10.5
	20-24	39.3	23.7	24.3	9.5	13.2
	25-29	41.2	23.6	13.3	8.7	13.2
	전체	39.5	24.1	15.1	8.9	12.4
건설 부동산	16-19	39.3	23.8	17.6	11.1	8.3
	20-24	34.4	24.0	17.2	12.9	11.5
	25-29	38.1	23.3	17.8	11.5	9.2
	전체	37.2	23.7	17.5	11.9	9.7
미용 건강	16-19	24.5	23.8	20.6	16.6	14.5
	20-24	22.5	22.8	21.8	16.5	16.4
	25-29	23.5	21.2	20.0	16.4	18.8
	전체	23.5	22.6	20.8	16.5	16.7
교사	16-19	33.0	24.1	19.6	13.8	9.6
	20-24	23.6	22.0	21.9	17.7	14.7
	25-29	20.3	20.3	22.5	18.8	18.1
	전체	25.4	22.0	21.4	16.9	14.3
IT/전산 통신직	16-19	31.8	28.4	20.2	11.5	8.0
	20-24	36.4	23.5	15.3	14.9	9.9
	25-29	35.8	21.6	19.2	12.6	10.7
	전체	34.8	24.3	18.2	13.1	9.6
경제 금융 보험	16-19	38.4	26.6	16.2	10.2	8.5
	20-24	40.7	22.5	17.2	8.6	11.1
	25-29	36.7	22.2	16.0	13.5	11.6
	전체	38.6	23.6	16.5	10.8	10.5
의약	16-19	41.4	24.7	18.7	9.0	6.2
	20-24	39.2	26.0	16.9	10.2	7.8
	25-29	36.8	24.6	18.4	11.7	8.5
	전체	39.0	25.1	18.0	10.4	7.6
제조업	16-19	42.6	20.3	16.4	11.7	8.9
	20-24	42.5	18.3	16.5	11.8	10.7
	25-29	42.9	20.3	15.3	12.6	9.0
	전체	42.7	19.6	16.1	12.1	9.6
판매 시장조사	16-19	24.9	22.3	24.9	18.4	9.5
	20-24	24.8	19.6	21.8	17.9	15.8
	25-29	26.9	19.3	22.0	18.0	13.8
	전체	25.6	20.3	22.8	18.1	13.2
NGO	16-19	34.8	30.2	20.8	7.6	6.7
	20-24	33.4	25.2	19.9	11.0	10.6
	25-29	29.6	21.1	21.5	14.9	12.9
	전체	32.5	25.3	20.7	11.3	10.2

(3) 독일⁷⁴⁾

독일의 10~12세 남아는 경찰이나, 군인, 축구선수 같은 운동선수나 비행기조종사나 우주항공비행사가 되기를 원한다. 13~15세가 되면 다른 기술관련 직업이나 사업,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데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기술적인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DJI, 2007: 20). 의무교육을 마친 후 독일의 청소년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대학교진학인데 입학 정원제(Numerus Clausus) 때문에 대부분 성적이 중위권 이상이어야만 입학 가능하다. 둘째,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직업학교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6년 현재 교육훈련이 가능한 자리는 15,387개였으나, 신청한 학생 수는 49,9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구동독청소년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또한, 직업교육계약수를 볼 때 남자청소년이 총 58.2%를 차지하여 여자청소년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DJI, 2007: 21). 남자청소년이 가장 많이 교육받고 있는 직업 순위를 보면 자동차정비사(8%), 산업기술자(5.3%), 전기기사(3.7%), 기계설비사(3.6%), 소매상인(3.5%), 요리사(3.4%), 금속세공사(2.8%), 페인트공(2.5%), 도매상인(2.4%), 가구공(2.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서의 성별차이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IT-직업양성과정(Ausbildungsgänge der IT-Berufe)에는 남학생이 89.2%로 여학생보다 월등하게 많지만 새로운 매체직업분야 예로, 디지털매체나 프린트매체에서는 성별차이가 없다.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보건관련 직업양성과정에는 여학생수가 월등하게 높고, 대학과정에서도 전공분야마다 성별 차이가 크다. 공과대학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79%, 자연과학과 경제학에는 62%로 여학생보다 훨씬 높다. 법대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51%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사회과학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34%, 예술대학 39%, 의과대학 40%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JI, 2007: 22-23).

74) 이하 DJI(2007)을 참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광주사회조사연구소(2003),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집.
- 권건일. 1996. “영유아보육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7: 121-137.
- 김성복(2008). 미국의 대학교육: 과거와 현재 1636-2008. 미국의 교육제도와 한국적 수용. 2008년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옥. 1991. “제6공화국의 여성노동정책”. 『사무직여성』. 한국여성민우회.
- 김종해. 2006.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6년 9월 29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김태홍·김난주. 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여성개발원.
- 남호엽(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 현황과 과제.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8학년도 초등교육 학술대회.
- 노동부. 2005. 고용보험통계연부 (1998-2005)
- 노동부. 2008. 노동백서.
- 노동연구원. 2007. 주요통계. 노동리뷰, 제36호.
- 대한민국정부(2008),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안- 9월 27일 작성). 문부과학성. 청소년백서, 2008
- 청소년육성시책대강. 청소년육성추진본부. 평성 15년 12월
- 박세훈(2008). 미국 중등교육의 개혁과 쟁점. 미국의 교육제도와 한국적 수용. 2008년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서문화이상현. 2002. 『보육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경오(2007). 미국 No Child Left Behind(NCLB) 교육개혁을 보는 시각과 전망. 교육행정학연구, 25(4), 509-533.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pp. 469-492.
- 윤홍식. 2006b.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본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윤홍식. 2007.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남성의 양육참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서울: 나눔의 집
- 윤홍식. 2008. OECD 주요국가들의 가족투자 정책의 방향과 특성 비교. 미발간 원고.

이옥지. 2001. 『한국여성노동 운동사』. 한울.

이용교(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통계청(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06.

통계청(2004). “구시군 및 발생월별 출생” 인구동태.

한국청소년학회(2008),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

한국노동연구원(2008). OECD국가들의 NEET비율. 노동리뷰(45).

한국노동연구원(2007). 해외노동통계.

후생노동성 사회보장급부비: 사회보장과 국민생활. 1-4. 2008

후생노동백서, 2008

Asplund, K. (2007). Folkhälsa - Lägesrapport 2006. Socialstyrelsen: Stockholm.

Arnett,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andura, A. (1972).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 In D. Rogers (Ed.), Issues in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Beane, J. & Lipka, R. (2006). Guess again: Will changing the grades save middle-level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63(7), 26-30.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Author.

Carnegie Forum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1986). A nation prepared: Teacher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arnegie Forum.

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CIRCLE) (2002). Youth civic engagement. Maryland: CIRCLE.

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CIRCLE) (2005). Census data shows youth voter turnout surged. Maryland: CIRCLE.

Ciannetti, C. & Sagarese, M. (1997). The roller-coaster years: Raising your child through the maddening yet magical middle school years. New York: Broadway Books.

Cochran-Smith, M. & Zeichner, K.(2005). The AERA panel on research and teacher

- education. In M. Cochran-Smith & K. Zeichner (Eds.). *Studying teacher education: The report of the AERA panel on research and teacher education* (pp.37-6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ew Jersey.
- Cremin, L.(1988). *American education: The metropolitan experience 1876-1980*. New York: Harper & Row.
- Cuban, L. (2004). *The blackboard and the bottom line: Why schools can't be busi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arling-Hammond, L., Hammerness, K., Grossman, P., Rust, F., & Shulman, L. (2005). The design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L. Darling-Hammond & J. Bransford (Eds.). *Preparing teachers for a changing world: What teachers should learn and be able to do* (pp.390-44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elgado, M. & Zhao, H. (2008). *Youth-led health promotion in urban communities: A community-capacity enhancement perspective*.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Dryfoos, J. G. & Barkin, C. (2006). *Adolescence: Growing up in America toda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2005. "Education and equal life-chances: Investing in children." pp. 147-163. in *Soc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dic countries*, edited by Kangas, O. & J. Palme. England: Palgrave Macmillan.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03). *America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2003*. Washington, DC: U.S. Governmental Printing Office.
- Focus 06 (2006). *En analys av ungas kultur och fritid*. Ungdomsstyrelsens skrifter 2006:4. Ungdomsstyrelsen: Stockholm.
- Freud, A. (1958).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3, 255-278.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alinski, E., Kim, S. S., Bond, J. T., & Salmond, K. (2005). *Youth & employment: Today's students, tomorrow's workforce*. Families and Work Institute. J. P. Morgan Chase.
- Galston, W. (2004).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April. 263-266.
- Giota, J. (2008). *Insamling av enkätuppgifter i grundskolans åk 6 våren 2005 för*

- UGU-projektets åttonde kohort (födda 1992). (IPD-rapport nr 2008:05). Göteborgs universitet, Institutionen för pedagogik och didaktik: Gothenburg.
- Holmes Group. (1986). Tomorrow's of teachers. East Lansing, MI.
- Holmes Group. (1990). Tomorrow's of schools. East Lansing, MI.
- Holmes Group. (1995). Tomorrow's school of education. East Lansing, MI.
- Jenkins, D. & McEwin, C. (1992). Which school for the fifth grader? Programs and practices in three grade organizations. *Middle School Journal*, 23(4), 8-13.
- Johnson, S. (2006). Fast-track certification: Can we prepare teachers both quickly and well? *Education Week*, (February 15, 2006).
- Kim, D. (2008).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 the U.S.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2008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 Kozol, J. (2005). The shame of nation: The restoration of aparthei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 Larson, R. W., Richards, M. H., Sims, B., & Dworkin, J. (2001). How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adolescents spend their time: Time budgets for locations, activities, and companionship.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565-597.
- Larson, R. W.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 701-736.
- Lounsbury, J. (1996). Key characteristics of middle level schools. EDO-PS-96-13.
- Mahoney, J. L., Larson, R. W., & Eccles, J. S. (2005). 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ediarådet (2006). Ungar & Medier 2006. Mediarådet : Stockholm.
- Mediarådet (2008). Ungar & Medier 2008. Mediarådet : Stockholm.
- Morel, Nathalie. 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618-637.
-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2006). Breaking ranks in the middle: Strategies for leading middle level reform. Reston, VA: Author.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6).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 students, staff, schools, and school districts: School year 2003-04. Retrieved from <http://nces.ed.gov/pubs2006/2006307.pdf>.
- National Household Educational Surveys Program of 2005. After-school program and activities: 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 Newman, J. (1994). America's teachers: An introduction to education. 박남기, 고민영 역 (1996). 21세기를 향한 미국 교원 정책 개혁. 교육과학사.
- OECD. 2007a.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 OECD. 2007b. Social Expenditure 1980-2003.
- Paglin, C. & Fager, J. (1997). Grade configuration: Who goes where? Portland, OR: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
- Patterson, T. (2002). The vanishing voter: Public involvement in an age of uncertainty. New York: Alfred Knoop Publishers.
- Putnam, R. D. (2002).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amson, R. J., Moreonoff, J.D., & Earls, F (1999). Beond social capital: Spac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633-660.
- San Antonio, D. (2006). Broadening the world of early adolescents. Educational Leadership, 63, (7), 8-13.
- Simmon, R. & Blyth, D.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herrod, L. R. (2003).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in diverse youth.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6(2), 287-292.
- State Board for Educator Certification (2005). TExES preparation manual: Effective beginning with fall 2002 test - 100 pedagog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EC-4. Retrieved Dec. 2, 2005 from
- Svensson, R. (2006). Ungdomar och brott åren 1995-2005. Brottsförebyggande rådet: Stockholm.
-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pp. 1-28.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exas Education Agency. (1996). The development of accountability systems nationwide and in Texas(Statewide Texas Educational Progress Study (STEPS)

- 1). Austin, TX: Texas Education Agency.
http://www.texas.nesinc.com/TE_viewSG_opener.asp.
- Texas Education Agency. 2003-2004 Academic Excellence Indicator System. Retrieved April 5, 2005 from <http://www.tea.state.tx.us/perfreport/aeis/2004/index.html>
- Tyack, D. (1974). One best system: A history of American urban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Ulla Carlsson (ed.) (2008). Nordicom-Sveriges Mediebarometer 2007, Nordicom
Sverige: Gothenburg.
- Ungdomsstyrelsen (2007). Ung idag 2007. En beskrivning av ungdomars villkor.
Ungdomsstyrelsen: Stockholm.
- Wacquant, L. (2001). The advent of the panel state is not destiny. Social Justice,
28(3), 81-87.
- Witt, P. A., & Caldwell, L. L. (2005). Recreation and youth development.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Wyn, J. & White, R. (1997). Rethinking youth. London: Sage.
- Zander, S (ed.) (2007). Unga med attityd. Ungdomsstyrelsen: Stockholm.
- Zukin, C., Keeter, S., Andoina, M., Jenkins, K., & Delli Carpini, M (2006). A new
engag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civic life and the changing American
citiz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荒川葉（2001）「高校の個性化・多様化政策と生徒の進路意識の変容ー新たな選抜・
メカニズムー」『教育社会学研究』第68集 `pp167-185
- 荒川葉（2002）「高校生の「将来の夢」と進路選択ー多様化・個性化時代の進路
形成ー」教育社会学会大会発表
- 飯田浩之（2000）「高等学校の「特色ある学科・コース」における教育の特色
化と生徒」『筑波大学 教育学系論集』24(2) `pp33-48
- 飯田浩之 `遠藤宏美（2004）「学校設定教科・科目」の設置とその運営 `日本教
育社会学会大会発表
- 岩木秀夫(2004)『ゆとり教育から個性浪費社会へ』筑摩書房
- 川越有見子(2007)「栄養教諭養成の創設過程にみる意義と課題 : 審議経過を中心
に」日本教育学会大会研究発表 pp288-289
- 布川淑（2007）「高校教育改革と教師の多忙ー大阪府立高校の多様化と「やりが
いある多忙」ー」教育社会学会大会発表

藤原正光(2004)「教師志望動機と高校・大学生活ー教員採用試験合格者の場合ー」『文教大学教育学部紀要』38 `pp75-81

二島央(2007)「福岡県の高校部活動の制度的変化と「活動加入状況」に関する教育社会学的考察」『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紀要』46 `pp99-120

文部科学省小等中等教育国際教育課(2007)「平成18年度高等学校の交際交流に対して」

八尾坂修(2008)「教員採用汚職を防ぐには」『朝日新聞』8月24日字記事

인터넷

<http://www.arbetsformedlingen.se/>

<http://www.bo.se>

<http://www.bra.se/>

<http://www.can.se/>

<http://www.kometprogrammet.se/>

<http://www.fhi.se/>

<http://www.forsakringskassan.se/>

<http://www.regeringen.se/sb/d/1474>

<http://www.mms.se>

<http://www.scb.se/>

<http://www.tco.se/>

<http://www.ungdomsstyrelsen.se>

http://web.mac.com/sven.bremberg/Svens_Notiser/Startsida/Startsida.html

<http://www.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3226> 청소년 의견 반영 안 되는 이유 있다-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의견은 무시당할 수도 있다.

신문

abc.net.au 2008.1.8 자

Dagens Nyheter 2008.8.21자

Göteborgs Posten 2007.2.15자

부 록

1. 청소년 사회화환경(기타)

1. 청소년 사회화환경 통계 기타

<표 1-1>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추계인구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95	19,207,049	3,864,742	3,695,963	3,631,592	3,598,495	3,583,206
96	19,435,109	3,876,042	3,896,547	3,748,949	3,647,933	3,750,689
97	19,600,697	3,978,082	3,907,117	3,943,838	3,777,389	3,791,265
98	19,825,181	3,996,722	4,006,784	3,944,569	3,981,223	3,910,434
99	20,213,364	3,934,744	4,021,862	4,034,386	3,990,308	4,103,302
00	20,620,197	4,058,810	3,976,288	4,041,528	4,072,322	4,112,566
01	20,892,214	4,061,582	4,076,854	3,998,137	4,067,716	4,100,939
02	21,107,836	4,063,349	4,079,198	4,098,177	4,024,438	4,096,549
03	21,192,613	4,126,626	4,078,739	4,097,712	4,119,946	4,044,648
04	21,117,454	4,206,556	4,140,112	4,094,950	4,116,933	4,144,030
05	20,845,086	4,383,743	4,220,481	4,156,874	4,114,829	4,143,913
06	20,586,946	4,319,963	4,397,818	4,237,680	4,177,273	4,141,849
07	20,314,309	4,264,883	4,334,265	4,414,523	4,257,957	4,202,062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3,620,771	3,482,672	3,491,866	3,687,003	4,017,902	
96	3,586,696	3,574,730	3,438,174	3,508,350	3,768,695	
97	3,758,231	3,551,161	3,542,084	3,466,500	3,592,100	
98	3,799,863	3,720,000	3,525,791	3,575,395	3,546,054	
99	3,920,076	3,762,940	3,695,951	3,561,920	3,650,542	
00	4,100,754	3,894,926	3,774,216	3,725,951	3,631,758	
01	4,145,129	4,136,162	3,932,804	3,815,531	3,767,667	
02	4,132,688	4,177,607	4,168,462	3,967,381	3,852,736	
03	4,114,861	4,149,177	4,194,521	4,188,341	3,989,537	
04	4,076,100	4,149,644	4,185,699	4,232,670	4,225,509	
05	4,174,171	4,107,591	4,182,061	4,218,089	4,264,903	
06	4,175,733	4,207,460	4,140,684	4,216,811	4,253,140	
07	4,168,920	4,205,055	4,237,049	4,171,964	4,249,408	

자료: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주: 1) 각 년도 7월 기준.

<표 1-2>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1995	1.5	11.5	20.6	27.7	37.2	33.6	30.6	26.5	24.6	19.3	18.0
1996	1.2	9.3	16.7	24.1	29.5	29.4	24.7	24.0	22.9	18.2	15.7
1997	0.9	6.5	13.0	19.8	26.2	25.9	22.4	21.4	17.8	18.6	14.0
1998	0.7	6.0	9.9	17.6	24.2	23.1	22.1	19.6	18.2	15.5	14.7
1999	0.6	3.0	6.7	10.3	18.3	17.0	17.1	15.0	14.9	12.8	10.7
2000	0.5	3.2	4.9	9.3	14.1	16.3	15.2	14.7	12.4	10.4	10.0
2001	0.5	3.3	6.2	11.4	14.3	15.7	14.9	14.2	13.8	13.3	10.7
2002	0.5	3.4	6.7	11.2	14.1	16.5	16.9	15.8	13.8	13.7	12.2
2003	0.4	3.2	5.5	8.3	12.8	14.7	13.4	13.3	12.4	11.7	11.0
2004	0.4	2.8	5.8	8.1	14.0	15.3	13.7	13.7	13.2	11.2	11.1
2005	0.5	3.4	5.7	10.7	15.3	16.4	14.9	15.2	13.3	13.5	12.1
2006	0.4	3.4	6.5	10.4	16.0	15.7	15.2	12.8	12.2	10.9	10.7
2007	0.5	3.1	6.8	10.9	17.3	16.3	14.2	13.9	12.9	11.3	10.7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3>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63.4	243.6	297.7	319.1	297.6	229.0	181.2	151.9	134.2	116.2	104.5
96	52.8	209.0	253.6	280.9	268.3	211.1	171.0	138.6	117.6	105.9	85.4
97	36.5	142.1	182.8	201.1	212.7	174.6	136.0	116.1	95.5	84.9	73.6
98	28.7	115.0	149.3	176.8	187.4	165.5	130.7	108.7	92.5	75.3	66.2
99	23.5	92.6	116.8	136.5	157.7	134.8	107.3	96.6	76.9	64.5	58.5
00	23.0	88.0	109.6	136.0	150.4	134.8	108.4	93.4	79.5	66.2	55.2
01	20.4	86.5	116.4	137.5	155.8	142.3	114.5	100.4	84.6	71.4	62.2
02	20.1	83.9	111.1	137.4	154.8	137.1	113.0	100.2	82.6	73.9	64.5
03	20.8	86.1	112.4	128.2	150.3	132.1	109.8	94.2	82.3	70.8	64.8
04	20.8	86.7	116.2	130.3	148.7	129.9	110.1	93.1	80.9	68.8	64.0
05	23.6	105.8	135.3	148.6	170.1	147.9	115.6	97.6	83.0	73.0	67.6
06	28.9	127.7	158.9	178.5	189.7	160.9	128.0	106.9	87.9	77.5	68.5
07	27.2	125.5	166.8	184.4	201.7	172.2	134.8	108.9	91.6	79.4	70.6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4>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강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24 세
1995	7.7	19.5	24.0	27.8	32.8	30.6	27.9	27.2	25.4	24.2	20.9
1996	7.0	19.4	22.8	28.4	30.9	28.3	27.2	27.5	23.1	20.9	20.9
1997	6.9	16.9	20.1	23.0	27.5	25.2	24.5	23.8	21.1	20.3	17.7
1998	6.6	16.5	18.6	24.8	28.1	25.6	24.2	23.5	21.6	19.2	18.4
1999	5.8	15.0	16.1	17.8	22.4	21.4	19.8	20.9	18.6	16.2	14.7
2000	5.4	12.7	14.5	17.5	23.9	21.1	18.9	19.3	18.5	15.9	15.0
2001	5.5	12.5	16.2	19.2	21.8	21.4	20.2	18.7	17.9	17.2	15.3
2002	5.7	13.8	16.5	21.6	25.5	25.1	21.9	21.6	17.3	18.5	16.1
2003	5.1	12.6	14.0	18.7	23.1	22.6	21.2	18.8	17.8	15.1	15.2
2004	5.3	12.4	14.2	18.4	22.9	22.3	19.7	19.6	17.4	15.1	14.5
2005	5.0	11.2	13.9	18.2	22.6	22.4	20.1	19.0	16.9	14.7	15.1
2006	4.4	10.0	12.7	14.4	20.5	21.3	18.1	17.4	15.3	15.1	12.8
2007	4.5	10.5	13.3	15.8	19.5	18.8	17.7	18.2	13.9	13.2	12.6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5>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폭행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 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433.1	1122.5	1284.1	1337.1	1349.9	1290.5	1264.1	1358.0	1356.5	1308.5	1264.5
96	430.2	1106.4	1226.1	1312.4	1303.9	1249.3	1245.5	1302.0	1289.3	1262.0	1190.9
97	413.8	1010.7	1192.3	1206.9	1267.9	1209.1	1192.4	1272.8	1231.7	1215.9	1179.4
98	410.4	1000.5	1142.9	1209.5	1197.1	1183.7	1183.3	1223.1	1213.7	1151.0	1126.2
99	380.3	895.1	990.9	1004.7	1029.3	1014.6	1037.0	1105.4	1068.1	1032.1	977.8
00	381.3	896.3	979.4	1005.0	1008.4	1025.6	1036.2	1106.9	1085.5	1027.1	984.9
01	396.9	947.3	1020.1	1019.3	1028.1	1056.4	1057.9	1137.1	1116.0	1090.5	1035.3
02	398.1	964.2	1063.3	1053.7	1035.1	1068.4	1081.4	1151.1	1137.7	1100.0	1064.4
03	400.7	971.3	1041.2	1035.8	981.7	985.3	1005.0	1067.6	1045.7	1017.8	989.7
04	417.1	1008.7	1091.7	1053.9	1003.4	1005.0	1018.2	1085.9	1052.6	1021.2	989.1
05	417.3	1024.2	1129.6	1090.0	1037.1	1052.0	1045.0	1124.8	1090.5	1067.2	1022.5
06	405.2	1030.5	1113.7	1104.1	1039.5	1047.7	1044.8	1110.3	1086.5	1054.2	1020.1
07	399.0	1034.0	1136.5	1082.3	1052.2	1068.1	1072.7	1137.7	1105.1	1071.4	1031.2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주: 폭행범죄는 중폭행과 기타 폭행의 합

<표 1-6>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중폭행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 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102.0	318.7	408.1	451.0	479.6	442.2	425.1	442.0	431.4	408.6	387.1
96	88.1	274.1	342.8	394.5	422.6	404.5	392.4	397.5	384.4	378.2	343.0
97	84.1	238.3	316.5	345.6	391.6	371.0	353.0	379.7	357.3	346.9	335.6
98	82.0	229.2	290.7	338.6	364.0	362.3	354.0	354.9	355.4	328.1	316.2
99	75.7	202.8	245.2	275.1	310.5	308.8	311.7	324.5	310.0	298.7	276.1
00	73.1	194.0	234.3	267.2	296.5	307.2	305.7	325.3	311.8	290.5	275.4
01	74.8	202.3	236.6	261.5	297.0	310.8	307.3	329.6	315.8	313.1	290.7
02	71.8	195.6	238.3	262.7	299.5	312.1	315.0	328.5	322.3	312.4	303.9
03	71.0	190.5	227.0	253.8	276.8	288.2	290.2	304.1	294.8	284.2	274.6
04	68.9	194.6	231.0	253.8	272.8	284.9	287.5	298.4	289.6	280.5	262.8
05	71.5	196.7	242.9	260.0	293.3	305.1	296.6	310.1	304.2	297.0	280.1
06	67.9	196.5	236.0	263.2	292.8	299.7	295.0	303.5	298.5	288.4	278.9
07	65.0	191.0	236.0	258.7	292.3	299.0	293.9	307.9	288.1	281.8	273.6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7>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 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1131.7	2818.7	3024.7	2870.9	2575.1	1946.8	1499.5	1299.8	1153.8	1060.8	991.9
96	1009.4	2657.2	2824.9	2761.9	2504.9	1868.4	1472.0	1219.9	1090.7	985.2	891.3
97	925.2	2327.9	2607.5	2495.1	2331.6	1778.1	1370.8	1163.1	1006.0	892.6	814.4
98	783.5	2004.5	2204.2	2241.9	2095.6	1660.7	1296.7	1081.4	945.3	830.5	760.4
99	629.5	1657.2	1827.8	1844.5	1776.4	1397.2	1110.1	924.6	799.8	705.5	628.2
00	599.7	1612.5	1790.5	1821.2	1734.5	1415.9	1123.3	948.1	805.9	698.9	642.4
01	568.2	1589.3	1776.5	1820.4	1779.4	1469.8	1176.4	989.2	858.0	755.3	671.8
02	573.0	1612.7	1843.6	1874.2	1861.4	1545.9	1226.6	1035.4	905.8	810.9	728.3
03	533.4	1521.2	1734.0	1768.5	1758.0	1485.0	1204.1	1006.3	887.8	792.6	726.9
04	527.8	1514.4	1703.0	1752.1	1758.8	1461.8	1210.8	1043.8	911.1	828.2	755.4
05	480.3	1423.6	1631.8	1704.6	1728.7	1478.0	1191.0	1038.6	920.0	846.2	775.3
06	448.7	1387.1	1544.1	1649.1	1679.3	1388.0	1135.5	963.5	853.3	769.4	712.7
07	454.6	1490.5	1734.0	1818.0	1883.5	1543.3	1262.0	1059.6	922.6	834.8	767.0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주: 절도범죄는 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의 합

<표 1-8>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사기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24.3	118.5	100.7	147.6	249.3	320.2	346.6	367.2	377.4	356.5	343.9
96	27.6	128.1	87.7	134.4	242.9	319.1	352.2	375.5	383.3	375.9	350.7
97	5.7	25.0	51.0	86.0	184.4	268.1	291.6	316.7	328.3	321.8	327.3
98	5.8	28.1	49.1	85.1	176.7	250.9	281.7	292.2	303.1	294.9	291.4
99	8.1	30.0	50.2	74.6	153.1	216.1	247.9	252.5	252.5	245.7	231.0
00	5.5	23.9	43.9	68.3	141.3	209.1	225.8	239.3	233.8	225.9	219.9
01	4.3	21.7	38.2	60.9	134.2	190.2	221.8	224.1	227.5	220.5	221.1
02	5.1	21.8	39.5	67.3	139.4	203.6	230.3	224.5	236.0	227.3	222.7
03	4.5	20.5	34.7	57.4	121.2	178.6	195.5	202.9	205.3	199.2	197.5
04	4.1	19.2	32.1	53.9	108.3	162.7	184.3	182.1	189.6	188.2	184.7
05	4.6	18.2	36.0	60.8	128.5	180.4	201.4	198.4	205.4	206.3	209.6
06	4.1	19.7	35.1	56.9	109.7	148.1	168.6	165.7	160.8	170.3	167.9
07	4.1	20.3	33.8	56.0	105.1	139.6	151.8	147.8	149.3	149.0	152.4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9>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장물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45.4	172.3	222.7	245.5	262.4	212.4	167.9	148.9	132.7	114.6	106.3
96	40.7	160.3	192.6	223.3	238.4	188.3	155.4	131.2	110.6	98.1	84.6
97	36.5	136.6	176.3	201.7	230.2	188.7	152.6	126.5	109.9	97.4	86.1
98	31.1	117.7	147.4	183.4	198.7	170.0	134.5	114.8	99.6	84.9	76.6
99	24.3	89.8	114.1	141.2	160.8	134.6	113.7	95.9	83.0	69.9	62.5
00	24.8	87.8	113.1	125.6	145.0	133.2	105.2	92.1	80.7	68.8	60.5
01	23.2	89.4	113.7	130.5	151.3	133.4	116.8	101.7	85.5	79.2	69.7
02	23.2	87.4	112.8	137.3	152.4	144.9	125.2	108.4	95.2	83.9	77.6
03	21.6	79.6	101.7	123.5	151.4	138.7	119.0	103.1	90.8	82.0	73.5
04	21.0	80.9	98.7	116.9	151.1	138.5	115.5	105.0	94.3	86.3	76.6
05	19.8	75.6	101.4	113.2	144.6	138.9	118.7	110.5	97.5	89.8	88.0
06	18.6	73.9	90.2	108.6	131.7	119.1	107.8	95.9	85.4	82.7	75.9
07	20.0	82.3	100.7	110.5	135.6	125.0	107.5	93.4	84.9	78.4	72.8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10>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손괴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231.8	480.8	522.2	474.5	362.6	265.9	206.1	199.0	175.1	152.8	143.9
96	214.5	480.3	521.8	481.0	402.2	281.3	222.0	202.3	181.9	159.7	140.0
97	193.7	411.1	469.9	433.5	358.0	270.2	209.6	199.0	171.0	152.2	134.3
98	180.1	400.4	441.1	425.0	352.4	268.7	215.1	194.9	168.9	142.1	129.0
99	151.0	330.0	373.8	361.0	310.3	230.7	185.1	173.7	142.1	124.1	108.3
00	144.5	324.2	369.0	354.6	311.0	245.9	191.8	178.2	155.1	131.5	110.8
01	137.3	305.1	348.4	344.5	296.7	244.4	194.8	184.6	158.2	139.1	117.6
02	143.7	324.3	367.4	363.6	325.1	265.2	208.1	202.0	171.0	149.2	128.3
03	146.1	319.2	361.0	362.1	318.4	250.0	199.9	191.7	158.1	137.7	125.8
04	144.5	313.2	352.7	341.8	305.8	240.4	206.2	193.5	164.9	144.5	126.8
05	145.0	329.6	366.4	360.3	311.5	252.0	213.8	202.1	171.3	151.0	138.7
06	162.5	382.6	406.5	390.5	339.9	268.9	223.0	213.6	180.3	155.6	140.7
07	160.8	392.1	396.5	373.6	325.3	275.1	218.9	207.8	179.5	155.5	141.8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11>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약물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126.5	712.9	1117.2	1470.9	1841.3	1675.3	1473.6	1357.1	1269.8	1138.1	1060.9
96	135.9	754.2	1134.3	1555.4	1903.4	1698.8	1498.6	1327.2	1216.2	1124.4	1011.4
97	126.7	678.1	1101.1	1480.9	1886.3	1707.5	1505.9	1346.7	1193.7	1100.3	1004.9
98	114.2	650.9	1019.8	1432.9	1841.6	1738.2	1549.4	1350.2	1204.3	1060.4	983.9
99	99.4	566.8	885.0	1238.4	1682.2	1572.1	1414.7	1273.8	1123.2	991.9	889.5
00	106.7	583.6	913.7	1294.7	1721.2	1687.4	1498.8	1333.2	1187.2	1043.6	933.7
01	113.7	614.4	941.9	1296.1	1767.9	1718.5	1565.9	1391.0	1242.1	1109.3	999.0
02	102.1	566.8	904.7	1268.4	1757.1	1760.1	1588.1	1407.3	1276.1	1150.0	1046.7
03	109.9	584.6	901.3	1297.4	1800.4	1812.3	1641.2	1463.0	1329.4	1225.7	1132.5
04	111.0	580.8	900.0	1293.5	1851.4	1862.8	1702.8	1536.8	1398.5	1281.1	1194.5
05	107.2	573.8	915.9	1314.2	1925.3	1953.9	1793.9	1643.8	1508.4	1397.8	1299.8
06	104.8	574.1	910.5	1343.8	1937.9	1992.2	1819.3	1622.5	1497.2	1386.0	1290.2
07	104.5	587.4	935.8	1365.1	1986.8	2001.4	1832.7	1652.9	1489.6	1373.1	1272.5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12> 인구 10만 명당 미국 10-24세 연령집단별
약물/음주 운전 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10-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0.9	12.7	75.6	196.6	460.4	607.8	727.6	1013.6	1058.4	1040.7	1027.8
96	1.1	14.2	89.3	225.2	510.5	640.7	736.1	1014.8	1050.7	1038.2	990.4
97	1.1	14.1	87.7	223.4	508.6	650.5	742.9	980.1	1000.8	1001.6	954.9
98	1.5	17.1	94.9	243.7	548.2	700.3	790.4	1006.9	1006.4	967.9	945.2
99	1.5	16.8	88.0	228.3	542.1	690.7	768.6	1017.5	996.8	957.5	903.7
00	1.3	14.5	80.9	218.3	519.5	697.7	772.5	1034.3	1011.1	970.9	905.3
01	1.2	15.1	84.0	218.4	528.7	701.1	787.9	1037.5	1023.8	986.0	913.6
02	1.2	15.5	93.4	253.8	612.8	813.3	911.2	1201.4	1167.7	1121.6	1056.0
03	0.9	14.6	86.9	246.5	597.4	795.1	903.2	1204.5	1170.0	1124.1	1054.3
04	1.0	13.1	85.4	235.7	588.2	785.5	881.9	1228.8	1212.0	1135.6	1059.2
05	0.8	11.9	74.9	217.4	550.8	765.7	860.6	1199.9	1201.1	1135.4	1065.5
06	0.8	13.3	81.1	229.9	588.9	812.8	911.6	1254.0	1244.2	1189.0	1107.6
07	1.0	12.6	73.1	212.8	562.6	788.3	891.3	1265.5	1238.5	1200.7	1139.1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2007,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www.census.gov/popset/estimates.php).

**<표 1-13> 한국 14-19세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단위: 명, %)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살인	2000	0.5	1.0	1.3	1.6	1.4	1.6
	2001	0.3	0.2	0.8	1.5	2.0	2.0
	2002	0.1	0.7	0.7	1.6	0.7	2.2
	2003	0.3	1.0	1.3	1.7	1.1	1.4
	2004	0.2	0.7	0.6	0.7	1.3	1.0
	2005	0.4	0.6	1.1	0.7	1.1	1.4
	2006	0.3	0.9	1.5	1.1	1.0	0.9
강도	2000	8.0	15.6	23.8	25.7	23.0	15.4
	2001	6.4	18.5	29.7	24.5	20.8	16.7
	2002	7.1	17.5	31.0	25.6	17.4	15.9
	2003	9.6	18.9	30.7	27.4	25.0	19.6
	2004	7.7	13.0	20.6	20.5	18.1	17.1
	2005	7.6	11.7	22.5	15.3	17.0	14.7
	2006	4.0	9.3	16.3	16.2	14.2	11.2
방화	2000	1.4	0.8	0.7	1.1	0.7	0.9
	2001	1.8	1.4	1.3	1.1	0.9	0.7
	2002	1.6	1.4	0.5	1.0	1.0	0.9
	2003	2.2	1.8	0.7	1.7	1.0	0.7
	2004	2.3	1.4	1.1	1.4	0.9	0.9
	2005	1.6	1.4	1.7	0.7	0.5	0.9
	2006	2.1	1.1	1.1	2.2	1.1	0.7
강간	2000	1.1	1.8	3.1	4.6	5.2	5.3
	2001	0.5	2.2	2.4	4.1	4.4	4.5
	2002	0.9	1.6	2.4	4.3	3.9	4.7
	2003	1.0	1.7	2.3	4.2	4.6	4.6
	2004	0.6	1.5	1.1	2.0	2.6	3.8
	2005	0.7	1.5	1.0	2.1	3.0	3.2
	2006	0.8	0.9	1.4	1.5	1.9	2.8

(단위: 명, %)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폭행 / 상해	2000	184.9	212.8	157.0	131.3	101.3	84.4
	2001	155.6	196.8	167.3	137.1	105.2	80.7
	2002	161.4	180.1	155.8	122.8	92.5	78.3
	2003	151.9	162.7	138.2	119.1	89.3	71.2
	2004	124.4	147.3	112.9	89.2	73.2	69.2
	2005	137.0	147.5	110.4	82.8	66.3	60.2
	2006	136.7	150.3	107.6	85.7	60.3	56.7
협박	2000	1.4	2.1	1.5	2.0	1.7	2.1
	2001	2.3	2.8	1.4	1.2	1.4	1.5
	2002	1.2	1.6	2.6	1.6	2.3	1.8
	2003	1.4	1.7	1.8	1.8	1.4	1.3
	2004	1.9	1.4	1.7	1.2	1.2	1.1
	2005	0.9	2.4	2.2	2.0	1.7	1.5
	2006	1.4	2.3	2.8	1.8	1.8	1.7
공갈	2000	74.9	120.9	113.0	74.5	46.3	29.7
	2001	68.1	103.0	102.4	68.4	41.0	28.3
	2002	57.4	77.5	81.0	54.8	36.5	26.9
	2003	55.9	73.3	72.3	48.3	33.0	21.2
	2004	41.2	59.3	54.2	35.9	26.5	18.9
	2005	38.5	51.9	46.0	33.4	22.2	15.0
	2006	29.8	38.5	40.4	28.5	19.6	13.3
체포 / 감금	2000	0.1	0.5	2.2	1.9	3.7	3.5
	2001	0.0	0.3	1.6	2.5	2.8	3.5
	2002	0.4	0.9	2.0	4.4	4.4	2.6
	2003	0.5	1.1	1.7	3.2	2.3	3.4
	2004	0.2	0.6	0.8	1.8	1.4	1.7
	2005	0.7	0.9	1.6	1.8	2.3	1.5
	2006	0.4	0.6	1.5	1.1	2.2	2.0
약취 / 유인	2000	0.0	0.0	0.1	0.1	0.2	0.5
	2001	0.1	0.0	0.1	0.3	0.2	0.1
	2002	0.0	0.1	0.1	0.1	0.4	0.4
	2003	0.0	0.2	0.1	0.1	0.1	0.1
	2004	0.0	0.0	0.1	0.1	0.2	0.5
	2005	0.1	0.2	0.0	0.0	0.2	0.1
	2006	0.0	0.0	0.2	0.2	0.5	0.4

자료: 警察廳. 犯罪統計資料. 1991-2006 (www.npa.go.jp/toukei/index.htm).
統計局. 人口推計, 1991-2006 (www.stat.go.jp/jinsui).

**<표 1-14> 일본 14-19세 연령집단별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단위: 명, %)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절도	2000	1171.2	1361.9	1340.5	753.1	426.6	286.8
	2001	1197.9	1506.2	1474.9	816.7	451.3	277.2
	2002	1200.3	1484.6	1596.6	912.2	499.2	331.4
	2003	1237.7	1463.4	1522.9	944.1	546.4	364.2
	2004	1136.5	1429.8	1483.1	907.9	547.7	374.8
	2005	1160.6	1328.9	1400.0	845.2	516.5	366.4
	2006	1020.4	1213.7	1262.4	740.3	458.6	341.8
장물	2000	14.1	19.7	20.0	9.7	5.2	2.9
	2001	19.0	22.8	25.2	12.3	4.6	3.0
	2002	20.1	24.7	25.7	16.5	7.6	3.7
	2003	27.9	33.8	34.2	23.1	10.8	6.5
	2004	23.2	34.9	27.1	18.2	11.9	8.3
	2005	25.7	35.5	29.6	18.8	10.5	7.3
	2006	28.3	35.4	29.3	16.3	9.4	7.2
사기	2000	2.2	3.2	6.9	7.8	8.3	6.5
	2001	1.8	4.5	7.8	4.8	6.3	6.5
	2002	1.8	3.6	8.8	9.5	9.4	7.1
	2003	2.2	7.1	10.9	10.4	11.6	7.3
	2004	4.3	10.8	15.5	15.8	18.3	18.4
	2005	4.1	6.3	16.5	16.4	18.9	18.8
	2006	5.4	9.3	19.9	20.8	21.4	18.5
손괴	2000	18.5	18.8	15.9	12.4	8.4	6.8
	2001	18.6	17.8	14.1	11.6	9.0	7.5
	2002	18.9	20.8	14.6	14.2	8.7	8.1
	2003	26.4	21.6	20.6	14.9	9.8	8.5
	2004	24.7	27.7	16.7	11.2	8.2	7.3
	2005	34.7	31.7	23.3	13.9	10.3	9.6
	2006	40.2	34.0	23.4	14.8	9.1	8.1

자료: 警察廳. 犯罪統計資料, 1991-2006(www.npa.go.jp/toukei/index.htm).
統計局. 人口推計, 1991-2006(www.stat.go.jp/jinsui..).

<표 1-1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성별·학교별 추이(일본)

(단위: 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초등 학교	학교내	남학생	1,461	1,259	1,192	1,101	1,433	1,742	1,745
			(92.0)	(91.4)	(89.9)	(90.9)	(92.0)	(93.5)	(90.9)
		여학생	127	118	134	110	125	122	174
			(8.0)	(8.6)	(10.1)	(9.1)	(8.0)	(6.5)	(9.1)
		합계	1,588	1,377	1,326	1,211	1,558	1,864	1,919
		지수1	0.0	-15.3	-19.8	-31.1	-1.9	14.8	17.2
	학교외	남학생	187	187	223	221	253	283	259
			(91.7)	(92.1)	(92.1)	(95.3)	(91.0)	(93.7)	(93.8)
		여학생	17	16	19	11	25	19	17
			(8.3)	(7.9)	(7.9)	(4.7)	(9.0)	(6.3)	(6.2)
		합계	204	203	242	232	278	302	276
		지수1	0.0	-0.5	18.6	13.7	36.3	48.0	35.3
	합계	계	1,792	1,580	1,568	1,443	1,836	2,166	2,195
		지수	0.0	-11.8	-12.5	-19.5	2.5	20.9	22.5
중학교	학교내	남학생	23,520	25,357	23,077	20,545	22,139	20,806	21,038
			(93.0)	(92.1)	(91.2)	(91.5)	(91.1)	(90.9)	(91.8)
		여학생	1,770	2,186	2,234	1,899	2,150	2,087	1,888
			(7.0)	(7.9)	(8.8)	(8.5)	(8.9)	(9.1)	(8.2)
		합계	25,290	27,543	25,311	22,444	24,289	22,893	22,926
		지수1	0.0	8.9	0.1	-11.3	-4.0	-9.5	-9.3
	학교외	남학생	6,182	6,325	5,323	4,323	3,955	3,630	3,530
			(83.9)	(83.2)	(80.5)	(80.7)	(81.1)	(80.8)	(83.5)
		여학생	1,190	1,277	1,290	1,035	921	860	699
			(16.1)	(16.8)	(19.5)	(19.3)	(18.9)	(19.2)	(16.5)
		합계	7,372	7,602	6,613	5,358	4,876	4,490	4,229
		지수1	0.0	3.1	-10.3	-27.3	-33.9	-39.1	-42.6
	합계	계	32,662	35,145	31,924	27,802	29,165	27,383	27,155
		지수1	0.0	7.6	-2.3	-14.9	-10.7	-16.2	-16.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등 학교	학교내	남학생	6,290	7,090	6,465	5,857	5,724	5,617	5,764
			(90.1)	(91.3)	(89.9)	(91.0)	(90.9)	(90.9)	(90.9)
		여학생	695	675	723	576	570	559	580
			(9.9)	(8.7)	(10.1)	(9.0)	(9.1)	(9.1)	(9.1)
		합계	6,985	7,765	7,188	6,433	6,294	6,176	6,344
	지수1	0.0	11.2	2.9	-7.9	-9.9	-11.6	-9.2	
	학교외	남학생	2,190	2,462	1,866	1,606	1,443	1,275	1,297
			(80.7)	(83.4)	(82.5)	(85.5)	(85.1)	(84.0)	(86.9)
		여학생	523	489	395	272	252	243	195
			(19.3)	(16.6)	(17.5)	(14.5)	(14.9)	(16.0)	(13.1)
		합계	2,713	2,951	2,261	1,878	1,695	1,518	1,492
	지수1	0.0	8.8	-16.7	-30.8	-37.5	-44.0	-45.0	
	합계	계	9,698	10,716	9,449	8,311	7,989	7,694	7,836
		지수	0.0	9.5	-2.6	-16.7	-21.4	-26.0	-23.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학교내	남학생	31,271	33,706	30,734	27,503	29,296	28,165	28,547
			(92.3)	(91.9)	(90.9)	(91.4)	(91.1)	(91.1)	(91.5)
		여학생	2,592	2,979	3,091	2,585	2,845	2,768	2,642
			(7.7)	(8.1)	(9.1)	(8.6)	(8.9)	(8.9)	(8.5)
		합계	33,863	36,685	33,825	30,088	32,141	30,933	31,189
	지수1	0.0	8.3	-0.1	-11.1	-5.1	-8.7	-7.9	
	학교외	남학생	8,559	8,974	7,412	6,150	5,651	5,188	5,086
			(83.2)	(83.4)	(81.3)	(82.4)	(82.5)	(82.2)	(84.8)
		여학생	1,730	1,782	1,704	1,318	1,198	1,122	911
			(16.8)	(16.6)	(18.7)	(17.6)	(17.5)	(17.8)	(15.2)
		합계	10,289	10,756	9,116	7,468	6,849	6,310	5,997
	지수1	0.0	4.5	-11.4	-27.4	-33.4	-38.7	-41.7	
	합계	계	44,152	47,441	42,941	37,556	38,990	37,243	37,186
		지수1	0.0	7.4	-2.7	-14.9	-11.7	-15.6	-15.8

주: 1999년 기준 증감률

<표 1-16> 한국 10-24세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단위: 명, %)

유 형	연 도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24 세
살 인	90	0.38	1.21	2.30	5.12	4.35	3.99	3.16	2.45	3.37	3.60	3.96
	91	0.39	0.63	2.30	2.42	2.90	2.07	2.38	2.18	2.23	4.08	3.36
	92	0.00	0.26	1.52	2.67	2.55	3.80	1.96	3.47	3.28	3.70	3.74
	93	0.13	0.26	1.44	2.16	4.01	5.68	3.47	2.08	3.91	4.60	3.93
	94	0.49	0.51	1.05	2.23	1.78	1.83	1.63	2.24	2.08	1.85	2.97
	95	0.48	0.74	0.90	2.51	1.31	2.29	1.10	2.10	2.81	1.98	2.62
	96	0.12	0.82	0.73	1.66	1.33	2.28	2.59	1.95	1.62	2.60	3.63
	97	0.26	0.24	0.82	1.46	2.94	1.60	3.37	2.86	1.46	2.20	2.50
	98	0.14	0.64	1.09	1.76	1.22	1.66	2.41	1.35	1.56	1.83	2.10
	99	0.45	0.28	0.51	1.21	2.23	1.71	2.31	1.74	1.75	2.47	2.08
	00	0.16	0.45	0.55	1.03	0.73	1.53	0.86	1.28	2.01	2.16	3.52
	01	0.32	0.16	0.75	1.12	1.42	2.68	0.95	2.09	2.18	3.60	2.29
	02	0.49	0.97	0.94	1.81	1.96	2.21	1.35	0.84	1.85	2.05	2.13
	03	0.32	0.00	0.48	0.31	0.30	0.98	1.17	0.74	2.52	1.35	2.43
	04	0.31	0.16	0.33	0.48	1.24	0.91	1.13	1.18	1.86	1.09	1.60
	05	0.15	0.32	0.97	0.33	1.28	0.77	0.61	1.14	1.45	1.37	1.59
	06	0.15	0.30	0.48	0.49	0.98	0.80	0.77	1.06	0.71	1.85	1.25
	07	0.00	0.15	0.46	0.48	0.81	1.15	1.12	0.62	0.61	1.00	1.98
강 도	90	16.1	36.5	72.4	84.6	86.4	75.7	48.6	33.6	31.8	30.7	28.3
	91	9.0	26.1	48.2	66.8	58.8	48.5	37.6	26.4	21.7	23.1	21.8
	92	8.8	24.0	45.4	65.1	58.8	45.1	29.6	29.5	24.9	25.7	23.1
	93	13.6	41.7	68.2	84.5	72.0	61.9	37.5	35.8	30.1	30.9	25.4
	94	31.3	58.3	101	106	83.9	59.9	32.2	26.7	27.0	28.2	23.4
	95	24.7	44.3	76.0	80.4	66.7	50.3	26.2	18.3	22.8	19.1	20.4
	96	16.6	33.5	57.3	77.6	67.5	50.5	30.3	21.3	20.3	25.0	20.0
	97	22.0	41.4	72.7	94.8	79.2	60.9	33.3	25.5	28.2	27.6	21.9
	98	21.0	56.2	87.5	106	99.6	78.0	40.5	32.3	35.4	34.8	29.1
	99	18.2	47.0	74.8	76.7	69.9	63.3	32.3	24.0	31.1	25.9	22.9
	00	20.8	44.2	66.7	70.3	59.3	39.8	29.2	25.8	24.9	25.3	19.8
	01	18.6	40.5	49.2	44.8	45.4	34.5	25.3	20.5	16.2	25.3	18.0
	02	14.2	25.5	40.0	40.8	34.9	32.1	20.0	18.8	17.9	20.0	19.9
	03	16.3	37.3	53.2	43.7	36.6	25.0	22.5	17.6	21.8	23.6	21.6
	04	11.0	21.6	27.3	29.2	28.2	20.6	20.0	13.6	15.0	18.1	17.1
	05	10.1	21.7	24.6	21.1	17.5	15.3	9.2	9.2	10.0	10.1	10.9
	06	10.6	30.2	70.4	70.9	63.2	52.2	32.4	27.5	27.8	32.5	35.9
	07	6.9	15.2	25.3	29.7	32.3	23.3	21.0	21.3	21.9	25.8	29.1

유형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강 간	90	10.6	30.2	70.4	70.9	63.2	52.2	32.4	27.5	27.8	32.5	35.9
	91	6.9	15.2	25.3	29.7	32.3	23.3	21.0	21.3	21.9	25.8	29.1
	92	5.0	12.9	25.4	27.6	30.2	26.1	17.9	17.2	18.7	25.0	27.5
	93	9.7	29.1	39.2	46.4	46.6	37.8	21.7	19.8	26.6	33.0	35.7
	94	9.8	19.0	36.7	52.8	43.8	37.4	27.2	26.3	31.8	35.3	36.8
	95	9.8	23.2	38.0	44.5	41.0	36.9	21.1	21.3	30.3	32.9	33.0
	96	10.3	19.1	26.3	38.4	42.0	43.1	24.6	21.3	32.0	35.2	33.0
	97	8.4	12.3	18.1	23.2	24.6	22.6	15.5	14.7	22.4	26.2	26.5
	98	4.3	8.6	9.4	16.6	14.5	17.9	11.2	11.5	16.1	22.2	23.8
	99	10.9	20.7	33.5	40.5	35.6	34.7	26.9	24.6	39.2	32.9	40.7
	00	17.5	24.4	33.4	35.3	33.6	33.8	25.4	22.4	32.8	39.2	36.7
	01	14.2	24.5	29.2	30.0	34.6	29.9	22.6	19.6	23.6	35.5	35.6
	02	11.4	19.7	28.5	29.9	23.0	23.8	20.9	18.8	26.7	31.0	35.6
	03	13.1	26.1	26.2	25.8	25.4	23.2	18.5	18.5	25.5	32.5	36.0
	04	8.6	12.9	20.6	26.8	29.6	21.8	15.4	14.7	21.3	24.4	28.5
	05	8.3	21.6	25.9	25.5	22.1	15.7	11.5	16.2	21.8	25.3	23.0
	06	16.4	25.3	31.4	28.1	30.7	20.6	13.6	15.9	27.8	28.1	31.8
	07	17.9	18.4	25.3	27.2	21.4	17.7	11.4	13.3	19.8	24.7	36.9
방 화	90	0.8	1.4	0.7	1.0	2.0	2.9	3.8	3.2	5.1	3.7	4.2
	91	0.7	0.5	0.4	0.2	1.2	3.7	2.3	2.2	2.0	3.0	2.8
	92	1.3	1.2	1.3	1.3	1.7	2.6	2.7	2.5	3.1	4.5	3.9
	93	0.8	1.2	1.3	1.7	2.1	2.9	2.5	2.1	2.6	3.3	4.9
	94	0.2	1.0	1.2	0.8	1.0	1.1	1.0	0.3	0.9	1.4	1.3
	95	0.6	1.7	2.6	1.5	0.8	1.1	0.6	0.6	1.7	1.2	2.1
	96	0.5	0.2	0.6	0.6	0.9	1.2	1.4	0.5	1.2	1.6	1.5
	97	0.9	1.2	0.7	1.6	1.4	1.1	1.1	0.3	1.1	0.7	2.0
	98	0.7	1.5	1.8	2.0	1.7	1.0	0.8	0.3	1.6	1.1	2.2
	99	1.2	1.1	0.9	1.3	1.3	0.9	1.2	1.2	0.9	1.0	0.6
	00	1.3	0.9	1.0	1.7	1.1	0.7	1.0	1.0	1.7	1.8	1.7
	01	1.8	2.4	2.4	1.4	1.3	1.7	1.3	1.2	0.9	2.1	2.7
	02	0.8	1.3	1.6	0.9	1.4	0.9	1.2	0.8	0.9	1.4	1.3
	03	1.1	1.1	1.8	1.2	1.5	1.1	1.0	1.4	1.2	1.2	1.7
	04	1.6	1.6	1.8	0.8	0.9	0.8	1.0	0.7	0.9	1.0	1.2
	05	2.0	3.0	3.2	1.0	1.6	1.2	1.1	1.1	0.7	1.2	0.9
	06	2.2	3.2	4.8	1.0	1.5	0.6	0.8	0.3	0.7	0.5	0.7
	07	4.6	6.6	4.7	3.2	1.5	1.1	0.8	0.2	0.6	0.1	1.5

(단위: 명, %)

유 형	연 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폭 행	90	0.3	0.4	0.6	3.5	8.4	5.7	8.7	12.4	8.6	13.3	16.8
	91	0.1	0.5	2.0	3.7	5.8	6.8	8.0	8.2	8.9	10.1	12.2
	92	0.0	0.2	0.9	4.4	3.8	4.8	5.9	8.2	7.1	11.3	8.1
	93	0.1	0.6	2.4	3.7	4.7	6.4	6.1	6.4	7.6	9.9	11.0
	94	0.3	0.5	1.3	4.4	5.0	6.8	9.3	8.4	12.7	12.3	14.5
	95	0.3	1.2	4.6	6.9	10.7	10.7	9.7	8.9	8.3	8.4	11.4
	96	0.4	1.7	6.1	11.1	9.4	11.7	12.4	10.9	6.6	6.9	8.7
	97	0.2	2.4	10.1	12.5	10.6	10.7	8.8	9.3	8.1	8.1	8.0
	98	0.1	1.5	6.5	12.2	10.4	10.0	10.6	15.5	9.9	7.7	10.5
	99	0.6	2.1	7.5	14.1	16.3	13.9	18.3	20.5	16.5	17.7	21.6
	00	0.8	2.6	9.9	13.0	16.8	19.5	21.8	26.4	24.6	18.7	28.7
	01	0.4	2.4	10.7	16.2	12.3	15.2	21.8	26.9	26.6	23.1	28.2
	02	0.4	1.7	7.2	10.7	13.8	15.1	17.4	28.8	25.7	23.3	23.9
	03	0.5	1.8	7.6	10.4	10.5	14.8	16.3	25.3	23.6	23.6	32.2
	04	0.0	1.1	5.8	7.6	7.4	10.3	17.1	19.8	18.9	22.8	24.3
	05	0.1	1.4	6.8	7.7	13.6	13.9	13.3	16.5	20.7	20.8	25.0
	06	0.1	2.0	9.3	25.4	27.4	40.8	62.2	81.1	69.7	75.9	108.0
	07	0.2	4.1	19.4	36.2	47.2	62.6	98.4	128.3	104.1	118.8	162.8
상 해	90	0.6	1.5	5.1	9.2	13.5	20.1	32.7	41.4	27.4	33.1	39.6
	91	0.7	1.5	4.8	11.9	11.9	22.4	33.9	35.5	29.3	29.6	38.9
	92	0.5	1.3	5.0	10.3	13.8	18.2	28.0	29.0	25.7	25.7	31.3
	93	0.6	1.9	7.3	15.9	18.2	20.0	26.8	31.8	26.5	28.6	38.8
	94	1.4	2.7	8.0	15.6	19.8	28.4	32.4	35.4	32.9	32.1	41.5
	95	0.9	2.8	9.3	18.8	22.7	29.4	31.9	34.5	27.5	31.6	40.4
	96	1.0	3.8	13.3	22.8	26.5	28.8	36.4	37.9	27.0	25.1	41.8
	97	0.6	4.4	17.1	22.3	26.0	32.9	38.6	33.3	33.4	24.3	41.0
	98	0.9	3.4	11.9	21.0	27.1	35.7	38.3	43.1	30.9	28.4	38.4
	99	0.7	3.9	16.0	29.9	34.1	34.6	38.9	46.1	40.6	34.8	52.4
	00	1.3	4.2	15.4	29.4	33.0	41.6	39.9	52.4	46.7	40.8	55.2
	01	1.1	4.6	18.9	28.6	31.2	32.2	40.8	52.8	44.1	48.9	54.4
	02	1.1	3.6	14.2	18.4	26.2	23.4	35.0	39.6	43.2	43.4	54.8
	03	1.1	3.9	16.3	21.0	24.2	32.0	33.5	42.7	45.0	44.0	54.6
	04	0.4	3.3	15.7	18.1	16.2	24.0	29.1	34.5	35.5	31.9	41.9
	05	0.2	2.9	14.3	23.3	19.8	27.8	27.2	29.4	21.8	28.9	39.9
	06	0.5	5.0	23.0	34.8	42.5	59.1	86.2	97.3	87.8	95.5	146.0
	07	0.3	5.5	25.9	46.1	60.0	76.6	101.3	125.8	94.3	109.1	179.7

(단위: 명, %)

유 형	연 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공 갈	90	4.7	8.0	6.7	4.3	2.4	2.2	0.4	0.8	0.8	1.1	1.2
	91	4.3	6.1	4.5	3.6	2.7	1.9	0.6	0.7	0.9	1.3	0.7
	92	4.7	8.1	8.0	3.6	3.2	2.1	1.1	0.9	0.9	0.9	1.1
	93	6.4	11.5	8.6	4.3	3.4	1.9	0.9	0.8	0.9	0.9	2.1
	94	10.5	13.8	11.2	6.2	3.4	2.7	1.0	0.8	0.8	0.7	1.0
	95	21.4	30.9	24.2	15.2	5.0	2.4	1.0	0.8	1.1	1.0	1.0
	96	19.4	28.2	23.3	8.4	4.9	2.0	1.7	1.1	1.2	1.2	1.3
	97	20.1	28.0	17.6	12.7	4.6	2.3	1.3	0.9	0.5	0.5	1.4
	98	12.1	18.2	13.9	7.9	5.0	3.2	1.5	1.2	0.9	1.2	1.2
	99	12.9	16.7	13.7	7.9	4.1	3.4	1.3	1.5	1.5	0.9	1.3
	00	17.3	18.0	12.9	8.6	3.5	2.1	1.1	1.7	1.3	1.6	1.7
	01	17.1	14.9	11.4	6.1	4.1	3.9	2.0	2.1	1.4	3.1	1.6
	02	7.0	17.1	13.3	9.7	4.1	1.7	1.2	1.0	1.2	2.1	2.3
	03	8.2	12.1	9.5	6.9	4.1	2.0	1.3	1.1	2.8	2.3	2.2
	04	6.1	10.2	7.7	6.9	2.6	1.5	0.8	0.7	1.2	1.3	1.5
	05	9.0	11.2	8.7	3.3	3.2	2.0	1.1	0.9	1.2	1.1	1.5
	06	10.6	18.0	14.4	9.6	7.4	2.9	2.5	1.7	1.1	2.9	1.6
	07	14.0	26.7	21.8	11.4	6.5	3.9	1.9	1.7	3.0	1.8	1.9
협 박	90	0.0	0.0	0.0	0.0	0.2	0.1	0.5	0.5	0.2	0.8	0.1
	91	0.0	0.0	0.0	0.0	0.2	0.0	0.4	0.2	0.0	0.4	0.4
	92	0.0	0.0	0.1	0.3	0.1	0.1	0.1	0.3	0.1	0.2	0.8
	93	0.0	0.0	0.0	0.0	0.3	0.3	0.1	0.2	0.1	0.3	0.9
	94	0.0	0.0	0.1	0.0	0.3	0.1	0.1	0.6	0.5	0.4	0.4
	95	0.0	0.0	0.1	0.0	0.1	0.1	0.0	0.1	0.2	0.0	0.3
	96	0.0	0.0	0.0	0.0	0.9	0.3	0.3	0.7	0.4	0.5	0.5
	97	0.0	0.0	0.0	0.1	0.2	0.6	0.1	0.3	0.4	0.4	0.2
	98	0.0	0.1	0.3	0.1	0.4	0.1	0.6	1.2	0.0	0.7	0.0
	99	0.1	0.1	0.1	0.1	0.6	0.2	1.2	0.4	0.4	0.4	1.1
	00	0.0	0.0	0.0	0.0	0.1	0.1	0.7	0.7	0.4	0.6	1.1
	01	0.1	0.1	0.0	0.2	0.9	0.4	0.4	0.9	0.5	1.6	1.5
	02	0.1	0.1	0.2	0.3	0.6	0.8	0.6	0.8	0.6	1.4	1.5
	03	0.1	0.1	0.3	0.2	0.3	0.5	0.6	0.7	1.2	0.6	1.2
	04	0.0	0.0	0.0	0.2	0.3	0.3	0.8	0.5	0.6	0.5	1.4
	05	0.0	0.0	0.2	0.3	0.3	0.2	0.8	0.3	0.6	0.1	1.2
	06	0.0	0.1	0.1	0.2	0.5	1.6	0.7	1.1	0.3	1.2	1.1
	07	0.0	0.3	1.4	1.0	0.9	0.8	1.5	1.3	0.6	0.9	1.2

(단위: 명, %)

유형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약취 / 유인	90	0.1	0.7	1.5	1.3	1.3	2.0	1.8	1.7	1.2	2.6	2.9
	91	0.1	0.6	0.6	2.0	2.1	1.2	1.6	1.5	0.7	1.3	1.8
	92	0.0	0.5	0.1	0.5	0.3	0.4	0.2	0.3	0.8	0.4	0.8
	93	0.0	0.9	1.0	1.4	1.0	1.4	1.5	0.7	1.0	2.1	1.6
	94	0.4	0.1	0.4	0.5	1.0	0.7	0.9	0.2	0.3	0.7	1.3
	95	0.0	0.1	0.8	0.4	0.8	0.4	0.6	0.3	0.9	1.4	0.9
	96	0.0	0.1	0.6	0.8	0.7	0.9	0.6	0.6	0.8	0.3	0.8
	97	0.0	0.2	0.1	0.4	0.9	1.1	0.5	0.5	0.4	0.9	0.9
	98	0.0	0.0	0.2	0.2	0.2	0.4	0.5	0.5	0.4	0.6	0.9
	99	0.1	0.1	0.0	0.6	0.2	0.1	0.3	0.1	0.5	0.1	0.6
	00	0.0	0.1	0.4	0.4	0.7	0.5	0.6	0.4	0.3	1.2	0.9
	01	0.2	0.2	0.2	0.3	0.5	0.2	0.5	0.7	1.3	1.1	0.8
	02	0.2	0.3	0.5	0.3	0.6	0.4	0.7	0.8	0.9	0.6	0.4
	03	0.2	0.0	0.3	0.8	0.9	0.8	0.8	0.9	1.1	1.7	1.3
	04	0.0	0.2	0.2	0.3	0.5	0.5	0.8	0.8	0.2	1.6	0.7
	05	0.0	0.0	0.2	0.0	0.5	0.2	0.3	0.1	0.4	0.2	0.1
	06	0.1	0.0	0.0	0.0	0.0	0.5	0.2	0.3	0.4	0.4	0.5
	07	0.3	0.1	0.2	0.0	0.0	0.3	0.6	0.2	0.0	0.3	0.3
체포 / 감금	90	0.0	0.1	0.1	0.6	0.1	0.4	1.2	0.8	1.0	1.1	0.8
	91	0.0	0.0	0.0	0.0	0.2	0.3	0.4	0.3	0.8	0.6	1.2
	92	0.0	0.0	0.3	0.2	0.1	0.2	0.2	0.2	0.8	0.4	0.8
	93	0.0	0.0	0.0	0.3	0.1	0.0	0.2	0.3	0.1	0.3	0.8
	94	0.0	0.0	0.0	0.1	0.6	0.0	0.3	0.2	0.4	0.7	0.9
	95	0.0	0.0	0.1	0.1	0.1	0.4	0.2	0.5	0.8	1.0	0.9
	96	0.0	0.0	0.2	0.1	0.1	0.1	0.8	1.1	1.4	1.7	1.4
	97	0.0	0.2	0.6	0.1	0.3	0.4	0.1	0.4	0.4	0.6	0.8
	98	0.0	0.4	0.2	0.5	0.6	1.0	1.1	1.5	0.8	1.0	1.3
	99	0.0	0.0	0.0	0.0	0.2	1.5	0.4	0.4	0.5	1.2	1.6
	00	0.2	0.3	0.3	0.3	0.2	1.2	0.6	0.1	0.9	1.1	2.0
	01	0.0	0.0	0.3	0.1	0.3	0.6	0.8	0.4	1.8	1.1	1.2
	02	0.0	0.0	0.3	0.2	0.4	0.3	0.4	0.6	1.1	0.8	1.5
	03	0.0	0.0	0.0	0.2	0.5	0.4	0.5	0.2	1.1	1.5	1.3
	04	0.0	0.2	0.0	0.2	0.0	0.3	0.4	0.1	0.2	1.0	0.9
	05	0.2	0.3	0.3	0.0	0.2	0.2	0.0	0.1	0.7	0.5	0.4
	06	0.1	0.0	0.5	0.8	0.3	1.0	0.9	0.2	0.7	0.8	1.6
	07	0.0	0.3	0.0	0.0	0.5	0.0	0.5	0.6	0.9	1.6	1.7

(단위: 명, %)

유형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폭력행위	90	8.2	45.1	191.9	481.6	805.4	1039.0	1279.9	1453.9	1028.4	923.3	1244.4
	91	9.2	44.1	189.9	429.0	682.1	882.3	1122.2	1226.9	1013.1	818.1	1029.6
	92	8.6	47.2	213.5	467.4	614.3	797.3	1006.3	1076.4	857.2	890.3	863.9
	93	10.1	60.7	272.0	602.9	761.3	895.4	1077.3	1169.7	908.6	820.7	968.7
	94	14.6	73.0	299.4	581.9	823.4	935.8	1070.0	1152.3	833.5	709.4	943.2
	95	11.4	100.5	419.4	849.3	1012.7	1119.2	1186.1	1140.8	709.6	654.2	916.9
	96	12.8	112.8	452.2	808.9	984.1	1085.2	1265.8	1188.6	758.0	673.5	977.2
	97	12.5	138.4	566.1	956.2	1110.3	1273.3	1324.0	1311.3	798.8	625.5	926.9
	98	10.6	99.3	411.1	736.6	931.4	1109.1	1412.5	1381.4	889.5	747.3	1032.2
	99	11.4	109.7	476.4	797.0	961.7	1130.3	1369.9	1513.8	1026.1	823.6	1260.5
	00	12.4	131.4	598.3	943.3	1027.7	1231.9	1399.6	1485.8	1098.0	914.3	1345.7
	01	12.6	108.4	503.1	872.5	1010.3	1164.1	1342.9	1449.3	1104.8	967.5	1296.4
	02	10.7	84.6	400.4	688.4	759.1	866.1	1100.4	1323.8	998.3	927.2	1200.9
	03	10.7	78.0	371.9	577.5	648.1	752.5	928.4	1151.1	913.3	763.6	1050.4
	04	3.0	49.4	251.6	395.7	388.0	523.9	719.6	875.6	651.5	624.1	868.7
	05	1.6	58.3	297.9	514.5	474.8	456.0	598.2	710.5	523.7	553.5	808.3
	06	0.9	62.6	312.5	476.4	399.3	319.3	316.2	352.0	246.5	242.8	402.2
	07	1.5	83.8	406.2	673.8	512.9	383.9	351.3	311.0	220.6	229.9	373.4
손괴	90	0.13	0.36	0.69	1.33	2.61	4.10	3.37	3.57	5.47	8.15	8.41
	91	0.78	0.63	1.45	2.42	3.57	5.01	3.35	4.03	4.36	7.11	7.20
	92	0.13	0.13	1.02	1.70	2.66	3.24	2.18	3.36	2.73	7.17	7.47
	93	0.13	0.40	1.05	2.29	1.70	3.36	2.91	3.39	3.04	6.58	8.88
	94	0.25	0.38	0.66	0.79	2.04	2.68	2.21	2.58	3.62	4.36	7.25
	95	0.12	0.74	1.16	0.92	1.70	2.29	1.83	2.80	3.15	5.27	6.22
	96	0.24	0.94	1.46	1.79	3.33	4.03	2.46	2.92	5.91	5.44	6.39
	97	0.13	0.60	0.82	1.46	2.68	4.01	3.10	2.60	4.26	4.87	4.65
	98	0.55	0.38	1.21	1.88	3.17	5.37	3.34	4.04	4.67	4.76	7.57
	99	1.05	0.69	1.54	2.78	4.59	6.84	5.12	4.55	5.12	7.29	8.57
	00	1.10	1.95	1.11	2.83	3.87	7.65	6.85	5.64	5.09	7.55	9.38
	01	1.13	1.26	2.26	2.23	4.77	6.94	6.40	5.77	8.46	11.87	11.70
	02	0.81	0.97	1.72	2.12	3.22	6.62	6.98	7.18	8.25	9.23	8.80
	03	1.29	0.65	0.81	2.19	3.47	6.32	5.08	4.93	8.17	10.68	9.99
	04	0.79	0.97	1.31	2.10	4.34	5.14	6.35	4.59	7.19	8.95	10.36
	05	0.75	0.79	1.46	1.64	2.40	5.70	3.94	4.26	5.42	8.22	7.94
	06	2.04	2.72	4.28	6.33	14.23	17.34	15.73	18.22	32.17	43.83	45.93
	07	3.29	5.69	6.70	11.92	16.88	25.40	19.28	22.90	40.29	58.88	67.30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0-2007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1990-2007년도.

<표 1-17> 한국 10-24세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단위:%)

유형	연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절 도	90	422.3	526.4	479.0	430.0	341.4
	91	491.1	558.2	517.4	448.1	330.1
	92	528.2	620.9	553.1	459.1	345.3
	93	572.1	702.7	630.4	502.6	380.4
	94	683.0	797.6	690.8	544.7	338.9
	95	693.7	873.0	774.8	580.9	351.4
	96	736.3	889.9	794.6	548.0	372.9
	97	837.4	945.5	804.5	590.0	374.2
	98	915.1	1,126.1	1,034.2	765.9	535.3
	99	755.8	934.1	877.0	637.8	424.8
	00	890.2	1,126.0	893.7	622.7	377.8
	01	665.9	902.8	725.4	470.6	338.6
	02	695.3	1,020.1	920.0	567.8	336.2
	03	698.3	945.2	846.1	550.0	330.4
	04	547.0	775.7	713.6	539.0	336.9
	05	618.5	920.7	828.7	545.5	342.2
	06	707.1	1,033.2	900.4	578.6	377.8
	07	816.3	1,186.7	1,003.5	657.7	417.1
장 물	90	8.37	9.67	17.74	15.68	12.82
	91	12.13	15.85	16.94	13.51	11.70
	92	13.55	17.76	16.37	16.97	12.84
	93	10.99	16.86	16.87	14.61	10.81
	94	15.57	21.27	21.89	21.21	13.49
	95	12.70	17.95	21.32	18.35	15.34
	96	11.78	16.52	18.02	15.95	12.13
	97	10.99	18.94	17.39	16.84	8.56
	98	8.97	17.93	15.94	17.75	11.72
	99	8.07	14.10	16.67	15.23	13.41
	00	8.02	14.69	16.37	15.04	8.95
	01	4.36	7.69	11.59	9.62	5.29
	02	5.37	7.43	11.44	9.82	6.72
	03	4.19	7.33	6.95	9.21	3.63
	04	2.36	4.68	5.56	6.93	4.65
	05	3.17	4.10	7.77	6.54	3.53
	06	3.20	4.84	7.61	7.31	5.72
	07	4.00	6.42	9.59	8.26	7.31
사 기	90	8.1	10.8	10.3	14.5	42.9
	91	8.2	8.5	11.7	13.0	53.5
	92	6.3	6.3	11.3	16.0	48.2
	93	9.5	10.5	11.2	21.0	40.2
	94	2.1	6.0	12.0	22.4	50.1
	95	2.8	5.8	12.5	24.8	54.7
	96	3.6	5.0	18.0	34.4	72.0
	97	5.1	8.2	17.2	36.8	76.2
	98	5.9	11.8	25.4	50.4	114.4
	99	7.3	13.7	30.3	52.8	105.2
	00	6.6	26.1	49.8	69.5	96.7
	01	23.3	47.2	76.3	128.3	179.0
	02	32.4	80.6	144.5	212.6	282.0
	03	48.9	96.5	157.6	213.4	271.5
	04	32.4	55.7	76.0	130.6	223.3
	05	15.8	44.3	64.1	89.1	152.9
	06	9.3	26.9	54.3	102.1	131.8
	07	8.7	28.3	61.1	101.7	138.8

(단위:%)

유형	연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절 도	90	283.9	173.3	161.1	186.2	175.0
	91	251.2	163.3	145.6	134.8	189.4
	92	247.2	157.5	154.0	126.6	173.6
	93	283.5	198.9	146.3	149.2	180.5
	94	249.0	143.9	122.6	125.7	142.9
	95	241.8	135.4	106.7	119.0	123.8
	96	246.9	120.2	88.4	114.6	120.6
	97	242.4	127.4	89.2	102.8	117.8
	98	339.5	191.3	135.0	150.6	157.7
	99	311.1	173.2	127.0	151.5	167.0
	00	260.4	169.0	126.4	148.1	162.7
	01	253.2	165.7	140.9	142.7	156.1
	02	237.7	175.4	154.1	158.7	172.8
	03	222.9	168.9	138.1	157.9	167.9
	04	235.9	145.0	124.4	141.7	146.7
	05	225.4	138.9	107.3	127.2	138.4
	06	242.3	158.1	123.0	137.6	152.6
	07	262.3	155.5	132.0	156.6	171.7
장 물	90	8.85	8.16	5.13	4.89	6.35
	91	9.91	5.19	4.25	5.36	5.83
	92	7.04	5.24	5.09	4.04	5.04
	93	7.42	6.38	3.28	5.21	4.16
	94	8.77	4.30	3.82	3.62	4.36
	95	7.39	3.29	1.98	4.28	2.09
	96	6.45	4.93	3.41	2.78	1.93
	97	6.94	3.37	2.73	2.19	1.97
	98	10.23	4.41	3.50	4.15	6.96
	99	9.53	5.76	3.21	4.45	4.95
	00	7.06	4.64	4.10	2.54	3.77
	01	6.57	4.39	3.19	3.97	4.54
	02	4.29	1.35	2.27	2.34	3.08
	03	5.06	3.78	3.82	2.40	3.32
	04	3.03	3.81	1.44	1.24	2.90
	05	2.47	2.27	1.99	2.38	2.49
	06	5.94	3.39	2.88	3.56	3.56
	07	6.39	3.86	3.87	3.95	4.98
사 기	90	53.2	43.2	57.3	81.3	108.3
	91	61.4	54.5	71.4	93.5	130.6
	92	65.3	66.9	94.1	114.9	153.8
	93	67.4	119.5	144.1	180.8	234.1
	94	87.0	144.8	210.6	241.5	305.0
	95	107.7	186.6	260.8	349.3	414.9
	96	132.3	231.4	337.3	420.0	507.1
	97	123.4	200.3	283.1	333.2	378.6
	98	172.4	240.2	346.6	402.8	445.6
	99	179.1	244.8	294.6	374.4	411.7
	00	167.8	239.7	248.4	266.4	314.8
	01	232.2	293.8	342.0	343.8	387.6
	02	368.0	430.0	446.8	492.2	501.3
	03	400.1	522.9	568.2	638.1	669.6
	04	339.7	452.5	543.9	636.0	679.4
	05	242.2	294.4	350.5	405.3	455.3
	06	226.1	325.8	328.5	387.9	423.9
	07	200.2	274.8	334.0	354.5	415.0

<표 1-18> 교사 1인당 학생수 2006

(단위 : 명)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한국	20	28	18
일본	39	19	12
미국	16	14	15
스웨덴	10	10	9
독일	12	14	14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0-2007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1990-2007년도.

<표 1-19> 성별, 종사자별, 근로시간별(독일)

(단위: 천명)

	전체		자영업		가족종사자		공무원		사무직		노동직	
근로시간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32시간 미만	9,918	7,951	805	505	271	208	330	283	5,768	4,965	2,743	1,990
32시간 이상	28,245	9,321	3,355	783	124	97	1,888	559	14,125	6,370	8,752	1,512
전체	38,163	17,272	4,160	1,287	396	305	2,218	842	19,894	11,336	11,495	3,502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2008b: 31

<표 1-20> 스웨덴 청소년의 여가

	그룬드스쿨란			집나지움		
	자주	때때로	전혀	자주	때때로	전혀
스포츠						
스포츠클럽/조직에 참여, 운동	62	17	27	50	13	37
운동 (조직 아님)	55	26	17	50	29	21
스포츠 관람	11	51	38	9	53	38
(직접 참여하지 않음)						
자연 산책, 사냥, 배타기	5	57	37	13	40	47
문화 향유						
콘서트	8	43	49	16	48	36
연극, 발레	3	22	74	4	32	64
박물관, 전시	5	50	45	4	41	55
도서관	44	32	24	38	32	30
컴퓨터						
인터넷 서핑	57	31/8	4	55	30/12	3
인터넷 채팅	39	26/22	13	37	40/12	21

**<표 1-21> 스웨덴 18-24세 국회, 도의원, 시/코문 의원
경선참여 및 선출자수**

	국회		도의원		시/코문 의원	
	경선참여	선출	경선참여	선출	경선참여	선출
2002						
여	130	0	180	9	886	154
남	158	2	234	7	1216	130
전체	288	2	414	16	2102	284
2006						
여	143	2	220	11	946	160
남	228	0	311	10	1238	169
전체	371	2	531	21	2184	329

통계: 스웨덴 통계청, Ungdomsstyrelsen

<표 1-22> 스웨덴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자, 성별, 연령별 퍼센트

	1994	1998	2002	2006
첫 투표자 18-22세				
남	78	75	68	74
여	85	73	73	78
전체	82	74	70	76
22-29세				
남	79	75	73	75
여	84	79	76	80
전체	81	77	74	77
30-74세				
남	88	84	83	85
여	91	87	86	88
전체	90	86	85	86

통계: 스웨덴 통계청, Ungdomsstyrelsen

주: 22세인 경우 1년 중 출생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연령 그룹에 더해짐.

<표 1-23> 2004/2005년에 청소년 중 정치 단체에 가입자 수 퍼센트

	16-19세	20-25세	16-25세			35-74세
			남	여	전체	
전체	4	3	5	3	4	7
출신						
스웨덴	4	3	5	2	4	7
외국	2	4	2	5	3	6
지역						
대도시	3	4	4	2	3	5
중소도시	4	4	5	3	4	7
기타	7	2	5	3	4	9

통계 : 스웨덴 통계청, Ungdomsstyrelsen

<표 1-24> 2004/2005년에 청소년 중 정치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수 퍼센트

	16-19세	20-25세	16-25세			35-74세
			남	여	전체	
전체	1.1	0.7	1.4	0.3	0.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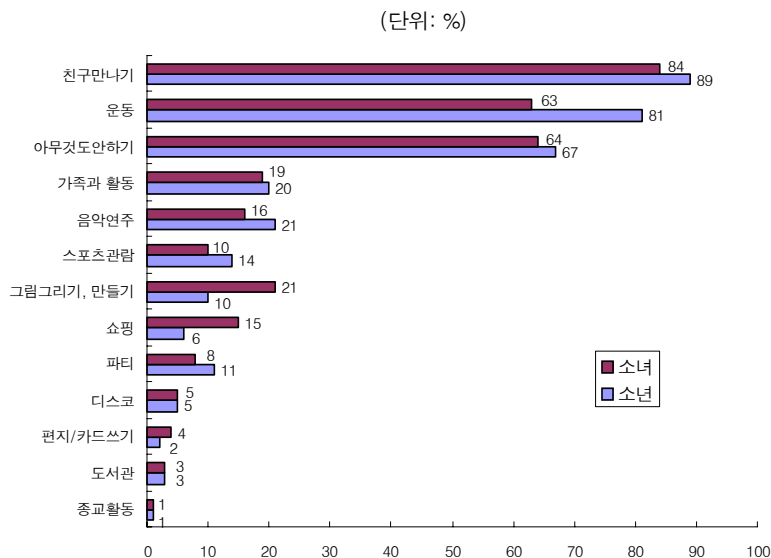
통계 : 스웨덴 통계청, Ungdomsstyrelsen

<표 1-25> 스웨덴 도의원 선거 투표 참여자, 성별, 연령별 퍼센트

	1994	1998	2002	2006
첫 투표자 18-22세				
남	73	68	64	68
여	82	67	69	72
전체	77	67	66	70
22-29세				
남	71	68	67	67
여	80	72	71	72
전체	75	70	69	70
30-74세				
남	85	79	80	81
여	89	83	83	84
전체	87	81	82	82

통계: 스웨덴 통계청, Ungdomsstyrelsen

주: 22세인 경우 1년 중 출생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연령 그룹에 더해짐.



출처: MPFS. 2007b: 6-7

[그림 1-1] 여가생활 2007년

<표 1-26> 2004-2005년 스웨덴 16-25세 청소년 클럽 가입률

(단위: %)

	16-19세	20-25세	16-25세			35-74세
			남	여	평균	
평균	52	72	65	63	64	88
출신						
스웨덴 출신	54	76	68	66	67	91
외국 출신	38	49	44	45	45	77
지역						
대도시	44	65	58	54	56	86
중소도시	52	76	64	70	67	90
작은 마을	62	75	74	64	69	89

출처: 스웨덴 통계청(Ungdomsstyrelsen)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융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특성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4-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인 쇄 2008년 12월 23일

발 행 2008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엔디(주)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9-8

ISBN 978-89-7816-756-6(세트)

